I·SEOUL·U
너와 나의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596호
2020. 7. 16.(목)



서울특별시

목 차

◈ 자치법규

[조 례]

제7601호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6
제7602호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11
제7603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
제7604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3
제7605호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
제7606호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
제7607호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7
제7608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 ·····18
제7609호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19
제7610호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21
제7611호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23
제7612호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4
제7613호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28
제7614호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5
제7615호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36
제7616호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 ·····37
제7617호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38
제7618호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39
제7619호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4
제7620호 서울특별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45
제7621호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8
제7622호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50
제7623호 서울특별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52
제7624호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 ·····55
제7625호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7
제7626호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7
제7627호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58
제7628호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0
제7629호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1
제7630호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2
제7631호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63

제7632호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4
제7633호 서울특별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65
제7634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72
제7635호 서울특별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76
제7636호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9
제7637호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0
제7638호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81
제7639호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3
제7640호 서울특별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5
제7641호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87
제7642호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9
제7643호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90
제7644호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92
제7645호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3
제7646호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5
제7647호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6
제7648호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휴일의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96
제7649호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 ····98
제7650호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9
제7651호 서울특별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 ····100
제7652호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03
제7653호 서울특별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04
제7654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9
제7655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0
제7656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111
제7657호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116
제7658호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0
제7659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121
제7660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22
제7661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23
제7662호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24
제7663호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27
제7664호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28
제7665호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9
제7666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0
제7667호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2
제766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134
제766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조례 ····137
제767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139

제7671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140
제767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 지역위원회 조례 폐지조례 ·····145
제7673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146
제767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47
제7675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50
제7676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52
제7677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 ·····155
제767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6
제767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8
제768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9

[입법예고]

제2020-2037호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61
제2020-2071호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62
제2020-2074호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65
제2020-2083호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65

◈ 고 시

제2020-300호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상봉7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67
제2020-301호 역삼문화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10
제2020-303호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전농12재정비촉진구역 해제(일몰)기한 연장 고시 ·····216
제2020-304호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미한변경) ·····216
제2020-305호 도시관리계획(중구 황학동 2085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30
제2020-306호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문생활권·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40
제2020-307호 서울 휴먼타운(북가좌동)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 ·····244
제2020-308호 신내어울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47

◈ 공 고

제2020-1978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예고 ·····252
제2020-2001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구로구 오류동 9-39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253

제2020-2006호 도시계획시설(장충단근린공원)사업 공사완료 공고 ·····257
제2020-2007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 공고 ·····258
제2020-2008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258
제2020-2009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259
제2020-2014호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261
제2020-2016호 서울특별시 문화재 등록 계획 공고 ·····261
제2020-2024호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체결 공고 ·····266
제2020-2028호 회계직인 등록 및 폐기 공고 ·····267
제2020-2033호 혼잡통행료 과태료 독촉 및 압류 예고장 공시송달(공고) ·····267
제2020-2046호 서울시청사(본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독촉분 공시송달 공고 ·····239
제2020-2047호 서울시청사(본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독촉분 공시송달 공고 ·····272
제2020-2048호 서울시청사(본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부과분 공시송달 공고 ·····274
제2020-2049호 서울시청사(본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부과분 공시송달 공고 ·····275
제2020-2050호 서울시청사(본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부과분 공시송달 공고 ·····276
제2020-2059호 2020년 제9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공모당선작 선정' 심의결과 공고 ·····277
제2020-2069호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공고 ·····278

◈ 구 고 시

제2020-91호 저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지구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 결정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중구) ·····305
제2020-87호 도시계획시설사업(용마도시자연공원조성-광진) 실시계획 인가고시(변경)
(광진구) ·····308
제2020-74호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동대문구) ·····311
제2020-75호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등)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고시 (동대문구) ·····313
제2020-7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중랑구) ·····363
제2020-12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정정) 고시(성북구) ·····368
제2020-12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성북구) ·····369
제2020-127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성북구) ·····371
제2020-79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노원구) ·····373
제2020-13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서대문구) ·····375
제2020-106호 주택건설사업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동작구) ·····380
제2020-157호 비석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경미한 변경) 고시(서초구) ·····389

◈ 구 공 고

제2020-83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유수지, 체육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성동구) ·····394
제2020-801호 도시관리계획(번동 410-5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강북구) ·····397

제2020-91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작성을 위한 열람공고(도봉구) ·····399
제2020-93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작성을 위한 열람공고(도봉구) ·····401
제2020-76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서대문구) ·····403
제2020-77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서대문구) ·····403
제2020-117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안) 열람공고(구로구) ·····404
제2020-122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주민의견 청취 열람공고
(관악구) ·····405
제2020-1245호 도시관리계획(미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관악구) ·····408
제2020-1364호 강남세브란스병원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안) 재열람공고
(강남구) ·····409
제2020-1100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공사완료 공고(송파구) ·····410
제2020-1411호 도시계획시설(암사역사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강동구) ·····411

◈ 사업소공고

제2020-207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사전통지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한강사업본부) ·····413
제2020-208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수시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한강사업본부) ·····416

◈ 기 타

제2020-201호 하천점용(일시)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419
제2020-20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419
제2020-20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420
제2020-207호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420
제2020-20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421
제2020-21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422
제2020-21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422
제2020-21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423
제2020-21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423

◈ 정 정

제2020-80호 중구고시 제2020-80호 정정 ·····425
제2020-13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정정 고시(서대문구) ·····426
제2020-136호 도시계획시설사업[온수도시자연공원(온수근린 7)] 실시계획 인가
정정고시(구로구) ·····429

자치법규

[조 례]

◈ 서울특별시조례 제7601호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예산편성과정”을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법령준수의무)”를 “(법령준수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따라 예산편성 시”를 “따른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시민참여예산위원회와”를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과”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예산편성과정”을 “예산과정”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예산편성”을 “예산 편성 등”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시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산 편성의 방향
2. 시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토론 활동 계획
3. 시민 및 시 공무원에 대한 교육 계획
4. 예산과정에서의 시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견수렴 절차) 시장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사업공모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예산편성관련”을 “예산 편성 등과 관련된”으로,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시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운영계획”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시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시민참여예산위원회”로 하고, 제15조 앞에 “제4장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삭제한다.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제19조 및 제20조로 하고, 제13조 및 제14조를 제23조 및 제24조로 한다.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19조의1,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제22조, 제17조 및 제18조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5조)제1항 중 “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참여를 위한”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으로, “300명”을 “500명”으로 한다.

1. 중장기 예산 및 대규모 투자사업 예산 편성, 예산과정 등에 대한 의견제출
2. 시민참여예산 지역회의, 민관예산협의회에서 심의·조정한 사업에 대한 최종 선정
3. 예산편성안에 대한 의견제출
4. 시민참여예산제의 홍보 및 마케팅 지원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제13조(종전의 제1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해당하는 자는 총 위원의 4/5이상으로 한다”를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 총수의 5분의 4 이상이 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선정된 자”를 “선정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13조(종전의 제15조) 제5항 중 “위 제4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을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25조제10항에 따른”을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시의회 및 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으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1년으로”를 “위촉된 날부터 다음해 1월 말까지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기전”을 “임기 만료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이 위촉된 날부터 1년 이내에서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활동한다.

제15조(종전의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위원장 및 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총회를 개최할 때마다 선출하고, 임기 동안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제16조(종전의 제18조)제3호 중 "민관예산협의회"를 "실·본부·국별 민관예산협회의회"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아닌 자가"를 "아닌 사람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총회"를 "시장은 총회"로, "서울시의회"를 "시의회"로 한다.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안을 최종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총회를 개최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총회의 의결을 통해 조정된 예산편성안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 과정에 시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시민 및 전문가의 참여 절차 및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종전의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위원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현장조사 및 공청회 등의 개최) 위원회는 예산과정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지원하거나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종전의 제19조의1)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민관예산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업과 시민 또는 단체가 제안한 사업을 검토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기 위하여 실·본부·국별로 민관예산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다만, 민관협의회의 명칭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민관협의회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분야별 특성과 성별을 고려하여 민관협의회의 회장을 포함한 10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 시민이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민관협의회의 회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회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민관협의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민관협의회의 회장은 민관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분과를 둘 수 있다.
⑥ 민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간사를 둔다.

제18조의2의 제목 “(참여예산사업 심사기준)”을 “(시민 또는 단체가 제안한 사업 심사기준)”으로 하여 제22조의2로 한다.

제23조 앞에 “제4장 시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삽입한다.

제23조(종전의 제13조)의 제목 “(구성 및 운영)”을 “(시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시민참여예산지역회의”를 “시민참여예산 지역회의”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각 자치구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협치회의를 포함한다)”로, “간주한다”를 “본다”로 한다.

제24조(종전의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민의견사업을 수렴하고”를 “시민제안사업을 심의하고, 사업의”로, “7월말”을 “8월 초”로,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제13조에 따른 위원회”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를 “시민참여예산제 지원협의회”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구성 및 운영)”을 “(시민참여예산제 지원협의회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본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을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위원회”로, “25명”을 “50명(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운영 총괄 담당사무관”을 “운영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1.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규칙 제·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2. 예산교육, 시민참여예산제 홍보, 예산관련 토론회·공청회 등에 대한 활동 지원
3. 지역회의, 위원회, 협의회 운영 등 시민참여예산제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활동 지원
4. 시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지원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의 제목 “지 원 등”을 “지원 등”으로 한다.

제28조 제목 “(재정 및 실무지원)”을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민관예산협의회”를 “민관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민관예산협의회”를 “민관협의회”로,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준하는 실비를”을 “실비 등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예산과정에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사업 및 의견을 제출한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 등의 종류·액수는 우수 사업 및 의견을 선정하기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⑥ 예산학교의 강사 및 교재 원고료는 시 인재개발원의 「강사료 지급기준」 및 「교재 원고 작성 및 원고료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위촉(연임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서울시 예산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나.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문을 통합하거나 삭제하고, 조례의 체계 등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에서 시민들이 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기존의 예산 편성에서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시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함)으로 확대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서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함(제1조, 제4조 및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나.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는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제13조부터 제22조까지).

1)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조문을 통합하고, 위원 정수를 300명 이내에서 500명 이내로 확대함.

2) 위원의 임기를 1년(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에서 위촉된 날부터 다음 해 1월 말까지로 하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신규 위원이 위촉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촉된 날부터 1년 이내에서 신규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위원회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3) 위원회의 회의 일정 및 안건은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보안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통보하도록 함.

4) 민관예산협의회의 심의대상에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위원 정수를 20명 내외에서 100명 이내로 확대하며,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을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 시민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자치구별로 두는 시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의 경우에는 자치구별 민관협치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협치회의 등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및 제24조).

라.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의 명칭을 시민참여예산제 지원협의회로 변경하고, 협의회 위원의 정수를 25명 이내에서 50명 이내(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씩을 포함함)로 확대하는 등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제25조 및 제26조).

마. 우수 사업이나 의견을 제출한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포상금 등의 종류.액수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알리도록 함(제28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602호**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중소기업기본법」” 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제6항 중 “사회혁신담당관”을 “공유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범위를 확대하여 공유 촉진을 통한 자원 활용 극대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을 지정할 수 있는 중소기업 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확대함(제8조).
나. 공유도시 계획 수립 및 활성화에 관한 사무의 소관부서가 사회혁신담당관에서 전환도시담당관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촉진위원회 간사의 직위를 사회혁신담당관에서 공유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변경함(제11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603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 복리를 증진하고,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첨단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분야 정책연구 및 컨설팅
2. 첨단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관련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과 벤처기업 지원
3.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강화
4. 디지털 격차해소 사업

5. 빅데이터 관련 교육, 컨설팅, 공공·민간데이터 활용 사업
6.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분야 국제협력
7.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디지털 기술 관련 사업
8.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디지털재단에서 수행하던 사업 중 위탁기간 만료로 폐지된 사업을 삭제하는 등 행정 수요의 변화를 반영하여 사업수행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디지털재단의 설립 목적에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시민복리 증진 및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을 명시함(제1조).
나. 서울디지털재단의 수행사업 관련 규정을 정비함(제4조).
1) 정책연구 범위를 디지털 기술 외에 스마트도시 분야까지 확대함.
2)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격차해소 사업 근거를 마련함.
3) 위탁기간이 만료된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운영사항을 삭제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7604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8,701명”을 “18,70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0,402명”을 “10,410명”으로 한다.

별표3 중 총계란을 다음과 같이한다.

총계	11,513					

같은 표 일반직 계란, 4급란, 5급 이하 소계란, 전문경력관 소계란, 연구직 계란 및 연구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직 계	10,536					
4급	247	147	17	8	66	9
5급 이하 소계	10,115					
전문경력관 소계	109					
연구직 계	394					
연구사	332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감염병 대응 조직 신설을 위해 감염병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서울대공원의 사육운영직 퇴직 인력을 신규 충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칭)감염병전담센터 설치에 따라 감염병 전담인력을 증원함(+8명).
- 센터장 4급 정원 +1 및 연구사 정원 +7
나. 서울대공원의 사육운영직 퇴직에 따른 신규인력 충원을 위해 전문경력관 정원을 조정함(5급 이하 △5명 → 전문경력관 +5).

◈ **서울특별시조례 제7605호**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스페이스 살림의 운영 및 관리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2020년 9월 개관 예정인 ‘스페이스 살림’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출연기관인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의 사무로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여성가족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스페이스 살림의 운영 및 관리를 신설함(제3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606호**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1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 1호 내지 제5호”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의2호”로 한다.

1의2. 스페이스 살림: 여성창업 활성화, 성평등·돌봄 환경 조성 및 여성·가족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스페이스 살림의 기능) 제4조제1의2호에 따른 스페이스 살림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공간, 자금, 장비 등 여성 창업자 육성에 필요한 지원
2. 여성 창업자 판로 개척 및 투자 유치 지원
3.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자녀 돌봄 서비스 제공
4. 가족 소통 활성화 사업 추진
5. 정보통신분야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및 창작활동 지원
6. 그 밖에 여성창업 활성화, 성평등·돌봄 환경 조성 및 여성·가족 역량 강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

제18조제1항에 제1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스페이스 살림: 별표 6의2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제1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8조제1항제1의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스페이스 살림의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창업공간은 제외한다.

1.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자치구는 제외한다):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인다. 다만, 연수시설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줄인다.
2.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인다. 다만, 연수시설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줄인다.
3.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여성의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연수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줄인다.

제25조 중 “제6호까지”를 “제6호까지 및 제1의2호에”로 한다.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의2]

스페이스 살림 이용료 부과 기준(제18조제1항 관련)

구 분		이용료 부과·징수 기준(단위)
창업공간 이용료	창업공간	2,280원~20,000원(㎡당/1개월)
기본시설 이용료	공유좌석	10,000원~50,000원(1개월)
	공유부엌	7,500원~30,000원(1시간)
	다목적홀	52,800원~160,000원(1시간)
	교육장	25,000원~65,000원(1시간)
연수시설 이용료		40,000원~230,000원(1박)

※ 그 밖의 부대시설 이용료 및 관리비는 원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청구 가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2020년 9월 개관 예정인 ‘스페이스 살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여성관련시설에 여성창업 활성화, 성평등·돌봄 환경 조성, 여성·가족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스페이스 살림을 추가함(제4조).
나. 스페이스 살림의 주요기능으로 창업공간, 자금, 장비 등 여성 창업자 육성에 필요한 지원, 여성 창업자 판로 개척 및 투자 유치 지원, 자녀돌봄 서비스 제공, 가족 소통 활성화 사업 등을 규정함(제5조의2).
다. 스페이스 살림의 이용료 및 이용료 감면사항을 규정함(제18조, 제19조 및 별표 6의2).

◈ **서울특별시조례 제7607호**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 제목 “시립장사시설의 운영위탁 및 지도감독 등”을 “시립장사시설 운영의 위임 또는 위탁”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운영위탁)”을 “(운영의 위임 또는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공시설물”을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시설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탁받은”을 각각 “위임 또는 위탁받은”으로, “위탁할 수 있다”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제18조 중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위임받은 자치구청장이나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시립장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장사시설에 대한 관리 권한을 관할 자치구에 위임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립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시설의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임을 받은 자치구청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의 일부를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나. 시장은 시설의 관리 권한을 위임한 경우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재 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608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금액은”을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중 다목적형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자동차는 제외한다) 매입 금액: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
2. 건설공사 중 도시철도건설공사가 아닌 그 밖의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급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매입하지 아니한다) 매입 금액: 도급금액의 100분의 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채의 매입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자동차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2의 입법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와 그 외 자동차의 공채 매입 대상 및 매입 대상별 매입 금액을 동일하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공채 매입 대상을 기존 소형, 중형, 대형에서 소형, 중형, 대형, 다목적형으로 분류함.
나. 다목적형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공채 매입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로 정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7609호**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및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같은 항에 따라 그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같은 법 제146조제2항”을 “같은 법 제146조제3항”으로 한다.

제7조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를 “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같은 법 제146조제2항”을 각각 “같은 법 제146조제3항”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같은 법 제146조제2항”을 “같은 법 제146조제3항”으로 한다.

제18조 중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을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시각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시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가족의 범위에 장애인의 배우자 가족을 포함하고, 장애인과 그 배우자・직계혈족 등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도 면제 대상임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를 증명서류로 추가하며, 외국인 투자 감면 규정의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의 이관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각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시 공동명의 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인 가정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등을 증명서류로 추가함(제3조).
나.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의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함(제7조).
다. 조례가 감면제외 대상으로 인용하던 법조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제18조).
라. 지역자원시설세 분류 체계 변경을 반영하여 문구를 수정함(제5조, 제9조 및 제1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610호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나목 중 “소송계류 중(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소송(법에 따른 이의신청·심판청구”로, “심사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심사청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송 등”이라 한다)이 진행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소송”을 “소송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6조제2항제2호”를 “법 제2조제1항제36호”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조사”를 “세무조사”로 한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5조의3(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의 위촉·해촉 등) ① 시장은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을 배제하여야 한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정 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직무수행의 불성실 또는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선정 대리인을 해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해촉되는 경우에는 다른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여 불복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 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⑦ 선정 대리인은 불복 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

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⑧ 시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위촉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4(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대리인이 없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 중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선정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선정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선정 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구청장이 대리인을 선정하고자 시장에게 선정 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빠른 시일 내에 구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35명 이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4호나목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선정 대리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른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경우 선정 대리인의 임기의 기산일은 최초 위촉된 날로 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무보수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0317호, 2019. 12. 31.)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시·도 심사청구 제도 폐지 등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도 심사청구 삭제(제3조제2항 및 제3항)
나. 세무조사 정의 신설 반영(제3조제4항)
다. 선정 대리인 신청인의 소유재산 평가방법(제5조의2)
라.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의 위촉·해촉 등(제5조의3)
마.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제5조의4)
바.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의 정수 확대(제7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7611호**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법 제146조제4항”을 “법 제146조제5항”으로 한다.

제17조 중 “법 제146조제4항”을 “법 제146조제5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법 제146조제4항”을 “법 제146조제5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중 “법 제146조제4항”을 “법 제146조제5항”으로, “제1항제4호”를 “제2항제1호”로 한다.

제23조 중 “법 제146조제1항제5호”를 “법 제146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24조 중 “법 제146조제1항제6호”를 “법 제146조제2항제3호”로 한다.

제8장제7절의 제목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한다.

제25조 중 “법 제146조제4항”을 “법 제146조제5항”으로, “특정부동산에 대한”을 “소방분”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31조 중 “법 제147조제3항에 따른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

발전, 특정부동산에 대한” 을 “법 제147조제6항에 따라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소방분”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17조, 제19조제1항,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8장제7절의 제목, 제25조, 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지역자원시설세의 분류체계 변경 등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조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제15조, 제17조, 제19조제1항,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및 제31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612호**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7월 16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위임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림” 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2. “생활림” 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3. “가로수” 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내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

등” 이라 한다)에 대한 조성·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시림등 조성·관리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도시림 업무를 담당하는 실·본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림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지역의 주민 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 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을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정·장소 및 주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1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서기는 회의가 끝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 및 폐회의 일시·장소
2. 출석위원 서명부
3. 심의 사항
4. 회의진행 또는 현지조사 상황
5. 위원 및 출석인 발언 요지
6. 심의 결과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도시림 업무를 담당하는 과·담당관의 소속 담당 사무관 중 당연직 위원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현지조사)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 ①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사람이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을 발언하거나 소란행위 등으로 회의진행에 지장을 일으킨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당사자를 퇴장시킬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6조(안건의 재상정) 심의 결과 부결·부동의 된 안건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 동일안건으로 위원회에 재상정을 할 수 없다. 다만, 부결·부동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 대상지 또는 주변환경의 현격한 변화 등으로 재상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도시림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도시림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8조(수당 및 여비) ① 위원회에 출석 또는 서면심사에 참여하거나, 현지조사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심의·자문 안건과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② 위원이 아닌 관계인이 심의·자문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였거나, 현지조사에 참여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위임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함(제4조).
나.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부터 제9조까지).
1) 위원회는 8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2) 위원장은 도시림 업무를 담당하는 실·본부·국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관할지역의 주민 대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각각 2명씩 포함되도록 함.
3)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
4)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5) 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
다.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부터 제18조까지).
1)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2) 회의가 끝난 후 회의록을 작성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회의록을 공개함.
3) 당연직 위원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 도시림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중 당연직 위원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할 수 있음.
4)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5) 심의 결과 부결·부동의 된 안건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 동일안건으로 위원회에 재상정을 할 수 없음. 다만, 그 사유가 해소되거나 대상지 또는 주변 환경의 현격한 변화 등으로 재상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상정이 가능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7613호**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3. “마을공동체 활동”이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마을공동체 활성화 계획

제7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정책방향
2.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3. 서울시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4.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동 또는 주민자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 수립 및 공개)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서울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체계

제9조(마을공동체위원회) ①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시 마을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
3.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 운영
4. 종합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동위원장은 정무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마을공동체·주택·경제·복지·문화·여성·자치행정 등 관련 실·본부·국장 및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시의회가 추천하는 서울시의원 2명
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직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3.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및 행정학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주민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역공동체담당관이 된다.

⑧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⑩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⑪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⑫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⑬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⑮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및 주민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⑯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⑰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① 시장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3.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실행 지원
4.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
6.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관련 교육·홍보·전파
7.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자원관리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동 또는 주민자치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종합지원센터 운영 위탁의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⑤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⑨ 시장은 제8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⑩ 제9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⑪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⑫ 시장이 제1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⑬ 제1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및 자치구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장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제12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마을자원을 활용한 공동체 기반 경제 활동 지원

3. 환경·경관의 보전 및 개선
4. 주민 건강 및 복지 증진
5.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6. 마을자원을 활용한 교육 지원 사업
7. 마을공동체공간의 설치 및 운영
8. 주민자치 활동 지원 사업
9.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10.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연구·조사
11.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13조(지원신청) ① 시장은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모사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사업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지원절차 등을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제1항의 지원절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주민 또는 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2조2제5항에 따라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의2(지원사업 선정)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의3(보고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받는 주민은 지원사업 종료 후 해당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평가내용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포상) ① 시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 또는 관련단체 등을 평가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사업비의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6조(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장 마을공동체 공간 지원

제17조(설치·운영) ① 시장은 주민자치 및 공간공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 등의 마을공간을 자치구 또는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마을배움터”는 마을배움과 돌봄, 주체적 성장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게 조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 환경에 따라 특화된 마을배움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2. 마을배움 운영주체간 네트워크 구축 및 마을배움 사업 발굴 시행
3. 주민과 청년의 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마을배움 활동가 양성
4. 마을학교의 거점 공간 운영
5. 그 밖에 마을배움 활성화와 주민 활동가의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③ “마을활력소”는 지역주민 주도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실행
2. 지역주민 참여 확대 및 소통
3. 마을공동체 활성화 제안 및 실행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시장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의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를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에 기반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마을공동체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전반적인 조문 체계를 개편하고 주민자치 활동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명을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함.

나. 기반구축, 활동지원, 중간조직 지원, 교육 등을 포괄하고 다양한 마을공동체 정책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전반에 걸쳐 “만들기”를 “활성화”로 수정함.

다. 본칙의 구성 체계를 마을공동체 활성화 계획(2장),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체계(3장),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4장), 마을공동체 공간 지원(5장)으로 구성함.

라.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사항에 ‘그 밖에 주민자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마.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기능에 ‘주민자치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규정함(제10조).

바. 행정적 지원 및 사업비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 유형에 ‘주민자치 활동 지원 사업’을 규정함(제1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614호**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항, 제5항,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공공갈등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신뢰 향상 및 연대 의식 강화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공갈등관리를 위하여 공공갈등이 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관련부서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공공정책의 수

립과 추진 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의 예방과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동 조례는 공공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의 사회적 영향 및 사후적 평가 등에 관한 조치가 미흡한 바,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능력 강화를 위한 사후 평가의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갈등 발생 시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제3조제4항 신설).
나. 공공갈등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7615호**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술에 취한 자”를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건전한 문화생활을 저해하고 이용질서를 어지럽히는 시민청 이용제한 대상자범위를 확장하여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술에 취한자’를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함(제6조제1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7616호**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중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구성일로부터 2년으로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시 도시브랜드의 지속적인 관리와 발전을 위해 자문협의체로 운영 중인 서울브랜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말로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위원회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함(제5조제4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7617호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중 “성별영향평가 사무를 총괄하는 소속기관의 장”을 “여성가족정책실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성별영향평가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시장의 책무를 조례에 명시하고,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여성가족정책실장으로 명시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별영향평가 운영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추가함(제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여상가족정책실장으로 명시함(제18조제1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7618호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호의 정의를 말한다.
2.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정의를 말한다.
3. “성폭력”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정의를 말한다.
4. “성매매”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정의를 말한다.
5. “피해자”란 여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6.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정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여성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과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4.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5. 여성폭력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④ 시장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와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8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폭력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여성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5.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성가족정책실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또한,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4.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
6. 그 밖에 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여성권익담당관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요구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0조(위원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여성폭력 실태조사) ① 시장은 여성폭력실태를 파악하고, 여성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여성폭력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별·연령·학력·혼인상태·취업상태 등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 발생요인·발생유형·폭력유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폭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실태조사의 내용과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실태조사의 결과는 정책수립에 반영되도록 한다.

제13조(예방교육) ①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의 실태 및 예방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 관계법령
④ 시장은 여성폭력 예방교육 강사를 육성·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관련 실적은 다음 해 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한다.

제14조(디지털성범죄 예방 등) 시장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2차 피해 방지) 시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여성정책 모니터링) 시장은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시행 및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을 연 한 차례 실시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처리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제17조(관련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여성폭력피해자 지원매뉴얼 및 안내자료를 보관하고, 경찰·소방서·의료기관·학교·주민센터·복지관·관련 사업장 등에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민은 필요할 경우 여성폭력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설치)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성희롱·성폭력 보호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 보호를 위한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센터 기능) 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사각지대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
2. 소규모 사업장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
3. 성희롱·성폭력 피해 지원기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관련 지식정보 시스템 구축 및 공유
5. 성희롱·성폭력에 관해 시민인식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캠페인
6.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운영비 지원 및 정산)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센터장은 시장에게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하여 정산·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지도·점검 등) 시장은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을 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울특별시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서울특별시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위원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19. 12. 25.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피해자의 범위와 2차 피해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나.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체계의 구축 및 시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피해자’의 정의에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등 간접피해를 입은 사람까지 추가하여 규정함(제2조제5호).

나. ‘2차 피해’에 관하여 정의함(제2조제6호 신설).

다. 서울특별시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라. 2차 피해 방지와 2차 피해 최소화 조치에 관하여 규정함(제15조 신설).

마.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도·점검에 관하여 규정함(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7619호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한부모가족에 대한”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미혼모·부 가족의 자립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7. 한부모가족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가사지원서비스
8. 위기 임신·출산·양육 지원 사업

제9조의2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한부모가족의 날) 시장은 법 제5조의4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비밀 유지의 의무) 한부모가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센터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구체화하여 시장사무를 명확히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시민인식을 높이고, 비밀유지 의무를 통해 이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부모가족의 지원사업을 일부 변경 및 추가 신설함(제6조).
   나. 한부모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9조의2).
   다. 비밀 유지의 의무를 규정함(제1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620호

서울특별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7월 16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자의 일과 가족생활, 모·부성 및 돌봄보장, 여가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개인생활 등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한 서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생활 균형”이란 다양한 형태의 개인과 가족이 일과 생활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2.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이란 제1호에 따른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직장, 가정, 사회 전반의 체계가 갖추어진 환경을 말한다.
3.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이란 노동자가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생활 균형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가족친화 제도 도입·확대 등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운영에 있어 노동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생활 균형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가족친화제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일·생활 균형을 위한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가족돌봄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청장,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치구청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일·생활균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일·생활 균형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일·생활 균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일·생활 균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일·생활 균형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일·생활 균형정책의 평가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생활 균형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성평등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일·생활 균형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생활 균형 및 지원과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일·생활 균형이나 노동 관련 단체 및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기피·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일·생활 균형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⑥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른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일·생활 균형 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일·생활 균형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일·생활 균형 관련 정책지원
2.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기업 컨설팅
3.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구축
5. 일·생활 균형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센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실태조사 실시) ① 시장은 서울시 노동자들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의 대상·내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
2. 일·생활 균형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
3. 일·생활 균형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4.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 취득에 관한 컨설팅, 교육 지원 사업
5.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사업
6. 그 밖에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거나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존속기한)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일·생활 균형위원회의 존속기한은 3년으로 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일·생활균형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할 정책 컨트롤 타워와 전문 수행기관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생활 균형정책 수립 및 재원 마련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나.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주의 책무를 규정함(제4조).
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라. 일·생활 균형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
마. 일·생활 균형지원센터의 설치, 기능, 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 및 제12조).
바. 일·생활 균형 지원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제13조).
사. 일·생활 균형 지원사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4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621호**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혁신금융서비스”란「금융혁신지원 특별법」제2조제4호에 따라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란「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자 중 주된 사업분야가 혁신금융서비스인 자를 의미한다.
5.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이란 시가 제1호의 서울 금융중심지 내 금융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조성한 시설을 의미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제외한다.

제15조제1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의 해외진출 및 투자 유치 지원
4. 시 금융정책 발전을 위한 국제회의 및 세미나 등 개최

제16조제2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을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로 한다.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로 하고,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① 시장은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서울 금융중심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1. 서울 금융중심지 내 국내외 금융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한 시설
2. 금융기관 및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설
3.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서울 금융중심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금융기관,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 등에 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단, 시장은 정책 목적을 고려하여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별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20조(표창) 시장은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동북아 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2009년 1월 지정된 서울 금융중심지 내 금융기관 유치를 위한 금융기관 서울사무소 및 금융산업 종사자, 혁신금융서비스 종사자 간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종사자 네트워킹 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그 동안의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혁신금융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정의를 추가함(제2조제3호 및 제4호, 제5호).
나. 국내외 투자유치 환경조성을 위한 국제행사(국제금융컨퍼런스) 개최 등 추진근거를 마련함(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다. 국내외 금융기관 투자유치 활성화 및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조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제1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622호**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과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투자유치 기반 강화를 위해 투자유치전문기관에 외국인투자 촉진기구를 설치하고 해외 마케팅 및 외국투자가 투자 신고 지원 등 외국인투자 유치에 필요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치사무의 일부를 투자유치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투자유치단) ① 시장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잠재 외국인투자를 발굴하는 투자유치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투자유치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외국인투자지역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지역 활성화를 위해 법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기업에 대해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코로나19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유치 방법을 다각화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촉진기구 및 투자유치단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코로나19 이후의 투자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나. 아울러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이 서울시에 본격적으로 조성됨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서비스업 투자유치에 강점이 있는 서울의 투자 협상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 촉진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6조).

나. 투자유치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6조의2).

다.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기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9조의2).

◈ 서울특별시조례 제7623호

서울특별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7월 16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기능을 활용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공동체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농업”이란 농업 또는 도시농업 활동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돌봄, 교육, 고용, 치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활동 및 실천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
3. “사회적농장”이란 사회적농업을 영위하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사회적농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2. 사회적농업 관련 연구, 실태조사, 홍보방안
3. 사회적농업 관련 교육 및 인력양성
4. 사회적농업 관련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 사회적농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사회적농업의 현황, 지역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 결과는 사회적농업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농업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사회적농업 육성 정책과 관련된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농업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사회적농장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사회적농업 관련 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사회적농업 관련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사회적농업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시의회 의원은 위촉 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사무 총괄 및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사무관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9조(사회적농장의 지정 및 취소) ① 시장은 사회적농업의 활성화 및 사회적농장을 이용하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사회적농장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적농장 지정과 취소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사회적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농업 확산과 사회적농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 양성 사업
2. 사회적농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사업

3. 사회적농장에 대한 경영·기술·세무·노무·법률·회계 등의 자문 및 정보제공
4. 사회적농장의 시설개선, 협력관계 구축, 취약계층의 활동보조 사업
5. 사회적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 및 가공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및 마케팅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
6.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치유농업 관련 사업
7. 그 밖에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포상) 시장은 사회적농업 육성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사회적농업’ 은 농업의 기능을 활용해 노인・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교육・돌봄・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서울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도시농업 활동을 사회적농업에 포함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적농업을 정의함(제2조).
나.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발전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다.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라. 사회적농업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마. 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및 제8조).
바. 사회적농장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사. 사회적농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624호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7월 16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채무의 상속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발굴하여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률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인력·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
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범위)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법률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

1. 상속의 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제7조(지원방법 및 절차 등) ① 법률지원을 하는 경우에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변호사, 사회복지사, 아동 및 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의 방법·절차·관리 등 법률지원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비용지원) 시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구, 법률구조 전문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 등) ①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시장은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채무의 상속으로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제2조).
나.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발굴하여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3조).
다.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 하며 지원범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7625호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개월”을 각각 “1개월”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거주지의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불가피하게 전출 후 재전입하는 국가보훈대상자가 다수 있음에도 서울특별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만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는 현행 조례는 국가보훈 대상자의 공헌에 대한 예우라는 조례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나. 따라서 타 지자체와의 중복 수령을 막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단위인 거주 ‘1개월’로 지원 대상 조건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원 대상의 범위를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함(제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626호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개월”을 “1개월”로 한다.

제5조제3항 단서 중 “발생일로부터 3개월”을 “전입일 또는 등록일로부터 1개월”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거주지의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불가피하게 전출 후 재전입하는 참전 유공자가 다수 있음에도 타 시·도에서 전입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만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는 현행 조례는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이라는 조례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나. 따라서 타 지자체와의 중복 수령을 막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단위인 거주 ‘1개월’로 지원 대상 조건 및 수당 지급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의 범위를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함(제3조).
   나. 타시도 전입자 등은 전입일로부터 1개월경과 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5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627호**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7월 16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 가치의 계승·발전 및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항일독립운동”이란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일제의 민족차별 및 국권침탈 등에 반대하거나 항거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일독립운동 이념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이념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추진방법
3. 재원 조달방안
4. 유관기관과의 협력
5. 그 밖에 항일독립운동 이념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기념사업)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이념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일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 학술, 문화사업
2. 항일독립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3. 그 밖에 항일독립운동 이념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시책 등 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제4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2. 제6조에 따른 기념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표창)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등을 통해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에 큰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일독립운동의 이념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나.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다.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라.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628호**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
2020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저소득·취약계층의 권리 보호, 공익 향상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
9.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금융복지서비스 지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 증진 및 미래복지서비스 창출을 위해 서울시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나. 서울시 복지재단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시민의 법률 및 금융 복지 서비스를 지원함.
   다. 서울시 저소득·취약계층의 법률 및 금융복지서비스의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원을 위해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저소득·취약계층의 권리 보호, 공익 향상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 조항을 규정함(제4조제8호).
   나.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금융복지서비스 조항을 규정함(제4조제9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7629호**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과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과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적절한 처우와 근로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과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제4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7630호**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발달장애인”을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5호,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7.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에 대한 성교육
8.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 지원

제10조제3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사업 지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상위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에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에 대한 성교육이 추가되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조문의 순서를 상위법 인용 조문의 순서에 따라 재배열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에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에 대한 성교육을 추가함(제7조제1항제7호 신설).
   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사업 지원을 추가함(제10조제3항제7호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7631호**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호 및 제10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 (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

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개인형 이동장치는 가까운 시기에 빠르게 늘어날 것을 감안하며, 이어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교육을 명시하여 사람들에게 안전교육에 대한 제고와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안전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내용을 명시함(제9조).

나.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의 내용을 명시함(제1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632호**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외부회계감사)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4월 말까지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외부회계감사는 2020년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가 다니지 않는 지역을 다니는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교통수단으로 서울시는 운송수입금 등이 기준운송원가에 미달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그 규모가 2019년 기준 업계 전체적으로 연간 약 200억 원, 사업자 평균 약 3억 원 이상이 지원되고 있고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독립적인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에 문제가 되고 있음.
   나. 또한, 시장에게 사업자에 대한 투명한 재정지원을 위해서 자산, 부채, 자본 등과 관련한 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파악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조금의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에 한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독립적인 외부의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여 마을버스의 건전운행을 도모하고 이용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자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재정지원 기준을 신설함(제3조의2).
   나. 외부회계감사는 2020년 사업연도로부터 시행하도록 적용례를 신설함(부칙 제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633호**

서울특별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7월 16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한다) 제22조의7 및 제59조의2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서울특별시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 실수요검증위원회와 서울특별시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단지의 조성·개발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승인·협의·조정하는 물류단지에 적용한다. 단, 각 물류단지에 대한 개별조례가 있는 경우 그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2장 서울특별시 실수요검증위원회

제3조(실수요검증위원회 설치) 시장은 물류시설법 제22조의7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 전에 물류단지의 실수요를 검증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 “실수요검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실수요검증위원회 기능) 실수요검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사항
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① 실수요검증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상 ~ 30명 이하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③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물류, 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 실수요검증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실수요검증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물류시설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검증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실수요검증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물류시설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실수요검증위원회를 대표하고,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실수요검증위원회의 운영) ① 실수요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는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6명 이상 8명 이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위원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을 각각 선정하여 총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수요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실수요검증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릴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실수요검증위원회가 물류시설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7항에 따라 실수요 검증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는 때에는 물류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의 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야 한다.

⑥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간사 또는 서기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서울특별시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제11조(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2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물류단지 투자의향서 접수 및 문화재 지표조사, 농지·산지현황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및 조회
2. 물류단지 계획승인신청서 접수 및 관계 기관 협의·조정지원
3. 주민설명회 개최 및 후속조치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검토
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항목·범위선정 등 환경영향평가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6. 기술검토서의 작성
7. 그 밖에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지원센터의 구성) ① 지원센터의 장은 물류단지 개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물류입지, 물류산업, 건축, 도시계획, 건설, 교통, 환경 분야 등 물류단지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 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물류단지 지정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력지원의 기간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지원센터 장의 직무) ①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를 대표하고,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센터의 장이 미리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자문단 구성 등) ① 시장은 물류단지의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물류입지, 물류산업, 건축, 도시계획, 건설, 환경, 교통 등 물류단지 개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물류단지개발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10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단은 물류단지에 대한 자문의견을 제11조에 따른 지원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서울시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자문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및 답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서울특별시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제16조(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와 관련한 사항 등의 자문·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

1. 물류단지계획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관계 행정기관 및 부서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15조제3항에 따른 자문단의 자문의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서울시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시 소속 공무원 중 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도시계획, 물류입지, 건축, 교통, 환경 분야 등 물류단지개발 관련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6.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7.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에 따른 에너지이용계획과 이행에 대하여 자문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8.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시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9.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 따른 서울시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0. 「서울특별시 경관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시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1. 그 밖에 물류단지 개발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19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이 위원을 정하는 경우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한 경우 심

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제18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심의위원회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② 위원장은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사업시행자 포함) 등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3조(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① 위원장은 위원이 제18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4조(심의위원회 간사 및 서기)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심의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5조(위원회 비밀누설금지) 실수요검증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위원회 정보공개) 실수요검증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의결한 사항은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27조(수당 등) ① 실수요검증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서 등의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단,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제3조~제10조)은 2020. 10. 8.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이 개정됨에 따라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59조의2에 따라 단지 지정·협의·조정·승인하기 위하여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및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우리시 물류시설 개발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설치·기능·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나.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기능·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다.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기능·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6조부터 제24조까지).

◈ 서울특별시조례 제7634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태조사"를 "수급실태조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실태조사"를 "수급실태조사"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대하여"를 "대해"로,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를 "않은 공간은 수급실태조사"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차장법」 제2조제5호"를 "법 제2조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실태조사"를 각각 "수급실태조사"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구분조사"를 "구분 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실태조사"를 각각 "수급실태조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비교하여"를 "비교해"로, "공부"를 "공적 장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실태조사"를 "수급실태조사"로 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수급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수급실태조사원증표를 지참하여 이를 주차시설관리자에게 보여 주어야 하고, 구청장은 수집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주차장안전관리실태조사) 구청장은 법 제3조 및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라 주차장안전관리실태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충족여부
2. 경사진 주차장인 경우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여부
3. 안전관리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되, 제3조에 따른 수급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주차수급실태조사"를 "수급실태조사"로, "지역에 대하여는"을 "지역을"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주차시간측정계기(차량번호 인식을 통한 결제 시스템 및 주차요금결제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주차시간측정계기를 통한 주차장 이용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제7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주차관리자동화시스템을 통해 확인되거나 목적지 전철역장 이용확인 혹은 버스현금영수증 등 환승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주차요금 납부시 제출하면”을 “주차관리자동화시스템 또는 출차시 정산기를 통해 확인되면”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바로녹색결제시스템(사전에 주차요금 지불 가능한 결제수단을 등록하여 주차요금을 자동 지불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의2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차장 관리자는 소관 주차장의 경사 주차면에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③ 주차장 관리자는 소관 주차장에서의 미끄러짐 사고예방을 위한 안내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7조제2항제4호 중 “「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를 “「철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을 각각 “교통영향평가를 실시”로 한다.

제23조의2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2.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업무수행 관용차량 및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시·구의원 차량
3. 행사·회의참석 등 공무로 방문하는 외빈차량 및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기관 로고 부착 등 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보도차량

제25조제1항 본문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규모”를 “규모(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7호 중 “교부 받는 주차쿠폰의 요금”을 “주차요금”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바목 중 “「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호 중 “부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를 “부지”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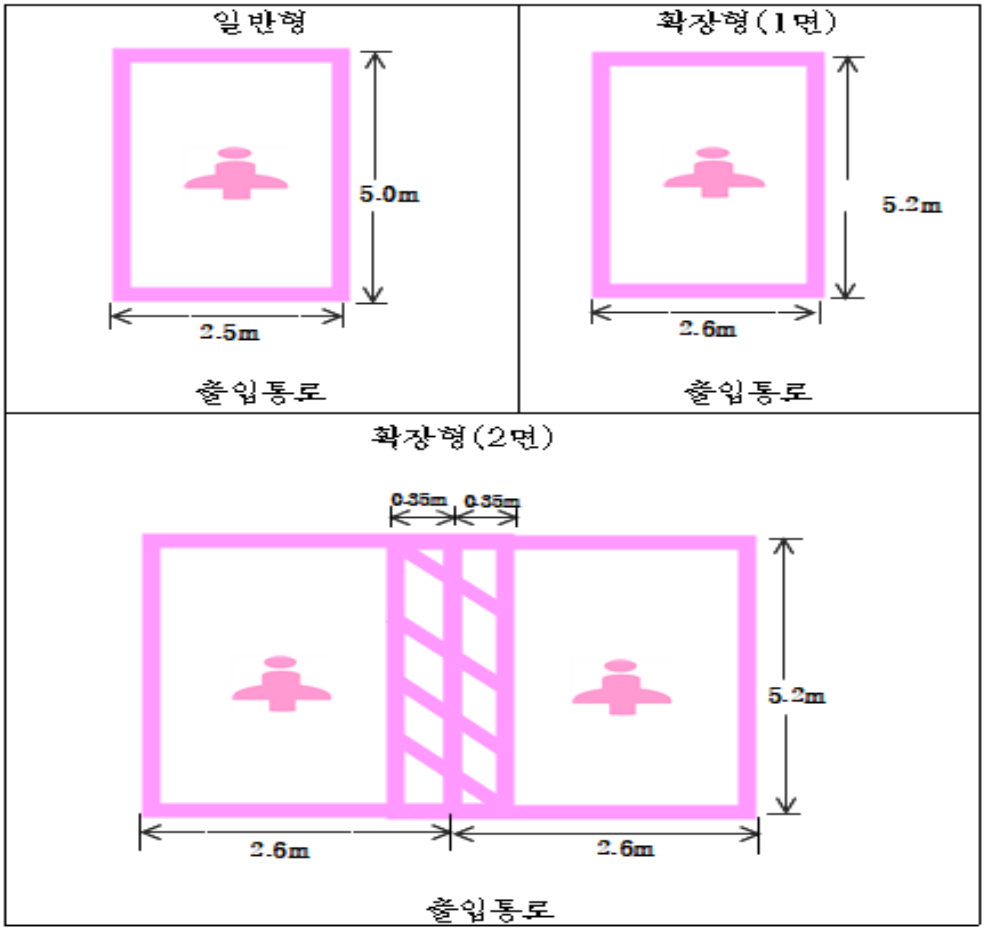
별도 제3호 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바로녹색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7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도 제3호 서식]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제25조의2제3항 관련)



- 비 고 -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5m이상 × 세로 5m이상)과 확장형 [가로 2.6m이상 × 세로 5.2m이상, 2면의 중앙여유공간 0.7m(각각 0.35m)를 사선표시] 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하되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
   가. 여성마크(픽토그램) 표지: 가로 75cm × 세로 155cm
2. 색채
   여성마크의 색은 분홍색(여성마크 그림)을 사용한다.
3. 설치위치
   여성마크는 주차면 중앙에 분홍색으로 표기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차장안전관리실태조사와 관련한 내용을 신설하고, 주차장 관리자에게 고임목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주차장 사전등록결제시스템 등의 활성화 도모 및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차장안전관리실태조사 관련 내용을 신설함(제3조의2).

나.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차량번호 인식 결제시스템, 주차요금 결제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함(제6조제2항제1호).

다. 주차시간측정계기를 통한 주차장 이용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제7조제1항).

라. 바로녹색결제시스템으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2021년 6월 30일까지 요금을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7조제1항제12호 및 부칙 제2조).

마.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 규정을 삭제함(제8조).

바. 주차장 관리자에게 고임목 및 안내표지판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함(제9조의2).

사. 주차요금의 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관리자의 재량이 과도하게 부여될 수 있는 감면 대상을 삭제함(제23조의2).

아. 여성우선주차장의 설치비율을 기계식 주차대수를 제외한 자주식 주차대수 기준으로 규정함(제25조의2제1항).

자. 그 밖에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제명 및 조항이 변경된 사항을 정비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7635호**

서울특별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승차구매점 주변의 보행자의 보행권 증진과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승차구매점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차구매점”이란 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승차한 상태로 하차하지 않고 「상법」 제46조에 따른 상행위(이하 “승차구매”라 한다)를 하는 점포를 말한다.
2. “보행권”이란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권을 말한다.
3. “보행환경”이란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환경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자치구의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승차구매점의 현황
2. 승차구매점 주변 교통량 및 통행환경에 관한 사항
3.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 및 보행환경에 관한 사항
4.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승차구매점의 현황, 교통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을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 ① 시장은 이용하는 차의 진·출입로가 보도(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과하는 승차구매점을 설치하거나 영업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보행자의 보행이 승차구매를 위한 진·출입 대기로 방해되지 아니할 것
2. 보행자와 차가 진·출입을 잘 알 수 있도록 시야가 확보될 것
3. 진·출입로가 도로의 구조와 형태 등에 비추어 최단거리 지점일 것
4. 주차장 진·출입과 승차구매를 위한 진·출입 동선이 분리되어 5m 이상 간격을 둘 것
5. 승차구매를 위한 진·출입구가 분리될 것
6. 승차구매를 위한 진·출입으로 교차로, 버스정류장 등 주변 교통시설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② 시장은 승차구매점이 보도의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 보행시설물의 설치
2.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도로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3. 차의 출입을 알리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알리는 경보장치의 설치
4. 안전요원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인력의 배치

③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보호구역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에서 승차구매점의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한 경우 주변 교통 환경과 보행환경,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그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승차구매점의 차 통행으로 인하여 보도의 설비가 파손되는 등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이미 허가한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승차구매점의 차 통행 금지·제한 등의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도로법」 제101조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승차구매점의 도로 점용 허가가 만료되었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점용을 허가하였던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청장에게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가.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인 승차구매(이른바 “드라이브 스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향후에는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승차구매를 이용함으로써 현재보다 더 많은 수요가 예상됨.
   나. 그런데 서울시의 도로나 건축물 등의 여건상 승차구매를 위해서는 보행로를 침범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므로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승차구매점에 대한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안전에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승차구매점 등 필요한 정의를 규정함(제2조).
   나.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다.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라. 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636호**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을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자전거 단체보험 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단체보험의 가입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재정분담의 비율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주체를 “주차장 설치·관리자”에서 “구청장”으로 개정하여 조례의 상위법 위배 논란을 해소하고, 자치구별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단체보험의 가입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무단 방치자전거의 처분주체를 “주차장 설치·관리자”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함(제10조 제2항).
나.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자치구에 속하는 자전거 이용자에게 자전거 보험 가입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의 대상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대상자 및 재정부담의 비율을 정할 수 있음(제15조의2).

◈ **서울특별시조례 제7637호**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사항외에”를 “사항 외에”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노점상”을 “거리가게”로 순화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8조에 따라 인권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기관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인 위험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임.
   나.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인권 영향평가에서 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로 개정을 권고 받은 바 있음. 이에 서울시 행정 순화어 사용으로 인권친화적 조례를 만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점상을 순우리말인 거리가게로 수정함(제3조제1항제3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7638호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7월 16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 가치의 계승·발전 및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일독립운동”이란 일제강점기 또는 그 이전에 일제의 민족차별, 국권침탈 등에 반대하거나 항거한 활동을 말한다.
2. “항일독립운동 유적”이란 서울특별시 내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장소 또는 건축물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일독립운동 이념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4. 계획에 따른 재원 조달 및 운용
5. 그 밖에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일독립운동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2. 항일독립운동 유적의 선정기준 수립
3.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 시책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사업의 추진)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일독립운동 유적 관련 자료 수집·연구
2. 항일독립운동 유적에 대한 안내판 및 표지석 설치
3. 항일독립운동 유적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4. 그 밖에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위탁) ①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예산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 시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자치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시책 마련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나.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 계획 수립 및 전문가의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다.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라.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의 위탁과 예산지원 범위에 대하여 규정함(제6조 및 제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639호**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9조의2제1항”을 “법 제9조의3제1항”으로 하고, “운행하도록”을 “관리·운행하도록”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지]

[별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4조 관련)

오염물질 항목 /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PM-10, ㎍/㎥)	초미세먼지 (PM-2.5, ㎍/㎥)	이산화탄소 (CO2, ppm)	폼알데하이드 (HCHO, ㎍/㎥)	총부유세균 (CFU/㎥)	일산화탄소 (CO,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100 이하	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	9 이하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100 이하	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	9 이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75 이하	35 이하	900 이하	80 이하	800 이하	9 이하
실내주차장	180 이하	-	1,000 이하	100 이하	-	20 이하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00 이하	-	-	-	-	-

비고

1.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2.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200㎍/㎥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가.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급·배기구를 포함한다)
나.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다.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라. 화장실용 배기관
마. 조리용 배기관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법률 제16307호, ’ 19. 4. 2. 공포, ’ 20. 4. 3. 시행)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환경부령 제858호, ’ 20. 4. 3. 시행)에 따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실내어린이 놀이시설 등이 추가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함(제5조).
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에 실내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추가함(별표).

◈ **서울특별시조례 제7640호**

서울특별시 4 · 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희생자의”를 “희생자”로, “생명·안전 및 인권·정의에 대한 의식의 고취를”을 “인간존엄과 안전사회에 대한 시민의식을 증진하는 것을”로 한다.

제3조 중 “인간존엄”을 “인간존엄과 안전사회”로, “의식함양을 위하여 4·16세월호참사 희생자의 추모가”를 “의식 함양을 위하여 희생자 추모와 안전의식 증진에 관한 사업이”로 한다.

제4조의 제목 “(희생자 추모계획 수립)”을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 증진

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추모를 위하여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계획(이하 “추모계획”이라 한다)”를 “추모와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 증진 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추모계획”을 “제1항에 따른 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추모시책”을 각각 “시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추모를”을 “추모와 안전의식 증진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추모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를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으로, “노력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추모사업)”을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를 위한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희생자 추모 행사
2.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공간 조성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제1항 중 “제5조제1항에 따른 추모사업”을 “제5조에 따른 사업”으로, “추모사업”을 “사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4·16세월호참사를 기억하고 그 희생자를 추모하면서,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사회 구축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안전의식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의식 증진에 관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나.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 증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다. 안전사회를 위한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641호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7월 16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각 동에 설치된 주민자치회의 활성화 지원과 자치회관의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풀뿌리 자치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주민자치”란 주민이 지역의제의 발의, 공론, 실행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체계를 말한다.
②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설립된 조직을 말한다.
③ “자치회관”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치구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범위)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회 시설 및 환경 개선
2. 주민자치 교육 및 역량강화
3.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은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회관 시설 및 환경 개선
2. 자치회관에 대한 종합평가 및 우수사례 공유
3. 자치회관 도농교류 활성화
4. 그 밖에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보고)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의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주민자치와 참여욕구가 점차 증대되는 상황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활성화와 자치회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과 자치회관 운영 지원을 통해 풀뿌리 자치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고자 함(제1조).

나. 주민자치, 주민자치회, 자치회관의 용어를 정의함(제2조).

다.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 자율성과 다양성의 보장,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라.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에 대한 지원 범위를 규정함(제4조).

마.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무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제5조).

바. 자치구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제6조).

사. 지도, 감독의 근거를 규정함(제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642호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의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가.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학교
   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로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 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직업전문학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고등교육 소외계층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학점은행제 직업교육기관 학생들에게도 장학지급 및 선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장학재단 장학지급 및 선정대상에 직업교육기관 학생을 포함함(제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643호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7월 16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있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복지시설”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시설”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퇴소청소년 등”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아동복지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 또는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시책 및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각종 시책 및 지원사업을 발굴·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사업
2. 자립정착금 지원 및 자산형성지원사업(금융 컨설팅 포함)
3. 문화·예술·체육 행사 지원사업
4. 인성교육 지원사업
5.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6.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
7.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퇴소청소년 등에 관한 현황 및 실태조사를 포함한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자치구에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 단체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자립지원센터 등) ① 시장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자활을 위한 자립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치구에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보호기간 연장)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에 대하여 그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이 종료된 이후 해당 퇴소청소년 등의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단체 및 시설 등의 위탁 및 지역협력체 구성을 통하여 보호조치할 수 있다.

제8조(협의체) ① 시장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 시민단체, 공공기관 및 아동·청소년복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도 점검)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 및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퇴소 청소년 등의 자립・자활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4조).
나. 퇴소 청소년 등의 자립・자활을 위한 시책 및 지원 사업, 자립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및 제6조).
다. 퇴소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기간 연장, 지역협의체 구성,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부터 제9조까지).

◈ 서울특별시조례 제7644호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역사·문화·예술·자연”을 “역사·문화·예술·자연·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시 및 산하기관의 업무, 기술, 시설, 인프라와 연계한 산업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서울시는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우수정책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각 기업의 우수한 산업관광자원과 이를 활성화할 여러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음.
   나. 또한 서울시는 서울교통정보센터(TOPIS), 120다산콜센터, 자원회수시설 등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견학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들이 체계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홍보도 미흡하여 산업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다. 이러한 엇박자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가 먼저 산업관광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산업을 관광자원의 범주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함(제7조제3항).
   나. 시장은 산업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제7조제4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7645호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보호법」 제5조제1항”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1항”으로, “위한 서울특별시”를 “위하여”로,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을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로 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이외의 용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를 다음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시민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등의 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연구·조사 및 오남용 등 예방 교육 등에 필요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의 제목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를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마약류 중독자 및 환각물질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에 관한 사항
2.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 예방의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치료보호 및 사업 등) ①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중독자 및 환각물질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사업
4.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을 위한 예방교육 전문 인력 육성·지원 및 프로그램의 개발·평가 사업
5.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의료기관 및 단체에게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중 “의한 마약류 또는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을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로 하고,

제7조 중 “의한”을 “따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① 시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지역과 계층을 막론하고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중독 및 유해약물 오남용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 위험성과 폐해를 적극 알리고, 조기에 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나. 취학아동에 대한 예방교육 실시,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홍보 등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예방교육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며, 이와 함께 현행 조문의 체계와 용어·표현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임의규정으로 수

정함(제3조).
다. 마약류 중독자 및 환각물질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등을 치료보호 및 사업 등으로 수정하고, 전문의료기관 및 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조항으로 수정함(제5조).
라. 보조금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5조 삭제).

◈ **서울특별시조례 제7646호**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장기등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시민들의 생명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하고,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 주간으로 운영한다.
④ 시장은 생명나눔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상위법인「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명나눔주간’을 신설,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으로 하여금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하고,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 주간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함(제10조제3항).
나. 시장으로 하여금 생명나눔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0조제4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7647호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가 운영하는 근린공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설치 기관 이외에 서울시 및 자치구가 운영하는 근린공원을 권장설치으로 구체화하여 시민의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에 근린공원을 추가함(제7조제1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7648호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휴일의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휴일의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7월 16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 야간·휴일의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 등의 건강 증진 및 의료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 야간·휴일의원”(이하 “야간·휴일의원”이라 한다)이란 제4조제1항에 따라 운영되도록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서울특별시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2. “의원급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중에서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야간·휴일의원 지정 및 지원을 통해 평일 야간, 휴일 등에 시민과 관광객 등(이하 “시민 등”이라 한다)이 필요할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야간·휴일의원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시민 등에 대한 의료접근성 향상 등을 위하여 야간·휴일의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야간·휴일의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간 내에서 운영시간을 정한다.

1. 평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2. 토요일: 오후 3시부터 당일 자정까지
3. 휴일: 오전 0시부터 당일 자정까지(단, 휴일 전일이 평일인 경우 오전 6시부터 당일 자정까지)

③ 시장은 야간·휴일의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야간·휴일의원의 지정 및 운영 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관리) ① 시장은 야간·휴일의원의 운영실태를 확인·조사할 수 있고, 야간·휴일의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조사 결과, 야간·휴일의원이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야간·휴일의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표창) 시장은 야간·휴일의원의 운영으로 시민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야간·휴일에 원활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 야간·휴일의원”을 지정 및 지원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제2조).
나. 야간·휴일의원 지정 및 지원을 통해 평일 야간, 휴일 등에 시민과 관광객 등이 필요할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야간·휴일의원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다. 야간·휴일의원 지정 및 운영시간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함(제4조).
라. 지정된 야간·휴일의원의 운영실태 조사와 지도·감독에 대해 규정함(제5조).
마.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것을 규정함(제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649호**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장소”를 “장소와 제8호의 장소 중 가스충전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금연환경 조성 및 흡연 간접피해 방지를 위하여 흡연구역 설치 금지장소를 확대(가스충전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흡연구역 설치·운영 금지장소에 ‘가스충전소’를 추가함(제8조제1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7650호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방역 대책”을 “방역대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감염병환자 등”을 “감염병환자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수집·분석”을 “수집·분석”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조사·연구”를 “조사·연구”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전문 인력”을 “전문인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종전의 제9호) 중 “감염병예방”을 “감염병 예방”으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종전의 제11호) 중 “정보수집”을 “정보 수집”으로, “발간(매뉴얼을 포함한다)”을 “발간 및 지침(매뉴얼을 포함한다) 고시”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 수집·검사·보존·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9.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11. 감염병 관리사업의 평가
12.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13.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15.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16.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

제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정부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과 신종·변이 바이러스의 발생 가능성으로 서울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감염병의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감염병 상황이 발생하거나 지속되는 경우 정부 및 교육청과 정보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및 의료인과 협력 및 정보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절한 감염병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다. 또한 서울시민의 안전 보장과 감염병 대응 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 및 감염병 관리사업의 평가를 신설하여 서울시의 감염병 관리 및 대응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였음.

2. 주요내용

가. 감염병병원체 수집·검사·보존·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 규정을 신설함(제3조제1항제7호).

나.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을 신설함(제3조제1항제9호).

다. 기후변화, 저출산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연구 및 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을 마련함(제3조제1항제12호).

라. 시장은 서울시 교육청과 감염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협력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제3조제3항).

마. 시장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제3조제4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7651호**

서울특별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7월 16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교육” 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안전교육 전문인력” 이란 안전교육이나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안전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안전교육이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안전교육과 관련된 시책을 실시할 때 자치구별로 균등한 교육 기회와 환경이 갖추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근거로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안전교육의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4.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제5조(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교육 정책의 수립.시행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 시장은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

제8조(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 ① 시장은 시민들이 다양하고 균일한 안전교육 기회를 가지도록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연구.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게 하기 위하여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회 안전교육의 지원)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주민, 재난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안전관련 기관 및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문화강좌 등에 안전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① 시장은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경력관리와 경력인증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를 삭제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이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으로 분리·독립된 점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조례도 안전교육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상위법과의 체계를 정비하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교육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2조 및 제3조).
나. 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다.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한 관계기관 등이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라. 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회 안전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부터 제9조까지).
마.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652호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채
4. 제3호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은 제1호와 제2호를 제외한 시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한다.

제4조제2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채
4. 제3호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은 제1호와 제2호를 제외한 시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재난계정의 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관리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재난 예방·대응·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사업
   나. 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
   다.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자문에 따른 장비구입·수당 및 경비
   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보강
   마.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바.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장비구입 포함)
   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아.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
   자.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2. 서울시 또는 자치구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상 하천재해위험지구, 내수재해위험지구, 토사재해위험지구, 사면재해위험지구, 바람재해위험지구, 기타 재해위험지구 등에 위치한 시설
나.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사태취약지역관리계획 상 산사태취약지역에 위치한 시설
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붕괴위험지역에 위치한 시설
라. 기타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
마. 긴급안전점검 결과 붕괴 등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중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제8호”를 “제5조제2항제1호사목”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20. 1. 7.「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시행 ’ 20. 4. 8.)이 개정되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의 자금 사용용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과 재난계정의 재원에 지방채를 추가함(제4조제1항 및 제2항).
나. 시설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기금 사용용도를 범주별로 분류하고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민간분야의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기금 사용용도에 추가함(제5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7653호**

서울특별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7월 16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0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지역의 지진재해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진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지진으로 인한 재해의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 시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재난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이하 "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2. 규모 5.0 미만의 지진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재난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원인조사단의 구성) ① 서울특별시장은 원인조사단의 조사단원(이하 "조사단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는 관할 지역의 관련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원인조사단은 피해의 규모·범위, 피해 지역의 특성 및 별표의 기준에 따른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재난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수의 조사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원인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은 실무 경력이 풍부한 조사단원 중에서 재난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재난대책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제1항에 따른 전문가 인력풀에 등록된 사람
3. 그 밖에 재난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조사단장은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에 따른 전문 분야별 조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조사단에 조사단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재난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4조(원인조사단의 임무) 원인조사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발생 원인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 원인 조사·분석
2.「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지진재해 경감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과의 기술정보의 공유
4.「자연재해대책법」제47조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에 대한 기술지원
5. 그 밖에 재난대책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5조(조사기간) ① 재난대책본부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운영 시기를 고려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 기간을 정한다.

② 조사단장은 원활한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대책본부장에게 지

진재해 원인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재난대책본부장은 피해 규모 및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제6조(현지조사) ① 조사단장은 원인조사단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사단장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현지조사 기간, 지역, 방법, 필요 장비 및 인력 등이 포함된 현지조사 계획을 재난대책본부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단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지조사에 필요한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재난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조사단장은 제6조에 따른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서울특별시 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 초동보고서를 재난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사단장은 모든 조사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서울특별시 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와 관련 결과물 전부를 재난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과 분석을 위하여 중점 연구 또는 추가 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 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조사단장은 지진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난대책본부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④ 재난대책본부장은 조사단장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검토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발간하고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시·도 지원 및 지원요청) ① 재난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지진재해 원인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다른 시·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사단원 및 기자재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재난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다른 시·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부터 지진재해 원인조사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경비지원) 원인조사단에 위촉된 조사단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항공사진측량(수치지도화), 비디오 촬영, 위성사진 분석, 조사차량 임차, 보고서 작성 등 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난대책본부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위촉 대상 전문가 인력풀 구성 기준(제3조 관련)

전문 분야	기 준	비 고
지진현상규명	대학교수 또는 관련 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1. 지진재해가 발생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이 필요할 때 전문 분야별로 편성 기준에 맞게 구성할 수 있도록 관련 학회 또는 협회의 구성원,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인력풀을 구성하여 관리 2. 수도권 지역의 산·학·연(산하기관 포함) 전문가(대학, 연구원, 학회, 협회 등)를 대상으로 구성
건 축	대학교수 또는 관련 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교통시설	대학교수 또는 관련 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상·하수도 및 환경시설	대학교수 또는 관련 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산업시설	대학교수 또는 관련 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통신시설	대학교수 또는 관련 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수리시설	대학교수 또는 관련 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지반·토목시설	대학교수 또는 관련 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별지 제1호 서식]

서울특별시 지진재해 원인조사 초동보고서

Ⅰ. 조사 개요
  가. 목적
  나. 조사기간
  다. 조사지역
  라. 조사단

Ⅱ. 조사내용 및 원인분석
  가. 조사내용(피해발생 현황 등)
  나. 원인분석

Ⅲ. 현지조사 시 문제점 및 특이사항

Ⅳ. 최종결과보고 방향

[별지 제2호 서식]

서울특별시 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

Ⅰ. 조사 개요
  가. 목적
  나. 조사기간
  다. 조사지역
  라. 조사단
  마. 주요 조사내용

Ⅱ. 서울특별시의 지진현황 및 특성
  가. 서울특별시의 지진현황
  나. 이번 지진의 특성 및 원인

Ⅲ. 현장조사 결과
  가. 지진피해 총괄
  나. 현지조사 내용
    1. 시설별 피해 내용
    2. 지역별 피해 내용
  다. 시설별 피해원인 분석

Ⅳ. 지진재해 교훈 및 정책적 시사점

Ⅵ. 결언
(필요시) 참고 : 지진 발생시 지자체의 대응 및 활동사항
(필요시) 부록 : 화보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0조 제5항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지역의 지진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지진으로 인한 재해 경감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 시기(제2조)

(1) 지진피해 원인조사 실시 여부 판단 기준
나. 원인조사단의 구성(제3조)
(1) 원인조사단은 재난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수의 조사단원으로 구성
(2) 원인조사 단장 및 조사단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임무(제4조)
(1) 피해발생 원인 조사·분석, 지진재해경감대책 수립 등
라. 조사기간(제5조)
(1) 원인조사 실시 시기 및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마. 현지조사(제6조)
(1) 지진피해 원인조사 전 사전 협의사항 및 조사단장 역할에 관한 사항
바.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제7조)
사. 다른 시·도 지원 및 지원요청(제8조)
아. 경비지원(제9조)
(1) 원인조사단으로 구성된 단원에 대한 수당, 여비 지급과 조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7654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를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축·개축·재축·이전 : 주차장 1대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증축 : 주차장 1대 추가설치가 필요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건축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현행 조례 제27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중 주차장 설치기준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별도의 완화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아 실행되지 않고 있으며,
   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주차장 완화기준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현황 여건과 도시재생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1) 신축・개축・재축・이전: 주차장 1대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증축: 주차장 1대 추가설치가 필요한 경우

◈ **서울특별시조례 제7655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중 “자율”을 “소규모”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시・도조례로 달리 정하는 기준 면적”은 1만3천제곱미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0537호, ’ 20. 3. 17. 시행)에 따라 1만3천제곱미터 미만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가로구역의 기준 면적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기준 면적을 1만3천제곱미터로 정함(제3조제4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7656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등기부에 표기된 토지 및 건물소유자(세입자 포함)에게”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등기부에 표기된 토지 및 건물 소유자(세입자 포함)
2. 도시관리계획 입안·변경 대상지에 접한 대지 및 건물 소유자(세입자 포함)
3. 20m 이하 도로에 접한 경우 도로 반대편에 접한 대지 및 건물 소유자(세입자 포함)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조성계획)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변경”이란 “50퍼센트 미만의 변경”을 말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 제1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서울특별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시공동위원회”라 한다)에 자문을 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 중 “제1항 각 호 또는 영 제4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안에서 토지소유자”를 “토지소유자”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법 제113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를 ”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공동위원회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시도시계획위원회 “를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공동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 해당 공동위원회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시 구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 “를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로 한다.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반시설”을 “공공시설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호 및 2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기반시설”을 “공공시설등”으로, “시도시계획위원회”를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공동위원회”로 한다.

제1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반시설”을 “공공시설등”으로 한다.

제19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반시설”을 “공공시설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기반시설”을 “공공시설등”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된다.다만”을 “아니된다. 다만”으로 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를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시재생위원회(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에 한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으로서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수 있고 주변지역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지역

제3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연경관지구안의 토지로서 대지면적 33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4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다만”을 “한다. 다만”으로 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를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시재생위원회(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에 한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으로서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수 있고 주변지역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지역

제39조제7항 중 “정비구역안에서는 시도시계획위원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시재생위원회(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에 한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중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으로서 같은 법 제48조제2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받는 경우

제39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각각의 본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건폐율 또는 층수·높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서 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토지 규모 및 지역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54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범위 및 4층 이하로서 1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폐율 및 층수·높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저층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토지로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2층(8미터) 이하로 높이를 추가로 제한하여 건축하는 경우(다만, 경사지붕으로 조성할 때의 지붕 높이와 층고 1.8미터 이하 다락의 층수는 높이 산정에서 제외한다)에는 토지 규모 및 지역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54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범위에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2조제3항”을 “영 제72조제2항”으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행자의 편익 또는 가로미관 향상을 위하여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한 경우 또는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3항”를 “영 제8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영 제84조제4항”을 “영 제8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55조제11항”을 “제55조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영 제84조제5항제1호”를 “영 제84조제6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5항제5호”를 “영 제84조제6항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7항”을 “영 제84조제8항”으로 한다.

제55조제5항, 제12항, 제15항, 제17항, 제1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시계획위원회의”를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하거나 시도시계획위원회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2조의2제2항 및 46조제1항”을 “영 제42조의3제2항 및 제46조제1항”으로, “용적율 을”을 “용적률을”로 한다.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의록의”를 “회의록 및 심의자료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료는 심의결과에 상관없이 심의 후 바로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다.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61조제3항 중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를 “회의록 및 심의자료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제57조제2항, 제6항”을 “제5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8조제1항”을 “구청장은 제68조제1항”으로, “필요한 경우 자치구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자치구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3조의2제2항 중 “시도시계획위원회”를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공동위원회”로 한다.

제64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조사연구”를 “조사연구 및 상정안건 검토”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별표 3]제1호나목1) 중 “도시환경정비구역”을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한다.

[별표 4]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단, 특별계획구역내에서 시장이 결정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을 “다만, 특별계획구역”으로 하고, 같은 호 차목 중 “(신설, 폐지를 포함한다)”를 “(신설, 폐지를 포함한다)과 그 위치변경에 따른 차량출입 불허구간의 변경”으로 하며, 같은 호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건축물 권장용도의 변경

[별표 4]제4의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범위에서의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무(용도지역·용도지구의 변경결정이 수반되거나 시장이 하는 건축허가, 시의 사업승인 대상과 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제외)

[별표 4]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

[별표 4]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조례에서 정한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 대한 심의”

를 “제21조제3항의 사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주민의견 청취 관련 우편 통보 대상자를 확대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 공개 규정을 마련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높이고, 자연경관지구 건폐율 및 층수 규제를 완화하여 자연경관지구 정주환경 개선을 도모하며,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자치구 권한위임 사무를 조정하며,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규정하고, 인용조항·문구 등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기반시설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견 청취 관련 사항을 우편 등으로 통보하는 대상자를, 대상지의 주민 뿐 아니라 대상지 인근 주민들까지 확대함(제7조제1항).

나.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방법을 기존의 ‘열람’ 외에도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을 추가하며, 회의록 중 심의자료는 심의결과에 상관없이 심의 후 바로 공개토록 함(제61조).

다. 자연경관지구에서 소규모 토지의 경우 또는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40%로 완화하고, 건폐율 40%·높이 4층 또는 높이 5층으로 완화할 수 있는 대상에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을 추가하며 관련하여 시도시재생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또는 2층 높이제한이 있는 지구단위계획에 건폐율 또는 높이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39조).

라. 용적률 완화 및 경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 관리에 지구단위계획 고시를 추가하고, 자치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며,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명시하는 등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함(제46조, 제55조 및 제63조).

마. 자치구에 위임된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무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변경 및 건축물 권장용도 변경을 추가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한 자치구 권한위임 사무를 조정함(제68조 관련 별표 4).

바.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규정하고,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항 또는 인용문구를 정비함(제10조의2).

◈ 서울특별시조례 제7657호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7월 16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아동이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 주거빈곤”이란 아동이 있는 가구의 주거환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나.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지하층 또는 옥탑층에 거주하는 경우
다.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경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라. 예외적으로 시장이 주거빈곤의 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건강, 안전 등을 고려한 통합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지원사업과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주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주택 및 주거복지 수요·공급에 관한 사항
3. 통합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별 사업계획
5.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본계획의 내용이 법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아동주거 기본계획으로 본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아동 주거빈곤 현황 등에 관한 주거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를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 ① 시장은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택공급 사업 및 주택개량 지원 사업
2. 임대료·임대보증금 등 주거비 지원 사업
3. 아동 주거빈곤 가구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
4.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 가구의 발굴 및 지원사업
5.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사업(「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아동을 포함한다)
6. 위기상황에 있는 아동 가구를 위한 긴급 또는 대안적 주거 지원사업
7. 주거복지 종사자 및 대상자에 대한 주거복지 교육훈련
8. 그 밖에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아동 적정주거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가 이 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

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때
4. 위원이 제8조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
5. 감사원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징계의결 요구된 경우

② 위원이 각종 범죄 또는 법률위반이나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위촉 해제된 경우 재위촉할 수 없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아동 주거빈곤 해소 및 주거, 아동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아동 주거빈곤 및 지원과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아동이나 주거 관련 단체 및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제척·기피·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 사업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⑥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른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아동 적정주거기준의 설정 등) ① 시장은 아동의 적정한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아동 적정주거기준을 설정·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주거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최저주거기준」과, 관련법령의 최저기준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1항에 따른 기준의 활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이 거주하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의 주거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거나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는 데 직접 기여하는 단체·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아동 주거빈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와 관련한 시책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관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홍보 및 정보제공 등) ① 시장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에 대한 관심 제고와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아동 주거빈곤 가구의 발굴, 관련 정보제공, 상담·안내 및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에 따른 주거복지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가. 서울특별시에서 심화되고 있는 아동 주거빈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거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나. 아동의 주거 복지증진을 제고하고, 아동 적정주거기준을 설정하여 성장기 아동이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아동주거권 보장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 주거빈곤해소를 위한 지원으로 아동 주거권 보장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다.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 명문화를 규정함(제6조).
   라.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규정함(제7조부터 제13조까지).
   마. 서울특별시 아동 적정주거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658호**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4조, 제15조를 각각 제14조, 제15조, 제16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건축문화제 총감독 등 운영) ① 시장은 건축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민간전문가를 총감독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건축분야 전문가
2. 전시예술분야 전문가
3. 디자인분야 전문가

② 총감독은 제6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업무범위 및 대가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시의 전반적인 민간전문가 운영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서울건축문화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관련 민간전문가가 위촉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서울시장에 재량을 주고자 함.

2. 주요내용
민간전문가 위촉방법, 업무범위, 대가지급 등 민간전문가 위촉 및 운영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제13조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7659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 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에 한하여 같은 대지에서 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0.5배 이상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한하여 적용되었던 인동간격 완화의 범위를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까지 넓히고자 함.

2. 주요내용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한하여 적용되었던 인동간격 완화의 범위를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까지 넓힘(제35조제4항제1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7660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의 제목 “(노동자의 인권·복지 증진)”을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복지 증진)”으로 하고, 각호 외의 본문 중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를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원 등(이하 이 조에서 ‘경비원 등’이라 한다) 단지 내 노동자의”로 한다.

제6조의2제2호 중 “일부비용”을 “비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5. 폭언·폭행 등 인권과 법률상 피해 발생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지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최근 아파트 경비원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경비원 등을 포함한 단지 내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가 되었음. 이러한 문제들은 상생하는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에 역행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복지향상을 통해서 공동주택의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함(제6조의2).

◈ **서울특별시조례 제7661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공통의 “강의실 대여료”를 “강의실”로 하고, 강의실(종전의 강의실 대여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강의실	1㎡당, 1시간당	200~300	◦ 회의실 등 강의실과 유사한 형태나 용도를 가진 시설 포함 ◦ 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는 별도 산정 ◦ 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100% 가산 ◦ 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 할인 ◦ 공원이용 활성화 및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음

별표 2 공통의 강의실(종전의 강의실 대여료)란 다음에 공연장(복합문화공간 포함)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연장 (복합문화 공간 포함)	1㎡당, 1시간당	100~200	◦ 일(8시간) 단위 계산 ◦ 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30% 가산 ◦ 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는 별도 산정 ◦ 실내공간에 한한다. 단, 필요한 경우 옥상공간을 포함 한다. ◦ 다음 사항의 경우는 적용을 제외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제40조에 따라 별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 개정 시행일 기준에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된 경우에는 협약기한까지 적용 – 국가시설로 시설 관련법 등 별도 규정에 의해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공원시설 중 “강의실”은 공원별로 강의실, 회의실, 사무실 등 다양한 용어로 정하고 있고, 그 규모와 용도가 다르므로 강의실과 유사한 모든 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함.
   나. 문화비축기지내 시설은 기존 공원시설과는 차이가 있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별표 2 공원시설 이용료 부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시설이 있으므로 이용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회의실 등 강의실과 유사한 형태나 용도를 가진 시설에도 강의실 대여료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의 경우 별도로 산정하도록 함.
   나. 신설공원인 문화비축기지의 일부 시설을 비롯하여 조례에 명시하고 있지 않은 공원시설(공연장)의 이용료를 신설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7662호**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7월 16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39조에 따른 회전기금의 설치와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전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장래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예산의 계상) ① 기금에 적립할 예산은 예산총칙에 그 한도액을 설정하고 그 정하는 바에 따르되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비목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 및 운용하며 별도 회계처리 한다.

② 제1항의 적립한도액은 매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기금의 예정수입액과 예정지출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전년도 결산결과 잉여금
2. 당해연도 예정이익잉여금
3. 지방채(공채) 발행 수입
4.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이전수입 등

제6조(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1. 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의 투자사업비(자본예산에 속하는 것에 한한다)
2. 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의 고정부채상환금
3. 기금 증식을 위한 융자 및 출자

제7조(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투자소요의 기간에 맞추어 높은 이율의 이자를 증식할 수 있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융자 및 출자하고자 하는 때에는 융자 및 출자 받을 기관의 장과 융자 및 출자 약정을 체결하기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융자 및 출자금의 이자율은 시중금리 및 기금운용수익률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융자 및 출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상환 시기는 융자 및 출자 약정에 따른다.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기금관리담당 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관리자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 관리업무 담당 부서장
3. 기금출납원: 기금 관리업무 담당사무관

제9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 및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하수도사업의 관리자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기금 관리업무 담당 부서장
2.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3. 기금운용 또는 기타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관리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한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회의를 공개함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할 이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다)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6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물순환안전국의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도입에 따라 하수도 지방 직영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하수처리시설 지하화와 같은 대규모 투자재원의 적기 투입, 물재생센터 노후시설물 교체 등에 대비한 감가상각비 적립 등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중장기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적립수단으로서의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을 설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래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을 설치함(제2조).

나. 기금의 재원, 용도, 관리 및 운용 방법 등을 정함(제5조부터 제7조까지).

◈ **서울특별시조례 제7663호**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인권현장 탐방 사업의 실행계획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인권탐방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인권현장 탐방 사업의 실행계획’을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추가하여 서울특별시 인권정책을 확고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인권현장 탐방 사업의 실행계획’을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추가함(제7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7664호**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20만원”을 “3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점차 다양해지는 입법·법률적 자문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촉자격 범위를 확대함(제4조제1항제1호).
나. 고문료 중 법률자문료를 기존 1건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함(제9조제2항제2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7665호**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서울특별시 지역 간 상생교류 소관 실·본부·국장
3. 지역 간 상생교류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를 삭제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시의 상생교류 사업 예산이 2017년 98억원(일반회계 82억, 기금 16억)에서 2020년 644억원(일반회계 626억, 기금 18억)으로 대폭 증가하고, 지역 간 상생교류 사업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역상생발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명시하여 지역 간 상생교류의 촉진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상생발전위원회의 기능을 국내협력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병행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함(제9조제2항).
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근거를 규정함(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7666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3. 제8조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따른 재계약에 관한 사항
5. 제16조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기 전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제19조제3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에 대해서만 효력이 유지되며, 위탁사무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새로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따라"를 "따라 취소·정지 및"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의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제3항 중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3조에 따른 지원의 취소 및 환수
2. 제14조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의 환수
3. 위탁사무의 수행 및 수탁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처분 및 관련기관 고발 등 조치
4. 그 밖에 위탁의 취소에 따른 시민의 피해 최소화 또는 업무 정상화 등에 필요한 조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현행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사무의 선정 및 운영상황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능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함.
   나. 민간위탁 취소에 따른 계약 효력의 유지 대상을 명확히 하며, 취소된 민간위탁 사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새로운 수탁기관과의 협약 체결 근거를 마련함.
   다.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위탁의 취소에 따른 필요 조치사항을 구체화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함(제5조제2항).
   나. 민간위탁 취소시 필요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되는 효력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취

소된 민간위탁 사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새로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1조제2항).

다.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제16조제3항 및 제4항).

라. 민간위탁 취소에 따른 필요 조치사항을 구체화 함(제19조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7667호**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14조 중 “노동자이사제”를 각각 “노동이사제”로 하고,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노동자이사”를 각각 “노동이사”로 한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3조의2(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노동이사제가 올바르게 정착·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공사 등에 대하여 노동이사의 운영 실태와 경영참여 실적을 점검하여 자체 기관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3(기관장의 책무) ① 기관장은 노동이사가 이 조례의 목적 달성과 정당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노동이사가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환경에서 노동이사로서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노동이사의 불이익 금지 등) ① 기관장은 임금 및 복지후생, 교육·배치, 승진·전보 등 노동조건에 있어 노동이사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되며, 노동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노동이사가 그 직을 상실한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② 기관장은 노동이사가 이사로서의 직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제공 및 편의 제공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기관장은 노동이사가 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기회·훈련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습기회·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 등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④ 노동이사의 이사회 출석 시간과 그 밖에 노동이사로서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간 등은 노동계약에 따라 노동한 시간으로 본다.

⑤ 기관장은 노동이사가 임기 종료 등의 사유로 직무가 종료된 이후에는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적합한 부서에 배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동자이사제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임명한 노동자이사는 이 조례에 따라 임명한 노동이사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으로는 이사장 1인, 상임이사 2인이내, 비상임이사 5인이내와 감사 1인을 둔다. 이 때 비상임이사 1인은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노동이사로 할 수 있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노동자이사제'에서 '노동이사제'로 하며, 노동이사가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장과 공사 등 기관장의 책무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

나.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공사 등에 대하여 노동이사의 운영실태와 경영참여 실적을 자체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의2).

다. 노동이사의 정당한 직무수행과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의3).

라. 노동이사의 임기 종료 후 적합부서에 배치하는 등 노동이사의 불이익금지 규정을 개선함(제1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66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0년 7월 16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갈등 예방과 조정에 관한 역할·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갈등"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교육정책(자치법규의 제정·개정과 폐지,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관리"란 교육청이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교육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교육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교육갈등의 예방과 조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갈등영향분석) ①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하 '교육공동체'라고 한다) 등에게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교육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교육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교육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교육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교육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교육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2항의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교육감은 교육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이해관계인·교육공동체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제1항에 따른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갈등조정협의회) ① 교육감은 교육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위원 간 합의로 선정한다.

② 위원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및 전문가로 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외의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필요 시 위원 간 합의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을 위촉 또는 지정·활용할 수 있다.

1. 갈등조정협의회 참여 등 자문
2. 갈등관리를 위한 정책·법령·제도·문화 등의 조사·연구
3.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보급
4. 교육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5.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6.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7. 그 밖에 교육갈등의 예방·해결에 필요한 사항

제11조(비밀유지) 교육감과 소속 공무원, 협의회의 위원 및 제10조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은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갈등관리매뉴얼의 활용)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 등) 교육감은 연 1회 이상 갈등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

제14조(수당지급 등) 교육감은 제7조에 의해 설치된 협의회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제10조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교육정책 수행과 교육갈등으로 인해 소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내용을 정함(제5조)
   나.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다. 갈등조정협의회에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7조~제9조)
   라. 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제1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66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0년 7월 16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행정기관”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유관기관과의 협력
3. 교육·홍보의 활성화
4.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행사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 ①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실내·외 행사 및 회의 등을 개최할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재난 상황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1회용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홍보) 교육감은 자원 낭비 예방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학교 교직원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과 관련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가. 정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1회용품 사용 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1회용품의 사용 감축을 유도하고 있으며,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을 통해 사무실에서의 1회용품컵과 페트병 사용 금지, 개인 텀블러 사용 권장 등의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음.
 나. 이와 같은 정부 시책에 발맞추어 점점 심각해져 가는 환경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및 직속기관, 학교에서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과 이를 위한 교육·홍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자원 낭비 예방 및 환경보전을 도모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규정함(제1조)
 나.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 하여금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하련하도록 규정함(제3조)
 다.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 하여금 5년마다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제4조)
 라.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의 행사 및 회의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제6조제1항)
 마.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것을 규정함(제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67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0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선거의 의미·기능, 선거법 및 선거제도의 이해, 공약의 비교·분석 및 토론 등 선거법령에 따른 선거 전반에 관한 내용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2019년 12월 27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이제는 성인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만 18세에게도 투표권이 부여되었음.
 나. 하지만, 아직도 많은 학교에서는 학업의 초점이 대학교 입시를 위한 교육에 치우쳐져 있어 민주주의의 초석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선거 제도의 올바른 이해와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교육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임.
 다. 이에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소중한 국민의 권리인 투표권을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해 선거에 관한 교육과 투표권 행사를 위한 공약 및 선거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자유롭게 비교·분석, 토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민주시민 교육에 선거의 의미와 기능, 선거법의 이해 및 공약의 비교·분석, 토론 등 선거 전반의 교육에 관한 내용을 담고자 함(제5조제6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7671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0년 7월 16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내 학교의 체육교육과정 내실화와 학생들의 기초체력 향상 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2. “체육대회”란 참가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갖도록 하고 성취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을 말한다.
4. “특수학급”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생들의 체육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 체육시설, 기자재 및 용품 등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및 인력 확보,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위하여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과 학교장은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보장, 학생의 체육교육과정 참여도 제고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체육 시설 및 기자재, 체육활동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① 학교체육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학교체육 활성화와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세우는 학교체육 활성화 관련 계획과 정책은 이 조례의 목적 및 「학교

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해 수립되는 기본 시책 및 기본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계획(이하 “학교체육 진흥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체육시설 및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학교 체육시설 및 기자재, 용품 등이 부족한 학교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세우고,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체육 내실화) ① 학교장은 체육교육과정의 수업시수 확보, 성별과 학생·지역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교수·학습방법의 개발, 전문 인력의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체육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 대한 체육교육 컨설팅, 체육 우수지도 사례 연구대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과 학교장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등 기술을 활용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

제7조(학교 체육시설 확보)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체육장 면적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 면적 이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예산 사정 및 공간 등의 문제로 체육장 확보가 어려운 학교에 대하여 공공체육시설의 활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자율체육 기반 조성) ① 학교장은 학교스포츠클럽 개설 및 운영에 있어 성별과 학생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와 학생 체육활동 확대 등을 위하여 학교 내 또는 학교 간 체육대회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행·재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수요조사) ① 학교장은 매년 성별에 따른 체육프로그램의 구성·운영 등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학교체육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며 학교체육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운영 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장애학생 체육활동 보장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교육감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서의 장애학생 체육활동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체육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11조(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기능) 법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체육활동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선진형 학교운동부 육성 및 각종 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교 체육시설과 관련된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5.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및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제2호에 따른 학교체육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체육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 등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학교체육담당 장학사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2.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2회 반기별로 열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다.
1. 교육감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성명, 심의안건 및 의결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7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① 법 제16조에 따라 각 교육장 소속으로 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으로,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은 초등교육지원과장 또는 중등교육지원과장으로 본다.

제20조(학교체육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학교체육 교육의 진흥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및 정책의 연구·개발, 각종 대회 운영, 학생선수 지원, 연수 운영, 자료 개발, 평가 연구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제21조(연구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선진형 학교운동부 육성 등을 위하여 연구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맞는 학교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의 위탁) ① 교육감은 학교체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3조(재정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교체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4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학교 체육시설 및 기자재・용품 등의 확보,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여학생 체육활동 지원 등을 통한 서울특별시 내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체육 관련 전문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25조(표창) 교육감은 학교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공무원(교원) 또는 학생, 학교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학교체육시설 구축, 학생 체육활동 보장 등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내 학교의 체육교육과정 내실화 및 학생 기초체력 향상 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제2조)

나.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다.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규정함(제4조)

라.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마. 학교체육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및 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 등을 위한 학교체육 내실화, 체육시설 확보, 여학생·장애학생 체육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제10조)
바.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와 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제19조)
사.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학교체육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함 (제20조)
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선진형 학교운동부 육성 등을 위한 연구학교 지정·운영에 관해 규정함(제21조)
자. 학교체육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화 등을 위한 사업의 위탁,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2조~제23조)
차. 서울특별시 내 학교체육 진흥을 위해 서울특별시, 자치구, 체육 전문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제24조)
타. 학교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과 학교, 학생 등에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25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67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 지역위원회 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 지역위원회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0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 지역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폐지이유와 주요내용 〉

1. 폐지이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의 제정으로 그 내용에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 지역위원회 조례」 내용을 통합하여 포함시킴에 따라 이와 관련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 지역위원회 조례의 폐지

◈ 서울특별시조례 제7673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0년 7월 16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 수련 및 사회성, 창의력 등을 계발하도록 하여 청소년이 조화롭게 성장·발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교육행정기관"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 소속 교육행정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청소년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청소년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 등 지원) ① 교육감은 청소년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단체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청소년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행정기관에 대해 청소년단체 활동 등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청소년들의 청소년단체 활동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서울특별시, 자치구,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요즘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소셜 미디어 등의 이용 증가로 실내 생활 위주의 개인화 경향을 보임에 따라 교육청 차원에서의 청소년단체 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청소년들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 수련 및 공동체 의식 등을 함양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 및 청소년단체 등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나.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제5조)
다. 청소년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및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규정함(제6조)
라. 청소년단체 활동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제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67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0년 7월 16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하 “학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4. 계획 실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및 운용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감염병 확산 방지)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감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해당 학교에 휴업·휴교·휴원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당 학교에 대한 소독의 실시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의 결과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제5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2. 제6조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에 대한 평가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감염병대책본부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감염병 관련 제반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염병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국가의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시에 감염병대책본부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국가 위기경보 수준 별 감염병대책본부의 장은 다음과 같다.

1. 주의(Yellow) 단계 : 평생진로교육국장
2. 경계(Orange) 단계 : 부교육감
3. 심각(Red) 단계 : 교육감

④ 감염병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보건법」 제14조의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 교육감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서울특별시, 자치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이 장기화 되면서 학교 내 각종 감염병 발생 및 확산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어 이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나. 특히, 학교에서 감염병 환자 발생시 집단발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학교 구성원을 감염병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체계를 제도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할 용어 및 적용대상을 규정함(제2조 및 제3조).
 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제4조).
 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마.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위원회 설치를 규정함(제7조).
 바. 감염병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사.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시를 규정함(제9조).
 아.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와 확산 방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제1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675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0년 7월 16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촉진하여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생 교육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정규모학교”란 교육결손 최소화 및 교육적 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한 규모의 학교로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을 충족한 학교를 말한다.
2.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란 소규모 학교 등 적정규모학교 기준에 미달되는 학교에 대하여 통폐합(분교장 개편 및 폐지를 포함한다), 이전재배치, 통합운영학교 운영 등을 통해 적정규모학교로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3. “통폐합”이란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하여 2개 이상의 학교(분교장을 포함한다)를 통합하면서 1개 이상의 학교가 폐지되는 것을 말한다.
4. “통합학교”란 통폐합에 따라 폐지학교의 학생을 받아들인 학교를 말한다.
5. “폐지학교”란 통폐합에 따라 학교가 폐지되었거나 폐지가 예정되어 있는 학교를 말한다.
6. “이전재배치”란 학교신설수요가 있는 개발지역내에 기존 소규모 학교를 이전 재배치하거나 학생 수에 비해 과다 배치된 지역의 학교를 학생수가 많은 지역으로 균형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7. “통합운영학교”란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시설·설비 또는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교육감은 학교 교육여건 개선 및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 시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4. 계획 실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및 운용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학교의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 사업
2. 폐지학교 학생 지원사업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기준 및 범위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 학교 및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적정규모학교 운영) ① 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의 육성과 효율적인 학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학교를 통폐합, 이전재배치 하거나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적정규모학교를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의 규모, 학생의 통학거리 및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주민의 의사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위원회의 설치) ①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
2.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서울특별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가.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에 따라 통폐합되는 통합학교 및 폐지학교, 소규모학교 학생들

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여건 보장 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나. 적정규모학교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사항을 규정함(제3조).
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 시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 수립과 그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라.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과 운영,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함(제5조 ~ 제8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676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0년 7월 16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제2조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 기금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전입금으로 기금에 적립할 수 있다.
1. 최근 3년 평균증가율 비교 등을 통해 세입재원이 증가했다고 판단될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
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교육비특별회계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해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을 경우
3.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민자사업지급금(BTL)에 충당할 경우
4.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교육감은 기금을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감이 수립.작성한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교육행정국장, 예산담당관, 교육시설안전과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교육감이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및 지역인사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

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예산총괄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조정실장
2. 기금출납원 : 예산총괄담당사무관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고 그 이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가. 국내 경제의 호경기와 불경기가 반복되면서 지방교육재정은 호경기에는 증가, 불경기에는 감소되어 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이 발생하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으로 인

해 연도 간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곤란함

나.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그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적립한 기금을 회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다. 교육재정안전화기금 운용을 통하여 보다 건전하고 안정적인 서울교육재정 운용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조성 재원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전입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함(제3조제1항)

나. 기금의 적립요건 및 비율은 최근 3년 평균증가율 비교 등을 통해 세입재원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제3조제2항)

다. 기금의 사용한도는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고 그 사용용도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의 보전,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민자사업지급금(BTL)에 충당,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에 지출하도록 함(제4조)

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며, 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등을 심의하도록 함(제6조 내지 제1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677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0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폐지이유와 주요내용 〉

1. 폐지이유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2007년도에 제정되어 동 조례에 의한 감채기금의 존속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2015.7.24.에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법률13428호) 제4조 제2항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현재 동 감채기금이 사실상 운용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조례로 남아 혼란을 줄 여지가 있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폐지

◈ **서울특별시조례 제767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0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익제보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신속한 구조금,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결정이 요구되는 등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제1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감은 피해의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익제보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전에 구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으며, 이후 공익제보위원회가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의 적절성을 심의·의결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의 별표 2에 따른 보상금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공익제보위원회의 심의를” 을 “별표 1의 보상금 산정기준에 따라 공익제보위원회의 심의·의결을”로 한다.

라. 징계부가금 부과

3.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제15조제2항 중 “별표”를 “별표 2”로, “심의를”을 “심의·의결을”로 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회의나 협의, 자문 등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참석자에 대하여는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의 공익제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별표 1]

보상금 산정기준(제14조 관련)

1. 보상대상가액 1억원 이하 : 30%

2. 보상대상가액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3. 보상대상가액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1억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4. 보상대상가액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5. 보상대상가액 40억원 초과 : 4억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이란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및 관계 법령의 준용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보상금 및 포상금의 산정기준과 공익제보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보완하며,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참여 확대를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에 있어서 예산 집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익제보위원회 회의의 서면의결에 대한 근거 신설(제11조제4항)
나. 구조금 지급에 있어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공익제보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전에 구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신설(제13조제3항)
다. 보상금 지급사유에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과 “징계부가금 부과”를 추가하여 신설(제14조제1항 제3호, 제4호)
라. 보상금 산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별표 1”로 보완(제14조제2항)
마. 포상금 산정기준을 “별표 2”로 수정(제15조제2항)
바.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참여 확대를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에 있어서 예산 집행의 근거 신설(제19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767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0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원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따라”를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에서 “교직단체”란”을 “조례에서 “교직원단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해당하는”을 “따라 조직된”으로, “제4조의”를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제4조제2호 중 “교원”을 “교직원”으로 한다.

제5조 중 “보조금의”를 “지방보조금의”로 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 제3조 제목 외의 부분 및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직단체”를 각각 “교직원단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우리 교육청에는 교직단체 뿐 아니라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 교육공무직노동조합도 활동하고 있으나, 현행「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방보조금의 지원대상을 교직단체로 한정하고 있음

나. 따라서 공무원노동조합과 교육공무직노동조합에도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단체 간 형평을 고려하고,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원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지방보조금 지원대상기관을 ‘교직단체’에서 공무원노동조합과 교육공무직노동조합을 포함한 ‘교직원단체’로 변경(제1조, 제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68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0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육활동을 지원하여”를 “교육활동에 참여하여”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을 “학교교육”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신, 우편, 전자투표 등으로 총회 의결사항을 진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2019.8.20.)·시행(2020.3.1.)으로 기존 학교에 두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각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관련 조례상 규정되어 있는 각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조항이 필요 없게 됨 (해당 조항 삭제 필요)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 학부모회 임원 선출 및 의결을 서신, 우편, 전자투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기 위함
다. 기타 학교 현장의 학부모 활동 목적 및 학부모회 기능과 관련한 일부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학부모 활동의 목적을 학교교육발전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에서 ‘교육활동 참여’로 수정(제1조)
나. 학부모회 기능 중 ‘학부모 자원봉사’ 부분 삭제(제5조제2호)
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관련 조항 삭제(제13조제2항)
라. 학부모회 임원 선출 및 의결을 ‘서신·우편·전자투표’로 확대(제13조제5항 신설)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037호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7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아리수 음수대는 서울의 수돗물인 아리수가 별도의 처리 없이 나오는 장치이므로 “직결 급수된 수돗물”로 한정할 필요 없어 관련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리수 음수대”의 정의에서 음수대를 통해 공급되는 수돗물을 “직결 급수된 수돗물”로 한정하지 않도록 개정함.(안 제2조)

나. 직결급수가 어려운 경우에도 음수대를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으므로 시장이 별도의 배관을 설치 할 수 있는 요건 중 ‘직결급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삭제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5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전화: 02-3146-1472, FAX: 02-3146-1429, E-mail: jpk3060@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071호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7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건축물관리법」의 제정(’20. 5. 1. 시행)에 따라 시·도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도모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등재 및 지정방법에 관한 사항

1) 매년 1회 이상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모집하여 등재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명부에 작성하여 관리함(안 제3조 및 제4조).

2) 점검을 수행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등재 및 지정방법에 관한 사항

1) 매년 1회 이상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등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명시함(안 제7조).

2)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의 작성·관리 방법 및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방법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다.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라. 점검 및 해체공사감리를 수행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할 수 있고, 주요 업무를 관련 협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지역건축안전센터(전화: 02-2133-6982, FAX: 02-768-8884, E-mail: kkh1228@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규제영향분석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table>
<tr><td rowspan="2">1. 규제사무명</td><td rowspan="2">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조례</td><td colspan="8">2. 구 분</td></tr>
<tr><td>신설</td><td>○</td><td>강화</td><td></td><td>내용
심사</td><td></td><td>존속
기한
연장</td><td></td></tr>
<tr><td>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td><td colspan="9">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안중욱, 안전제도팀장 김갑규, 담당 권경희</td></tr>
<tr><td>4. 근거법령명등</td><td colspan="5">건축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td><td colspan="2">관 련
규제수</td><td colspan="2">6</td></tr>
<tr><td>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td><td colspan="9">건축물의 관리자,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신청 및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td></tr>
<tr><td>6. 규제존속기한</td><td colspan="9">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신청 및 지정, 해당업무 수행 완료시까지</td></tr>
<tr><td>7.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td><td colspan="9">- 제정안 제3조 제2항 · 제5항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신청 서류 제출 및 등재 취소
- 제정안 제4조 제1항 · 제2항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사항 변경, 휴업 · 재개업 · 폐업 신고의무
- 제정안 제5조 제1항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우선 지정
- 제정안 제6조 제1항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취소
- 제정안 제7항 제2항 :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신청 서류 제출
- 제정안 제9조 제1항 · 제2항 · 제3항 :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td></tr>
</table>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건축물관리법(제18조, 제19조, 제31조) 및 시행령(제12조, 제22조)이 제정·시행('20.5.1.)됨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를 시장이 모집공고를 거쳐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구청장이 지정하도록 규정하면서 모집공고, 명부 작성·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 명부 작성·관리 및 지정 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규제의 목표 설정

○ 건축물관리점검기관과 해체공사감리자를 시장이 모집공고를 거쳐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구청장이 지정토록 규정한 것은 내실 있는 건축물 안전점검 및 해체공사장 관리·감독을 통해 민간건축물 및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의 모집공고, 명부 작성·관리 및 지정 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건축물관리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한 모집공고 절차, 지정 방법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나.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높음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해당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의 모집공고, 명부 작성·관리 및 지정 방법에 관한 것으로 규제비용 없음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가. 시장경쟁제한 요소 포함 여부

○ 건축물관리법 및 시행령에서 기 규정한 사항에 대한 세부절차 및 방법으로 추가적인 제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 여부

○ 건축물관리법 및 시행령에서 기 규정한 사항에 대한 세부 절차 및 방법으로 추가적인 저해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 건축물관리법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명료함.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건축물관리법 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사항으로 건축물안전관리 총괄부서인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수행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 신청서, 통보서 등 별지 서식을 마련하여 처리하므로 적정함.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074호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7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도시철도 노후시설 안전 투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교통공사의 수권자본금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교통공사의 수권자본금을 현행 21조 5,000억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도시철도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철도과(전화: 02-2133-4341, FAX: 02-2133-1069, E-mail: hailey21@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083호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7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 20. 9월 개관 예정인 스페이스 살림의 세부 운영근거가 조례로 마련(’ 20. 7. 16.字)됨에 따라 이용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나. 여성플라자 및 여성발전센터 이용료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스페이스 살림의 이용료 부과기준을 규정함(안 제2조, 제10조 및 별표 1의2)

나. 여성플라자의 시설 중 내용연수 초과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속설비와, 스페이스 살림으로 이관된 연수시설 및 시간제 영유아돌봄 시설 등의 이용료 항목을 삭제함(안 별표 1)

※ 연수시설 및 시간제 영유아돌봄시설의 이용료는 신설되는 스페이스 살림의 이용료(별표 1의2)에 규정함.

라. 여성발전센터의 수영장 수강료가 주3회 단위임을 명시하고 수강료를 “40,000원~60,000원”에서 “60,000원”으로 조정하되, 프로그램별로 기준금액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여성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여성정책담당관(전화: 2133-5037, FAX: 2133-072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00호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상봉7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상봉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12호(2009.08.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25호(2011.1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78호(2013.03.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59호(2013.05.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67호(2013.10.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3호(2014.02.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28호(2014.04.0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41호(2014.06.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75호(2014.11.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99호(2015.04.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05호(2015.07.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98호(2015.09.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74호(2017.05.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02호(2017.11.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58(2019.05.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404호(2019.12.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1호(2020.01.23.) 등으로 변경 결정된 상봉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1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합니다.
2.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변경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명칭	유형	위치	면적(㎡)			변경사유
			기정	증·감	변경	
상봉 재정비 촉진지구	중심지형	중랑구 망우동, 상봉동 일대	505,597.9	증) 6.3	505,604.2	지적측량결과에 따른 단순 면적 정정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2.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관리구역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구분	면적(㎡)			변경사유
	기정	증·감	변경	
소 계	505,597.9	증) 6.3	505,604.2	-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14,990.0	증) 6.3	14,996.3	지적측량결과에 따른 단순 면적 정정
상봉8재정비촉진구역	25,334.6	-	25,334.6	-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28,526.6	-	28,526.6	-
존치관리구역	307,877.2	-	307,877.2	-
기타 존치지역(도로 등)	128,869.5		128,869.5	

3.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가.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구분	촉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증 · 감	변경	
변경	상봉7 재정비촉진구역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88번지 일대	14,990.0	증) 6.3	14,996.3	-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구역면적 증가: 증) 6.3㎡ - 14,990.0㎡ → 14,996.3㎡	• 지적측량결과에 따른 단순 면적 정정

나.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명칭	면적(㎡)			비율 (%)	비고
		기정	증 · 감	변경		
합 계		14,990.0	증) 6.3	14,996.3	100.0	지적측량결과에 따른 단순 면적 정정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1,776.3	증) 54.7	1,831.0	12.2	-
	도 로	1,776.3	증) 54.7	1,831.0	12.2	가각부 조정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	-	-	-	폐지 상봉7촉진구역 내 입체적도시계획시설 결정 (연면적: 5,964.2㎡) ※ 지정 위치: 지하 1층~지상 2층
	문화시설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	-	-	-	신설 상봉7촉진구역 내 입체적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 (연면적: 6,047.53㎡)
획 지	소 계	13,213.7	감) 48.4	13,165.3	87.8	-
	획 지	13,213.7	감) 48.4	13,165.3	87.8	-

위 치	세 부 용 도	면적(㎡)
지하1층	주차장	2,628.19
지상1층	어린이집	814.07
지상2층	여성문화 복지센터	904.73
지상3층	어린이 종합체험관	1,700.54

2) 용도지역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증 · 감	변경		
합 계		14,990.0	증) 6.3	14,996.3	100.0	-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57.8	감) 157.8	-	-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4,832.2	증) 164.1	14,996.3	100.0	-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변경사유
		기정	변경			
–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88번지 일대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164.1	–	• 지적측량결과에 따른 단순 면적 정정 • `17. 5. 25. 구역계 축소 결정 시 도면은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조서는 상업지역이 준주거지역 면적으로 오류작성되어 있어 정정

3)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1	–	20	집산도로	732 (130)	상봉동 402-35	상봉동 399-5	일반도로	–	서고제425호 (’ 84.7.31.)	면목천길
기정	중로	2	–	16	집산도로	207	상봉동 88-93	상봉동 85-41	일반도로	–	서고제312호 (’ 09.8.13.)	상봉중앙길
기정	중로	2	–	15	집산도로	255 (139)	상봉동 83-7	상봉동 402-4	일반도로	–	서고제312호 (’ 09.8.13.)	요람2길
기정	중로	2	–	15	집산도로	140	상봉동 88	상봉동 88-11	일반도로	–	서고제174호 (’ 17.5.25.)	–
변경	중로	2	–	15	집산도로	140	상봉동 88	상봉동 88-11	일반도로	–	–	가각부 조정

※ 연장 내 ( )는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내 연장임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2-	중로2-	• 도로 면적 증가 – 기정: 1,776.3㎡ – 변경: 1,831.0㎡(증 54.7㎡)	• 상봉7, 9구역 사이 도로의 원활한 차량교행을 위해 가각부 조정(시구합동회의 의견 반영)

나)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입체적 결정범위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	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	상봉동 88번지 일대	연면적(㎡)	5,964.2	–	5,964.2	서고제174호 (’ 17.5.25.)	※ 건축물 내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정위치] 지하 1층~지상2층
폐지	–	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	상봉동 88번지 일대		5,964.2	감) 5,964.2	–	–	–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	• 폐지 – 위치: 지하1층~지상2층 – 면적: 5,964.2㎡	• 기정 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의 입체적결정은 당시 개략적으로 결정한 사항으로, 금번 수요조사를 거쳐 ‘문화시설’로 결정함. – 여성문화복지센터/어린이종합체험관: 중랑구 자체계획 반영 – 어린이집: 서울시 재생정책과 의견 반영

다)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 조서(신설)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입체적 결정범위			최초 결정일	비고 (관리청)
						기정	증·감	변경		
신설	①	문화시설	상봉동 88번지 일대	층		-	지하1층~지상3층	지하1층~지상3층	-	중랑구
				연면적(㎡)	지하1층	-	증) 2,628.19	2,628.19		
					지상1층	-	증) 814.07	814.07		
					지상2층	-	증) 904.73	904.73		
					지상3층	-	증) 1,700.54	1,700.54		
					합계	-	증) 6,047.53	6,047.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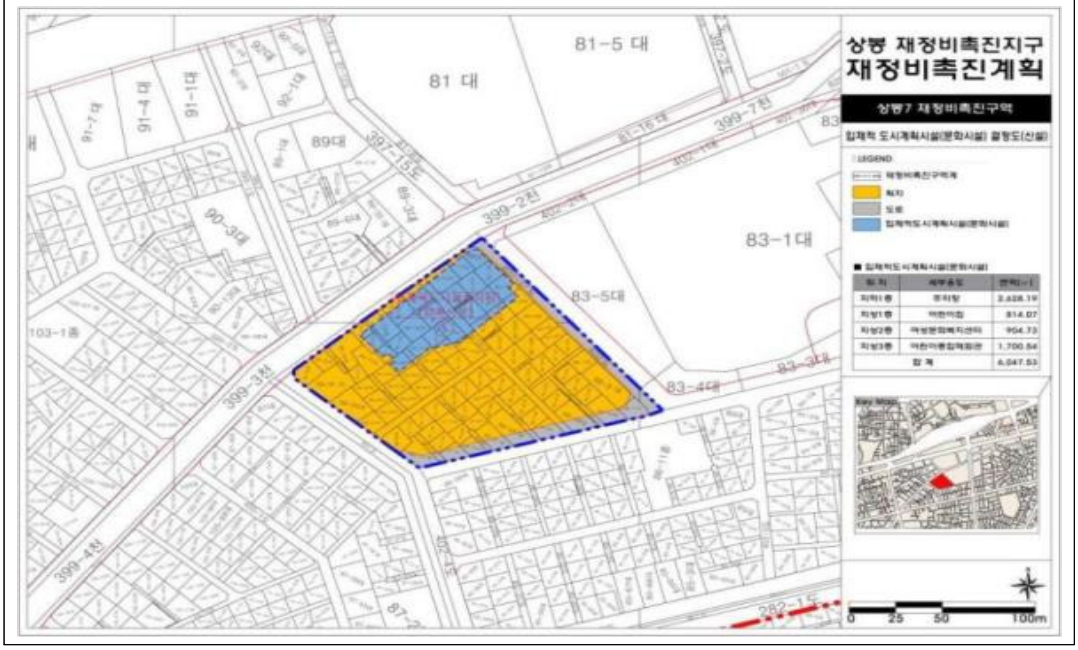
※ 입체적 결정하는 문화시설의 연면적은 전용·공용·부대시설을 합한 면적임.
※ 문화시설의 제공위치, 성능수준, 설비, 세부용도 등은 중랑구청과 협의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시 확정하여 준공시 기부채납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①	문화시설	• 신설 - 위치: 지하1층~지상3층 - 면적: 6,047.53㎡	• 문화시설을 지하1층~지상3층까지 입체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시설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타용도 전환을 방지하고자 함.

위 치	세 부 용 도	면적(㎡)
지하1층	주차장	2,628.19
지상1층	어린이집	814.07
지상2층	여성문화복지센터	904.73
지상3층	어린이종합체험관	1,700.54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도(신설)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도(신설, 단면도)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도(신설, 평면도)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시설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공동이용시설	합 계	상봉동 88번지 일대	1,062.80	증) 1,855.3	2,918.10	-
	관리사무소		146.59	감) 98.59	48.00	-
	주민공동시설		82.60	증) 810.30	892.90	-
	주민운동시설		321.87	증) 799.53	1,121.40	-
	문 고		74.90	감) 74.90	-	-
	보육시설		236.73	감) 236.73	-	-
	경로당		200.11	감) 53.01	253.14	-
	어린이놀이터		-	증) 239.12	239.12	-
	작은도서관		-	증) 247.23	247.23	-

※ 단지 내 보육시설은 입체적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내 어린이집으로 대체 조성
※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변경)인가 시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5)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및 건축시설계획(변경)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구역면적 변경, 증 6.3㎡)

구분	구역구분		정비개량 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신축	철거 이주	
기정	상봉7 재정비촉진구역	14,990.0	87	-	-	87	-	-
변경		14,996.3 (증 6.3)	87	-	-	87	-	-

※ 지적측량결과에 따른 단순 면적 정정

나) 건축시설계획(변경)

결정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최고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상봉7 재정비촉진구역	14,990.0	-	13,213.7	상봉동 88번지 일대	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시설, 복지시설	60이하 (59.22)	831이하 (830.9)	140이하/ 43층이하

변경	상봉7 재정비촉진구역	14,996.3 (증 6.3)	–	13,165.3 (감 48.4)	상봉동 88번지 일대	공동주택, 오피스텔, 판매시설, 문화시설	60이하 (57.36)	831이하 (830.9)	140이하/ 43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공급계획 : (기정) 511세대(임대88세대 포함) → (변경) 931세대(임대150세대 포함)

구분		합계	분양(전용면적, ㎡)				임대(전용면적, ㎡)			
			소계	85 초과	60~85 이하	60 이하	소계	60 이하	60~85 이하	85 초과
기정	세대수	511	423	137	178	108	88	40	39	9
	비율(%)	100.0	82.8	26.8	34.9	21.1	17.2	7.8	7.6	1.8
변경	세대수	931	781	–	473	308	150	150	–	–
	비율(%)	100.0	83.9	–	50.8	33.1	16.1	16.1	–	–

•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

구분			세대수	연면적(㎡)
임대주택	합계		150	17,222.82
	101동	44㎡	89	8,907.77
		59㎡	15	2,044.69
	103동	59㎡	35	4,770.93
	105동	59㎡	11	1,499.43
전체 연면적(㎡)			171,597.89	

※ 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 개선(' 19.03.12.)
– 공공임대주택 : 전체 연면적의 10% 이상(토지 기부채납)
→ 대상지 공공임대주택 전체 연면적의 10.03%

건축심의 완화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함
•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촉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건축한계선 지정
– 봉우재로 33길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 상봉로 25가길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
– 상봉로 25길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 봉우재로 43길변: 대지경계선로부터 3m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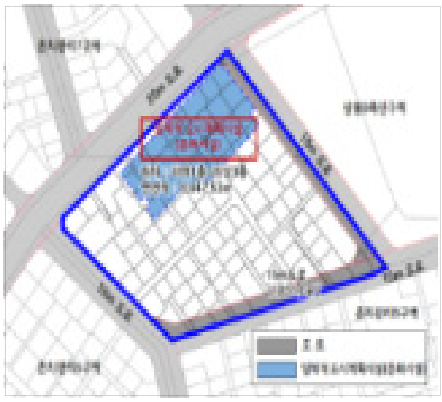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구역 내 동측에서 서측 방향으로 공공보행통로 1개소 계획(폭원: 6m, 연장: 122m)
• 구역 내 남측 1개소 공개공지-1로 지정(면적: 1,010.24㎡)
• 구역 내 남동측 1개소 공개공지-2로 지정(면적: 332.62㎡)

다) 용적률 계획(순부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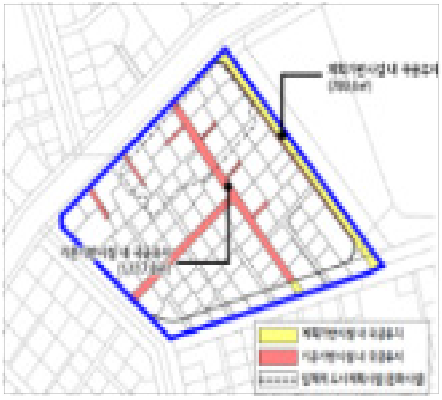
구분	산정내용				
토지이용계획 (공공시설 환산 부지면적포함시)	계 (구역면적)	택지 (공동주택등)	신설(계획) 정비기반시설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기반시설 국공유지	택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기반시설 국공유지
	14,996.3㎡	13,165.3㎡	1,831.0㎡(4,987.5㎡)	789.6㎡	1,117.8㎡

도면

〈 계획기반시설 〉



〈 국공유지 현황 〉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택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4,987.5㎡주) − 789.6㎡ − 1,117.8㎡ = 3,080.1㎡ 주)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토지면적(1,831.0㎡) + 문화시설 환산 부지면적(3,156.5㎡)	
문화시설 환산 부지면적	• 문화시설 환산 부지면적 : 3,156.5㎡ = 14,572,933천원(공사비) ÷ 5,412천원/㎡(부지가액) = 2,692.5㎡ + 464.0㎡(토지지분) = 3,156.5㎡	
기준용적률	• 기준용적률 = 600%	
상한용적률	•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완화 • 상한용적률은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적용	
	• 상한용적률 = 기준용적률 × (1+1.3×가중치× α) ▶ 대상지 − 기준용적률 600% − α = 3,080.1 / (14,996.3㎡ - 4,987.5㎡) = 0.3077 ▶ 상한용적률 = 600% × (1+1.3×1×0.3077) = 840.0% = 840% ≥ 건축계획(안) 830.9%	α = 공공시설등 부지제공 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제공 후 대지면적

※ 정확한 문화시설 환산 부지면적은 사업시행(변경)인가시 구체적 설계내역을 작성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증받아 용적률 인센티브를 위한 환산부지 면적 확정 예정임.

6) 무상귀속(기부채납) 계획

○ 기부채납시설은 사용승인시 관리청에 귀속시키며, 사업시행(변경)인가시 세부용도, 면적 등을 확정

<table>
<tr><th>구분</th><th>시설명</th><th>시설규모</th><th>관리청</th></tr>
<tr><td rowspan="2">도로</td><td>중로 2 −</td><td>• 중로 2 − 일부 확장
− 폭원: 7~8m
− 연장: 전체 255m 중 구역 내 139m</td><td>중랑구</td></tr>
<tr><td>중로 2 −</td><td>• 중로 2 − 일부 개설
− 폭원: 5m
− 연장: 140m</td><td>중랑구</td></tr>
<tr><td>공공시설 등</td><td>문화시설</td><td>• 건축물 내 기부채납
− 위치: 상봉동 88번지 일대
− 건축연면적: 6,047.53㎡
− 환산 부지면적: 3,156.5㎡
1) 건축물 환산면적: 2,692.5㎡
2) 토지지분: 464.0㎡
<table>
<tr><th>위 치</th><th>세 부 용 도</th><th>면적(㎡)</th></tr>
<tr><td>지하1층</td><td>주차장</td><td>2,628.19</td></tr>
<tr><td>지상1층</td><td>어린이집</td><td>814.07</td></tr>
<tr><td>지상2층</td><td>여성문화복지센터</td><td>904.73</td></tr>
<tr><td>지상3층</td><td>어린이종합체험관</td><td>1,700.54</td></tr>
</table>
</td><td>중랑구</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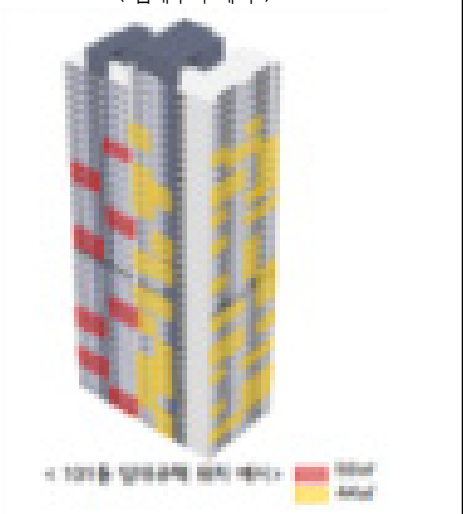


7)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2조(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서울시에 매각(처분)

<table>
<tr><td>계획기준</td><td>• 임대주택건설: 전체 연면적의 10% 이상(토지 기부채납)
※ 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 개선(’ 19.03.12.)</td></tr>
<tr><td>산출근거</td><td>• 전체연면적: 171,597.89㎡
•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 150세대
– 171,597.89㎡ × 10% = 17,159.79㎡ 이상
– 17,159.79㎡ < 17,222.82㎡(150세대)
<table>
<tr><th colspan="3">구 분</th><th>세대수</th><th>연면적(㎡)</th></tr>
<tr><td rowspan="5">임대주택</td><td colspan="2">합 계</td><td>150</td><td>17,222.82</td></tr>
<tr><td rowspan="2">101동</td><td>44㎡</td><td>89</td><td>8,907.77</td></tr>
<tr><td>59㎡</td><td>15</td><td>2,044.69</td></tr>
<tr><td>103동</td><td>59㎡</td><td>35</td><td>4,770.93</td></tr>
<tr><td>105동</td><td>59㎡</td><td>11</td><td>1,499.43</td></tr>
<tr><td colspan="3">전체 연면적(㎡)</td><td colspan="2">171,597.89</td></tr>
</table>
※ 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 개선(’ 19.03.12.)
– 공공임대주택 : 전체 연면적의 10% 이상(토지 기부채납)
→ 대상지 공공임대주택 전체 연면적의 10.03%</td></tr>
</table>

세대규모	세대수			비고 (변경 임대주택 규모)
	기정	증 · 감	변경	
합 계	88	감) 62	150	–
60㎡이하	40	증) 110	150	(44㎡: 89세대) (59㎡: 61세대)
60~85㎡이하	39	감) 39	–	–
85㎡초과	9	감) 9	–	–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임대주택 위치도 〉	〈 임대주택 예시 〉
	

※ 임대주택 사회혼합(소셜믹스)계획: 임대주택 동별·층별 위치 등은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취지에 따라 인·허가 등 진행시 후속 조치(각 동·호수는 추첨에 의함)

8)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가)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나) 환경 검토 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 반영사항
1. 생태면적률	35%	• 생태면적률 35% 이상으로 계획	• 자연지반녹지, 투수성포장 등 적용
2. 녹지네트워크	연결성확보	• 녹지면적 확보로 연결성 확보	• 조경 및 오픈스페이스 계획에 반영
3. 지형변동	지형변화 최소화	• 절성토 비율 최소화	•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 토사유출 최소화 • 토양오염 방지
4. 비오톱	5등급	• 비오톱유형평가 5등급으로 녹지공간 확충 및 도시생태계 복원이 필요한 비오톱	•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로 도시생태기능 복원 및 강화
5. 일조	총일조 4시간 연속일조 2시간	• 일반 상업지역으로 일조영향이 있음	• 건물배치 등으로 일조영향 최소화
6.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신축건물 입지로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 발생 및 정체구역 발생	• 공개공지 등 충분한 오픈스페이스 확보
7. 에너지	에너지절약 계획수립	• 연료 및 에너지 절약계획 수립 필요	• 에너지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신재생 에너지사용	• 현재는 별도의 신재생에너지시설 없음	• 태양광 발전,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도입
8. 경관	경관 변화	• 스카이라인 보전 • 주변 주거지역의 조망권 보호 필요	• 건물배치, 높이설정에 반영 • 녹지, 오픈스페이스 공간 등의 공간계획 수립
9. 여가 및 휴식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당해 대상지에 조성 필요	• 오픈스페이스 공간 등 휴식·여가공간 조성
10. 보행친화공간	보행자전용도로 계획수립	• 보행동선 단절구간 횡단보도 설치	• 보행전용도로 설치

11. 대기질	비산먼지발생억제	•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 • 온실가스 배출 등	• 세륜·세차시설 설치 • 살수차량 운용 및 방진망 설치 • 녹지공간 확보 및 신재생에너지
12. 수질	오수발생 저감	• 공사시 토사유출 발생 • 운영시 오수발생	•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 강북하수처리장 연계처리
13. 토양	토양오염 저감	• 토양오염우려기준 만족 • 공사시 토양오염물질 발생	• 토양오염 전문처리업체 위탁처리 • 폐유보관소 설치
14. 폐기물	폐기물 처리	• 투입장비에 의한 폐유발생 • 운영시 생활폐기물발생	• 건설폐기물 해체·분리후 위탁처리 • 생활계기물 중랑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15. 소음·진동	소음·진동 기준	• 공사시 건설장비 등에 의한 소음발생 • 운영시 주변가로 교통에 의한 소음발생	• 고정식 및 이동식 가설방음판넬설치

9)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 본 사업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자연성이 매우 낮아 수목 등 식물상이 매우 빈양하나, 양호한 수목은 사업시 이식후 재식함.

10)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현황	계획	증·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027년 (2단계)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349호	기정) 511호 변경) 931호	증) 162호 증) 582호	-

11)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현황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비고
	조합 설립 ~ 착공 전	착공 ~ 공사 완료	범죄예방설계 적용	
노후주택 밀집지역	• 펜스 설치 및 유지·관리 • 1일 오전·오후 1회 우범지역 순찰 • 방범용 CCTV 설치 운영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규정 준수 안전 시공 •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비 계상	• 방범용 CCTV는 사각지대 1개소 이상 설치 • 무인택배함 동당 1개소 설치 • 내부가 보이는 구조의 엘리베이터 설치 • 식재로 인해 밀폐된 공간이 발생되지 않는 식재 계획 수립(자연감시 고려)	-

12) 건축계획

구분	내용	비고
구역면적(㎡)	14,996.3	-
대지면적(㎡)	13,165.3	-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109,391.71	-
건축면적(㎡)	7,552.27	-
용적률(%)	830.91	-
건폐율(%)	57.36	60%이하
주차대수	1,324대(법정 1,070대)	-

4.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 지정(변경) 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증 · 감	변경	
변경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88번지 일대	14,990.0	증) 6.3	14,996.3	지적측량결과에 따른 단순 면적 정정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증 · 감	변경		
합 계		14,990.0	증) 6.3	14,996.3	100.0	지적측량결과에 따른 단순 면적 정정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57.8	감) 157.8	-	-	`17. 5. 25. 구역계 축소 결정 시 도면은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조서는 상업지역이 준주거지역 면적으로 오류작성 되어 있어 정정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4,832.2	증) 164.1	14,996.3	100.0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 점	종 점				
기정	중로	1	-	20	집산 도로	732 (130)	상봉동 402-35	상봉동 399-5	일반 도로	-	서고제425호 ('84.7.31.)	면목천길
기정	중로	2	-	16	집산 도로	207	상봉동 88-93	상봉동 85-41	일반 도로	-	서고제312호 ('09.8.13.)	상봉중앙길
기정	중로	2	-	15	집산 도로	255 (139)	상봉동 83-7	상봉동 402-4	일반 도로	-	서고제312호 (" 09.8.13.)	요람2길
기정	중로	2	-	15	집산 도로	140	상봉동 88	상봉동 88-11	일반 도로	-	서고제174호 ('17.5.25.)	-
변경	중로	2	-	15	집산 도로	140	상봉동 88	상봉동 88-11	일반 도로	-	-	가각부 조정

※ 연장 내 ( )는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내 연장임

2)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입체적 결정범위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 · 감	변경		
기정	-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상봉동 88번지 일대	연면적 (㎡)	5,964.2	-	5,964.2	서고제174호 ('17.5.25.)	※ 건축물 내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정위치] 지하1층~지상2층
폐지	-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상봉동 88번지 일대		5,964.2	감) 5,964.2	-	-	-

3)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 조서(신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입체적 결정범위			최초 결정일	비고 (관리청)
						기정	증 · 감	변경		
신설	①	문화시설	상봉동 88번지 일대	층		–	지하1층~지상3층	지하1층~지상3층	–	중랑구
				연면적(㎡)	지하1층	–	증) 2,628.19	2,628.19		
					지상1층	–	증) 814.07	814.07		
					지상2층	–	증) 904.73	904.73		
					지상3층	–	증) 1,700.54	1,700.54		
					합계	–	증) 6,047.53	6,047.53		

※ 입체적 결정하는 문화시설의 연면적은 전용 · 공용 · 부대시설을 합한 면적임
※ 문화시설의 제공위치, 성능수준, 설비, 세부용도 등은 중랑구청과 협의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시 확정하여 준공시 기부채납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가구	면적(㎡)			비율(%)	비고
		기정	증 · 감	변경		
획지	–	13,213.7	감) 48.4	13,165.3	100.0	주거복합

※ 지적측량결과에 따른 단순 면적 정정 및 도로가각부 조정

2) 건축물 용도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가구	주된용도	비고
기정	주된용도	–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판매시설 • 복지시설	–
변경	주된용도	–	• 공동주택 • 오피스텔 • 판매시설 • 문화시설	–

◯ 건폐율 계획

구 분		용 도 지 역	건 폐 율(%)	비 고
기정	획지	일반상업지역	60 이하	–

◯ 용적률 계획

구분		용적률(%)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상한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기정	획지	600	–	831 이하	–	–

◯ 상한용적률 완화 사항

구분		용적률 완화		비고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소형주택 건설	
기정	획지	231.0%	–	–

○ 높이 계획

구분		용도지역	높이기준	비고
기정	획지	일반상업지역	140m 이하 / 최고 43층 이하	-

○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계획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기정	건축한계선	봉우재로 33길변	건축한계선 : 6m
		상봉로 25가길변	건축한계선 : 5m
변경	건축한계선	봉우재로 33길변	건축한계선 : 6m
		상봉로 25가길변	건축한계선 : 5m
		상봉로 25길변	건축한계선 : 3m
		봉우재로 43길변	건축한계선 : 3m

마. 경관계획

1) 건축물 배치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건축물의 방향성	공동주택	• 남·북간 통경축 확보
건물 진출입구	생활가로변 판매시설	• 생활가로에 면한 판매시설의 벽면 및 주출입구 방향은 가로의 방향과 일치되도록 권장 • 생활가로에 면한 판매시설의 출입구는 가로에서 개별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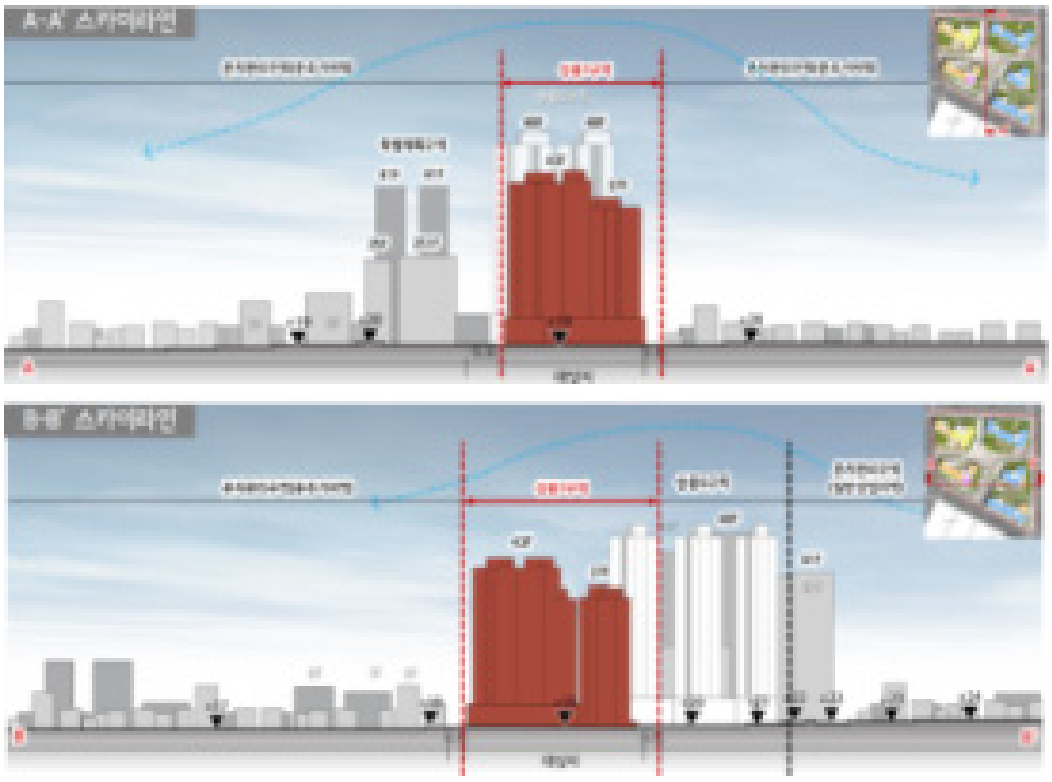
2) 건축물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건축물 외부 형태	공동주택	•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입면을 지양하고 변화감 있는 입면으로 계획 •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지나친 색채 사용금지 • 주변 자연과 조화를 유지 •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 • 101동, 102동 코어와 건물이 일체화된 입면계획
저층부 외관	생활가로변 판매시설	•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질서 있는 입면 계획 권장 • 생활가로에 면한 1층 벽면은 투시형으로 계획 • 장대한 입면 및 돌출경관 지양 • 쇼윈도 설치 및 야간조명 설치
재료/색채	공동주택	• 반사성 재료 사용 금지 • 넓은 면에 원색계열 재료 및 도료 사용 금지
진입구 처리	공동주택	•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보도와 단차를 가급적 지양 • 접근로는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 및 색채로 계획

3) 경관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개방감	공동주택	• 연접구역 건축계획과 연계한 통경축 확보 • 남·북간 통경축 확보
조명계획	공동주택	• 주변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객관적 수치를 검토하여 야간조명 설치계획 • 범죄예방 환경설계 반영한 야간조명 계획
스카이라인	공동주택	• 대상지 남측 저층주거지를 고려한 층수 계획 • 연접구역과 연계한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계획 • 조망형 경관분석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조화로운 경관 형성 유도

도시재정비위원회 경관 계획(안)



바.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적용위치</th><th>계획내용</th></tr>
<tr><td>신설</td><td>공개공지</td><td>구역 내</td><td>• 구역 내 남측 1개소 공개공지-1로 지정(면적: 1,010.24㎡)
• 구역 내 남동측 1개소 공개공지-2로 지정(면적: 332.62㎡)</td></tr>
<tr><td>신설</td><td>공공보행통로</td><td>구역 내</td><td>• 보행접근성 개선을 위해 동서간 공공보행통로 1개소 확보
- 폭원 6m, 연장 122m
• 공개공지 및 오픈스페이스와 연계하여 계획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내용</th></tr>
<tr><td rowspan="3">공공보행통로</td><td>위치</td><td>• 대상지의 동서 구간 연결(공공보행통로1개소)
- 서측 저층주거지~상봉7구역 중정공간~상봉9구역 (터미널)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 계획</td></tr>
<tr><td>조성형태</td><td>• 최소 폭원 6m이상 확보
- 연장 122m, 시·종점 및 선형 도면표시
• 별도의 보행패턴을 계획하여 24시간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시설, 펜스, 대문 등 설치 배제
• 장애인과 노약자를 고려한 보행간으로 계획 권장
• 보행동선과 공개공지를 연계하여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외부공간과 상업시설 연접 배치 권장</td></tr>
<tr><td>운영계획</td><td>• 물건적치 금지, 장애물 제거 등 보행 편의성 제고
• 보행안전을 위하여 가로등 설치 및 보안시설 설치
• 24시간 개방 및 출입차단 금지(대문, 펜스 등 설치금지)</td></tr>
<tr><td>비고</td><td>공간연계성</td><td>• 공공보행통로변 연도형상가, 공개공지, 외부공간, 어린이집 등 배치</td></tr>
</table></td></tr>
</table>

2)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차량 진·출입구	구역 내	• 차량 진 · 출입구 2개(주거/비주거 구분) 계획 • 상봉9재정비촉진구역과 비주거 진 · 출입구와 일치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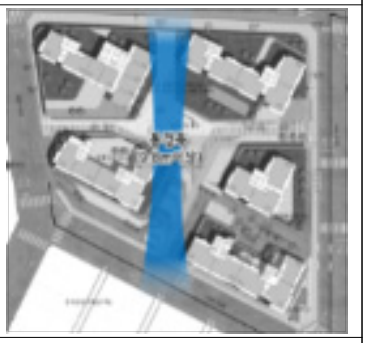
3)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결정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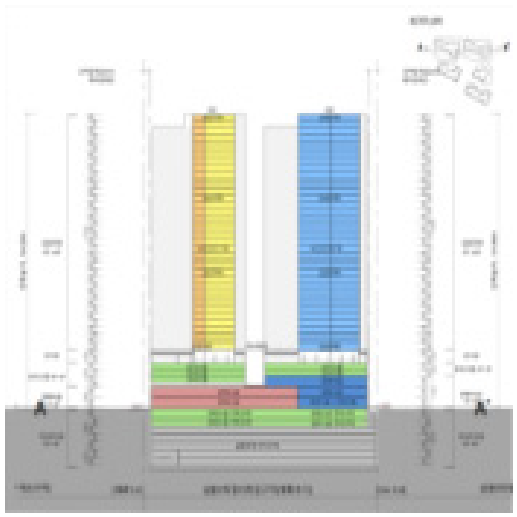
건립 규모	전체 세대수	전체비율 (%)	공공임대주택 세대수			공공임대주택 비율(%)		
			계	임대주택	소형주택	전체세대수대비	전체비율	공공임대중소형주택
합 계	931	100.0	150	150	-	16.1	100.0	-
40㎡이하	-	-	-	-	-	-	-	-
40~50㎡이하	221	23.7	89	89	-	9.6	59.3	-
50~60㎡이하	237	25.5	61	61	-	6.5	40.7	-
60~85㎡이하	473	50.8	-	-	-	-	-	-
85㎡초과	-	-	-	-	-	-	-	-

4) 환경관리계획

검토항목	목표기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 반영사항
1. 생태면적률	35%	• 생태면적률 35% 이상으로 계획	• 자연지반녹지, 투수성포장 등 적용
2. 녹지네트워크	연결성확보	• 녹지면적 확보로 연결성 확보	• 조경 및 오픈스페이스 계획에 반영
3. 지형변동	지형변화 최소화	• 절성토 비율 최소화	•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 토사유출 최소화 • 토양오염 방지
4. 비오톱	5등급	• 비오톱유형평가 5등급으로 녹지공간 확충 및 도시생태계 복원이 필요한 비오톱	•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로 도시생태기능 복원 및 강화
5. 일조	총일조 4시간 연속일조 2시간	• 일반 상업지역으로 일조영향이 있음	• 건물배치 등으로 일조영향 최소화
6.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신축건물 입지로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 발생 및 정체구역 발생	• 공개공지 등 충분한 오픈스페이스 확보
7. 에너지	에너지절약 계획수립	• 연료 및 에너지 절약계획 수립 필요	• 에너지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신재생 에너지사용	• 현재는 별도의 신재생에너지시설 없음	• 태양광 발전,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시설 도입
8. 경관	경관 변화	• 스카이라인 보전 • 주변 주거지역의 조망권 보호 필요	• 건물배치, 높이설정에 반영 • 녹지, 오픈스페이스 공간 등의 공간계획 수립
9. 여가 및 휴식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당해 대상지에 조성 필요	• 오픈스페이스 공간 등 휴식·여가공간 조성
10. 보행친화공간	보행자전용도로 계획수립	• 보행동선 단절구간 횡단보도 설치	• 보행전용도로 설치
11. 대기질	비산먼지발생 억제	•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 • 온실가스 배출 등	• 세륜·세차시설 설치 • 살수차량 운용 및 방진망 설치 • 녹지공간 확보 및 신재생에너지
12. 수질	오수발생 저감	• 공사시 토사유출 발생 • 운영시 오수발생	•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 강북하수처리장 연계처리
13. 토양	토양오염 저감	• 토양오염우려기준 만족 • 공사시 토양오염물질 발생	• 토양오염 전문처리업체 위탁처리 • 폐유보관소 설치
14. 폐기물	폐기물 처리	• 투입장비에 의한 폐유발생 • 운영시 생활폐기물발생	• 건설폐기물 해체·분리후 위탁처리 • 생활계기물 중랑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15. 소음·진동	소음·진동 기준	• 공사시 건설장비 등에 의한 소음발생 • 운영시 주변가로 교통에 의한 소음발생	• 고정식 및 이동식 가설방음판넬설치

사.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구분 및 범례	세부지침	계획 지표
연도형 상가 배치구간	• '연도형상가 배치구간' 의 건축물 저층부에는 보행자의 다양한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 '연도형상가 배치구간' 의 용도는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부대복리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한다. • '연도형상가 배치구간' 의 설치위치는 지침도를 따른다.	
통경 확보구간	• '통경 확보구간' 에는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층 건축물의 배치를 가급적 지양한다. • '통경 확보구간' 의 주동간 간격은 9.8m이상으로 한다. • '통경 확보구간' 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른다.	
공개공지	• '공개공지' 란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으로, 시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 '공개공지' 의 주변에 오픈스페이스와 인접한 경우 연계하여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 • '공개공지' 의 위치는 지침도를 따른다. – 공개공지-1: 1,010.24㎡ – 공개공지-2: 332.62㎡	
공공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 란 일반인에게 24시간 개방되어 보행자 통행에 이용 될 수 있는 대지 내에 조성한 통로로, 지상부 설치 또는 지하통로형, 필로티형으로 설치 · 이용 할 수 있다. • '공공보행통로' 는 일반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진입부 및 보행로가 명확히 인지되도록 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 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른다. – 폭원: 6m, 연장: 122m ※ 비상차로는 공공보행통로에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이동으로 인한 보행동선 단절을 최소화하여 계획한다. ※ '공공보행통로' 의 폭원은 6m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 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되어서는 아니 되도록 지정한 선을 말한다. • 봉우재로 33길변 6m, 상봉로 25가길변, 5m, 상봉로 25길변 3m, 봉우재로 43길변 3m에 '건축한계선' 을 지정한다. ※ 건축선 지정으로 인해 조성되는 공지는 도시계획도로 내 인도와 연계하여 조성한다.	봉우재로 33길변 6m 상봉로 25가길변 5m 상봉로 25길변 3m 봉우재로 43길변 3m

건축 배치도	건축 단면도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시 본 건축계획을 컨셉을 바탕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며,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불가피하게 변경을 인정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변경할 수 있다.

임대세대 소셜믹스(사회혼합)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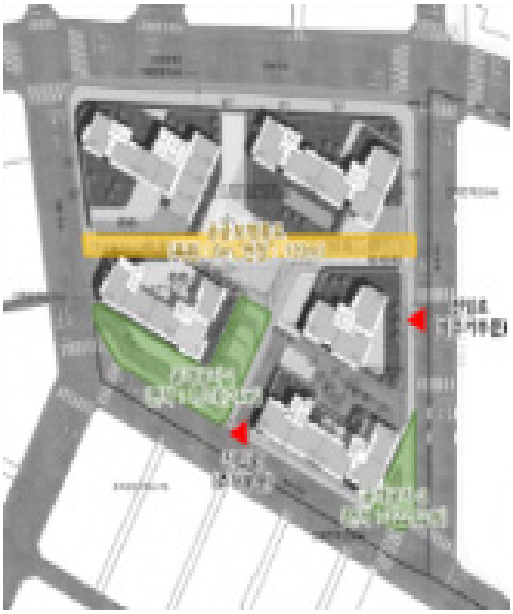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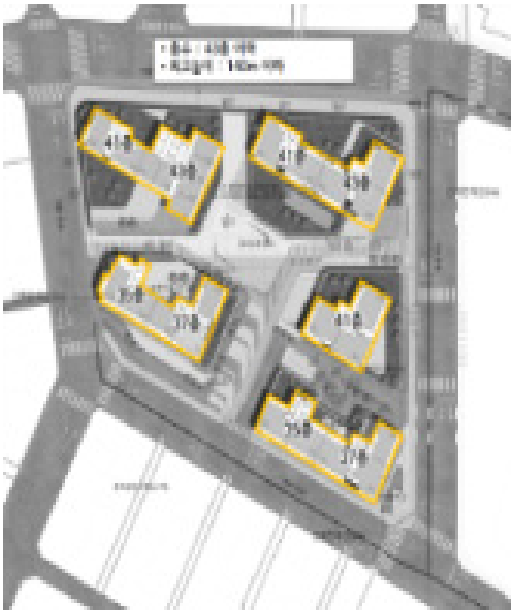

※ 임대주택 사회혼합(소셜믹스)계획: 임대주택 동별·층별 위치 등은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취지에 따라 인·허가 등 진행시 후속 조치(각 동·호수는 추첨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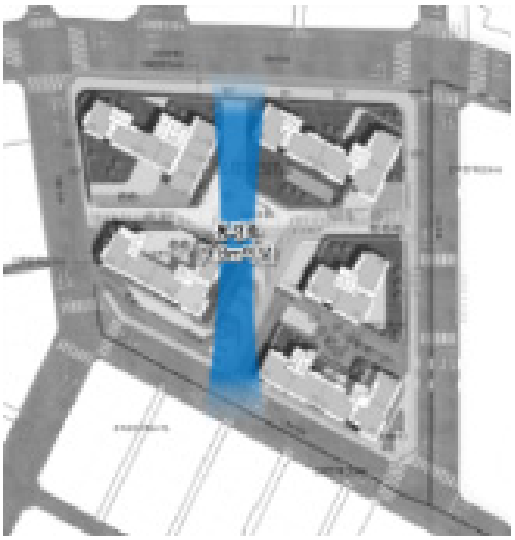
5. 건축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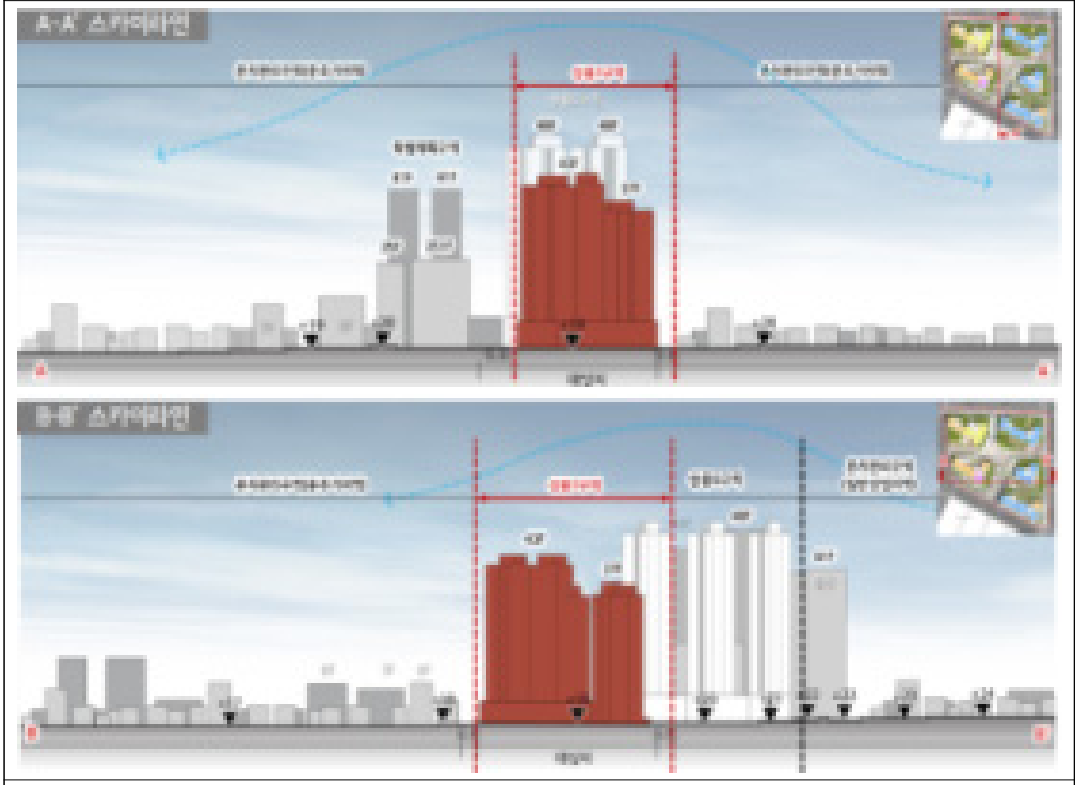
● 건축기본계획

구분		내용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계획	획지	최고 43층(최고높이 140m이하)
스카이라인 계획	획지	• 대상지 남측 저층주거지를 고려한 층수 계획(103동, 105동) • 연접구역과 연계한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계획
건축한계선	봉우재로 33길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상봉로 25가길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
	상봉로 25길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봉우재로 43길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통경축		• 연접구역 건축계획과 연계한 통경축 확보 • 남 · 북간 통경축 확보(9.8m 이상) •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경 확보구간' 을 계획
공공보행통로		• 보행접근성 개선을 위해 동서간 공공보행통로 1개소 확보 – 폭원 6m, 연장 122m • 공개공지 및 오픈스페이스와 연계하여 계획
공개공지		• 저층주거지 주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공개공지 조성 – 구역 내 남측 1개소 공개공지-1로 지정(면적: 1,010.24㎡) – 구역 내 남동측 1개소 공개공지-2로 지정(면적: 332.62㎡)
건축물 외부형태		•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입면을 지양하고 변화감 있는 입면으로 계획 •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 • 101동, 102동 코어와 건물이 일체화된 입면계획
단지조성계획		• 임대주택 소셜믹스: 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사회혼합(소셜믹스)이 되도록 동 · 호수를 분산배치(101동, 103동, 105동)

※ 다만, 조화롭고 창의적인 설계를 위하여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불가피하게 변경을 인정하는 경우, 본 촉진계획을 경미한 변경으로 변경할 수 있다.

공공보행통로 및 차량 진 · 출입구	층수 및 높이계획
	
– 오픈스페이스와 연계 및 도로와의 보행접근성을 고려하여 공공보행통로 조성	– 남측 저층주거지 및 연접구역을 고려한 층수계획

단지조성계획	통경축 계획
	
- 자연 지형을 고려한 단지 레벨 계획	-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경확보구간을 계획

스카이라인 계획

- 저층주거지 및 연접구역을 고려한 층수계획

6. 2020년 제4차('20.3.17.)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table>
<tr><th>심의의견</th><th>조치계획</th><th>비고</th></tr>
<tr><td>• 문화시설은 계획적 시설물 관리 및 다른 용도 전환 방지 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입체적)로 결정할 것.</td><td>• 문화시설은 도시계획시설(입체적)로 결정하여 관리하겠음.</td><td>반영</td></tr>
<tr><td>• 101동에 전용 44㎡ 규모로 집중 배치한 임대주택은 전용 60㎡ 이하의 임대주택도 계획하여 사회혼합(소셜믹스)을 검토할 것.</td><td>• 당초 101동에 44㎡규모 172세대를 계획하였으나, 사회혼합(소셜믹스)을 고려하여 101동, 103동, 105동에 44㎡ 및 59㎡를 혼합하여 계획하였음.
<table>
<tr><th colspan="3" rowspan="2">구 분</th><th colspan="2">위원회상정</th><th colspan="2">조치계획</th></tr>
<tr><th>세대수</th><th>연면적(㎡)</th><th>세대수</th><th>연면적(㎡)</th></tr>
<tr><td rowspan="5">임대주택</td><td colspan="2">합 계</td><td>172</td><td>171,215.06</td><td>150</td><td>17,222.82</td></tr>
<tr><td rowspan="2">101동</td><td>44㎡</td><td>172</td><td>171,215.06</td><td>89</td><td>8,907.77</td></tr>
<tr><td>59㎡</td><td>-</td><td>-</td><td>15</td><td>2,044.69</td></tr>
<tr><td>103동</td><td>59㎡</td><td>-</td><td>-</td><td>35</td><td>4,770.93</td></tr>
<tr><td>105동</td><td>59㎡</td><td>-</td><td>-</td><td>11</td><td>1,499.43</td></tr>
<tr><td colspan="3">전체 연면적</td><td colspan="2">171,587.03㎡</td><td colspan="2">171,597.89㎡</td></tr>
</table>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 개선('19.03.12)
- 공공임대주택 : 전체 연면적의 10% 이상(토지 기부채납)
→ 대상지 공공임대주택 : 전체 연면적의 10.03%</td><td>반영</td></tr>
<tr><td>• 교통처리계획도 상 봉우재로43길 도시계획도로 부분(D-D' 단면)의 보도(폭 1.25m)는 1.5m 이상 확보할 것.</td><td>• 대상지 측(D)은 건축한계선(3m)이 충분하기 때문에 보행공간을 3m 확보하고, 반대측(D')은 기존 보행공간(1.25m)에 추가로 1.5m를 확보하여 총 3m 보행공간을 확보하도로 계획하였음.</td><td>반영</td></tr>
<tr><td>【교통영향평가 위원회】
• 대상지 차량 진 · 출입구는 2개 이상 검토하되, 인접 상봉9구역 진 · 출입구와 일치시키고 회전차로 계획을 검토할 것.</td><td>• 대상지는 주거/비주거의 진·출입구를 구분하여 계획(2개소)하였으며, 비주거 차량 진·출입구는 상봉9구역 진출입구와 일치시켰음.
• 회전차로 계획은 대상지 주변의 전체적인 교통체계에 영향을 주는 사항임을 감안, 추후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논의·검토하도록 하겠음.</td><td>반영</td></tr>
<tr><td>【건축위원회】
• 건축물 형태는 코어 구조체를 매스 안에 넣어 코어가 건축물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검토할 것.</td><td>• 101동 및 102동의 돌출된 코어를 건물 매스와 일체화된 계획으로 변경하였음.</td><td>반영</td></tr>
<tr><td>【건축위원회】
• 101~102동 기단부(6층 높이) 매스는 과도하므로 분절을 검토할 것.</td><td>• 101동, 102동 기단부의 과도함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상 3층부터 6층(구조전이층)의 4개층 높이를 분절하고 1~2층의 일부 공간을 후퇴 시켜 계획하였음.</td><td>반영</td></tr>
</table>

7.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 사항은 붙임[상봉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총괄)] 및「상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명시 : 결정(변경) 도서 게재 생략

8. 지형도면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와 중랑구 도시계획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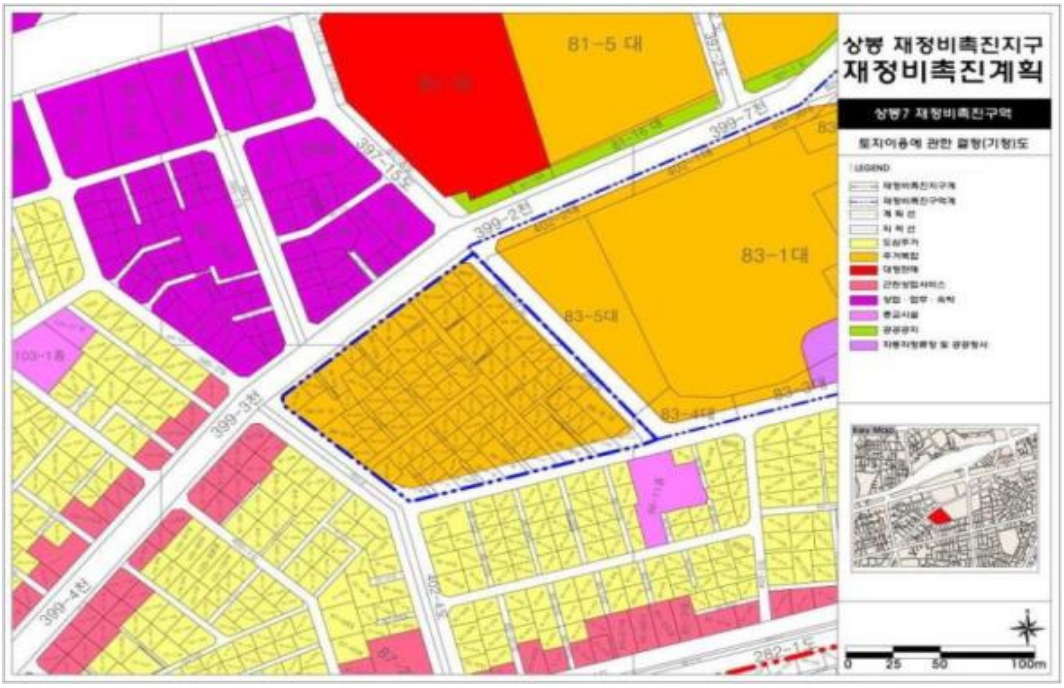
9.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02) 2133-7227) 및 중랑구 도시계획과(☎02) 2094-2194)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구역결정도(변경없음)



- 이 하 여 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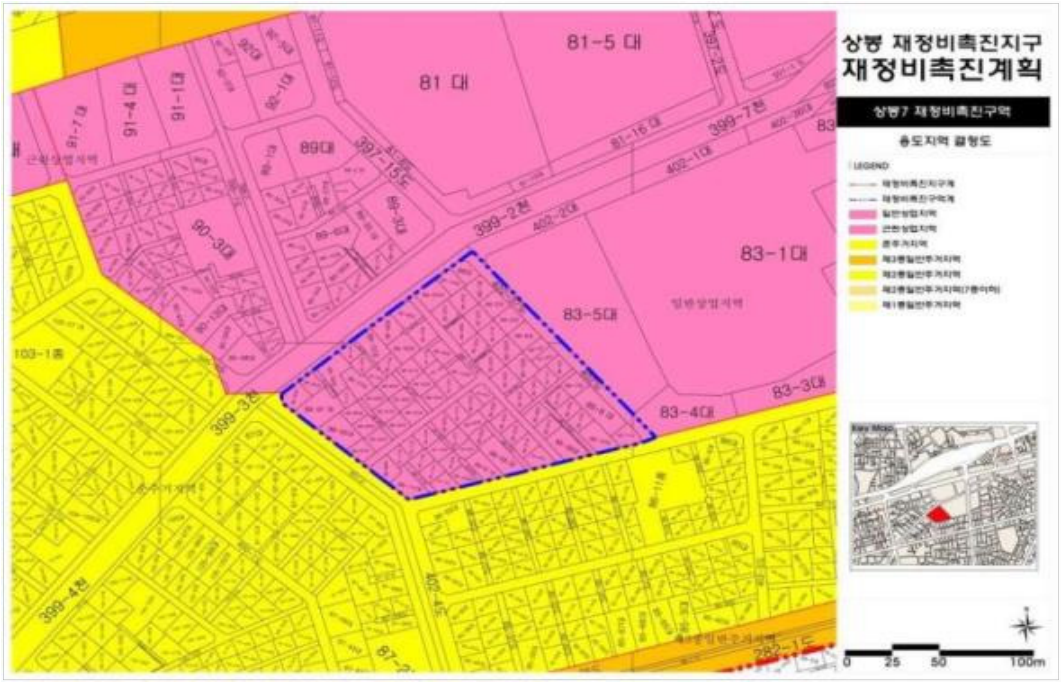
■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토지이용계획 결정도(기정)



■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토지이용계획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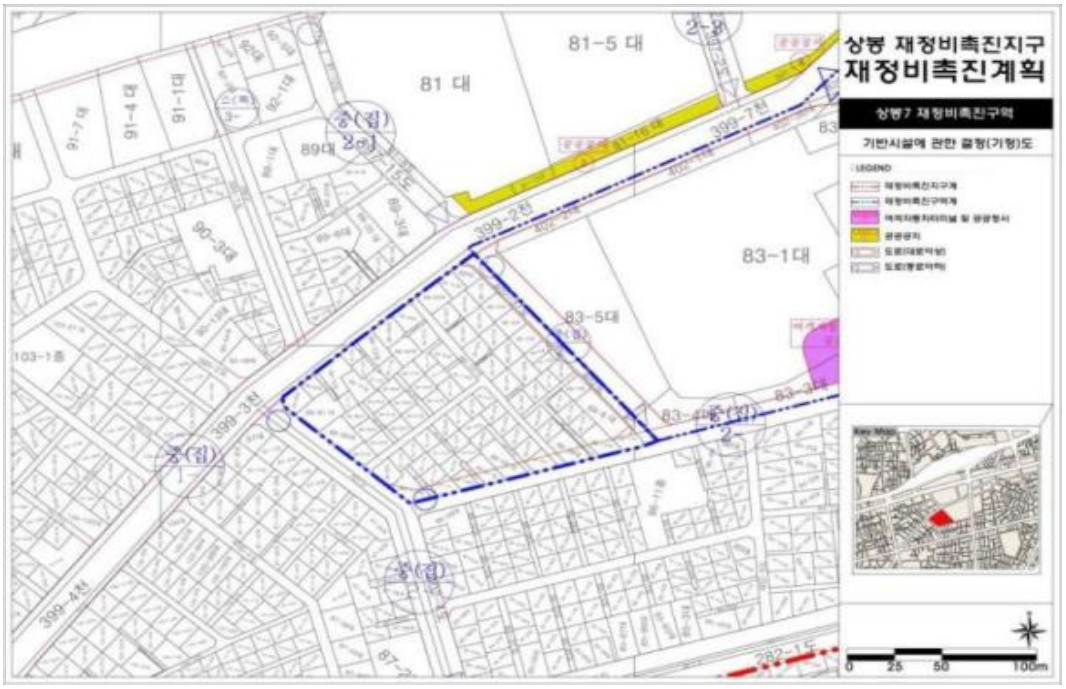


■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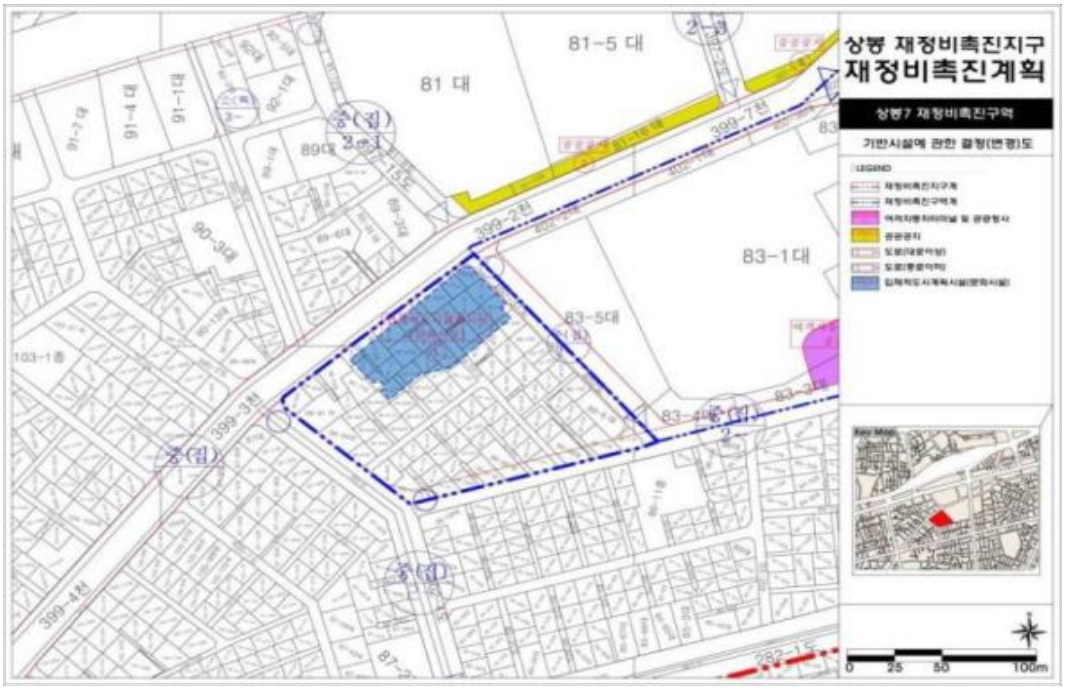


- 이 하 여 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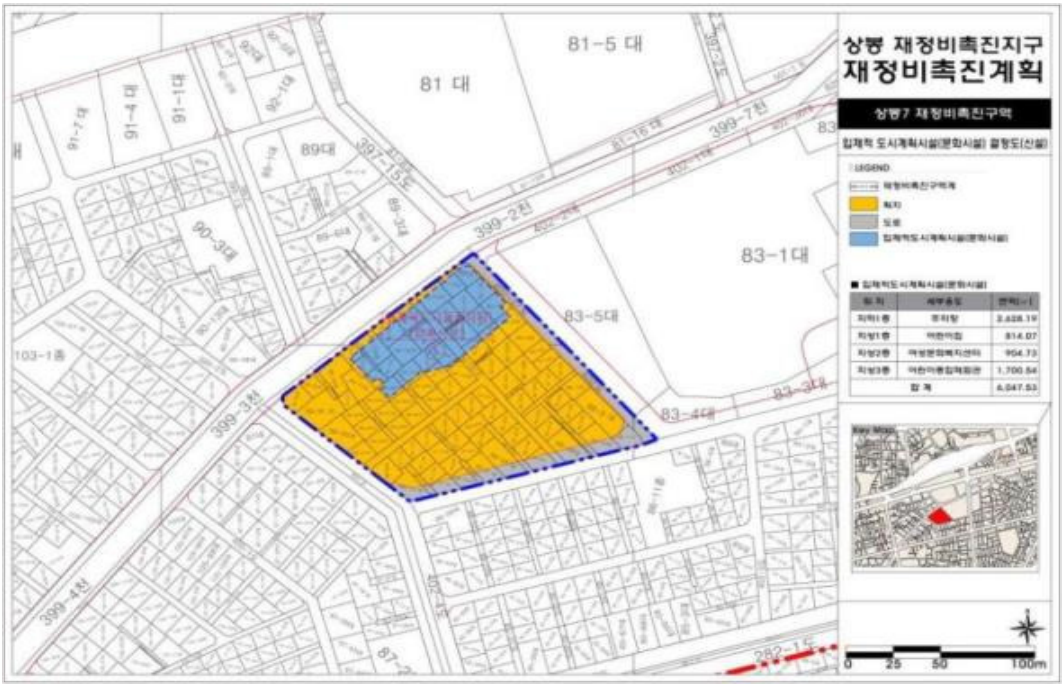
■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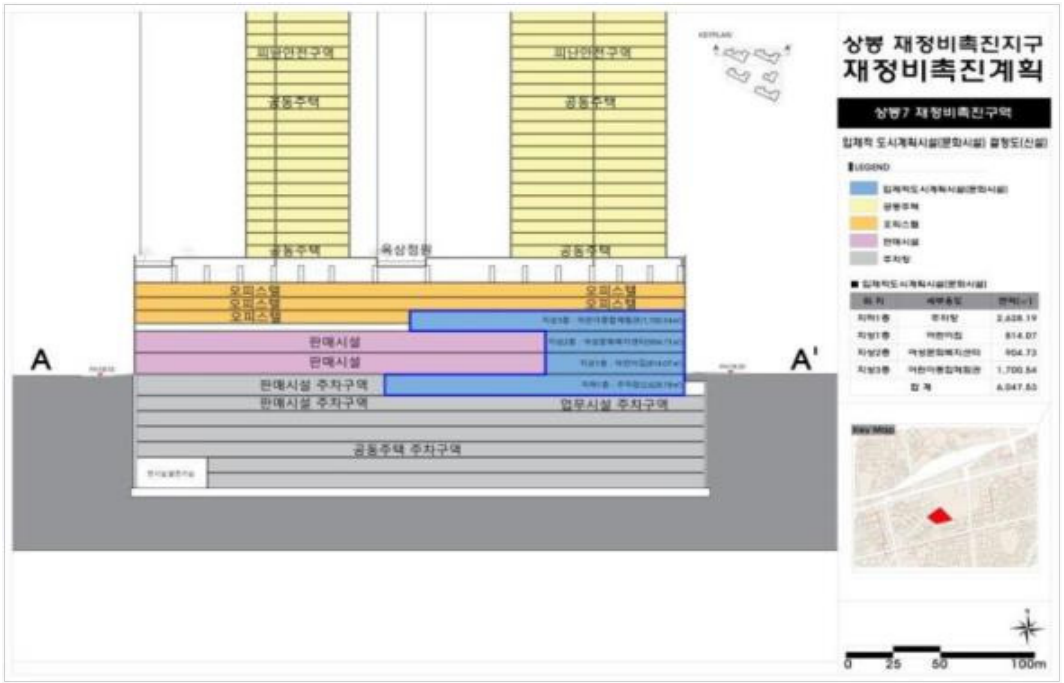
■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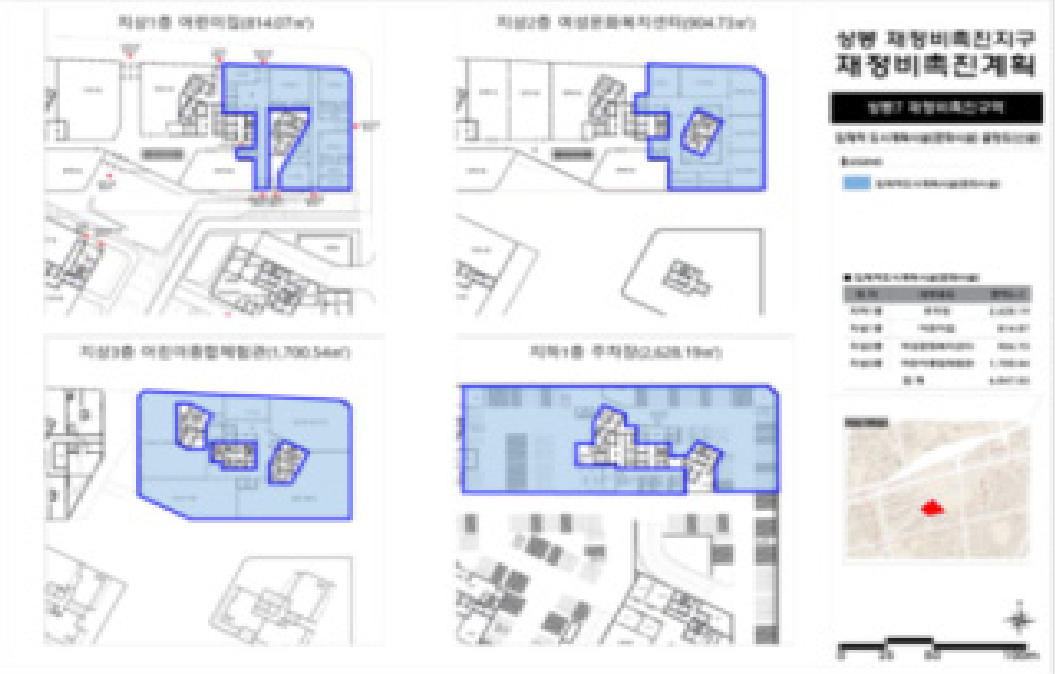
■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도(신설)



■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도(신설, 단면도)



■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도(신설, 평면도)



- 이 하 여 백 -

■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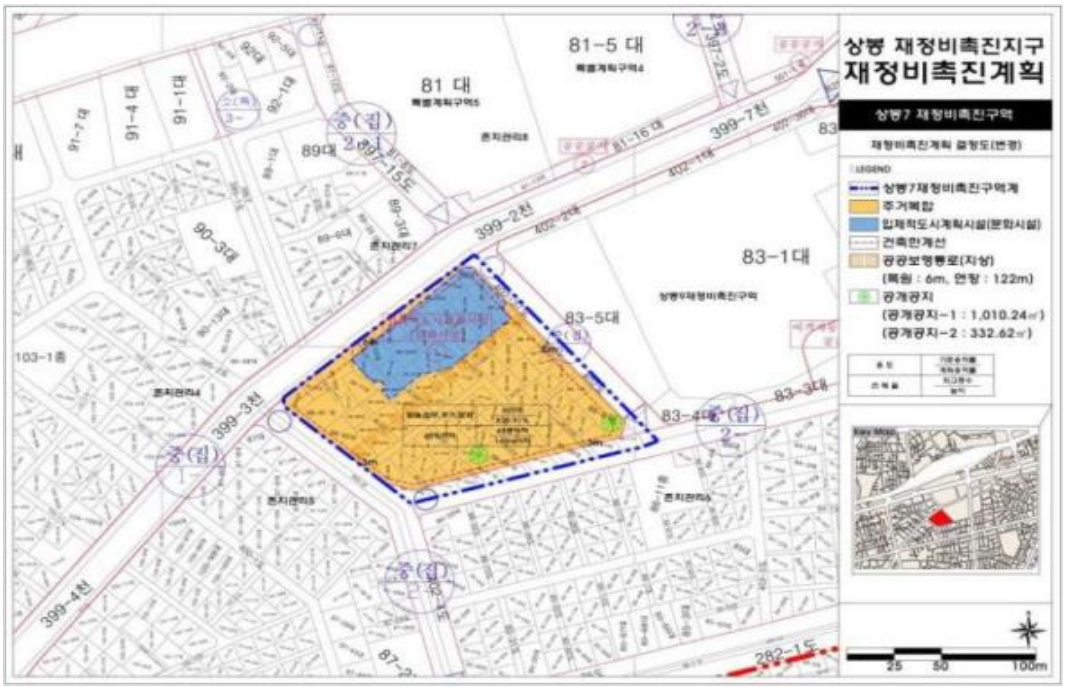
■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결정도(변경)



■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기정)



■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변경)



■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도(기정)



■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변경)



붙임 :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총괄)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변경)

명칭	유형	위치	면적(㎡)			지정목적
			기정	증·감	변경	
상봉 재정비 촉진지구	중심지형	중랑구 망우동, 상봉동 일대	505,597.9	증) 6.3	505,604.2	지역중심으로서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상업·유통·업무 등의 도시기능을 증진

※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 지적측량결과에 따른 단순 면적 정정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변경)

○ 기준년도: 2015년

○ 목표연도: 기정 - 2023년 / 변경 - 2027년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변경)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면 적(㎡)			비율(%)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505,597.9	증) 6.3	505,604.2	100.0%	-
소 계		314,265.1	감) 48.4	314,216.7	62.15%	-
주거용지	소 계	166,119.3	감) 48.4	166,070.9	32.85%	-
	도심주거	86,731.4	-	86,731.4	17.16%	-
	주거복합	79,387.9	감) 48.4	79,339.5	15.69%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상업용지	소 계	62,400.9	-	62,400.9	12.34%	-
	대형판매	19,428.0	-	19,428.0	3.84%	-
	근린상업서비스	42,972.9	-	42,972.9	8.50%	-
복합용지	소 계	83,071.8	-	83,071.8	16.43%	-
	상업·업무·숙박	83,071.8	-	83,071.8	16.43%	-
기 타	소 계	2,673.1	-	2,673.1	0.53%	-
	종 교	2,673.1	-	2,673.1	0.53%	-
소 계		191,332.8	증) 54.7	191,387.5	37.85%	-
계획 기반 시설	사회복지시설	606.7	-	606.7	0.12%	-
	광 장	2,340.7	-	2,340.7	0.46%	-
	공공공지	1,927.0	-	1,927.0	0.38%	-
	보행자전용도로	227.0	-	227.0	0.05%	-
	철 도	15,375.3	-	15,375.3	3.04%	-
	도 로	169,287.1	증) 54.7	169,341.8	33.49%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공공청사	1,569.0	-	1,569.0	0.31%	중복결정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	-	-	-	폐지 상봉7촉진구역 내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연면적: 5,964.2㎡) ※ 지정 위치: 지하 1층~지상 2층
	문화시설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	-	-	-	신설 상봉7촉진구역 내 입체적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 결정(연면적: 6,047.53㎡)

위 치	세 부 용 도	면적(㎡)
지하1층	주차장	2,628.19
지상1층	어린이집	814.07
지상2층	여성문화 복지센터	904.73
지상3층	어린이 종합체험관	1,700.54

2) 인구·주택수용계획 : (기정) 18,261인 / 7,090세대 → (변경) 19,370인 / 7,510세대

○ 인구·주택수용계획(변경)

주택유형		주택 수(호)			인구 수(인)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7,090	증) 420	7,510	18,261	증) 1,109	19,370	-
촉진구역	소 계	1,972	증) 420	2,392	5,206	증) 1,109	6,315	세대당 2.64인
	60㎡이하	272	증) 310	582	718	증) 818	1,536	
	60~85㎡이하	1,166	증) 256	1,422	3,078	증) 676	3,754	
	85㎡초과	534	감) 146	388	1,410	감) 385	1,025	
존치관리구역		5,118	-	5,118	13,055	-	13,055	-

○ 구역별 수용계획(변경)

구분			기존 세대수	계획 세대수			인구수	주거비율(%)
				소계	일반세대	임대주택		
촉진구역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기정	349	511	423	88	1,349	59.2
		변경	349	931	781	150	2,458	89.6
	상봉8재정비촉진구역		2	497	473	24	1,312	45.9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	964	864	100	2,545	54.5
존치관리구역			4,778	5,118	4,778	340	13,055	-
계			5,129	7,510	6,896	614	19,370	-

3)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 촉진지구 기반시설계획(변경)

구분		현황(㎡)		계 획(㎡)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교통시설	도 로	148,058.0	(29.28%)	169,287.1	증) 54.7	169,341.8	(33.49%)	가각부 조정(상봉7)
	철도시설	15,375.3	(3.04%)	15,375.3	-	15,375.3	(3.04%)	-
	여객자동차 터미널	29,204.9	(5.78%)	1,569.0	-	1,569.0	(0.31%)	공공청사 중복결정
	보행자도로	-	-	227.0	-	227.0	(0.05%)	-
	소 계	192,638.2	(38.10%)	186,458.4	증) 54.7	186,513.1	(36.89%)	-
도시공간시설	사회복지시설	-		606.7	-	606.7	(0.12%)	-
	광 장	-		2,340.7	-	2,340.7	(0.46%)	-
	공공공지	1,099.0	(0.22%)	1,927.0	-	1,927.0	(0.38%)	-
	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입체적 도시계획시설)	-		-	-	-	-	폐지 상봉7촉진구역 내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연면적: 5,964.2㎡) ※ 지정 위치: 지하 1층~지상 2층
	문화시설(입체적 도시계획시설)	-		-	-	-	-	신설 상봉7촉진구역 내 입체적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연면적: 6,047.53㎡) 위치 / 세부용도 / 면적(㎡) 지하1층 / 주차장 / 2,628.19 지상1층 / 어린이집 / 814.07 지상2층 / 여성문화 복지센터 / 904.73 지상3층 / 어린이 종합체험관 / 1,700.54
	소 계	1,099.0	(0.22%)	4,874.4	-	4,874.4	(0.96%)	-
총 계		193,737.2	(38.32%)	191,332.8	증) 54.7	191,387.5	(37.85%)	-

※ 상기 면적비율(%)은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전체 면적(505,604.2㎡) 대비 각 시설별 비중을 나타낸 것임.

○ 공공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설치계획(변경)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분</th><th rowspan="2">위치</th><th colspan="3">연면적(㎡)</th><th rowspan="2">비고</th></tr>
<tr><th>기정</th><th>증·감</th><th>변경</th></tr>
<tr><td colspan="2">합 계</td><td></td><td>11,215.5</td><td>증) 83.3</td><td>11,298.8</td><td>-</td></tr>
<tr><td rowspan="4">문화/사회복지시설(공공)</td><td>지역커뮤니티시설</td><td>상봉7재정비 촉진구역</td><td>5,964.2</td><td>감) 5,964.2</td><td>-</td><td>폐지
상봉7촉진구역 내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 지정 위치: 지하 1층~지상 2층</td></tr>
<tr><td>문화시설</td><td>상봉7재정비 촉진구역</td><td>-</td><td>증) 6,047.5</td><td>6,047.5</td><td>신설
입체적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
<table>
<tr><th>위 치</th><th>세 부 용 도</th><th>면적(㎡)</th></tr>
<tr><td>지하1층</td><td>주차장</td><td>2,628.19</td></tr>
<tr><td>지상1층</td><td>어린이집</td><td>814.07</td></tr>
<tr><td>지상2층</td><td>여성문화복지센터</td><td>904.73</td></tr>
<tr><td>지상3층</td><td>어린이종합체험관</td><td>1,700.54</td></tr>
</table></td></tr>
<tr><td>소극장 / 갤러리</td><td>상봉8재정비 촉진구역</td><td>2,448.6</td><td>-</td><td>2,448.6</td><td>조성(기부채납) 완료</td></tr>
<tr><td>주민커뮤니티시설(공공청사)</td><td>상봉9재정비 촉진구역</td><td>2,802.7</td><td>-</td><td>2,802.7</td><td>건축물로 조성 후 기부채납
(여객자동차터미널과 중복 결정)</td></tr>
</table>

※ 기부채납 대지면적은 건축물 전체 연면적 대비 제공시설 면적을 계산하여 대지지분으로 환산

※ 건축물로 기부채납 시 공공시설 이용편의를 고려하여 인지성이 높은 저층부(지하 1층~지상 2층)를 포함하여 수직방향으로 연속되는 공간 배치 및 해당 시설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전용 출입구 및 전용 엘리베이터 등 전용코어 설치

○ 민간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설치계획(변경없음)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5) 교통계획: 도서 참조

6) 경관계획: 도서 참조

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변경)

지구명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정비수법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상봉 재정비 촉진지구	변경	상봉7 재정비촉진구역	상봉동 88번지 일대	14,990.0	증) 6.3	14,996.3	전면개발	-
	기정	상봉8 재정비촉진구역	상봉동 500번지 일대	25,334.6	-	25,334.6	전면개발	준공
	기정	상봉9 재정비촉진구역	상봉동 83-1번지 일대	28,526.6	-	28,526.6	전면개발	-

※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지적측량결과에 따른 단순 면적 정정

○ 구역별 계획(변경)

구분	구역명	구역면적(㎡)	주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계획(m)	사업방식	비고
					기준	최대			
기정	상봉7 재정비촉진구역	14,990.0	주거, 업무, 판매, 복지	60	600	900	140m이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변경	상봉7 재정비촉진구역	14,996.3	주거, 오피스텔, 판매, 문화	60	600	900	140m이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기정	상봉8 재정비촉진구역	25,334.6	주거, 판매, 업무, 교육	60	510	603	185m이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 완료
기정	상봉9 재정비촉진구역	28,526.6	판매, 업무, 주거, 문화, 근린생활시설	60	700	738	175m이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지적측량결과에 따른 단순 면적 정정

8)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사업방식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505,597.9	증) 6.3	505,604.2	-	-
촉진구역	소 계 (3개 구역)		68,851.2	증) 6.3	68,857.5	-	-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상봉동 88번지 일대	14,990.0	증) 6.3	14,996.3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상봉8재정비촉진구역	상봉동 500번지 일대	25,334.6	-	25,334.6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상봉동 83-1번지 일대	28,526.6	-	28,526.6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존치관리구역	소 계 (11개 구역)		307,877.2	-	307,877.2	-	-
	상봉 1존치관리구역	상봉동 100번지 일대	10,243.6	-	10,243.6	개별 건축	-
	상봉 2존치관리구역	상봉동 113번지 일대	24,383.4	-	24,383.4	개별 건축	-
	상봉 3존치관리구역	상봉동 101번지 일대	28,117.3	-	28,117.3	개별 건축	-
	상봉 4존치관리구역	상봉동 103번지 일대	35,342.7	-	35,342.7	개별 건축	-
	상봉 5존치관리구역	상봉동 87번지 일대	30,495.0	-	30,495.0	개별 건축	-
	상봉 6존치관리구역	상봉동 84번지 일대	27,622.6	-	27,622.6	개별 건축	-
	상봉 7존치관리구역	상봉동 89번지 일대	25,467.7	-	25,467.7	개별 건축	-
	상봉 8존치관리구역	상봉동 81번지 일대	33,148.1	-	33,148.1	개별 건축	-
	상봉 9존치관리구역	망우동 506-1번지 일대	49,155.6	-	49,155.6	개별 건축	-
	상봉10존치관리구역	망우동 490-1번지 일대	8,991.1	-	8,991.1	개별 건축	-
	상봉11존치관리구역	상봉동 49번지 일대	34,910.1	-	34,910.1	개별 건축	-
기타 존치지역	도로 등		128,869.5	-	128,869.5	-	-

※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지적측량결과에 따른 단순 면적 정정

9) 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

구역명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계	합 계	68,851.2	증) 6.3	68,857.5	100.0	-
상봉7 재정비촉진구역	소계	14,990.0	증) 6.3	14,996.3	21.8	-
	준주거지역	157.8	감) 157.8	-	-	-
	일반상업지역	14,832.2	증) 164.1	14,996.3	21.8	-
상봉8 재정비촉진구역	소계	25,334.6	-	25,334.6	36.8	-
	일반상업지역	25,334.6	-	25,334.6	36.8	-
상봉9 재정비촉진구역	소계	28,526.6	-	28,526.6	41.4	-
	일반상업지역	28,526.6	-	28,526.6	41.4	-

※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지적측량결과에 따른 단순 면적 정정 및 '17. 5. 25 구역계 축소 결정 시 도면은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조서는 상업지역이 준주거지역 면적으로 오류작성 되어 있어 정정

10) 촉진사업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

○ 건축계획(변경)

구분	구역명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계획 (m)	비고
				기준	최대		
기정	상봉7 재정비촉진구역	주거, 업무, 판매, 복지	60	600	900	140m이하	-
변경	상봉7 재정비촉진구역	주거, 오피스텔, 판매, 문화	60	600	900	140m이하	-
기정	상봉8 재정비촉진구역	주거, 판매, 업무, 교육	60	510	603	185m이하	-
기정	상봉9 재정비촉진구역	판매, 업무, 주거, 문화, 근린생활시설	60	700	738	175m이하	-

11) 기반시설 설치비용 분담계획(변경)

구분	구역명		구역면적(㎡)	기반시설 면적(㎡)									
				계획기반시설①					계획기반 시설내 국공유지 ②	기존기반 시설내 국공유지 ③	유상매입 시설 ④	순부담 면적 (①-②-③-④)	순 부담율 (%)
				계	도로	광장	자동차 정류장	공공청사등					
계		기정	68,851.2	14,881.1	11,317.7	1,994.4	1,569.0	- (건축시설:4,645.6)	783.7	1,617.3	-	17,116.7	24.9
		변경	68,857.5	14,935.8	13,372.4	1,994.4	1,569.0	- (건축시설:4,669.3)	789.6	1,607.7	-	17,133.0	24.9
촉진구역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기정	14,990.0	1,776.3	1,776.3	-	-	- (건축시설:3,132.8)	783.7	1,127.4	-	2,998.0	20.0
		변경	14,996.3	1,831.0	1,831.0	-	-	- (건축시설:3,156.5)	789.6	1,117.8	-	3,080.1	20.5
	상봉8재정비촉진구역		25,334.6	7,276.7	5,282.3	1,994.4	-	-	-	489.9	-	6,777.8	26.7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28,526.6	5,828.1	4,259.1	-	1,569.0	- (건축시설:1,512.8)	-	-	-	7,340.9	25.7

※ 상기 내역 중 공공청사등 항목 "( )" 건축시설 면적은 시설 기부채납 건축물 바닥면적을 토지면적으로 환산한 면적과 대지지분을 합한 면적임

※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건축시설: 1)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 부지면적 환산을 위한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
2) 사업시행(변경)인가시 구체적 설계내역을 작성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증받아 용적률 인센티브를 위한 환산부지 면적 확정 예정임.

12)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

구분	구역명		계 획 세대수	일반 주택 (세대)	임대주택 공급계획(세대)					비고
					소계	전용면적 40~50㎡	전용면적 60㎡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용면적 85㎡초과	
계		기정	1,972	1,760	212 (100.0%)	-	164 (77.4%)	39 (18.4%)	9 (4.2%)	-
		변경	2,392	2,118	274 (100.0%)	89 (32.5%)	185 (67.5%)	-	-	-
촉진구역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기정	511	423	88	-	40	39	9	-
		변경	931	781	150	89	61	-	-	-
	상봉8재정비촉진구역		497	473	24	-	24	-	-	공급완료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964	864	100	-	100	-	-	-

13)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변경)

구분		사업기간			해당구역	비고
		추진시기	이주시기	입주시기		
1단계		2007년	2009년	2013년	상봉8재정비촉진구역	사업완료
2단계	기정	2011년	2018년	2022년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
	변경	2019년	2023년	2027년		
3단계	기정	2019년	2020년	2023년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
	변경	2020년	2021년	2025년		

14)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변경)

가) 상봉7재정비촉진구역(변경): 생략(본문 내용과 같음)

나) 상봉8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다) 상봉9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15)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변경없음)

16) 기타(광고물계획, 폐기물 처리계획, 정보화계획, 방재계획, 에너지 순환계획,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신·재생에너지 적용계획, 특성화계획, 여성 친화적 촉진구역 건설계획, 친환경 건축물계획)(변경없음)

1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재정비촉진지구 결정 조서(변경)

구분	지구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변경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상봉 1·2동, 망우본동 일대	505,597.9	증) 6.3	505,604.2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 (2006.10.19.)	-

※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지적측량결과에 따른 단순 면적 정정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505,597.9	증) 6.3	505,604.2	100.0	-
주거지역	계		273,469.1	감) 157.8	273,311.3	54.1	-
	일반주거지역	소 계	54,029.0	-	54,029.0	10.7	-
		제1종일반주거지역	5,982.0	-	5,982.0	1.2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3,571.0	-	3,571.0	0.7	-
		제2종일반주거지역	5,622.0	-	5,622.0	1.1	-
		제3종일반주거지역	38,854.0	-	38,854.0	7.7	-
	준주거지역		219,440.1	감) 157.8	219,282.3	43.4	-
상업지역	계		232,128.8	-	232,128.8	45.9	-
	일반상업지역		166,695.6	증) 164.1	166,859.7	33.0	-
	근린상업지역		65,433.2	-	65,433.2	12.9	-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변경사유
		기정	변경			
-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88번지 일대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164.1	-	• 지적측량결과에 따른 단순 면적 정정 • `17. 5. 25. 구역계 축소 결정 시 도면은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조서는 상업지역이 준주거지역 면적으로 오류작성 되어 있어 정정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변경)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변경	망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상봉 1·2동, 망우본동 일대	505,597.9	증) 6.3	505,604.2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235호 (2000.8.16.)	-

※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지적측량결과에 따른 단순 면적 정정

○ 가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 특별계획가능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5	35~41	간선도로	8,100 (1,210)	중랑교	망우동 서울시계	일반 도로	총독부고시 제722호 (1936.12.26.)	망우로
기정	대로	2	88	25~32	-	2,020	망우동 489-2	신내동 674-1	-	서울시고시 제104호 (1994.4.7.)	신내길
기정	대로	3	-	25~30	보조간선	(380)	(상봉동 160-7)	(상봉동 160-21)	일반 도로	건교부고시 제935호 (1964.6.25.)	면목동길
기정	대로	3	-	25	보조간선	(675)	(상봉동 160-18)	(상봉동 534-21)	일반 도로	건교부고시 제2493호 (1966.6.21.)	봉우재길
기정	대로	3	-	25~28	보조간선	(380)	(상봉동 534-65)	(상봉동 534-21)	일반 도로	건교부고시 제2493호 (1966.6.21.)	상봉동길
기정	중로	1	185	20~26	-	620	상봉동 99	상봉동 301	-	서울시고시 제949호 (1988.12.12.)	상봉중앙길
기정	중로	1	-	20	집산도로	732	상봉동 402-35	상봉동 399-5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425호 (1984.7.31.)	면목천길
기정	중로	2	-	15	집산도로	255	상봉동 83-7	상봉동 402-4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312호 (2009.8.13.)	요람2길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150	상봉동 92-5	상봉동 81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234호 (2000.8.4.)	상봉여울길
기정	중로	2	-	16	집산도로	40	상봉동 99-1	상봉동 184-2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157호 (2008.5.8.)	-
기정	중로	2	2	16	집산도로	203	망우동 565	망우동 495-1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295호 (2004.9.20.)	맛솜씨길
기정	중로	2	3	15	집산도로	119	상봉2동 501	상봉2동 399-7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235호 (2000.8.16.)	-
기정	중로	2	-	16	집산도로	207	상봉동 88-93	상봉동 85-41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312호 (2009.8.13.)	상봉중앙길
기정	중로	2	-	15	집산도로	140	상봉동 88	상봉동 88-11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174호 (2017.5.25.)	-
변경	중로	2	-	15	집산도로	140	상봉동 88	상봉동 88-11	일반 도로	-	가각부 조정
기정	중로	3	2	13	집산도로	292	망우동 534-37	망우동 534-64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295호 (2004.9.20.)	새한길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49	망우동 534-62	망우동 534-59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295호 (2004.9.20.)	맛솜씨길
기정	소로	2	-	8	국지도로	370	상봉동 184-2	상봉동 500-1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157호 (2008.5.8.)	-
기정	소로	2	-	8	국지도로	11	상봉동 500-4	상봉동 72-7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157호 (2008.5.8.)	-
기정	소로	2	-	8	집산도로	41	망우동 534-65	망우동 564-1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	4	특수도로	53	상봉동 106-3	상봉동 91-1	보행자 전용도로	서울시고시 제312호 (2009.8.13.)	-

※ ( )안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위치, 면적, 연장, 폭원, 시 · 종점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2-	중로2-	• 도로 면적 증가 - 기정: 1,776.3㎡ - 변경: 1,831.0㎡(증 54.7㎡)	• 상봉7, 9구역 사이 도로의 원활한 차량교행을 위해 가각부 조정(시구합동회의 의견 반영)

(2) 공공공지 결정 조서(변경없음)

(3) 광장 결정 조서(변경없음)

(4) 도시철도 결정 조서(변경없음)

(5) 철도 결정 조서(변경없음)

(6) 사회복지 결정 조서(변경없음)

(7) 공공청사 결정 조서(변경없음)

(8) 여객자동차터미널 결정 조서(변경없음)

(9)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 조서(신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입체적 결정범위			최초 결정일	비고 (관리청)
						기정	증 · 감	변경		
신설	①	문화 시설	상봉동 88번지 일대	층		-	지하1층~지상3층	지하1층~지상3층	-	중랑구
				연면적(㎡)	지하1층	-	증) 2,628.19	2,628.19		
					지상1층	-	증) 814.07	814.07		
					지상2층	-	증) 904.73	904.73		
					지상3층	-	증) 1,700.54	1,700.54		
					합계	-	증) 6,047.53	6,047.53		

※ 입체적 결정하는 문화시설의 연면적은 전용 · 공용 · 부대시설을 합한 면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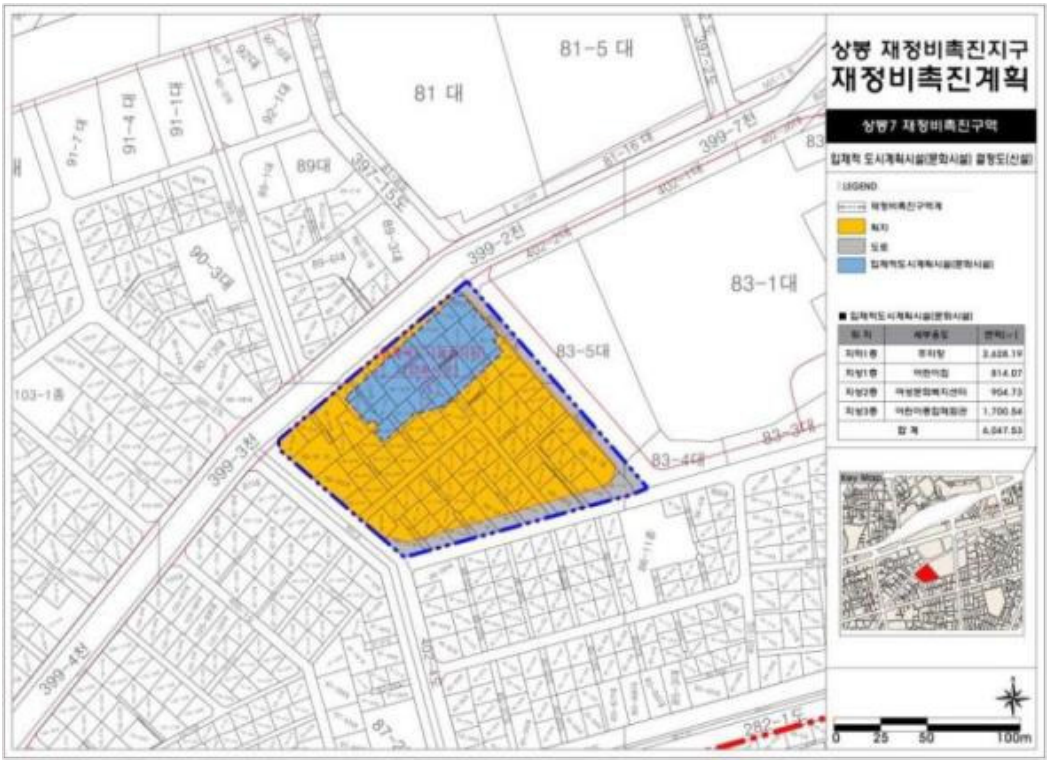
※ 문화시설의 제공위치, 성능수준, 설비, 세부용도 등은 중랑구청과 협의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시 확정하여 준공시 기부채납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①	문화시설	• 신설 - 위치: 지하1층~지상3층 - 면적: 6,047.53㎡	• 문화시설을 지하1층~지상3층까지 입체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시설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타용도 전환을 방지하고자 함.

위 치	세 부 용 도	면적(㎡)
지하1층	주 차 장	2,628.19
지상1층	어린이집	814.07
지상2층	여성문화복지센터	904.73
지상3층	어린이종합체험관	1,700.54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도(신설)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도(신설,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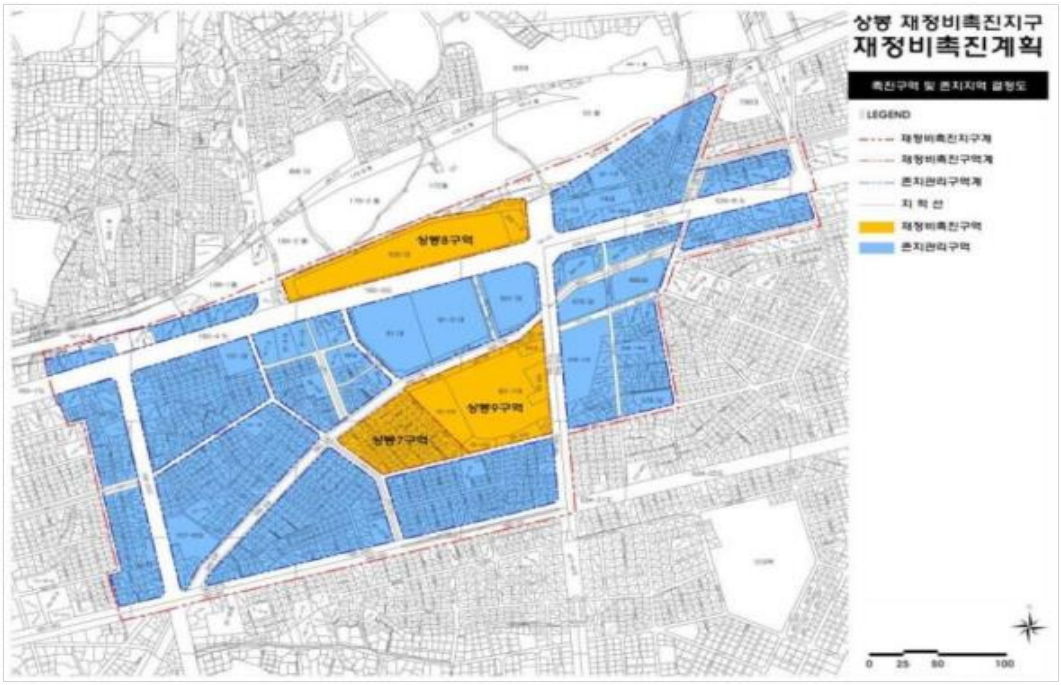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도(신설,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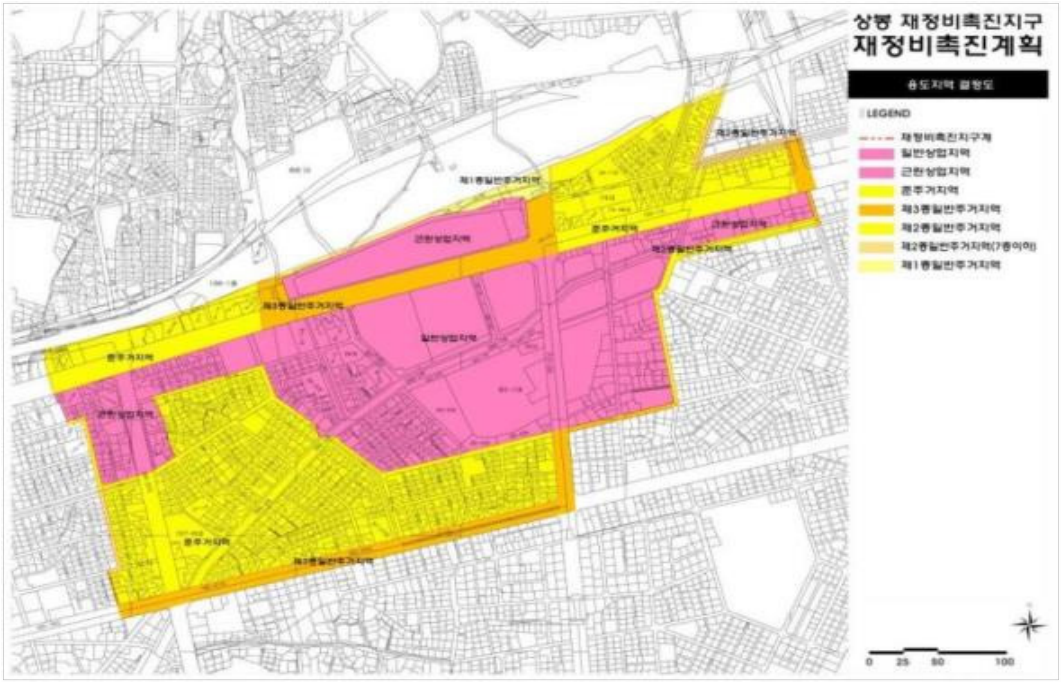
■ 상봉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변경없음)



■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촉진구역 및 존치지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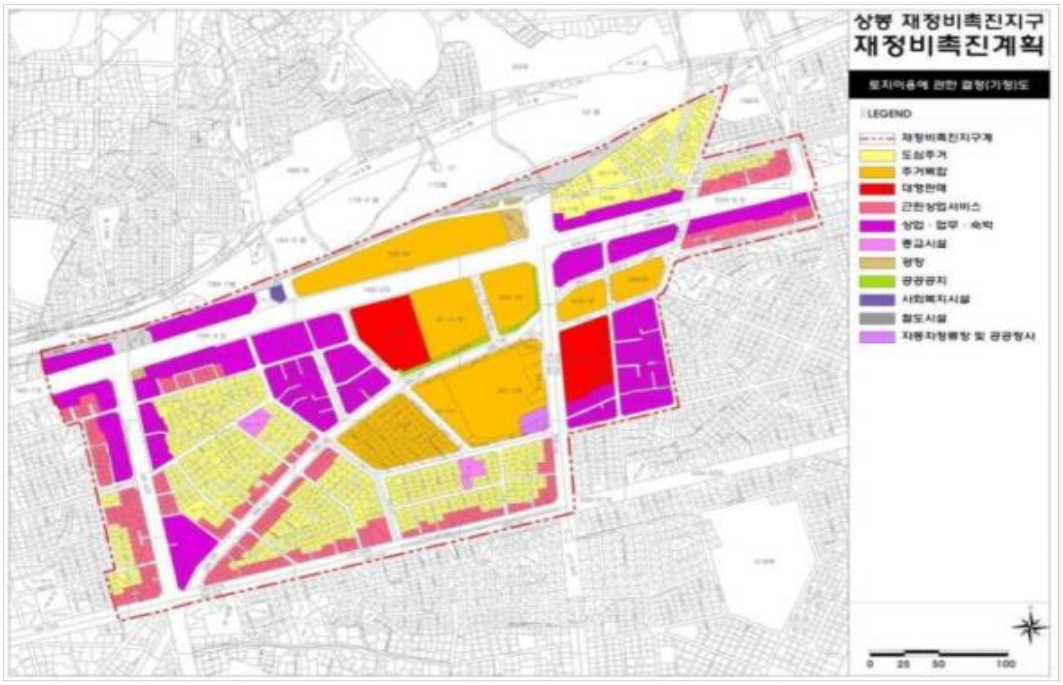


■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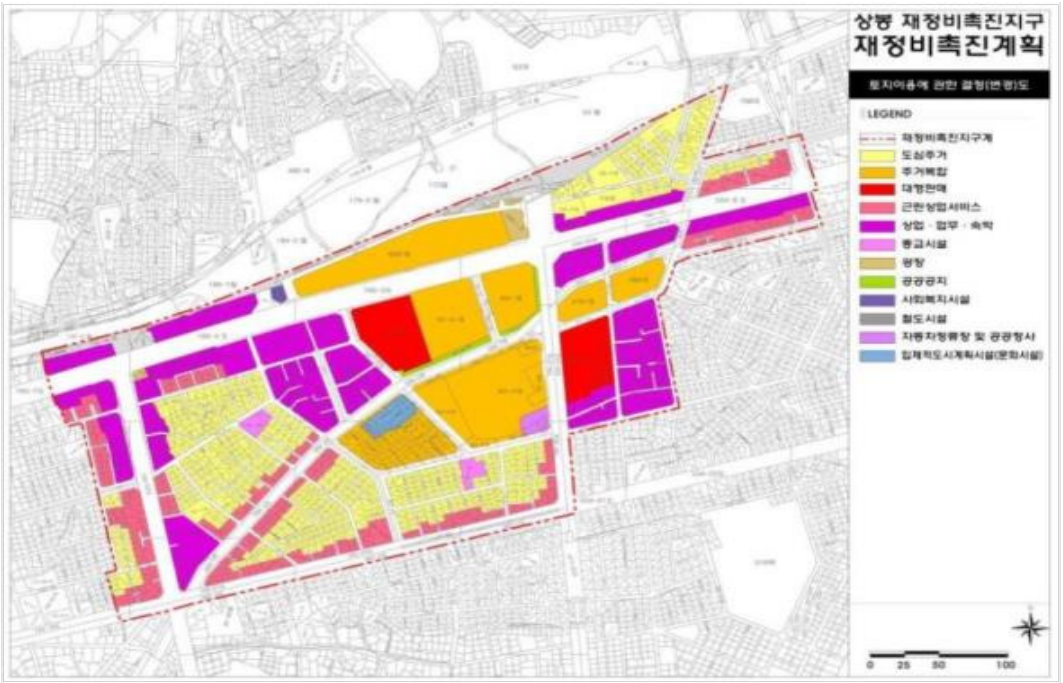


- 이 하 여 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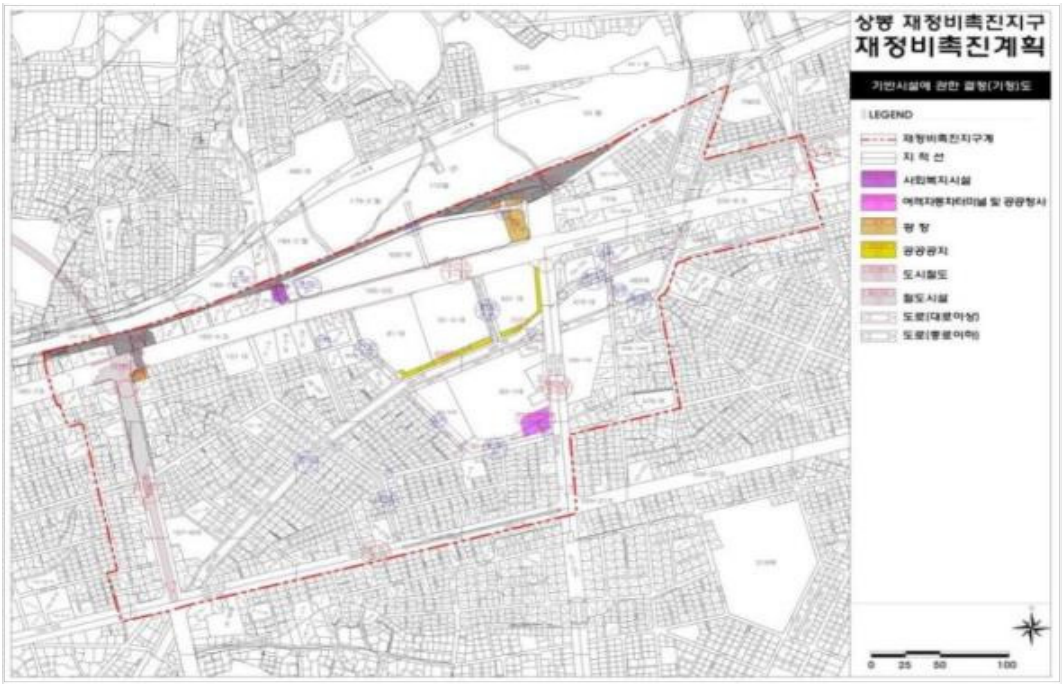
■ 상봉재정비촉진지구 토지이용계획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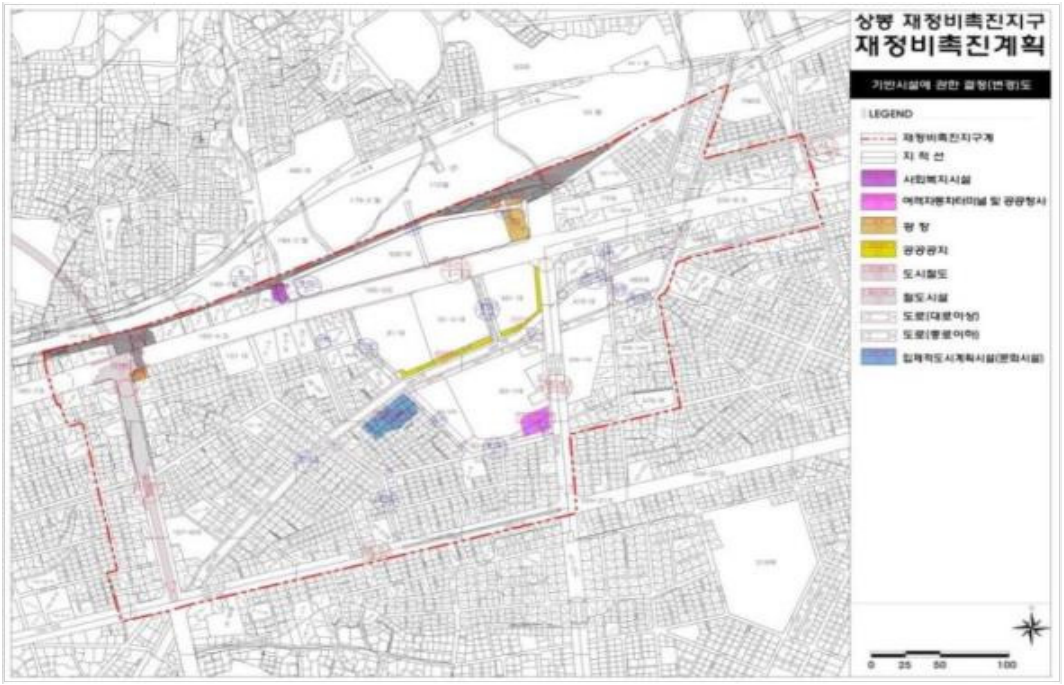
■ 상봉재정비촉진지구 토지이용계획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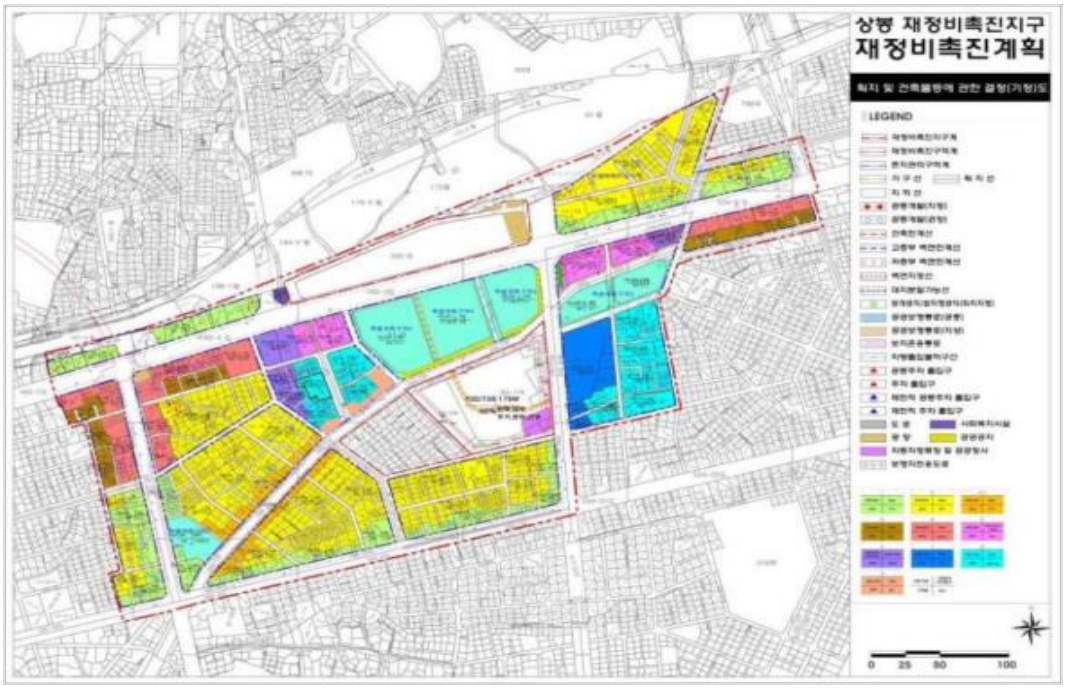
■ 상봉재정비촉진지구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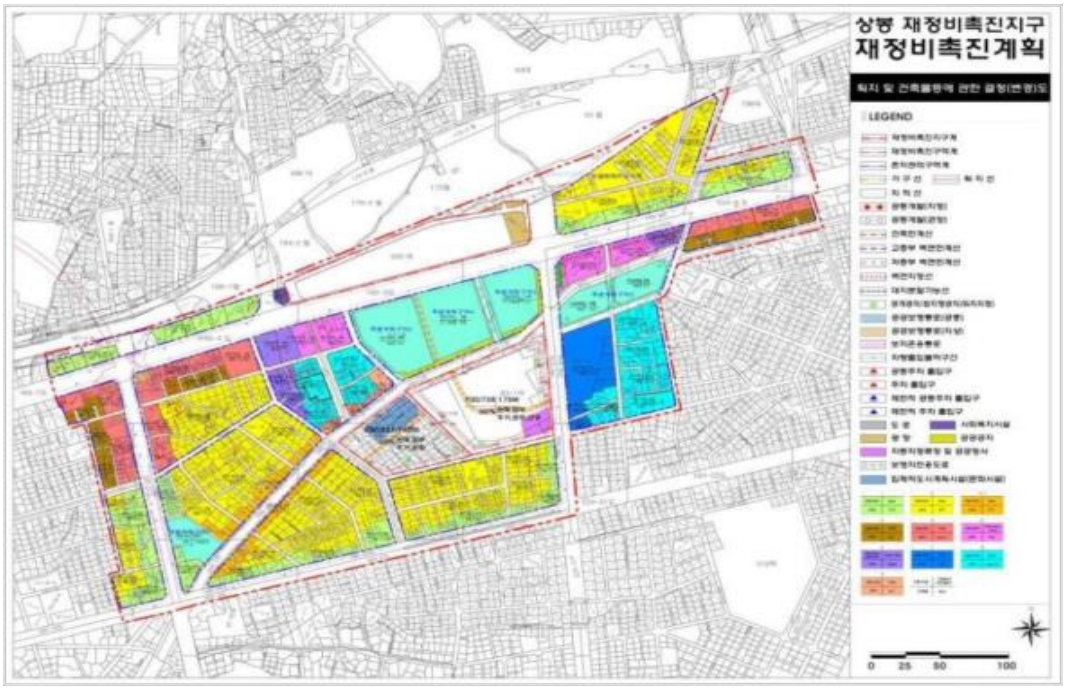
■ 상봉재정비촉진지구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변경)



■ 상봉재정비촉진지구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결정도(기정)



■ 상봉재정비촉진지구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결정도(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01호

역삼문화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8.6)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최초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92호(2018.3.29.)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된 역삼문화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역삼문화공원 조성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원활한 교통흐름 및 이용객 안전을 고려하여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위치를 변경하고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35번지 일대
3. 면 적 : 33,974.9㎡
4.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2133-2076) 및 강남구 공원녹지과(☎ 3423-6243)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역삼문화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강남구 역삼동 635번지 일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33,974.90	20,049.39	3동	6,761.17	40,148.56	97	33,974.90	19,523.80	3동	6,611.38	40,974.97	80	시설면적 감소 525.59㎡ (감 17기)
기반시설	소 계	8,487.56	8,487.56					8,675.90	8,675.90				28	증 188.34㎡ (증 28기)
	도 로	5,626.94	5,626.94					5,418.00	5,418.00					감 208.94㎡
	광 장	2,860.62	2,860.62					3,257.90	3,257.90					증 397.28㎡
조경시설		1,800.66	1,800.66				3	1,483.20	1,483.20				3	감 317.46㎡ (변경없음)
유희시설		–	–					–	–					–
휴양시설		876.44	876.44				78	569.90	569.90				21	감 306.54㎡ (감 57기)
교양시설		7,648.47	7,648.47	2동	6,611.38	30,193.86		7,579.89	7,579.89	2동	6,611.38	30,193.86	12	감 68.58㎡ (증 12기)
운동시설		–	–					–	–					–
편익시설		1,236.26	1,236.26	1동	149.79	9,954.70		1,214.91	1,214.91	1동	–	10,781.11		감 21.35㎡ (변경없음)
관리시설		–	–				16	–	–				16	–
녹지 및 기타		13,925.51						14,451.10						증 525.59㎡
시설율 (법정 제한없음)		(20,049.39 / 33,974.90) × 100 = 59.01%						(19,523.80/33,974.90) × 100 = 57.47%						
건폐율 (법정 20%)		(6,761.17 / 33,974.90) × 100 = 19.90%						(6,611.38 / 33,974.90) × 100 = 19.46%						

2. 시설조서

구 분		변경전 부호	변경전 위치	변경전 부지면적(㎡)	변경전 시설면적(㎡)	변경전 구조	변경전 규모	변경전 건축물(㎡) 바닥면적	변경전 건축물(㎡) 연면적	변경전 공작물(기)	변경후 부호	변경후 위치	변경후 부지면적(㎡)	변경후 시설면적(㎡)	변경후 구조	변경후 규모	변경후 건축물(㎡) 바닥면적	변경후 건축물(㎡) 연면적	변경후 공작물(기)	비 고
합 계				33,974.90	20,049.39		3동	6,761.17	40,148.56	97			33,974.90	19,523.80		3동	6,611.38	40,974.97	80	
기반시설	소 계			8,487.56	8,487.56								8,675.90	8,675.90					28	증 188.34㎡ (증 28기)
	도 로		전지역	5,626.94	5,626.94								5,418.00	5,418.00					15	감 208.94㎡ (증 15기)
	광 장	가	6개소	2,860.62	2,860.62						가		3,257.90	3,257.90					13	증397.28㎡ (증 13기)
		가-1	강남구 역삼동 635-1	(163.12)	(163.12)						가-1		(80.00)	(80.00)					(2)	감 83.12㎡ (증 2기)
		가-2	〃	(230.10)	(230.10)						가-2		(238.00)	(238.00)					(1)	증 7.90㎡ (증 1기)
		가-3	〃	(797.00)	(797.00)						가-3		(797.00)	(797.00)						-
		가-4	〃	(1,217.90)	(1,217.90)						가-4		(1,217.90)	(1,217.90)						-
		가-5	〃	(268.24)	(268.24)						가-5		(407.00)	(407.00)					(9)	증 138.76㎡ (증 9기)
		가-6	〃	(184.26)	(184.26)						가-6		(518.00)	(518.00)					(1)	증 333.74㎡ (증 1기)
조경시설	소 계			1,800.66	1,800.66					3			1,483.20	1,483.20					3	감 317.46㎡
	잔디광장	①	강남구 역삼동 635	1,282.65	1,282.65						①	강남구 역삼동 635	1,282.65	1,282.65						-
	벽천분수	나	강남구 역삼동 635-1	160.57	160.57						나	강남구 역삼동 635-1	94.00	94.00						감 66.57㎡
	미러폰드	다	강남구 역삼동 635	30.00	30.00						다	강남구 역삼동 635	30.00	30.00						-
	실개천	라	〃	76.55	76.55						라	〃	76.55	76.55						-
	다목적 스탠드	마	강남구 역삼동 635-1	250.89	250.89															폐지
	플랜터	바	〃	-	-					1	마	강남구 역삼동 635-1	-	-					1	-
	옹벽-1	사-1	〃	-	-					1	바-1	〃	-	-					1	-
	옹벽-2	사-2	〃	-	-					1	바-2	〃	-	-					1	-
휴양시설	소 계			876.44	876.44					78			569.90	569.90					21	감 306.54㎡ (감 57기)
	쉼터-1	아-1	강남구 역삼동 635-1	72.64	72.64					16										폐지 (감 16기)
	쉼터-2	아-2	〃	234.70	234.70					10										폐지 (감 10기)
	쉼터-3	아-3	〃	24.00	24.00					2	사-1	강남구 역삼동 635-1	24.00	24.00					2	-
	쉼터-4	아-4	〃	54.04	54.04					16	사-2	〃	12.00	12.00					1	감 42.04㎡ (감 15기)

	전망데크	자	〃	346.90	346.90					–	아	〃	346.90	346.90					–	–
	숲속쉼터-1	차-1	〃	32.00	32.00					4	자-1	〃	32.00	32.00					4	–
	숲속쉼터-2	차-2	〃	112.16	112.16					30	자-2	〃	155.00	155.00					14	증 42.84㎡ (감16기)
교양시설	소계			7,648.47	7,648.47		2	6,611.38	30,193.86				7,579.89	7,579.89		2	6,611.38	30,193.86	12	감 68.58㎡ (증 12기)
	국기원(공연장)	②	강남구 역삼동 635	4,948.63	4,948.63	철근 CON'C	1	4,948.63	22,414.99		②	강남구 역삼동 635	4,948.63	4,948.63	철근 CON'C	1	4,948.63	22,414.99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③	강남구 역삼동 635-1	2,085.26	2,085.26	철근 CON'C	1	1,662.75	7,778.87		③	강남구 역삼동 635-1	2,085.26	2,085.26	철근 CON'C	1	1,662.75	7,778.87		–
	자연학습장	카	〃	614,58	614,58						차	〃	546.00	546.00					12	감 68.58㎡ (증 12기)
편익시설	소 계			1,236.26	1,236.26		1	149.79	9,954.70				1,214.91	1,214.91		1	–	10,781.11		감 21.35㎡
	대형주차장	카	강남구 역삼동 635	1,043.91	1,043.91						카	강남구 역삼동 635	1,043.91	1,043.91						
	대형주차장										타	강남구 역삼동 635-1	171.00	171.00						증 171.00㎡
	지하주차장	타	강남구 역삼동 635-1	192.35	192.35	철근 CON'C		149.79	9,954.70		파	〃	–	–	철근 CON'C	1	–	10,781.11		감 192.35㎡
	계단 및 ELEV탑	타-1	〃	(67.29)	(67.29)			(52.86)												
	계단 및 배기탑	타-2	〃	(53.75)	(53.75)			(43.47)												
	계단 및 급기탑	타-3	〃	(71.31)	(71.31)			(53.46)												
관리시설	소 계									16									16	–
	이동식 볼라드		강남구 역삼동 635-1							8		강남구 역삼동 635-1							8	–
	공원 안내판		〃							3		〃							3	–
	방향 안내판		〃							5		〃							5	–
녹지 및 기타	소 계			13,925.51									14,451.10							증 525.59㎡
	녹 지			13,925.51									14,293.10							증 367.59㎡
	기 타			–									158.00							증 15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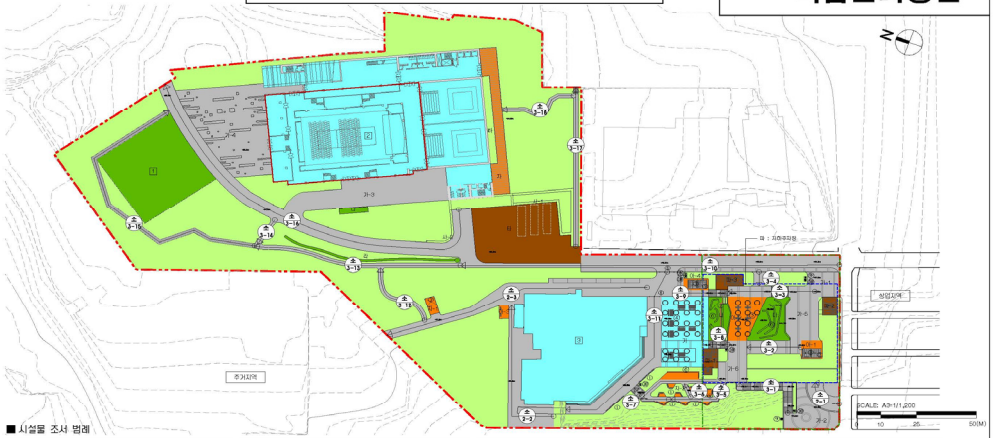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1,203.3	5,626.94				
변경					1,159.0	5,418.00				
당초	소로	소 계			1,203.3	5,626.94				
변경					1,159.0	5,418.00				
당초		2	1	14.0	16.1	232.39	진입로	남서측지구계	지하주차장	
변경			1	8.0	7.0	55.50	진입로	소로3-8	지하주차장	
당초		〃	2	10.0	68.1	491.44	연결로	소로3-10	소로2-3	
당초		〃	3	6.0	112.7	701.47	연결로	소로3-3	서측지구계	
당초		3	1	4.0	34.2	135.84	연결로	진입광장-2	중앙광장-2	
변경		〃	1	4.0	32.3	137.50	연결로	진입광장-2	중앙광장-2	
당초		〃	2	6.0	22.7	135.99	연결로	휴게쉼터-1	중앙광장-2	
변경		〃	2	2.4	37.4	89.50	연결로	진입광장-2	중앙광장-2	
당초		〃	3	5.0	36.2	179.24	연결로	진입광장-1	소로3-8	
변경		〃	3	4.0	18.5	73.00	연결로	녹지	소로3-8	
당초		〃	4	4.5	6.4	28.91	진입로	소로3-9	소로3-3	
변경		〃	4	3.8	7.8	29.50	연결로	중앙광장-1	중앙광장-2	
당초		〃	5	3.5	71.6	164.21	연결로	중앙광장-2	소로3-7	
변경		〃	5	3.0	22.5	59.50	연결로	진입광장-1	중앙광장-2	
당초		〃	6	3.3	6.4	12.87	연결로	소로3-5	소로3-5	
변경		〃	6	3.3	11.3	41.50	연결로	소로3-8	중앙광장-2	
당초		〃	7	4.0	4.8	19.20	연결로	소로3-7	소로3-11	
폐지		-	-	-	-	-	-	-	-	
당초		〃	8	6.0	7.0	29.16	연결로	중앙광장-2	자연학습장	
변경		〃	7	3.0	9.1	27.50	연결로	중앙광장-2	자연학습장	
당초		〃	9	3.0	29.4	83.47	연결로	소로3-10	소로3-3	
변경		〃	9	3.0	44.9	120.5	연결로	중앙광장-2	도서관	
당초		〃	10	5.0	158.3	936.25	진입로	남측지구계	소로3-13	
변경		〃	8	6.0	158.3	1,061.50	진입로	동측지구계	소로3-12	
당초		〃	11	7.0	86.3	590.95	진입로	소로3-9	소로2-2	
변경		〃	10	8.0	86.0	643.50	연결로	소로3-8	소로2-2	
당초		〃	12	2.0	34.2	69.34	연결로	소로2-3	소로3-13	
변경		〃	11	2.0	34.2	69.50	연결로	소로2-3	소로3-12	
당초		〃	13	2.0	87.2	175.10	연결로	소로3-10	소로3-15	
변경		〃	12	2.0	87.2	175.00	연결로	소로3-8	소로3-14	
당초		〃	14	2.0	13.3	28.82	연결로	소로3-16	소로3-13	
변경		〃	13	2.0	13.3	28.50	연결로	소로3-15	소로3-14	
당초		〃	15	2.0	129.6	259.29	연결로	소로3-16	소로3-13	
변경		〃	14	2.0	129.6	259.50	연결로	소로3-12	소로3-15	
당초		〃	16	6.0	171.9	1,138.90	연결로	대형주차장	북측지구계	
변경		〃	15	6.0	171.9	1,139.59	연결로	대형주차장	북측지구계	
당초		〃	17	2.0	72.7	145.70	연결로	대형주차장	북측지구계	
변경		〃	16	2.0	72.7	145.50	연결로	대형주차장	북측지구계	
당초		〃	18	2.0	34.2	68.40	연결로	소로3-17	전망데크	
변경		〃	17	2.0	34.2	68.50	연결로	소로3-16	전망데크	

조성계획도(변경전)

역삼문화공원



■ 시설물 조서 범례

구분	번호	시설명	단위	수량	비고
기반시설	도로		㎡	5,620.94	
	가-1	친입광장-1	㎡	163.12	
	가-2	친입광장-2	㎡	230.10	
	가-3	가로광장	㎡	797.00	
	가-4	천변광장	㎡	1,217.90	
	가-5	출입광장-1	㎡	268.24	
	가-6	출입광장-2	㎡	184.26	
	소 계		㎡	8,497.56	
조존시설	①	친디광장	㎡	1,282.65	
	ㅁ	맥반분수	㎡	160.57	
	ㄷ	대리콘드	㎡	90.00	
	ㄹ	설계천	㎡	76.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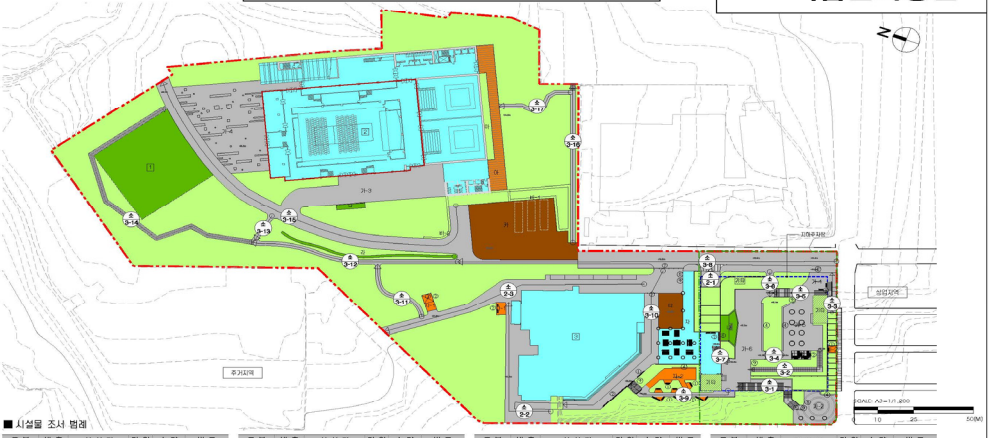
구분	번호	시설명	단위	수량	비고
조존시설	ㅂ	다목적스탠드	㎡	250.69	
	ㅂ	플랜터	식	1	
	사-1	옹벽-1	식	1	
	사-2	옹벽-2	식	1	
	ㅇ	맥반분수	식	1	
	소 계		㎡	1,600.65	
휴양시설	아-1	휴게쉼터-1	㎡	72.64	
	아-2	휴게쉼터-2	㎡	234.70	
	아-3	휴게쉼터-3	㎡	24.00	
	아-4	휴게쉼터-4	㎡	54.04	
	자	천변데크	㎡	348.90	
	자-1	음측쉼터-1	㎡	32.00	

구분	번호	시설명	단위	수량	비고
휴양시설	자-2	음측쉼터-2	㎡	112.16	
	①	등의자	EA	32	
	②	벤의자	EA	20	
	③	사각파고라	개소	4	
	④	아레나이블	개소	6	
	⑤	장원테이블	개소	5	
	⑥	장음벽	개소	8	
소 계			㎡	876.44	
급양시설	[2]	국기원	㎡	4,946.63	
	[3]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2,085.26	
	카	자연학습장	㎡	614.58	
소 계			㎡	7,646.47	

구분	번호	시설명	단위	수량	비고
현덕시설	타	대중주차장	㎡	1,043.91	
	타	자전주차장	㎡	192.35	
	파-1	계단 및 ELEV동	㎡	67.29	
	파-2	계단 및 화기동	㎡	53.75	
	파-3	계단 및 경기동	㎡	71.01	
	소 계		㎡	1,236.26	
관리시설	⑦	이동식불라드	개소	8	
	⑧	공원안내판	개소	9	
	⑨	방향안내판	개소	5	
녹지 및 기타녹지 및 기타			㎡	13,925.51	녹지율 40.99%
소 계			㎡	13,925.51	
합 계			㎡	33,974.90	

조성계획도(변경후)

역삼문화공원



■ 시설물 조서 범례

구분	번호	시설명	단위	수량	비고
기반시설	도로		㎡	5,418.00	
	가-1	친입광장-1	㎡	80.00	
	가-2	친입광장-2	㎡	298.00	
	가-3	가로광장	㎡	797.00	
	가-4	천변광장	㎡	1,217.90	
	가-5	출입광장-1	㎡	407.00	
	가-6	출입광장-2	㎡	515.00	
	①	등의자	EA	5	
	②	벤의자	EA	18	
	③	사각파고라	개소	2	
	④	장음벽	개소	3	
	소 계		㎡	8,675.90	

구분	번호	시설명	단위	수량	비고
조존시설	①	친디광장	㎡	1,282.56	
	ㅁ	맥반분수	㎡	94.00	
	ㄷ	대리콘드	㎡	90.00	
	ㄹ	설계천	㎡	76.55	
	ㅂ	플랜터	식	1	
	바-1	옹벽-1	식	1	
	바-2	옹벽-2	식	1	
소 계			㎡	1,483.20	
휴양시설	사-1	휴게쉼터	㎡	24.00	
	사-2	휴게쉼터	㎡	12.00	
	아	천변데크	㎡	346.90	
	자-1	음측쉼터-1	㎡	32.00	

구분	번호	시설명	단위	수량	비고
휴양시설	자-2	음측쉼터-2	㎡	155.00	
	①	등의자	EA	14	
	②	벤의자	EA	5	
	③	사각파고라	개소	1	
	④	장음벽	개소	1	
소 계			개소	570.0	
급양시설	[2]	국기원	㎡	4,946.63	
	[3]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2,085.26	
	자	자연학습장	㎡	546.00	
	⑦	벤의자	EA	4	
	⑧	이아파이블	EA	6	
	⑥	목재펜스	식	1	

구분	번호	시설명	단위	수량	비고
교양시설	소계		㎡	7,573.69	
현덕시설	타	대중주차장	㎡	1,043.91	
	타	대중주차장	㎡	171.000	
	소계		㎡	1,214.91	
관리시설	⑦	이동식불라드	개소	8	
	⑧	공원안내판	개소	9	
	⑨	방향안내판	개소	5	
녹지 및 기타	녹지		㎡	14,293.10	
	기타		㎡	158.00	
	소계		㎡	14,451.10	녹지율42.53%
	합 계		㎡	33,974.9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03호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전농12재정비촉진구역 해제(일몰)기한 연장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252호(2009.6.25.)로 정비구역 지정된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내 전농제12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해제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7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구역(정비구역) 해제(일몰)기한 연장 개요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정비구역 지정 · 고시일	일몰기한	비 고
당 초	전농12재정비 촉진구역	동대문구 전농동 643번지 일대	16,237	2009.6.25	2020.3.2.	2년 연장
변 경					2022.3.2.	

2. 정비구역 해제기간 연장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해제(일몰)기한 연장
3.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주거사업과(☎02-2133-7218),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02-2127-42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04호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변경)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교남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322호(2005.03.10.)로 교남뉴타운지구개발기본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26호(2006.04.13.)로 정비구역지정 결정, 종로구공고 제2008-800호(2009.01.02.)에 의하여 돈의문뉴타운개발기본계획 변경 승인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3호(2009.01.29.)로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61호(2009.07.02.)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결정, 종로구고시 제2009-67호(2009.10.23.)로 정비구역 변경(경미한변경)지정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59호(2015.06.11.)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83호(2016.09.08.)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돈의문1구역) 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호(2017.01.12.)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11호(2017.03.30.)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0호(2017.04.20.)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63호(2017.05.11.)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14호(2017.06.15.)

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87호(2017.08.03.)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74호(2018.05.31.)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20호(2018.07.19.)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87호(2018.11.29.)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40호(2020.04.09.)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변경) 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변경)하고, 같은 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종로구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유형, 위치, 면적 및 지정목적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지정목적
			기정	변경	변경후	
돈의문 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	종로구 교남동 62-1 일대	167,874.2	감)15.2	167,859.0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심기능 및 노후·불량한 주거기능의 종합적 개선을 통한 직주근접형 도심 커뮤니티 공간 조성

주) 변경사유 : 돈의문3구역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반영

주) 기정면적 오기정정 (167,844.4㎡→167,874.2㎡)

※ 기정 면적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40호(2020.4.9.)로 고시된 내용 중 오기사항(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을 당초 결정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87호(2018.11.29.)의 내용으로 정정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1) 토지이용계획 (기정)

구 분		계		돈의문1		돈의문2		돈의문3		존치시설(도로)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합 계		167,874.2	100.0	152,198.6	100.0	6,801.4	100.0	8,844.4	100.0	29.8	100.0	-
택지(획지)	소계	112,316.0	66.9	100,405.1	65.9	5,510.1	81.0	6,400.8	72.4	-	-	-
	주택용지	95,648.8	57.0	95,648.8	62.8	-	-	-	-	-	-	-
	종교시설	1,671.8	1.0	1,671.8	1.1	-	-	-	-	-	-	-
	상업업무	14,995.4	8.9	3,084.5	2.0	5,510.1	81.0	6,400.8	72.4	-	-	-
정비기반시설	소계	47,760.0	28.5	43,995.3	28.9	1,291.3	19.0	2,443.6	27.6	29.8	100.0	-
	공원	7,194.5	4.3	6,360.5	4.2	834.0	12.3	-	-	-	-	-

등	녹지	1,043.0	0.6	1,043.0	0.7	–	–	–	–	–	–	–
	도로	26,868.8	16.0	24,061.3	15.8	457.3	6.7	2,320.4	26.2	29.8	100.0	–
	철도	(286.5)	–	–	–	–	–	(286.5)	–	–	–	입체적 결정 (면적 산입제외)
	공공공지	123.2	0.1	–	–	–	–	123.2	1.4	–	–	–
	광장	594.5	0.4	594.5	0.4	–	–	–	–	–	–	–
	공공청사	2,893.5	1.7	2,893.5	1.9	–	–	–	–	–	–	–
	문화시설	9,042.5	5.4	9,042.5	5.9	–	–	–	–	–	–	–
존치시설		7,798.2	4.6	7,798.2	5.2	–	–	–	–	–	–	–

(2)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계		돈의문1		돈의문2		돈의문3		존치시설(도로)		비고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합 계		167,859.0	100.0	152,198.6	100.0	6,801.4	100.0	8,829.2	100.0	29.8	100.0	돈의문3구역 감)15.2㎡
택지 (획지)	소계	112,295.6	66.9	100,405.1	65.9	5,510.1	81.0	6,380.4	72.3	–	–	돈의문3구역 감)20.4㎡
	주택용지	95,648.8	57.0	95,648.8	62.8	–	–	–	–	–	–	–
	종교시설	1,671.8	1.0	1,671.8	1.1	–	–	–	–	–	–	–
	상업업무	14,975.0	8.9	3,084.5	2.0	5,510.1	81.0	6,380.4	72.3	–	–	돈의문3구역 감)20.4㎡
정비기반시설 등	소계	47,765.2	28.5	43,995.3	28.9	1,291.3	19.0	2,448.8	27.7	29.8	100.0	돈의문3구역 증)5.2㎡
	공원	7,194.5	4.3	6,360.5	4.2	834.0	12.3	–	–	–	–	–
	녹지	1,043.0	0.6	1,043.0	0.7	–	–	–	–	–	–	–
	도로	26,878.6	16.0	24,061.3	15.8	457.3	6.7	2,330.2	26.4	29.8	100.0	돈의문3구역 증)9.8㎡
	철도	(286.5)	–	–	–	–	–	(286.5)	–	–	–	입체적 결정 (면적 산입 제외)
	공공공지	118.6	0.1	–	–	–	–	118.6	1.3	–	–	돈의문3구역 감)4.6㎡
	광장	594.5	0.4	594.5	0.4	–	–	–	–	–	–	–
	공공청사	2,893.5	1.7	2,893.5	1.9	–	–	–	–	–	–	–
	문화시설	9,042.5	5.4	9,042.5	5.9	–	–	–	–	–	–	–
존치시설		7,798.2	4.6	7,798.2	5.2	–	–	–	–	–	–	–

주) 변경사유 : 돈의문3구역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반영

2)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없음)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구분	명 칭	개소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9	8,955.2	감)4.6	8,950.6	-
공원	소 계	5	7,194.5	-	7,194.5	-
	어린이공원	1	834.0	-	834.0	-
	소공원	4	6,360.5	-	6,360.5	-
녹지	완충녹지	2	1,043.0	-	1,043.0	-
기타	소 계	2	717.7	-	713.1	-
	공공공지	1	123.2	감)4.6	118.6	-
	광장	1	594.5	-	594.5	-

주) 변경사유 : 돈의문3구역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반영

5) 교통계획(변경없음)

6) 경관계획(변경없음)

7)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구 분		구역명	면 적(㎡)			사업방식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167,844.4	감)15.2	167,829.2	-
돈의문	촉진구역	돈의문1재정비촉진구역	152,198.6	-	152,198.6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6,801.4	-	6,801.4	
		돈의문3재정비촉진구역	8,844.4	감)15.2	8,829.2	

주) 변경사유 : 돈의문3구역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반영

8)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1) 돈의문1재정비촉진구역(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변경없음)

(2)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변경없음)

(3) 돈의문3재정비촉진구역(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8,844.4	감)15.2	8,829.2	100.0	-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297.4	감)35.7	1,261.7	14.3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7,547.0	증)20.5	7,567.5	85.7	

주) 변경사유 : 돈의문3구역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반영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구 지정 및 변경계획(변경없음)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없음)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1) 돈의문1재정비촉진구역(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변경없음)

(2)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변경없음)

(3) 돈의문3재정비촉진구역(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 분			현 황(㎡)			사업구역 계획(㎡)					
명 칭		면적(㎡)	계	대지	공공용지	계	사업시행 면적(㎡)	공공용지 부담계획(㎡)			공공용지 부담율(%)
								소계	기존	부담	
기정	돈의문3	8,844.4	8,844.4	7,316.9	1,527.5	8,844.4	6,400.8	2,443.6	1,527.5	916.1	12.52
변경	돈의문3	8,829.2	8,829.2	7,301.7	1,527.5	8,829.2	6,380.4	2,448.8	1,527.5	921.3	12.62

주) 변경사유 : 돈의문3구역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반영

12)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해당없음)
13)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해당없음)
14)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15)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해당없음)
16)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1) 돈의문1재정비촉진구역(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변경없음)
(2)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변경없음)
(3) 돈의문3재정비촉진구역(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가)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돈의문3재정비촉진구역	종로구 평동 222번지 일원	8,844.4	-
변 경	돈의문3재정비촉진구역	종로구 평동 222번지 일원	8,829.2	감)15.2㎡

주) 변경사유 : 돈의문3구역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반영

나)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8,844.4	감)15.2	8,829.2	100.0	-
택 지	상업, 업무	6,400.8	감)20.4	6,380.4	72.3	-
정비 기반시설 등	소 계	2,443.6	증)5.2	2,448.8	27.7	-
	도 로	2,320.4	증)9.8	2,330.2	26.4	-
	공공공지	123.2	감)4.6	118.6	1.3	-
	철 도	(286.5)	-	(286.5)	-	입체적 결정(면적 산입 제외)

주) 변경사유 : 돈의문3구역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반영

(나) 용도지역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8,844.4	감)15.2	8,829.2	100.0	-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297.4	감)35.7	1,261.7	14.3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7,547.0	증)20.5	7,567.5	85.7	

주) 변경사유 : 돈의문3구역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반영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① 도로(변경없음)
② 공공공지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비고
	명 칭	세분류			
기정	공공공지	공공공지	교남동 6번지 일원	123.2	-
변경	공공공지	공공공지	교남동 6번지 일원	118.6	-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공공지	• 면적 : 123.2㎡ → 118.6㎡(4.6㎡ 감소)	• 돈의문3구역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반영

③ 철도(변경없음)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해당없음)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①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해당없음)

②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획지 구분	위치	면적(㎡)	건폐율 (%)	용적률(%)		높이 (m)	주용도	비고
					기준	상한			
기정	획지1	평동 222번지 일대	6,400.8	60 이하	600	850 이하	110m 이하	판매/업무	-
변경	획지1	평동 222번지 일대	6,380.4	60 이하	600	850 이하	110m 이하	판매/업무	-

주) 변경사유 : 돈의문3구역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반영

구 분	기 정	변 경
건축한계선	• 의주로변 : 4m • 이면도로 : 2m	• 의주로변 : 4m • 새문안로변 : 3m • 이면도로 : 2m
벽면한계선 (변경없음)	• 1층 벽면한계선(공공보행통로) : 상업지역 중심 10m	• 1층 벽면한계선(공공보행통로) : 상업지역 중심 10m

주) 변경사유 : 2009년 돈의문3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서고 제2009-261호) 당시 정비계획 결정도 상 새문안로변 건축한계선 3m가 계획되었으나, 건축시설계획조서에는 누락되어 금회 변경시 반영하고자 함

(바)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사)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변경없음)

(아)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해당없음)

(자)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해당없음)

(차) 환경성검토결과(변경없음)

(카)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해당없음)

5.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 역 명	위치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돈의문3 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종로구 평동 222번지 일원	8,844.4	감)15.2	8,829.2	100.0	-

주) 변경사유 : 돈의문3구역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반영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8,844.4	감)15.2	8,829.2	100.0	-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297.4	감)35.7	1,261.7	14.3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7,547.0	증)20.5	7,567.5	85.7	

주) 변경사유 : 돈의문3구역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반영

(2) 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결정 조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3	101	13	집산 도로	350 (145)	평동 209-1	송월동 68-4	일반 도로	-
기정	대로	1	7	35~38	주간선 도로	3,600 (136)	서대문 광장	홍은동	일반 도로	-

※ ( )는 구역내 연장

나)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비고
	명 칭	세분류			
기정	공공공지	공공공지	교남동 6번지 일원	123.2	-
변경	공공공지	공공공지	교남동 6번지 일원	118.6	-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공공지	• 면적 : 123.2㎡ → 118.6㎡(4.6㎡ 감소)	• 돈의문3구역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반영

다) 철도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철도	도시철도(5호선) (서대문정거장)	종로구 평동 211 일대	6,361.6	건설부고시 제151호 (91.3.25.)	-

■ 도시계획시설(철도) 입체적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구 분	기정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②	철도	종로구 평동 213 일대	길이(m)	46.3~51.2	-	•종로구 평동 213번지 (281.1㎡) •종로구 평동 219번지 (5.4㎡)
				폭(m)	5.4~7.0		
				높이(m) (해수면 기준)	26.31~39.61		
				면적(㎡)	286.5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가 구	면 적(㎡)			비 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	획지1	6,400.8	감)20.4	6,380.4	100.0	-

주) 변경사유 : 돈의문3구역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반영

(2)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가 구	용 도	비 고
기정	허용용도	획지1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나)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 건폐율 계획

구 분	지 역	건폐율	비 고
기정	일반상업지역	60% 이하	-

(나) 용적률 계획

구분	용 적 률		비 고
	기준용적률	상한용적률	
기정	600%	850% 이하	-

(다) 높이 계획

구 분	지 역	높이기준		비 고
		기준높이	최고높이	
기정	일반상업지역	90m 이하	110m 이하	-

(3)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건축한계선	• 의주로변 : 4m • 이면도로 : 2m	• 의주로변 : 4m • 새문안로변 : 3m • 이면도로 : 2m
벽면한계선(변경없음)	• 1층 벽면한계선(공공보행통로) : 상업지역 중심 10m	• 1층 벽면한계선(공공보행통로) : 상업지역 중심 10m

주) 변경사유 : 2009년 돈의문3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서고 제2009-261호) 당시 정비계획 결정도 상 새문안로변 건축한계선 3m가 계획되었으나, 건축시설계획조서에는 누락되어 금회 변경시 반영하고자 함

(4)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용위치	계 획 내 용
공개공지	• 도면에 표기	• 북측 공개공지 변 및 남측 새문안로변 공개공지 조성
전면공지	• 의주로변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보행활동을 고려한 가로공간으로 조성 - 폭원 : 4m

	• 새문안로변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보행활동을 고려한 가로공간으로 조성 – 폭원 : 3m
	• 이면도로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보행활동을 고려한 가로공간으로 조성 – 폭원 : 2m
공공보행통로	• 도면에 표기	• 상업지역 중심 공공보행통로 지정(1개소) – 위치 및 폭원 : 상업지역 중심 10m • 피로티형으로 조성 가능하며, 유효높이는 3m 이상으로 계획

주)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2020.5.)을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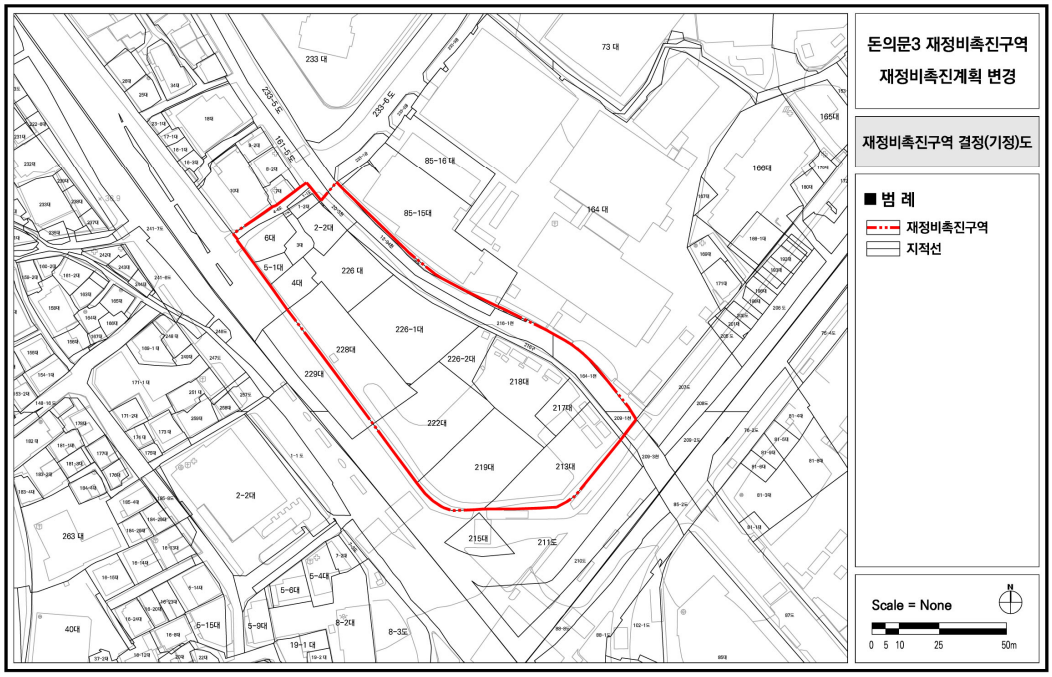
나)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용위치	계 획 내 용
차량진입불허구간	• 의주로변	• 도로에서 대지 안으로의 차량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
	• 새문안로변	• 도로에서 대지 안으로의 차량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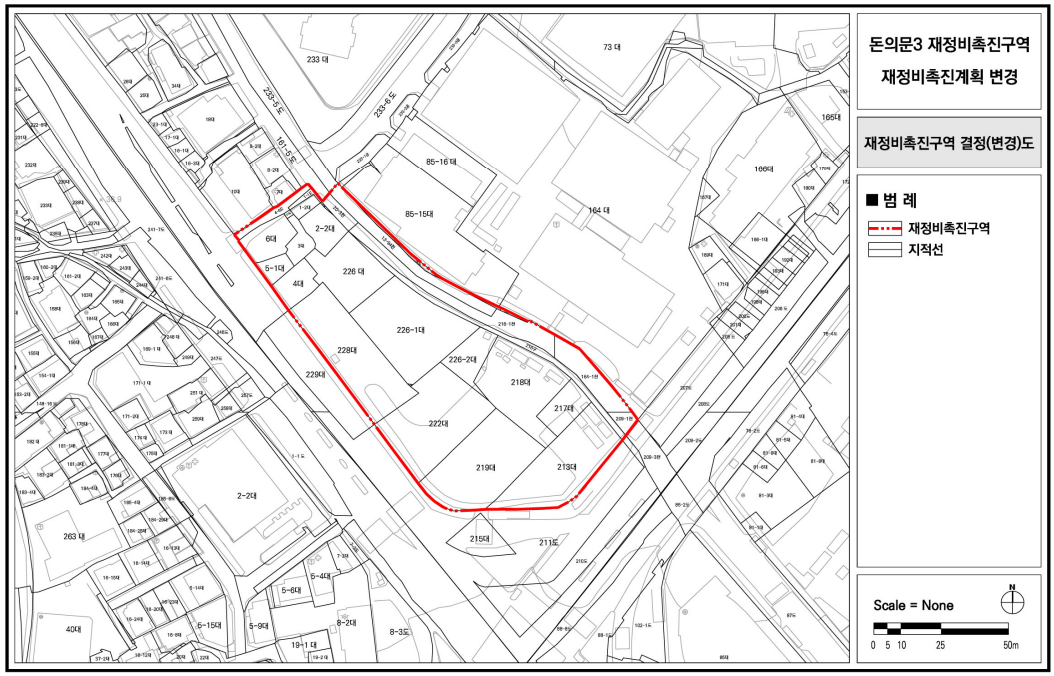
6. 돈의문3재정비촉진구역 외 기 결정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없음
7.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도서 참조 : 생략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02-2133-7218),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02-2148-2695)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8. 지형도면의 작성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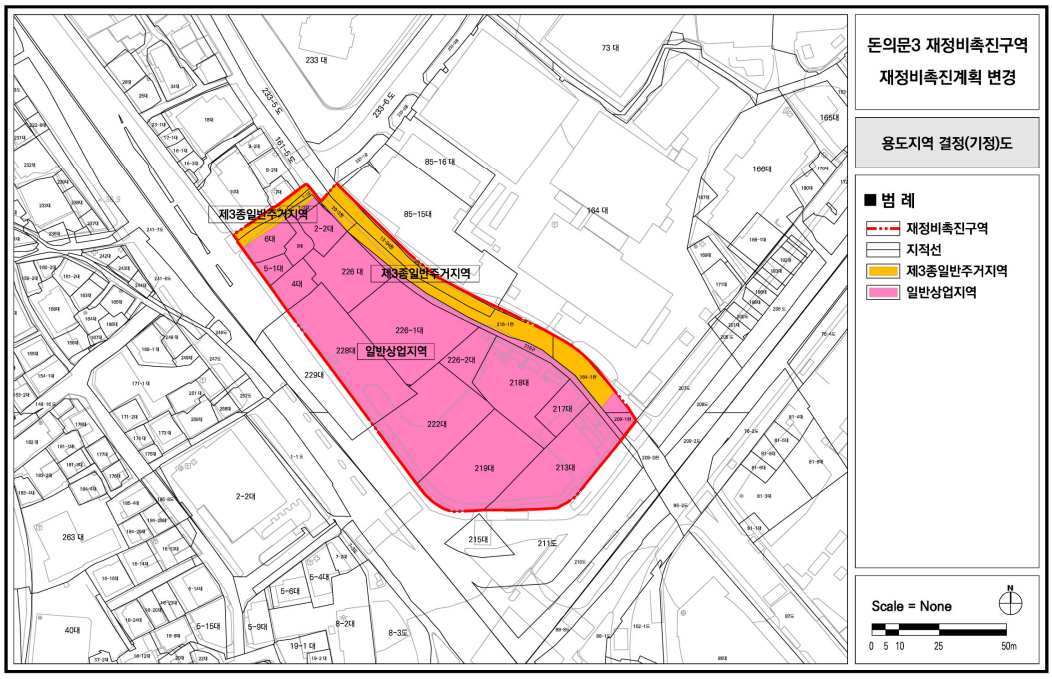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구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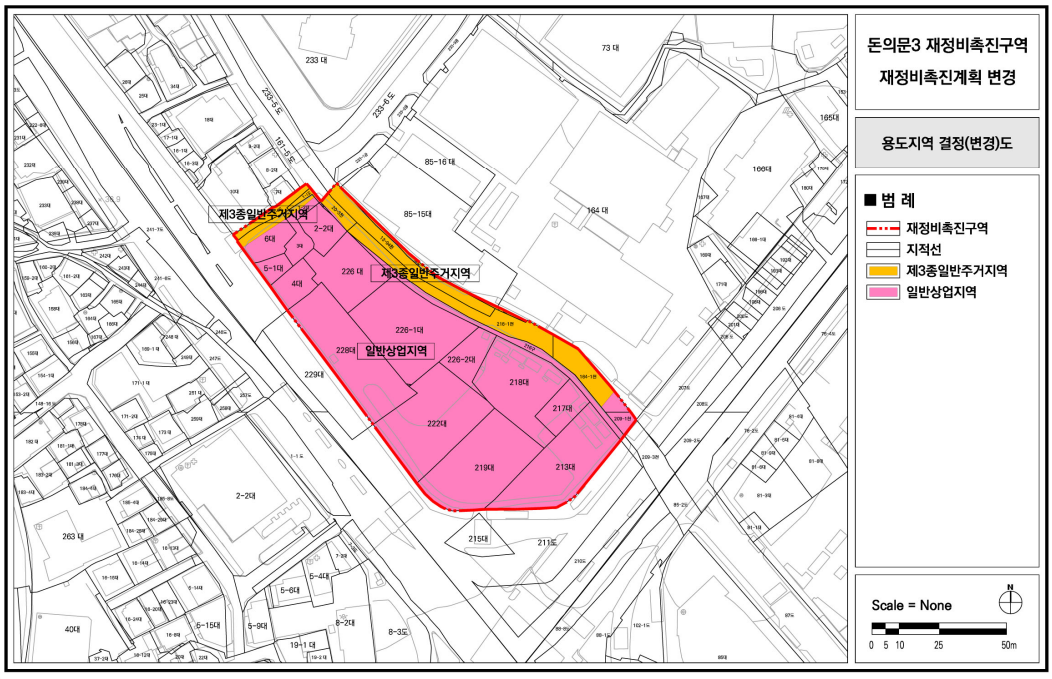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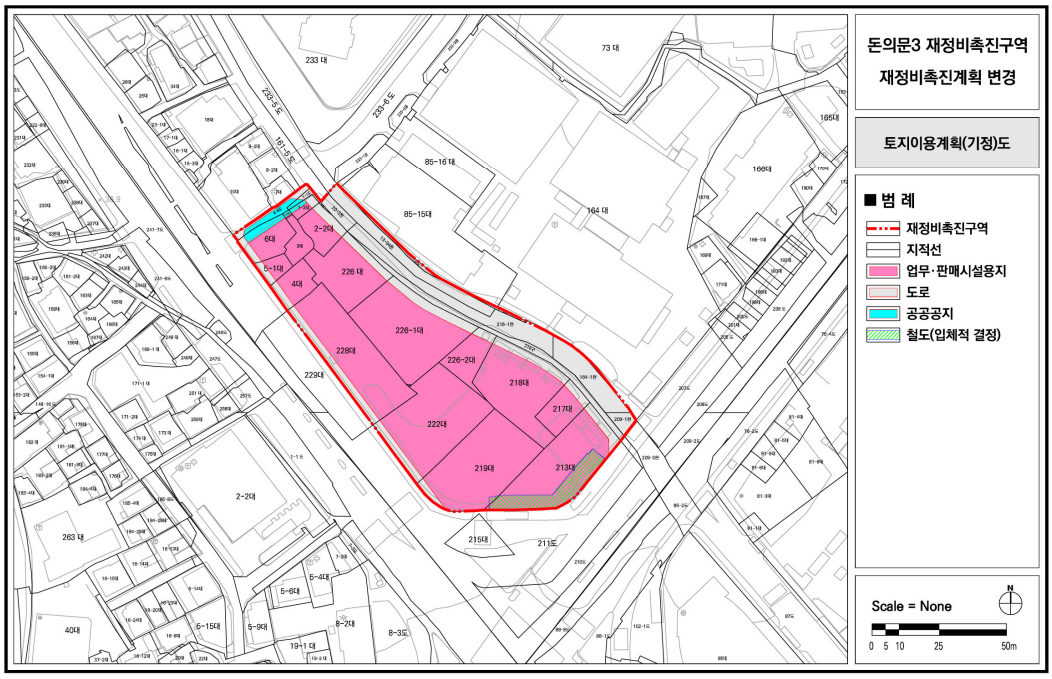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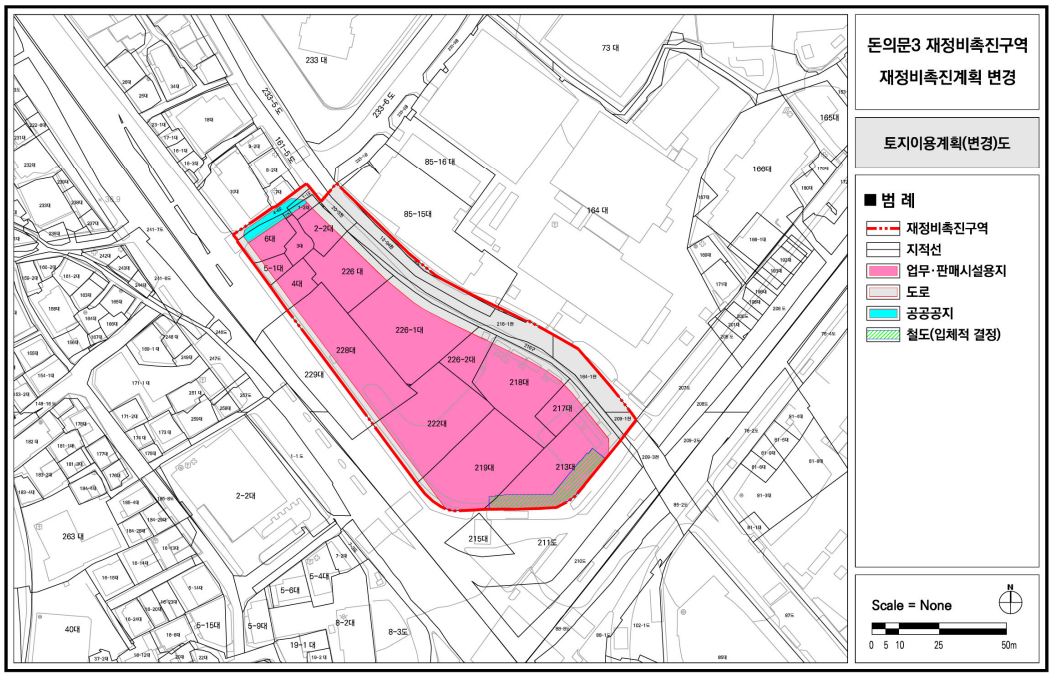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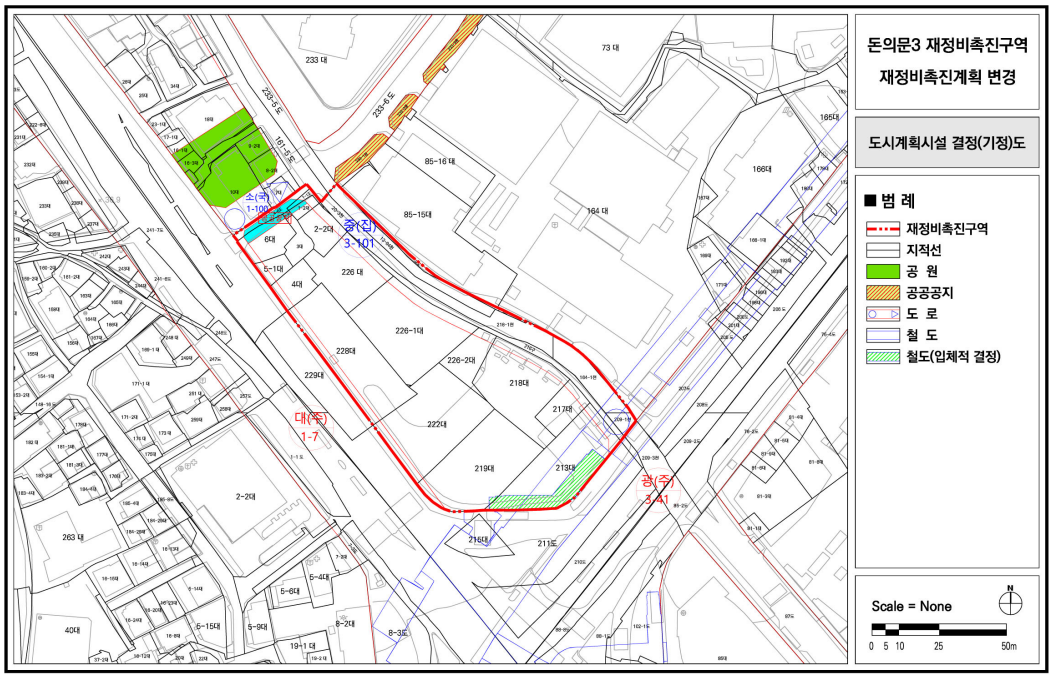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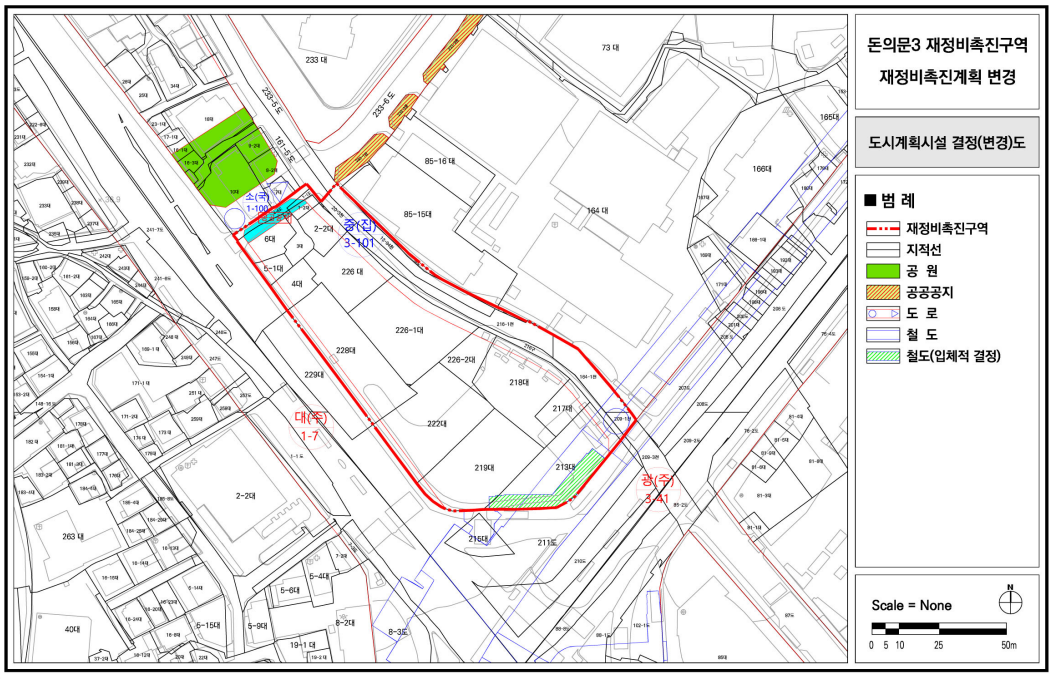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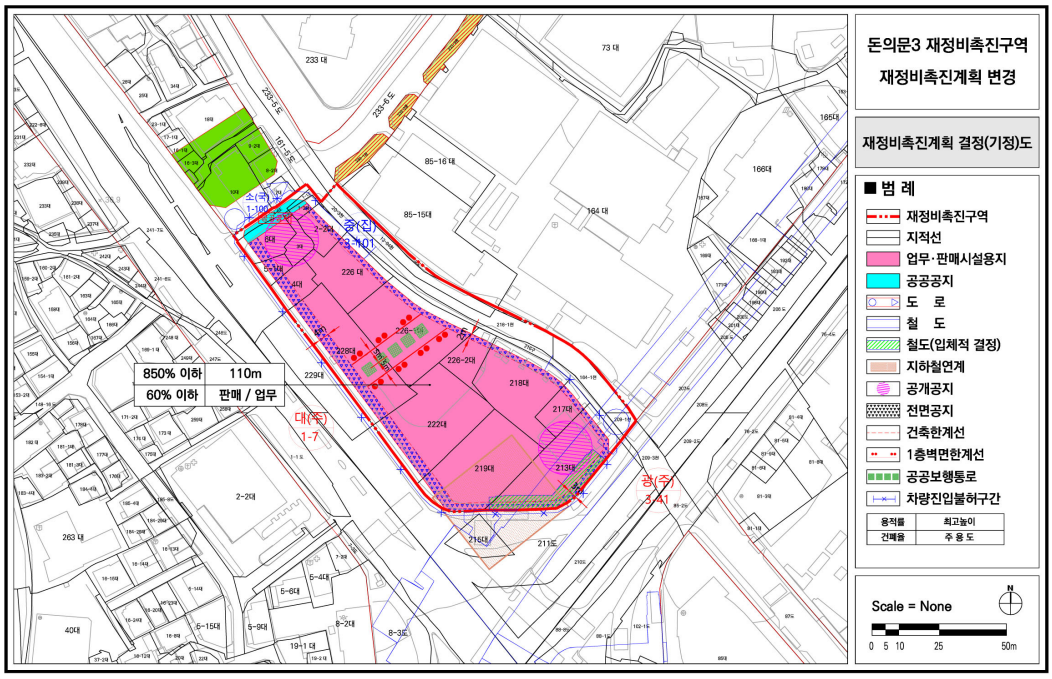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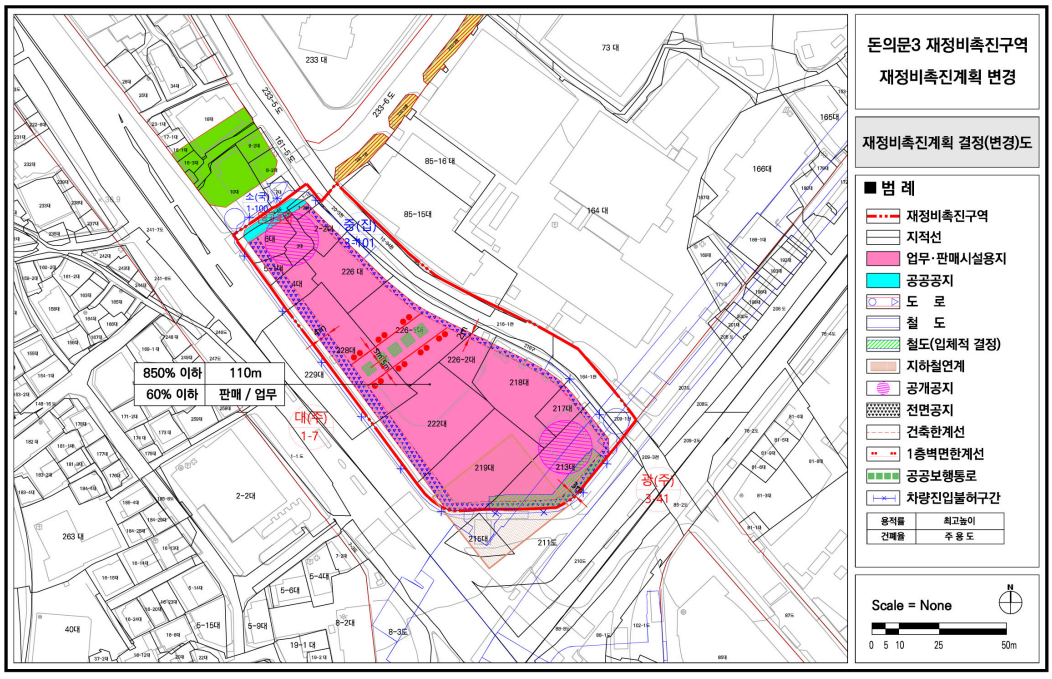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기정)도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05호

도시관리계획(중구 황학동 2085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황학동 2085번지 일원에 대하여 2020년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0.5.13.)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황학동 2085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중구 황학동 2085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심 주거 공급 및 노후한 주거환경 개선 등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중구 황학동 2085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구 황학동 2085번지 일원	-	증) 6,256.5	6,256.5	

■ 결정사유서

구분	위치	결정내용	결정사유	비고
신설	중구 황학동 2085번지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중구 황학동 일원에 도심 주거 공급 및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하고자 함.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결정(변경)조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18	15	국지도로	860 (36)	황학동 1205	황학동 2472-1	일반도로		건설부고시177 (1962.12.08.)	
기정	소로	1	(-)	9	국지도로	330 (101)	황학동 1596-1	황학동 1835	일반도로		(1983.2.24)	
기정	소로	3	(-)	6	국지도로	142 (57)	황학동 1221	황학동 1750	일반도로		(2010.06.30)	
기정	소로	1	(-)	6	국지도로	402 (110)	황학동 1121	황학동 2072	일반도로		(2010.06.30)	
변경	소로	1	(-)	6	국지도로	402 (110)	황학동 1121	황학동 2072	일반도로		-	도로선형 조정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 수치임

■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소로1-(-)	소로1-(-)	• 도로 선형 일부조정	• 사업대상지 내 포함된 일부 도로선형을 조정하여 대상지 및 주변지역 교통흐름을 개선하고자 함.

나.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조서

■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구 분	규 모 (㎡)			관리청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공청사	중구 황학동 2085번지	대지지분(㎡)	-	283.0	283.0	서울시	사업시행자가 시설 설치 후 서울시에 기부채납
				층	-	지상 4층	지상 4층		
				연면적(㎡)	-	1,981.0	1,981.0		

주1) 입체적 결정하는 공공청사 연면적은 전용·공용·부대시설을 합한 면적이며, 조성계획은 추후 사업계획 확정 시 변경될 수 있음.

주2) 공공청사 제공위치, 설비, 세부용도 등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승인시 확정하여 준공 시 서울시에 기부채납해야 함.

■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정 사유
①	공공청사	• 위치 : 지상4층 • 제공면적 : 855.90㎡ (연면적 : 1,981.0㎡) - 환산부지면적 : 572.90㎡ , 대지지분 : 283.0㎡	•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청사를 사업대상지 내 지상4층에 설치·제공 하고자 함.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가구 및 획지 결정조서

구분	획지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	
신설	①	6,069.0	중구 황학동 2085번지 일원	6,069.0	

■ 결정사유서

구분	획지번호	결정내용	결정사유	비고
신설	①	• 획지단위개발 지정 - 중구 황학동 2085번지 일원	• 중구 황학동 2085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획지단위개발 지정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 건축물 용도 결정조서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허용용도(가)	• 공동주택(주거복합) • 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	
불허용도(a)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단, 주거복합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 숙박시설(단, 관광숙박 제외), 위락시설, 장례시설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요양병원 •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자동차 관련시설(단, 주차장 제외) • 교정시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설	

■ 상업지역내 건축물용도 비율 적용기준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	•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 : 350% 이하 •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증가하는 용적률의 1/2에 해당하는 용적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중심상업지역 및 역사도심을 제외한 일반상업지역 : 525% 이하 - 임대주택 도입용도 : 공공임대주택	

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12호(2019.9.19.)에 따라 적용.

나. 건축물의 개발밀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1) 건폐율 계획

■ 건폐율 결정조서

구 분	건 폐 율	비고
일반상업지역	• 6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준용

2) 용적률 계획

■ 용적률 결정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주)	
일반상업지역	• 600% 이하	• 700% 이하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토지)+(0.7×α현금·건축물)]	

주)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토지)+(0.7×α현금·건축물)]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 용적률
- α토지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제공면적 비율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는 ‘기부채납 부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 토지지분’ 포함
- α현금·건축물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 등 부지(현금 및 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 제공 면적 비율

※ 환산부지 면적(㎡) = $\frac{\text{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원)} + \text{현금기부채납비용(원)}}{\text{용적률을 완화받고자 하는 부지가액(원/㎡)}}$

■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적용기준

•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
= (주거부문 용적률(400%) / 상업지역 용적률) × 지구단위계획 허용용적률 = (400% / 800%) × 700% = 350%
•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
= (주거부문 용적률(600%) / 상업지역 용적률) × 지구단위계획 허용용적률 = (600% / 800%) × 700% = 525%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3항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 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12호(2019.9.19.)에 따라 적용.

■ 상업지역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 적용 기준

• 상업지역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용적률의 10%이상 계획 (지상부 설치)

3)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1-4-5 허용용적률인센티브 계획에 따른 계획유도 및 친환경인센티브 적용
• 계획유도 인센티브 : 지구단위계획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규제적 성경의 인센티브 항목과 유도적 인센티브 항목으로서 해당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70이내 기준으로 계획
• 친환경 인센티브 : 환경친화적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인센티브로서 해당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30 이상에서 계획
• 적용기준 : 기준용적률 + Σ(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구분	항목	세 분	세 부 계 획 기 준		비고
계획유도 인센티브	대지내 공 지	공개공지	•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3 이내		• 조성 형태(필로티, 개방형 구조 등)에 따라 계수 조정 가능 (필로티구조 요율 = 2 이내)
		쌈지형공지, 침상형 공지	•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3 이내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벽면선	•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3 이내		
		공공보행통로(보차혼용통로)	•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4 이내		
	건축물 용 도	지정 또는 권장	• 기준용적률×(지정 · 권장용도 면적/연면적)×1 이내		• 20%이상 설치시 (주차장 제외)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 기준용적률×0.1 이내		• 가로활성화 상업용도 등 별도 결정한 경우 • 1층 벽면길이 및 바닥면적의 1/2 이상 설치시
	보 행 개 선	가로지장물 지중화 또는 이전설치, 지하연결통로 설치 등	• 기준용적률×0.5 이내		• 건물내부 또는 대지내 설치시
	건축물 개 방	건축물내 공익시설 설치	• 기준용적률×(제공면적/연면적)×4 이내		•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계획 수립시 결정한 시설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자치구 포함)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
친환경 인센티브	환경친화 에너지 효율화	녹색건축 인증	• 최우수(그린 1등급) : 기준용적률 × 0.12 이내 • 우수(그린 2등급) : 기준용적률 × 0.08 이내 • 우량(그린 3등급) : 기준용적률 × 0.04 이내	• 세기준 모두 1등급 만족시 : 기준용적률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 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준용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 에너지 효율 1등급 : 기준용적률 × 0.08 이내 • 에너지 효율 2등급 : 기준용적률 × 0.06 이내 • 에너지 효율 3등급 : 기준용적률 × 0.04 이내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의무 대상 준수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	• 신재생 에너지 1등급 : 기준용적률 × 0.12 이내 • 신재생 에너지 2등급 : 기준용적률 × 0.10 이내 • 신재생 에너지 3등급 : 기준용적률 × 0.08 이내 • 신재생 에너지 4등급 : 기준용적률 × 0.06 이내 • 신재생 에너지 5등급 : 기준용적률 × 0.04 이내	× 0.4이내	•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규칙 준용 – 건축물 인증 심사기준(별표1) • 공급률로 등급판정 대체 가능
		중수도 시설설치	• 기준용적률 × 0.04 이내		– 총 사용량의 10% 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적용 – 관련법상 의무 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관리 시설설치	• 기준용적률 × 0.04 이내		–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 침투량(ton/hr)의 합이 건축면적 × 0.05 또는 대지면적 × 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옥상녹화	•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1이내		–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까지만 허용
		자연지반 보존	• 기준용적률 × (보존면적 / 대지면적) × 0.2이내		– 자연토양 및 투수성 포장 – 지하구조물 미설치시
		녹색주차장	•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0.2이내		– 기준용적률 × 0.05 이내

4) 높이 계획

■ 건축물 높이 결정조서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기준높이	55m 이하	
최고높이	63m 이하	
기준높이 완화	기준높이 × [1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 결정사유서

구분	결정내용	결정사유	비고
신설	• 기준높이 55m 이하 • 최고높이 63m 이하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017.7.13.)을 준용하여 건축물 최고높이 적용 • 기준높이 완화 산식 = 기준높이 × [1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다.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 결정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 마장로9길변(20m) : 3m	
	• 난계로17길변(12m) : 3m	
	• 마장로13길변(6m), 난계로15길변(6m) : 2m	

라.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 전면공지 결정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후퇴부분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조성	
쌈지형공지	• 주요 보행결절점인 마장로9길(20m)과 난계로17길(12m)변 가각부에 쌈지형 공지 조성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가.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교통처리계획	• 마장로9길변(20m) : 차량출입 불허구간 설정	

나.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의 기준에 따른 주거용적률 완화 대상 공공임대주택 - 건축비는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로 매입 협의, 토지는 기부채납 제공	

다. 공공시설 등 조성 및 제공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공시설 등 조성 및 제공	• 순부담률 : 16.6%(1,043.4㎡) - 도로 : 187.5㎡ - 공공청사(환산부지+대지지분) : 855.9㎡	

※ '도로면적은 향후 측량성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공공청사는 결정범위 내에서 서울시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승인시 확정하여 준공 시 서울시에 기부채납해야 함.

4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

1.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처리 등) 및 제 68조(권한의 위임) 등의 규정에 의한다.

경미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 · 용도지구 또는 도시 ·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가구(영 제4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 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7. 건축선 또는 차량출입구의 변경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
8. 건축물의 배치 · 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9.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0.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중 주차장 출입구, 차량 출입구 또는 보행자 출입구의 위치 변경 및 보행자 출입구의 추가 설치
11.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 · 깊이 · 배치 또는 규모
12. 대문 · 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13. 간판의 크기 · 형태 · 색채 또는 재질
14. 장애인 · 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획
15.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16. 생물서식공간의 보호 · 조성 · 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17.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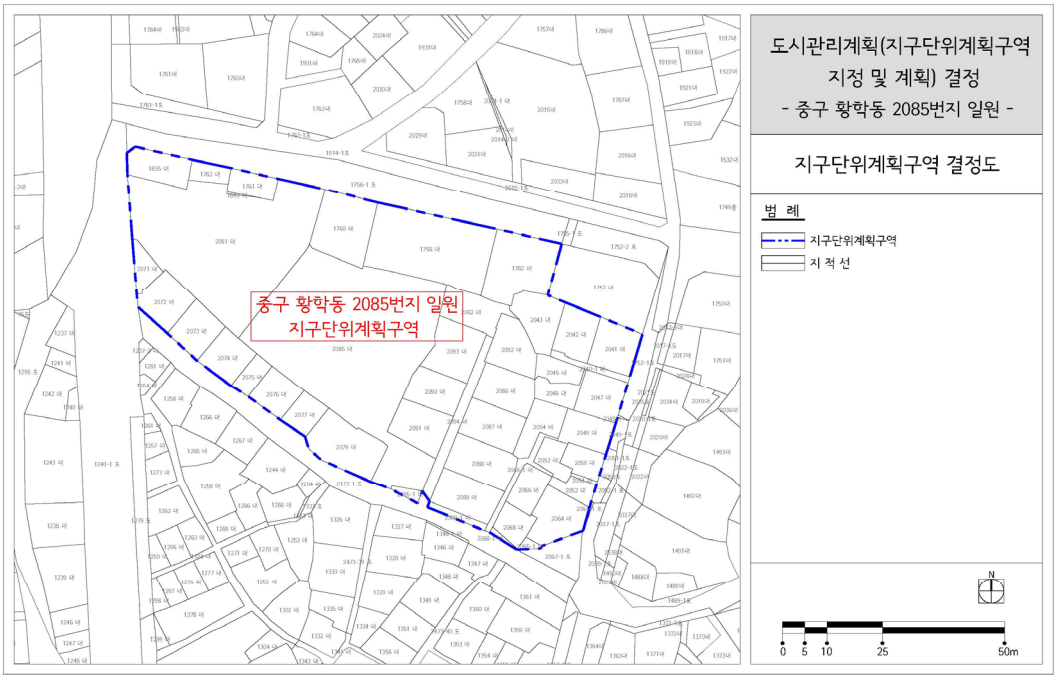
※ 향후 관련지침 및 법령이 제정 · 개정 또는 변경될 경우 제정 · 개정 또는 변경된 지침 및 법령을 적용함

• 영 제25조 제4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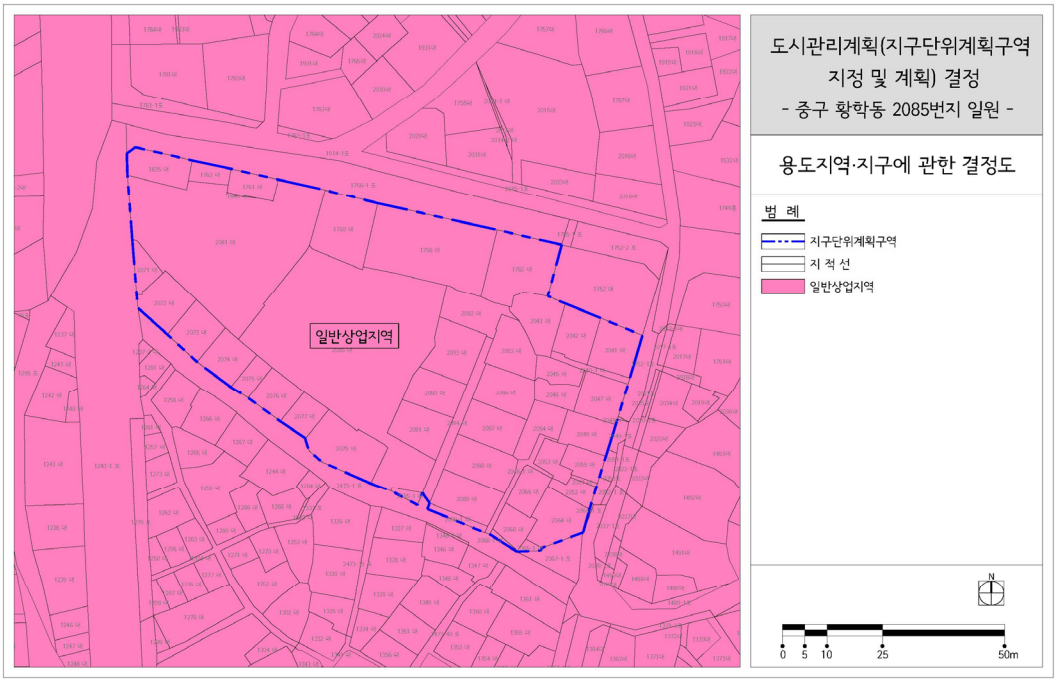
1. 대지의 분할 · 교환에 관한 사항
2. 공개공지, 쌈지형공지, 대지내 통로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
3.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의 변경
4. 수종 · 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5. 구역과 연접한 필지의 공동개발(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6. 건축선에 접해야 하는 건축물 벽면에 관한 사항
7. 필지면적의 20% 이내에서의 필지분할가능선의 변경
8. 통로의 성격 · 설계계획 (보행자 및 차량전용 통로의 위치 변경 및 신규 설치)
※ 다만, 용도지역 · 용도지구 · 도시 · 군계획시설 · 가구면적 · 획지면적 · 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

Ⅲ. 관계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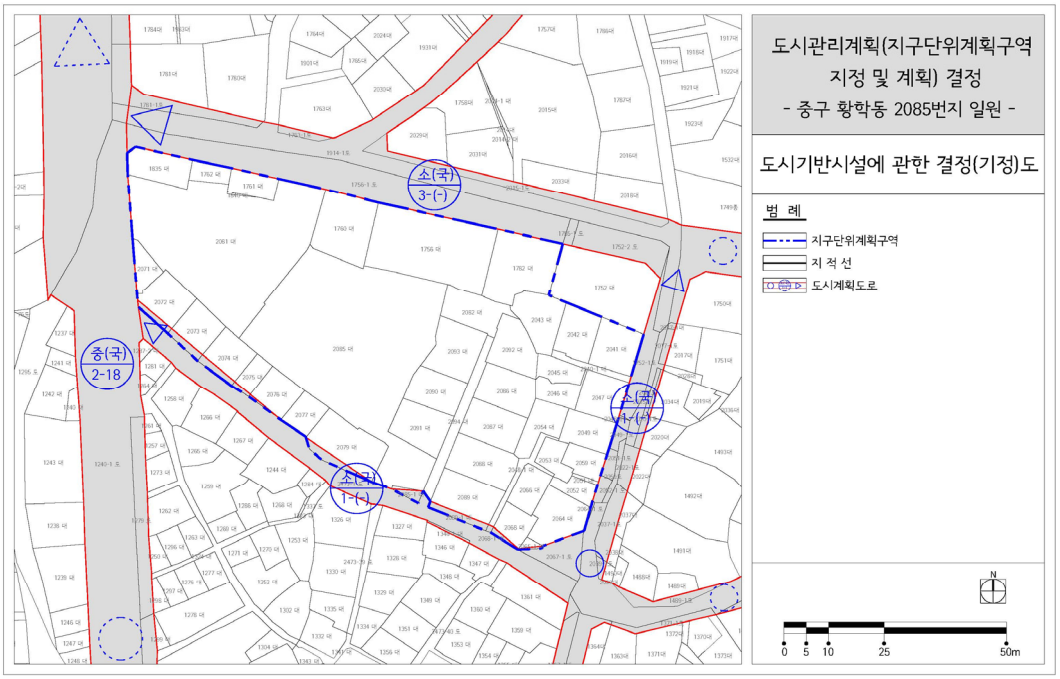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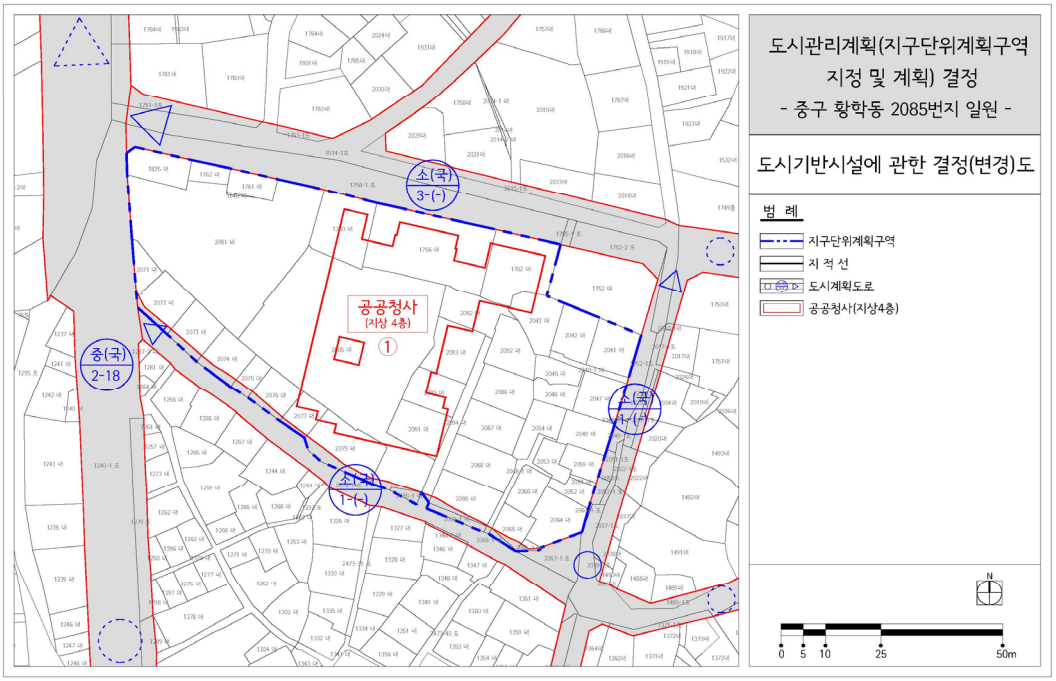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도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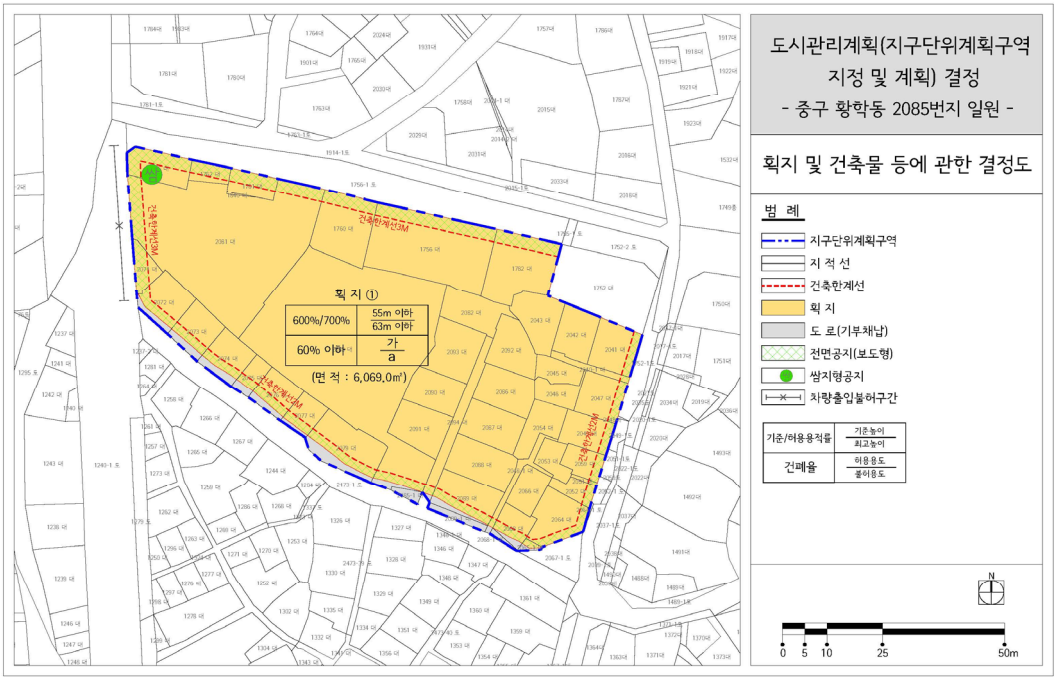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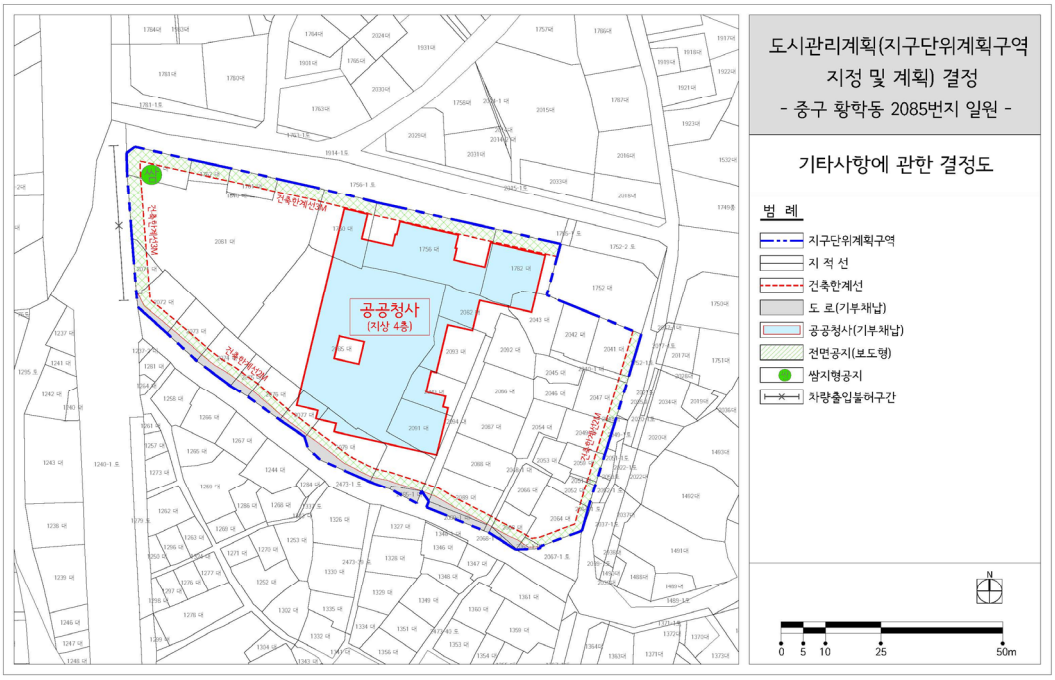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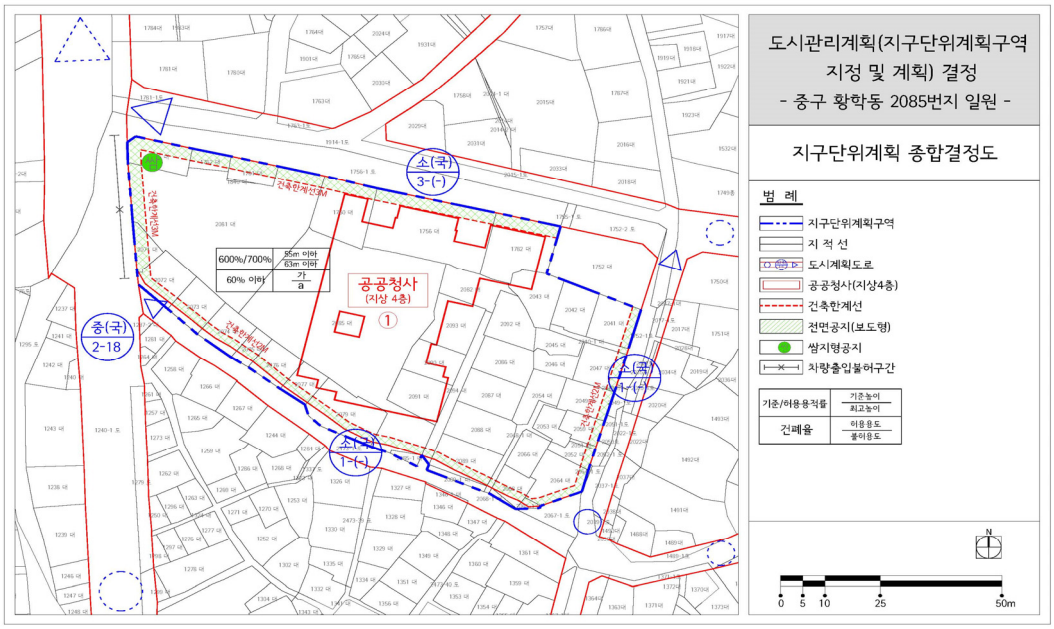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도



■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06호

『이문 · 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문생활권 · 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96호(2008.1.7) 및 제2009-93호(2009.03.12), 제2009-529호(2009.12.24), 제2010-365호(2010.10.21), 제2011-198호(2011.07.14), 제2011-210호(2011.7.21.), 제2011-397호(2011.11.29.), 제2012-78호(2012.4.5), 제2012-162호(2012.06.28.), 제2012-359호(2012.12.27.), 제2013-263호(2013.08.08.), 제2014-89호(2014.03.13.), 제2014-290호(2014.08.21.), 제2014-373호(2014.10.30.), 제2015-20호(2015.01.22.), 제2015-206호(2015.7.16.), 제2015-325호(2015.10.22.), 제2016-122호(2016.04.21.), 제2016-148호(2016.05.26.), 제2016-233호(2016.8.4.), 제2016-285호(2016.9.8.) 제2016-360호(2016.11.10.), 제2016-379호(2016.11.17.), 제2017-13호(2017.1.12.), 제2017-189호(2017.6.1.). 제2018-93호(2018.3.29.), 제2018-124호(2018.4.26.), 제2018-218호(2018.7.19.),제2019-19호(2019.1.17.), 제2019-103호(2019.3.21.), 제2019-163호(2019.5.23.), 제2019-241호(2019.7.25.), 제2019-264호(2019.8.8.), 제2019-280호(2019.8.22.), 제2019-309호(2019.9.19.), 제2020-59호(2020.2.13.), 제2020-255호(2020.6.18.), 제2020-264호(2020.6.25.)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지형도면 작성 고시된 이문·휘경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이문·회기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용도 비율, 임대주택 추가 확보에 따른 주거용적률 등 완화하는 사항을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내 이문생활권, 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에 적용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적률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임

Ⅱ.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기 정</th><th>변 경</th></tr>
<tr><th colspan="2">결정조서</th></tr>
<tr><td>1 이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1.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안)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
나) 건축물 개발밀도 계획</td><td>■ 용적률 계획 결정(기정)
<table>
<tr><th colspan="2" rowspan="2">위 치</th><th colspan="3">계획내용</th><th rowspan="2">비 고</th></tr>
<tr><th>기준 용적률</th><th>허용 용적률</th><th>상한 용적률</th></tr>
<tr><td>준주거지역</td><td>간선도로변 및 이면부</td><td>300%이하</td><td>360%이하</td><td>400%이하</td><td></td></tr>
<tr><td>일반상업지역</td><td>이문로변</td><td>600%이하</td><td>800%이하</td><td>법정용적률 2배이하</td><td></td></tr>
</table>
주1) 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의 내용을 준용
주2) 상한용적률은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산식에 따르며, 조례 개정 시 개정된 규정에 따른다.
주3)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 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용적률의 10% 이상
※기존 준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지역 모두 적용. 단, 준주거지역내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기숙사 등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는 제외
※용적률 10%이상 설치는 지상부 설치를 의미
주4)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 건축물 용적률 기준
용적률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50% 이하 적용
-주거부분이라 함은 공동주택(아파트), 노인복지주택 중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대상을 말함
주5)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 건립 시 주거 대 비주거 용적률 배분방법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기준 용적률</th><th rowspan="2">허용 용적률</th><th colspan="2">상한용적률 배분</th></tr>
<tr><th>주거건립</th><th>비주거건립</th></tr>
<tr><td rowspan="2">준주거지역</td><td rowspan="2">300%</td><td rowspan="2">360%</td><td>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x α/β</td><td>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x (β-α)/β</td></tr>
<tr><td colspan="2">α : 허용용적률에서 주거비율, β : 상한용적률</td></tr>
<tr><td rowspan="2">일반상업지역</td><td rowspan="2">600%</td><td rowspan="2">800%</td><td>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x 7/10</td><td>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x 3/10</td></tr>
<tr><td colspan="2">기부채납에 의해 증가되는 용적률 배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의 용도용적제 적용</td></tr>
</table>
주6)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적용기준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 준용
주7) 주차장은 주차장 관련 법률에 따름</td><td>■ 용적률 계획 결정(기정)
<table>
<tr><th colspan="2" rowspan="2">위 치</th><th colspan="3">계획내용</th><th rowspan="2">비 고</th></tr>
<tr><th>기준 용적률</th><th>허용 용적률</th><th>상한 용적률</th></tr>
<tr><td>준주거지역</td><td>간선도로변 및 이면부</td><td>300%이하</td><td>360%이하</td><td>400%이하</td><td></td></tr>
<tr><td>일반상업지역</td><td>이문로변</td><td>600%이하</td><td>800%이하</td><td>법정용적률 2배이하</td><td></td></tr>
</table>
주1) 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의 내용을 준용
주2) 상한용적률은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산식에 따르며, 조례 개정 시 개정된 규정에 따른다.
주3)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 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용적률의 10% 이상
※ 기존 준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지역 모두 적용. 단, 준주거지역 내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기숙사 등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는 제외
※ 용적률 10%이상 설치는 지상부 설치를 의미
주4) 준주거지역내 주거복합 건축물 용적률 기준
용적률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50% 이하 적용
-주거부분이라 함은 공동주택(아파트), 노인복지주택 중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대상을 말함
주5)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 건립 시 주거 대 비주거 용적률 배분방법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기준 용적률</th><th rowspan="2">허용 용적률</th><th colspan="2">상한용적률 배분</th></tr>
<tr><th>주거건립</th><th>비주거건립</th></tr>
<tr><td>준주거지역</td><td>300%</td><td>360%</td><td>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x α/β</td><td>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x (β-α)/β</td></tr>
<tr><td colspan="4">α : 허용용적률에서 주거비율, β : 상한용적률</td></tr>
</table>
주6)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적용기준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 준용
주7) 주차장은 주차장 관련 법률에 따름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별도로 100%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할 수 있다.
- 이 경우 주3)은 증가되는 용적률 부분을 제외하여 적용하고, 주4)는 적용하지 않음
- 이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취지, 인근지역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m이내에서 높이계획을 완화할 수 있다.
- 건축물 용도 중 공동주택이 불허용도로 지정된 경우에는 적용에서 제외한다.
※ 부칙 (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 등 관련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며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td></tr>
</table>

2 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

1.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안)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

나) 건축물 개발밀도 계획

■ 용적률 계획 결정(기정)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준주거지역	간선도로변 및 이면부	300%이하	360%이하	400%이하	
일반상업지역	이문로변	600%이하	800%이하	법정용적률 2배이하	

주1) 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의 내용을 준용

주2) 상한용적률은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산식에 따르며, 조례 개정 시 개정된 규정에 따른다.

주3)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 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용적률의 10% 이상

※기존 준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지역 모두 적용. 단, 준주거지역내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기숙사 등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는 제외

※용적률 10%이상 설치는 지상부 설치를 의미

주4)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 건축물 용적률 기준

용적률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50% 이하 적용
-주거부분이라 함은 공동주택(아파트), 노인복지주택 중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대상을 말함

주5)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내 건축물 건립 시 주거 대 비주거 용적률 배분 방법

구분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용적률 배분	
			주거건립	비주거건립
준주거지역	300%	360%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x α/β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x (β-α)/β
			α : 허용용적률에서 주거비율, β : 상한용적률	
일반상업지역	600%	800%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x 7/10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x 3/10
			기부채납에 의해 증가되는 용적률 배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의 용도용적제 적용	

주6)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적용기준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 준용

주7)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H13-③(휘경동 192-1, 192-6, 192-13)에 한하여 주2), 주3), 주4), 주5)는 적용하지 않으며, 비주거 비율 15%미만(용적률기준)으로 설치할 수 있음

■ 용적률 계획 결정(변경)(안)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준주거지역	간선도로변 및 이면부	300%이하	360%이하	400%이하	
일반상업지역	이문로변	600%이하	800%이하	법정용적률 2배이하	

주1) 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의 내용을 준용

주2) 상한용적률은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산식에 따르며, 조례 개정 시 개정된 규정에 따른다.

주3)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 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용적률의 10% 이상

※기존 준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지역 모두 적용. 단, 준주거지역 내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기숙사 등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는 제외

※용적률 10%이상 설치는 지상부 설치를 의미

주4)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 건축물 용적률 기준

용적률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50% 이하 적용
-주거부분이라 함은 공동주택(아파트), 노인복지주택 중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대상을 말함

주5)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 건립 시 주거 대 비주거 용적률 배분 방법

구분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용적률 배분	
			주거건립	비주거건립
준주거지역	300%	360%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x α/β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x (β-α)/β
			α : 허용용적률에서 주거비율, β : 상한용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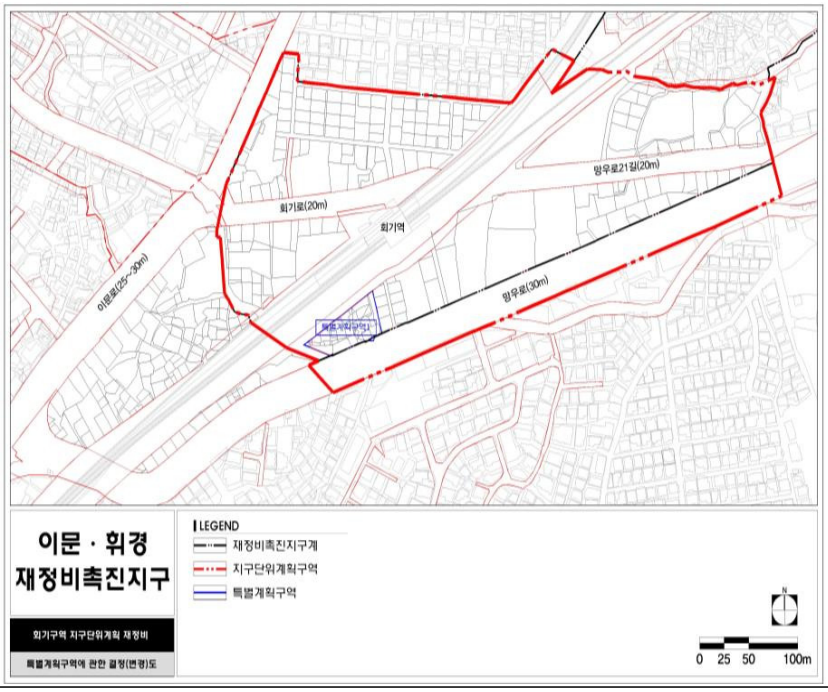
주6)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적용기준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 준용

주7)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H13-③(휘경동 192-1, 192-6, 192-13)에 한하여 주2), 주3), 주4), 주5)는 적용하지 않으며, 비주거 비율 15%미만(용적률기준)으로 설치할 수 있음

주8)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22항에 따른 준주거지역 내 임대주택 확보 시 적용기준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별도로 100%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할 수 있다.
- 이 경우 주3)은 증가되는 용적률 부분을 제외하여 적용하고, 주4)는 적용하지 않음
- 이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취지, 인근지역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m이내에서 높이계획을 완화 할 수 있다.
- 건축물 용도 중 공동주택이 불허용도로 지정된 경우에는 적용에서 제외한다.
※ 부칙 (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 등 관련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며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Ⅲ.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도(이문생활권중심, 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이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07호

서울 휴먼타운(북가좌동)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13호(2011.10.20.)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된 서대문구 북가좌동 휴먼타운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제17조에 의거 서울 휴먼타운(북가좌동)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 취지
   가. 서대문구 산후조리원 공급을 확대하고 사회적 불평등 완화의 복지적 의미의 서비스 제공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므로써,
   나. 산후조리원 부족과 저출산 문제 해결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서울 휴먼타운(북가좌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서대문구 북가좌동 330-6 일원	43,560	-	43,560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대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대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가) 대지규모

구분	적용범위	계획내용	비고
최대개발규모	지구단위계획 구역 전체	330㎡ 이하	• 최대개발규모 30%이내 범위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적용 • 최대개발규모 적용의 예외 - 기존 대지규모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한 경우 - 이미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공동개발이 진행된 경우 - 결정고시 이전 동일소유필지인 경우(3필지 이내) - 획지선에 따른 공동개발을 진행하는 경우(추가)

나) 자율적 공동개발 : 변경없음
다) 대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가구	비고
1	변경없음
2	변경없음
3	26필지 → 1획지(3필지) + 23필지
4	변경없음
5	변경없음
6	변경없음
7	변경없음

가구	지번	면적(㎡)	비고	지번	면적(㎡)	비고
3	337-1	161.7	변경없음	337-19	130.2	변경없음
	337-2	189.1	획지①	337-20	115.0	
	337-3	108.1		337-22	90.3	
	337-4	266.4		337-24	106.8	
	337-6	520.3	변경없음	337-26	129.9	
	337-7	127.3		337-27	126.0	
	337-8	153.1		337-28	85.0	
	337-9	123.3		337-30	151.3	
	337-10	140.8		337-31	166.4	
	337-11	124.9		337-35	175.3	
	337-12	338.2		337-37	146.8	
	337-15	167.3		337-38	130.2	
	337-16	94.5		337-39	93.6	

※ 상기면적은 토지대장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추후 측량성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건축물에 관한 결정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비고
허용용도 A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 공공업무시설) 추가
허용용도 B	변경없음
허용용도 C	변경없음
허용용도 D	변경없음

구분	허용용도		적용기준
허용용도 A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1층 근생시설 허용 (허용B : 근생)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산후조리원, 공공업무시설	획지①에 한함

※ 기존용도가 허용용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기본용도의 범위 내에서 존치는 허용
※ 건축물 리모델링에 의한 증축된 면적은 기존용도 범위 내에서 허용
※ 리모델링시 층수 증가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 허용(예 : 연립:4층이하 → 아파트:5층이상)
※ KT부지는 주거용도, 오피스텔용도 불허

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3) 건축물의 배치·형태 및 외관·건축선에 관한 결정

가)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나)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4) 건축물의 외부공간에 관한 결정조서

가) 대지안의 조경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나)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다) 주차장 설치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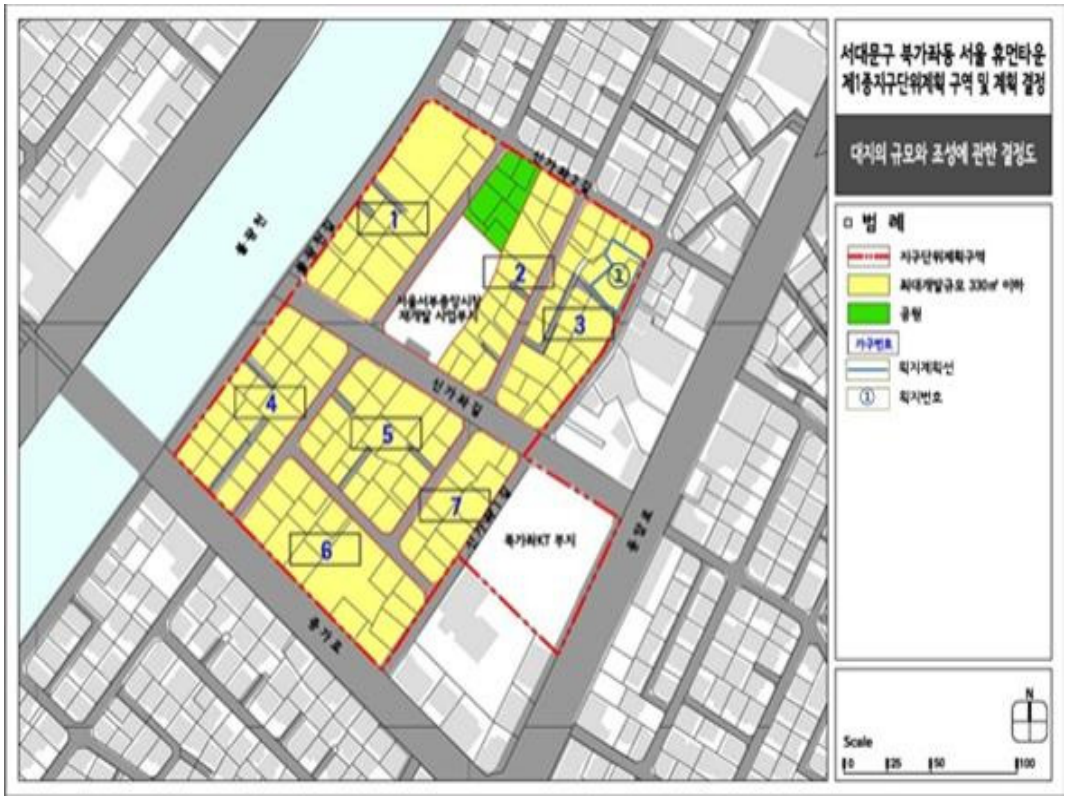
라) 담장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마) 시설물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5)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가) 옥외 광고물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나) 환경친화적 건축물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다) 주민약속(협정)에 간한 계획 : 변경없음

라.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
1)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마.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3. 관련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가.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 02-2133-7247)
나. 서대문구 도시계획과(☎ 02-330-1964)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08호

신내어울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2005-298호(2005.9.23.)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최초 지정되었으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55호(2011.10.10.)로 최종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신내어울근린공원에 대하여 생태학습원 조성을 위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신내어울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공원 내 생태학습원을 조성하여 자연과 환경의 변화와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균형과 조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주민교육시설로 활용하고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함

2. 공원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315 일대
3. 공원면적 : 12,915.6㎡
4. 조성계획 결정 조서 및 도면 : 따로붙임

※ 첨부된 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관계도면은 열람 장소에 비치)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2133-2067) 및 중랑구 공원녹지과(☎2094-2356)에서 관련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신내어울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중랑구 신내동 315번지 일대)

구분		당초						변경						비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동수(동)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동수(동)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총 계		12,915.60	4,453.85				30	12,915.60	5,023.69	1	339.40	765.35	60	
기반시설	소계	659.14	659.14					982.86	982.86					(증 323.72)
	도로	582.18	582.18					540.45	540.45					(감 41.73)
	광장	76.96	76.96					442.41	442.41					(증 365.45)
휴양시설		2,892.71	2,892.71				18	2,666.90	2,666.90				17	(감 225.81)
운동시설		902.00	902.00				12	902.00	902.00				12	
교양시설								339.40	339.40	1	339.40	765.35		(증 339.40)
편익시설								132.53	132.53					(증 132.53)
관리시설													31	기존시설 반영
녹지 및 기타		8,461.75						7,891.91						(감 569.84)
공원시설률 (법정 40%이하)		(4,453.85 / 12,915.6)×100 = 34.48%						(5,023.69 / 12,915.6)×100 = 38.90%						증 4.42%
공원건폐율 (법정 20%이하)		(0 / 12,915)×100 = 0%						(339.40 / 12,915.6)×100 = 2.63%						증 2.63%

2.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당초									변경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합계				12,915.60	4,453.85					30			12,915.60	5,023.69		1동	339.40	765.35	60	
도로 및 광장	소계		신내동 315번지 일원	659.14	659.14							신내동 315번지 일원	982.86	982.86						증 323.72
	도로			582.18	582.18								540.45	540.45						감 41.73
	광장			76.96	76.96								442.41	442.41						증 365.45
	진입광장1	가		(76.96)	(76.96)						가		(76.96)	(76.96)						
	진입광장2												(365.45)	(365.45)						신설
휴양시설	소계			2,892.71	2,892.71								2,666.90	2,666.90					17	감 225.81
	휴게시설1	나		313.10	313.10						나		313.10	313.10						
	휴게시설2	다		2,353.80	2,353.80						다		2,353.80	2,353.80						
	휴게시설3	라		225.81	225.81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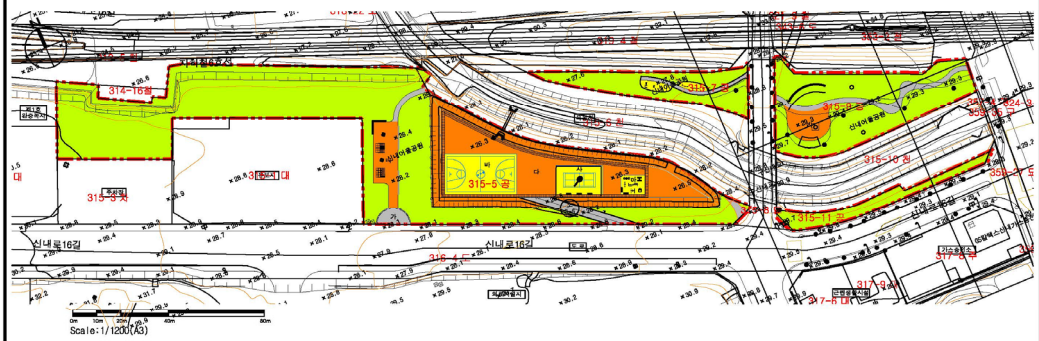
	파고라	①								3	①							2	
	등의자									10	②							10	
	평의자									5	③							5	
운동시설	소계			902.00	902.00					12			902.00	902.00				12	
	운동시설1	마		78.00	78.00						마		78.00	78.00					
	운동시설2	바		510.00	510.00						바		510.00	510.00					
	운동시설3	사		234.00	234.00						사		234.00	234.00					
	운동시설4	아		80.00	80.00						아		80.00	80.00					
	다리올리기									1	④							1	
	철봉매달리기									1	⑤							1	
	윗몸일으키기									1	⑥							1	
	팔굽혀펴기									1	⑦							1	
	링잡고매달려건너기									1	⑧							1	
	허리돌리기									1	⑨							1	
	역기내리기									1	⑩							1	
	노젓기운동									1	⑪							1	
	달리기운동									1	⑫							1	
	공중걷기									1	⑬							1	
	상체근육풀기									1	⑭							1	
	허리돌리기									1	⑯							1	
교양시설	생태학습원												339.40	339.40	철근콘크리트	지하1층/지상2층	339.40	765.35		증 339.40
편익시설	주차장												132.53	132.53						증 132.53
관리시설	소 계																		31	
	안내판																		5	기존시설반영
	CCTV																		1	기존시설반영
	공원등																		25	기존시설반영
녹지및기타				8,461.75									7,891.91							감 569.84

3. 도로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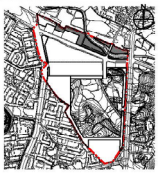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m²)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272.00)	(582.18)				
변경					(264.32)	(540.45)				
당초	소로	소 계			(272.00)	(582.18)				
변경					(264.32)	(540.45)				
당초		3류	1	(2)	(53.00)	(278.97)	진입로	구역계	바	
변경		3류	1	2	(21.00)	(188.60)	진입로	구역계	녹지	
당초		3류	2	(3)	(60.00)	(72.88)	진입로	구역계	소3-6	
당초		3류	3	(3)	(107.00)	(153.49)	진입로	구역계	소3-5	
당초		3류	4	(2)	(17.00)	(34.34)	연결로	소3-3	다	
당초		3류	5	(4)	(35.00)	(42.50)	진입로	구역계	(저류시설)	
신설		3류	6	(2)	(24.32)	(48.64)	연결로	광장	소로	

공원조성계획도 (당초)

신내어울근린공원



Key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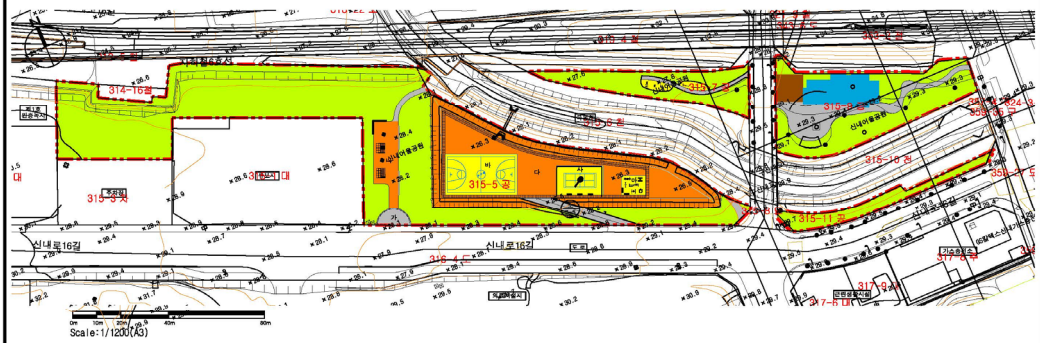
시 설 조 서

구 분	기호	시 설 명	부지 면적	수 량	비 고
계		신내어울근린공원	12,915.60 M2		
시설면적 계		소 계	4,453.85 M2		
기반시설		소 계	859.14 M2		
		도 로	582.18 M2		
	가	광 장	76.96 M2		
휴양시설		소 계	2,882.71 M2		
	나	휴게시설1	313.10 M2		
	다	휴게시설2	2,353.80 M2		
	라	휴게시설3	225.81 M2		
	①	화 장 실		3 개소	
		음 수 전		10 개소	
		경 의 실		5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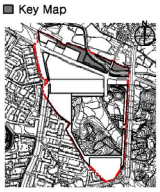
구 분	기호	시 설 명	부지 면적	수 량	비 고
운동시설		소 계	902.00 M2		
	마	운동시설1	78.00 M2		
	바	운동시설2	510.00 M2		
	사	운동시설3	234.00 M2		
	아	운동시설4	80.00 M2		
녹지 및 기타			8,461.75 M2		

공원조성계획도 (변경후)

신내어울근린공원



Key Map



시 설 조 서

구 분	기호	시 설 명	부지 면적	수 량	비 고
계		신내어울근린공원	12,915.60 M2		
시설면적 계		소 계	5,023.69 M2		
기반시설		소 계	866.87 M2		
		도 로	540.45 M2		
	가	광 장	76.96 M2		
			265.45 M2		
휴양시설		소 계	2,686.90 M2		
	나	휴게시설1	313.10 M2		
	다	휴게시설2	2,353.80 M2		
	①	화 장 실		2 개소	
		음 수 전		10 개소	
		경 의 실		5 개소	

구 분	기호	시 설 명	부지 면적	수 량	비 고
운동시설		소 계	902.00 M2		
	마	운동시설1	78.00 M2		
	바	운동시설2	510.00 M2		
	사	운동시설3	234.00 M2		
	아	운동시설4	80.00 M2		
교양시설		생태학습원	339.40 M2		
편익시설		주차장	132.53 M2		
녹지 및 기타			7,691.91 M2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1978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예고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심의예고 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예 고 일 : 시보공고일
2. 예고내용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예고

종별	종목 명칭	인정 대상자		
		성 명	성별	생년월일
무형문화재 (예능/단체)	제35호 밤섬부군당도당굿 (악사)	김필홍	남	1973.01.05

3. 예고기간 : 공고일부터 30일
4. 예고사유 : 제35호 밤섬부군당도당굿 전수교육조교 인정 대상자 김필홍
   김필홍은 밤섬부군당굿이 연행되는 동안 모든 굿거리의 장단에 맞춰 피리를 연주하여 반주자로, 때로는 굿판의 지휘자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있음. 밤섬부군당도당굿에 연행되는 굿거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밤섬부군당도당굿 음악 전반뿐만 아니라 광의적 시각에서 문제를 직시하고 바람직한 전승 방안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 전승의지와 기반이 두터움을 알 수 있음.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뛰어난 연주 실력을 보유하였으며, 작고한 보유자의 학습방식에 따라 다른 이수자들을 모아 연습을 실시하고 있음. 김필홍에 대한 주변인들의 기대는 매우 높으며, 그 역시 전승과 부군당제의 보존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 이에 김필홍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35호 밤섬부군당도당굿(악사) 전수교육조교로 인정하고자 함.
5. 의견제출 : 방문제출, 팩스, 또는 우편 제출(공고일부터 30일간)
   ① 전화 : (02)2133-2616(신영문 주무관) ② 팩스 : (02)768-8873
   ③ 우편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04515).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001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구로구 오류동 9-39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9-39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7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열람 기간 : 2020. 7. 16.~ 2020. 7. 30.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

Ⅱ.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서소문2청사 14층 주택공급과 역세권사업2팀 (☎02-2133-6294)

Ⅲ.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신설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구로구 오류동 9-39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로구 오류동 9-39 외 4필지	-	증) 697.0	697.0	-

□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면 적 (㎡)	결정사유
-	구로구 오류동 9-39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697.0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생활여건이 우수한 대상지에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결정(신설)하여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기 위함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지역	소계	697.0	-	697.0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697.0	감) 697.0	-	-	
	준주거지역	-	증) 697.0	697.0	100.0	

□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 적 (㎡)	결정사유
		기 정	변 경		
-	구로구 오류동 9-39 일원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697.0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

나.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신설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가구번호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신설	-	오류동 9-39	162.0	697.0	공동개발 지정	
		오류동 9-71	165.0			
		오류동 9-123	145.0			
		오류동 9-124	175.0			
		오류동 9-125	50.0			

□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결정내용	결정사유
-	공동개발 지정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공동개발 지정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 신설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계획내용
신설	지정용도 (1)	·공동주택(주거복합)주)
	불허용도 (A)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및 다중생활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야영장 시설

주) 공동주택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결정내용	결정사유
-	지정용도 및 불허용도 결정(신설)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정용도 및 불허용도를 결정(신설)하고자 함.

나.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폐율	·60%이하	구로구 오류동 9-39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용적률	·기본용적률 : 400%이하	
	·상한용적률 : 법정용적률 이하	
최고높이	·45m 이하	

□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결정내용	결정사유
-	건축물의 밀도 결정 (신설)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축물의 밀도를 결정(신설)하고자 함.

다. 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

구분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내용	비고
공공기여율	공공시설 등 설치·제공 비율	·기본공공기여율 - 대지면적의 10% 이상 공공임대주택 제공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면적 : 72.87㎡(10.45%)	기본 용적률 400%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구로구 오류동 9-39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건축물 용도구분	비주거 비율	·15% 이하주[1]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비주거 비율 : 0%[주2](전체 연면적 대비 : 11.47%) - 지하1,2층 근린생활시설 면적 : 341.59㎡확보		
주택 건설 기준	주택규모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 이하 ·민간임대주택 : 전용 60㎡ 이하	·공공임대 : 공공지원민간임대 = 11.5%(10세대) : 88.5%(77세대) ·공공임대주택 : 10세대(11.5%) - 전용 18.10㎡, 36.13㎡ 계획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77세대(88.5%) - 전용 18.10㎡, 18.14㎡, 18.56㎡, 20.80㎡, 36.13㎡, 37.18㎡ 계획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주3]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주민 공동시설	커뮤니티 시설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00세대 미만의 경우 100㎡ 이상 주민커뮤니티시설 설치	·123.46㎡ 계획(공용세탁실, 주민회의실, 주민휴게시설)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1 준용
주2) 비주거 비율은 용적률을 기준으로 산정
주3)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준용

라. 공공기여 계획

구분	기본용적률	공공기여율	계획내용	비고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400%	·기본공공기여율 : 대지면적의 10%이상주)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면적 - 72.87㎡(10.45%)	구로구 오류동 9-39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1 준용.
※ 공공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는 시장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함

마.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적용지역	결정내용	
건축한계선	간선도로변(20m)	폭원 : 1m	·전면공지 조성 (간선도로변 보행구간 확보 및 가로변 경관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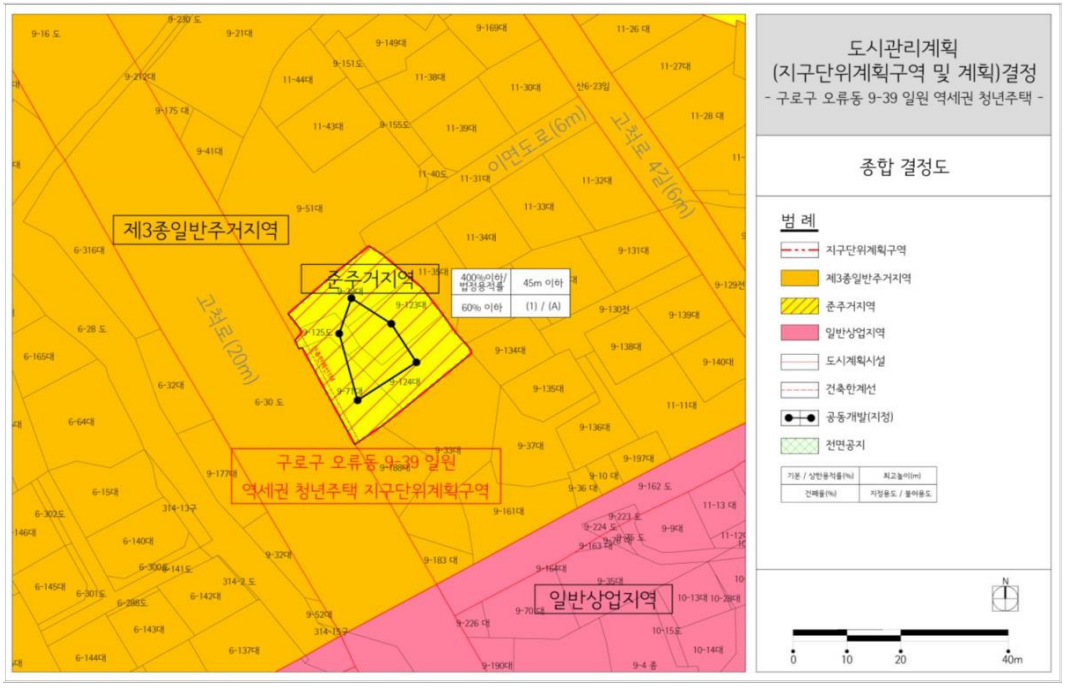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1.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계획 : 신설

가. 전면공지 결정조서

구분	적용지역	결정내용	
전면공지	간선도로변(20m)	폭원 : 1m	·건축한계선 1m 후퇴부분 전면공지 조성

□ 종합결정도



Ⅳ.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006호

도시계획시설(장충단근린공원)사업 공사완료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9호(2009.1.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88호(2018.9.6.)로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70호(2018.11.22.)로 도시계획시설(장충단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고시 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18호(2019.9.26.)로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어 제2019-375호(2019.11.14.)로 도시계획시설(장충단근린공원)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중구 장충동2가 산14-67번지 일대 장충단근린공원「국립중앙극장 지하주차장 건립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의 공사완료를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가.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산14-67번지 외 2필지(산14-68, 산14-21)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장충단근린공원)사업
   나. 사업의 명칭 : 국립중앙극장 지하주차장 건립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가. 사업의 면적 : 64,426.00㎡
   나. 사업의 규모 : 국립중앙극장 지하주차장 증축 11,024.84㎡(연면적)
   - 지상1층(188.13㎡), 지하1층(5,382.28㎡), 지하2층(5,454.43㎡)

구 분	주차대수	비 고
계	583대	-
지 상	296대	-
지 하	287대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국립중앙극장 대표 김철호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59(장충동2가)
5.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0. 6. 30.
6. 공사완료 : 2020. 05. 29.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007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보통신공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 내역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비고
1	550303	2020.06.15.	케이이피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박성진 110111.1723570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09, 태호빌딩 2층 (신당동)	분 할 합 병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공사업의 양도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공사업 양도의 신청 등)
3.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2133 - 2896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008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및 전 청문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동 통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보통신공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당 사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및 대표자	소재지		
1	200914	㈜제일운용기술 홍성철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97, 시흥산업용재유통센타 26동 2층 242,243호 (시흥동)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중급1,초급1,고급1,기능계1인 부족)	2차 영업정지 전 청문통지서

2	620140	엘앤에프그룹 주식회사 박상우, 윤만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강변로 83, 501호 (구의동)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자본금효력상실)	2차 영업정지 ('20.06.22~09.18)
3	202194	태성이엔씨(주) 임성택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480, 401호 (상봉동)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자본금효력상실)	2차 영업정지 ('20.06.22~09.18)
4	202090	주식회사 한국전기통신 박성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5로1길 20, 마곡나루역보타닉비즈타워 1213호 (마곡동)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자본금효력상실)	2차 영업정지 ('20.06.22~09.18)
5	200914	㈜제일운용기술 홍성철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97, 시흥산업용재유통센타 26동 2층 242,243호 (시흥동)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자본금효력상실)	2차 영업정지 ('20.06.22~09.18)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 제66조(영업정지, 등록취소),
동법시행령 제21조, 제50조(영업정지 등) 및 별표8의13

3. 문의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담당자: 조용성(☎(02)2133-2897, 전자우편 q369369@seoul.go.kr)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009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 내역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1	203252	2020.06.01.	엘투비솔루션주식회사 이승훈 110111.362316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9길 10, 문래에스케이브이원센터1718호1719호 (문래동6가)
2	203253	2020.06.03.	주식회사기광전기 이음복711004 110111.3714725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55길 6, 4층(일원동, 상가동)
3	203254	2020.06.03.	주식회사아크로메이트 이종엄641021 110111.1911901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61, 에이스하이엔드타워2차 1901호 (구로동)
4	203255	2020.06.03.	주식회사에스지전자통신 이혁강630925 110111.3374636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87 (가산동)

5	203256	2020.06.03.	주식회사엠넷정보통신 마인복740301 110111.4992726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21, 에이스가산타워 1111호 (가산동)
6	203257	2020.06.03.	주식회사웨이텍 (WAYTECHCO.,LTD.) 송치봉680114 110111.6919603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31, 코오롱디지털타워빌란트2차 1403-1호 (구로동)
7	203258	2020.06.08.	주식회사오션인포 강학원480926 110111.2724816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32길 36, 5층 501호(익선동, 운현신화타워)
8	203259	2020.06.08.	동양네트웍스주식회사 최장림580916 110111.7419074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326, 8층(도선동, 코스모타워)
9	203260	2020.06.12.	주식회사미미엔지니어링 김진희 110111.6919546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29길 29, 102호 (삼전동)
10	203261	2020.06.12.	주식회사동곡기정 이광선 110111.1161465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길 30, 코오롱디지털타워빌란트1차1113호,1114호 (구로동)
11	203262	2020.06.12.	주식회사씨에이에스 전영하 110111.1209413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우림라이온스밸리씨동1106,1206호 (가산동)
12	203263	2020.06.12.	비트정보통신 이종진 138-11-58521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41, 삼성IT해링턴타워 8층 805호 (가산동)
13	203264	2020.06.12.	스마트쿱주식회사 이역수 110111.4863539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49길 7, 대양빌딩 3층 (논현동)
14	203265	2020.06.19.	주식회사이어존 이용일 110111.2555386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28, 에스티엑스브이타워 7층 706호 (가산동)
15	203266	2020.06.19.	라온시큐어주식회사 (RaonSecureCo.,Ltd.) 이순형 135311.000296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45,우신빌딩11층12층13층 (역삼동)
16	203267	2020.06.19.	주식회사회산 강석기 110111.728004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45, 이앤씨드림타워8차707-2호 (가산동)
17	203268	2020.06.19.	주식회사씨와이디정보기술 육기호 110111.5050995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53길 18, 석탑오피스텔 211호 (서초동)
18	203269	2020.06.24.	리얼타임비쥬얼주식회사 이상민 110111.1839864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누리꿈스퀘어알앤디타워 803호 (상암동)
19	203270	2020.06.30.	시스코시스템즈코리아유한회사 조범구,에반슬로베스 110114-0130069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5층 (삼성동)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공사업등록의 신청 등)

3.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2133 - 2896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014호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폐업사실이 확인된 건설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이 사실을 법인의 본점 소재지와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0년 7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0.7.13.~2020.7.27.(14일간)
2. 처분대상 및 내용

업 체 명 (대 표 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처분사유	관련 법규	처분내용	처분 근거
성지종합건설㈜ (김휘성)	건축공사업 01-3988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5, 씨동 701호(문정동, 송파 한화오벨리스크)	사업자등록(168-81-00718)폐업 폐업일자 : 2019.12.31.	법 제83조	등록말소 (2020.07.31.)	법 제83조 제12호

3.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24으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016호

서울특별시 문화재 등록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등록문화재 등록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하여「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문화재 등록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문화재 등록 계획
   가. 문화재 등록 개요

등록예정 종별	등록예정 명칭	수량	조성연대	소재지
서울특별시 등록문화재	한강대교	교량 1기	1917년	용산구 한강로 3가~동작구 노량진 본동
	남산도서관	건물 1동	1964년	용산구 후암동 30-84
	보신각 앞 지하철 수준점	1기	1970년	종로구 종로 54
	뚝섬경마장	마사 2동, 마장 2동, 말 수영장1동	1954년	성동구 서울숲2길 8-15
	구 통계국 청사	건물 1동	1961년	종로구 삼일대로 467

나. 공고 사유

: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서울특별시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고자 하는 바,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고함.

[한강대교]

1917년 한강인도교(현재의 한강대교)가 준공되었다. 최초로 가설된 인도교는 중지도와 노량진간의 대교와 중지도와 한강로간의 소교로 나뉘어져 있었다. 강폭이 좁은 용산에서 노들섬 구간은 일반다리 형태로, 강폭이 넓고 수심이 깊은 노들섬에서 노량진까지의 구간은 선박통행이 가능하도록 교각 간격을 넓힌 트러스 형태로 지어졌다. 용산측 소교 188m는 1925년 7월 을축년 대홍수로 유실되어 1930년 8월 확장 재건되었다. 1936년 전차궤도 부설계획에 따라 노량진측 440m 구간의 폭이 협소하여 트러스교 상류측에 현재의 아치교를 건설에 착수하여 1937년 10월 완공했다. 그러나 1950년 6.25 전쟁 중에 부분적으로 폭파 붕괴되어 사용불능 상태가 되었다가 1958년 다시 복구되었다.

한강대교의 역사와 공사 이력은 근대 기술의 변천을 시기별로 보여준다. 구조형식은 강재를 사용한 타이드 아치와 게르보 보 형식으로 근대 교량기술의 시작점이다. 한강대교는 서울 시민과 함께 해 온 한강에서 가장 오래된 인도교로 한국전쟁 당시의 총탄 흔적이 남아 있어 한국전쟁의 참상을 되새기게 하는 교량으로써 대한민국 근현대 역사의 산 증거이자 우리나라 교량기술 발전의 복합적인 상징물로 서울시등록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있다.

[남산도서관]

남산도서관은 경성부고시 제19호로 경성부립도서관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1922년 10월 정식 발족한 경성부립도서관의 맥을 잇고 있다. 1927년 5월 24일 소공로 대관정 건물로 이전하여 운영되다가 해방 후 ‘경성부립남대문도서관’, ‘서울시립남대문도서관’, ‘서울특별시립남대문도서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65년 1월 27일 남산에 도서관이 개관되면서 이전하여 ‘서울특별시시립남산도서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도서관 건물은 1963년 현상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된 한양대건축연구실의 이해성교수가 설계했고, 1963년 11월 25일 기공식을 한지 2년만인 1965년 1월 27일 개관했다. 남산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 각 층마다 수평적으로 길게 돌출된 메스는 한국 전통 건축의 깊은 처마를 연상시킨다. 당시는 한국의 건축계에서 한국적인 전통을 목조가 아닌 철근콘크리트구조로 만

들 때 어떻게 현대적으로 계승할지에 대한 여러 건축가들의 실험적인 건축물이 만들어지던 시기이기도 했다.

남산도서관은 한국도서관 역사의 큰 흐름을 알려주는 의미 있는 건축물이며, 한국 현대건축 초기에 많은 역할을 했던 건축가이자 교육자인 이해성의 작품으로도 의미가 있는 건축물로서, 서울시등록문화재로 등록하고자 한다.

[보신각 앞 지하철 수준점]

보신각 앞 지하철 수준점은 수도권 전철의 높이 및 깊이의 척도가 되는 원점이다. 종로의 이 수준점을 기준으로 지하철 선로의 깊이와 터널의 높이, 역사(驛舍)의 상하축 높이가 가늠되었다. 1960년대 인구 과밀화와 차량 증가로 교통체증 문제를 겪던 서울특별시는 1970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조례 제609호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설치조례』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공포된 후 6월 9일에 서울지하철 건설본부를 신설했다. 이어 7월 제4차 한일각료회담을 통해 일본에서 지하철건설 기술용역단이 9월에 서울을 방문하였다. 이를 통해 지하철 건설은 기존의 철도망을 전철화하는 한편 서울역-청량리역 구간을 지하로 연결하는 수도권 고속전철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서울지하철 계획의 첫 작업은 수도권 전철 1호선의 기준이 될 수준점을 설정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이 수준점을 기준으로 서울시내 지하철 공사를 위한 모든 측량작업이 이루어졌다. 보신각 울타리 안에 설치된 직경 7cm, 길이 12cm의 놋쇠 못이 한가운데에 박힌 사방 25cm의 화강암 수준점은 지상 20cm 높이로 묻혀 있으며, '수도권 고속전철 수준점. 1970.10.30.'이라는 글씨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 이날 양택식 시장이 수준점을 설치한 후 첫 측량에 나섰고, 측량작업은 그해 11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도로확장에 따라 보신각이 현 위치로 이전되면서 수준점도 이전되어 수준기점의 역할은 상실했으나, 여전히 보신각 구역 내에 위치하고, 당시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지하철 1호선 사업의 시발점이었다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서울시등록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

[뚝섬경마장]

뚝섬경마장은 해방 이후 서울에 조성된 최초의 경마장이다. 한국전쟁 이후 재건사업 제1호로 지정되어 1953년 7월 28일 공사를 진행하여 1954년 5월 8일 개장했다. 개장 당시 사무소, 승마역표소, 마사, 주로(走路), 심판소 등의 시설이 있었고, 1963년 12월 관치와 민영화의 중간단계인 공영제로의 변화를 시도하면서 기수대기실, 사무실, 안내소 등 시설을 신축했다. 한편 1968년 6월 30일에 뚝섬경마장 내에 골프장이 개장되기도 했다.

뚝섬경마장에서는 1965년 일본과 국교가 정상화되면서 1966년 한일 친선 경마대회가 열렸고, 1968년에는 최초로 아시아 국제 친선 경마대회, 1980년 제15회 아시아 경마회의(ARC)가 개최되기도 했다. 그러나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 등 국제경기를 치르기에는 뚝섬경마장의 규모가 작았기에 과천에 올림픽 승마경기장을 새로 건설했다. 1989년 8월 6일 일요경마를 끝으로 35년 3개월이라는 뚝섬경마장의 막을 내리고, 1989년 9월 1일 과천으로 그 기능이 이전되면서 경마장으로서의 역사를 마감했다.

현재는 서울숲으로 조성되어 서쪽의 고산자로에서 동쪽의 서울숲역까지의 경마장 주로의 영

역은 상실되었지만, 항공사진으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있고, 경마장 시설의 일부인 마사와 마장 일부, 세마소 시설 등이 남아 있다. 전체적으로 뚝섬의 역사적 장소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시설물이기에 서울시등록문화재로 등록하고자 한다.

[구 통계국 청사]

구 경제기획원 통계국 청사는 건축가 이희태가 1959년 설계하여 1961년 준공된 지하 1층, 지상 3층의 철근콘크리트 + 철골구조의 건축물이다. 한국의 1세대 건축가로 불리는 이희태 건축의 주요 특징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입면에 있어서의 면분할이 이 건물에서도 확인된다. 사각형의 입면비례체계를 가로변에 따라 증축시켜 나가면서 건물의 입면을 구성하고 있는데, 가로변에서 보여지는 건물은 높이와 폭의 비례가 1:3이 되도록 설정되었고, 세부적으로 다시 수직과 수평을 3등분으로 분할하여 루버로 구획된 하나의 입면 단위가 사각형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 건물이 위치한 장소는, 1908년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가 설립된 곳이었으며, 해방 후인 1949년부터 공무원 교육기관인 국립공무원훈련원 청사가 있었고, 1961년에 현재의 건물인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건물이 세워졌다. 2001년부터는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서울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서울노인복지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건물의 내부 공간 구성은 처음의 구성과는 달리 여러 차례 변형이 되었지만, 한국 1세대 건축가인 이희태의 작품으로 입면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그의 초기 설계개념이 잘 남아 있고, 해방 이후 한국 현대건축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초기적 작품이라는 점에서 건축문화재적 가치와 보존적 가치가 높아 서울시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고자 한다.

2. 문화재 등록 시 주요 법적 제약사항

○ 문화재로 등록되는 대상

- 문화재보호법 제74조(준용규정) 제3항.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64조(등록문화재의 신고 사항)·제65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됨

3. 의견제출 방법 안내

○ 제출기간 : 공고일부터 30일간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① 전화 : (02) 2133-2630

② 팩스 : (02) 768-8873

③ 우편 :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또는 팩스나 우편 제출

○ 기재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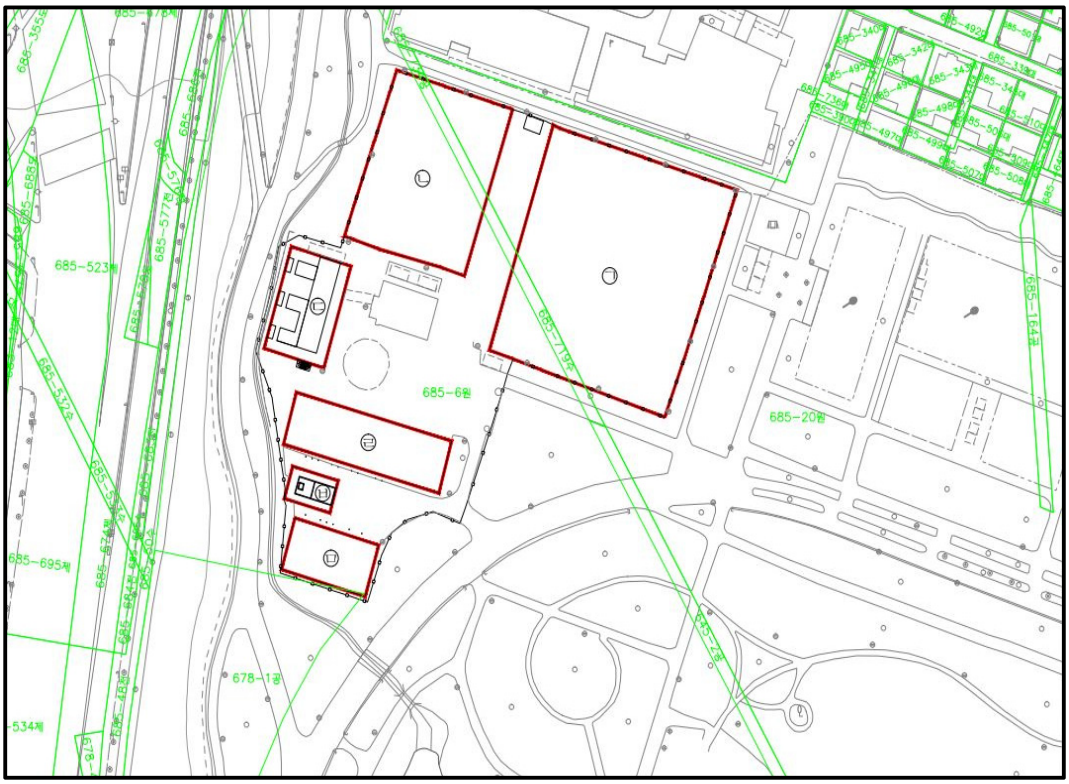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문화재 등록에 대한 찬반 의견 및 그 사유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02-2133-26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뚝섬경마장 지적현황도>



○ 면적개요

구분	명칭		외벽 측량면적(㎡)	비고
㉠	마장 1		4,181	
㉡	마장 2		2,005	
	합 계		6,186	
㉢	마사 1	1층	612.96	건축물 대장 574.56
		2층	181.57	건축물 대장 168.46
㉣	마사 2		807.70	건축물 대장 769.50
㉤	마사 3		434	건축물 대장 408
㉥	말 수영장		147.44	
	합 계		2,183.6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024호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체결 공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의거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체결 내역

연번	자치구	공원명	위 치 (소재지)	지목	부지사용 계약면적 (㎡)
		7개공원	20필지		27,290
1	관악구	관악산근린공원	봉천동 산58	임야	581.0
2	관악구	관악산근린공원	봉천동 산58-3	임야	2,791.0
3	관악구	관악산근린공원	봉천동 산58-1	임야	396.0
4	강북구	오동근린공원	번동 산27-122	임야	2,947.0
5	강북구	오동근린공원	번동 산27-92	공원	451.0
6	관악구	관악산근린공원	신림동 209-2	대지	231.0
7	관악구	관악산근린공원	봉천동 283-4	대지	152.0
8	강동구	일자산근린공원	둔촌동 산16-6	임야	617.0
9	강동구	일자산근린공원	둔촌동 산16-7	임야	441.0
10	강동구	일자산근린공원	둔촌동 산14-2	임야	1,264.0
11	강동구	일자산근린공원	둔촌동 6-17	도로	13.0
12	강동구	일자산근린공원	둔촌동 6-20	도로	4.0
13	송파구	장지근린공원	거여동 145-32	전	3,300.0
14	서초구	방배근린공원	방배동 산84-24	임야	2,626.0
15	서초구	방배근린공원	방배동 산45-4	임야	99.0
16	서초구	방배근린공원	방배동 산45-6	임야	1,647.0
17	중랑구	중랑캠핑숲근린공원	망우동 73-10	종교용지	688.0
18	서대문구	백련근린공원	홍은동 산11-332	임야	8,509.0
19	서대문구	백련근린공원	홍은동 311	대지	473.0
20	서대문구	백련근린공원	홍은동 312	대지	60.0

2. 부지사용 계약일 : 2020. 6. 29.
3. 부지사용 계약기간 : 2020. 6. 29. ~ 2023. 6. 27.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2133-2186)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028호

회계직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7조,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직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같은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직인 폐기 및 등록 사유 : 분실에 따른 재등록
2. 직인 폐기 및 등록 일자 : 2020. 7. 1.
3.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 및 폐기내용

가. 폐기직인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 폐기일자	사유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서울특별시일반회계 공원녹지정책과 분임징수관인	훈민정음체 2㎝X2㎝	분실	2020.7.1.	분실에 의한 폐기

나. 등록 직인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 등록일자	비고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서울특별시일반회계 공원녹지정책과 분임징수관인	훈민정음체 2㎝X2㎝		2020.7.1.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033호

혼잡통행료 과태료 독촉 및 압류 예고장 공시송달(공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5조 및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하여 독촉 및 압류 예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불능인 대상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혼잡통행료 과태료 독촉 및 압류 예고장 송달불능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제11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
4. 체납자 제재 안내
   가. 당사자는 본 통지를 받은 날(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내지 55조에 규정에 따라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이면서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체납액이 500만원(감치 1,000만원)이상이면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 제한,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문의 전화 : 02-2290-6438~9, 6179, 6467 (서울시설공단)
5. 인터넷 납부 : https://etax.seoul.go.kr ※ 공인인증서 필요, 신용카드 납부 가능

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연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1	남산1호터널	2019-07-01 09:47:06	02조6370	10,300	주식회사 원엔터테인먼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186-9 402호(고잔동)
2	남산1호터널	2019-07-01 14:29:10	33나1913	10,300	(주)트랜스포럼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105 21동 318호(송림동, 산업용품상가)
3	남산1호터널	2019-07-02 10:30:34	02조6370	10,300	주식회사 원엔터테인먼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186-9 402호(고잔동)
4	남산3호터널	2019-07-02 12:36:59	39가0445	10,300	JIN ZHEFENG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351 102동904호(신길동, 신길동경남아파트)
5	남산1호터널	2019-07-02 13:54:48	66루4074	10,300	(주)선돌코리아	강원도춘천시남산면동춘로18-1
6	남산3호터널	2019-07-03 09:36:03	04나7935	10,300	(주)스타넥스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길 29 한국산업단지공단 1205호(구로동)
7	남산3호터널	2019-07-03 15:09:38	67나7837	10,300	BATTULGA ENKHTUYA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율마로450번길 34-6 101호
8	남산1호터널	2019-07-03 18:49:04	06보3469	10,300	(주)이에스에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3 8층(삼성동, 태양빌딩)
9	남산1호터널	2019-07-03 19:07:55	58저2837	10,300	(주)크림하우스프렌즈	충청북도음성군생극면송곡길28
10	남산3호터널	2019-07-03 20:12:24	36머6190	10,300	LI YINGCHUN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25가길 52 B01호(장충동2가)
11	남산1호터널	2019-07-03 20:49:11	14주9900	10,300	주식회사 건영아이에프에스	경기도김포시대곶면송마리856번지13호
12	남산1호터널	2019-07-04 08:34:41	52두9593	10,300	(주)주몽승마클럽	전라남도나주시공산면신곡리806번지 ,807
13	남산1호터널	2019-07-04 17:45:21	55저9849	10,300	KIM MELS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2길 9-3 310호(원곡동)
14	남산3호터널	2019-07-04 19:40:35	21고7640	10,300	ASANGBENG COLLINS TAKWI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348번길 11 401호(우만동, 삼미빌라)
15	남산1호터널	2019-07-04 19:42:18	22도6636	10,300	XU SHIJUN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대길 18 303호(봉황동)
16	남산1호터널	2019-07-05 15:25:26	15우8898	10,300	지광해운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길 34 9층 968호(충무로1가, 케이티중앙사옥)
17	남산3호터널	2019-07-08 12:11:49	59루2868	10,300	(주)엠알아트프로덕션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33다길 47-11(청운동) (청운동)
18	남산3호터널	2019-07-08 15:12:56	07마9886	10,300	주식회사 유조이그린홀딩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52길 17 702호(청담동, 인성빌딩)
19	남산3호터널	2019-07-08 19:22:48	50오4490	10,300	(주)아이피엘씨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55 1011호(구로동, 이앤씨벤처드림타워2차)
20	남산1호터널	2019-07-09 12:50:40	56모3961	10,300	PIAO CHENGJUN	경기도 시흥시 배곧2로 95 424호(정왕동)
21	남산1호터널	2019-07-09 14:03:46	28라9866	10,300	대산토목(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당로 38-10(용흥동) (용흥동)
22	남산3호터널	2019-07-09 20:32:37	34거8587	5,150	포크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221 302호(논현동)
23	남산1호터널	2019-07-10 10:34:42	53무0505	10,300	청림토건(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6 310호(서초동)
24	남산3호터널	2019-07-10 11:05:29	47호1063	10,300	(주)에이스렌트카	경기도 양주시 고읍남로 6-9 207호(광사동, 드림월드빌딩)
25	남산1호터널	2019-07-11 15:53:46	52거9339	10,300	(주)페이백스마트카드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30 604호(가산동, 남성플라자)
26	남산3호터널	2019-07-11 19:22:31	23더7926	10,300	(주)두비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55 4층(양재동, 신영빌딩)
27	남산3호터널	2019-07-12 16:06:27	59루2868	10,300	(주)엠알아트프로덕션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33다길 47-11(청운동) (청운동)
28	남산1호터널	2019-07-15 08:23:56	69조5512	10,300	재단법인 나눔실천재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81 311호(수송동, 두산위브파빌리온)
29	남산3호터널	2019-07-15 13:49:35	12루7073	10,300	LI ZHENGYI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38길 6-16 304호(독산동)
30	남산1호터널	2019-07-15 17:32:34	19하4834	10,300	(주)투투렌터카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282번길 3-7(중동) (중동)
31	남산1호터널	2019-07-15 19:54:15	31조0687	10,300	주식회사 진양에스앤피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84(오금동) (오금동)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046호

서울시청사(본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독촉분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에 따른 서울시청사(본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건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서울시청사(본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독촉분(2016년도분)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주차장법 제19조의3,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별첨
4. 공고기간 : 2020. 7.16. ~ 2020. 7.30.(15일간)
5. 납부방법 : 인터넷(https://etax.seoul.go.kr) 통해 주차요금 및 납부기한 확인하여 납부
6. 유의사항
   가. 이의가 있는 경우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부과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메일(herald6131@seoul.go.kr)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독촉 납부기한(2020.7.30.)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압류 등 체납절차가 진행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총무과(담당 김민우, ☎02-2133-56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서울시청사(본청사)부설주차장주차요금독촉분(2016년도분)공시송달대상명단

연번	과세번호	차량등록번호	방문일자	입차시간	마감시간	부과금액(원)	대표소유자회원명	소유자주소	반송사유
계	56건					473,400			
1	518	서울38머2047	2016-01-06	1715	1800	4,000	이영자외1인(안오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07, 103동 603호(성산동, 도시개발공사성산아파트)	폐문부재
2	519	09조5323	2016-01-06	1742	1800	2,000	SCHREIBER ANDREAS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7길 62-28, 302호(이태원동, 파르테논 빌라) ()150813변경등록기준)	보관기간경과
3	520	62우5973	2016-01-07	1228	1800	16,500	조원영	대구광역시북구구리로183-28,202동205호(학정동,두산군인아파트) (180305변경등록기준)	주소불명
4	522	18더3977	2016-01-07	1753	1800	500	김석현(99%),『서현옥(1%)』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20길 6-12, 402호(응암동, 청송아파트)	폐문부재
5	535	08고2052	2016-01-15	1336	1800	26,000	유승현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62길 76, 6동 103호(명일동, 우성아파트) (120210변경등록기준)	폐문부재
6	548	25버5994	2016-01-20	1723	1800	4,000	오경숙, 배인수	경기도구리시동구릉로238번길20,105동101호(인창동,한진아파트) (170102변경등록기준)	보관기간경과
7	571	07조5795	2016-02-12	1745	1800	1,000	강인수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856, 9014호(불광동, 메트로타워)	이사불명
8	576	02조7370	2016-02-17	1648	1800	7,000	이치훈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55길 31, 402호(신사동)	폐문부재
9	584	49고7059	2016-03-03	1710	1800	5,000	YOO KATIE MYUNGHEE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47, 102동 803호(화곡동, 그랜드아이파크)	폐문부재
10	586	37나1962	2016-03-04	1709	1800	5,000	최영화	경기도 광명시 모세로 27, 852동 302호 (철산동, 주공아파트)	폐문부재
11	587	57우7490	2016-03-04	1736	1800	2,000	박기수	경기도 김포시 영터길 57(마산동)	주소불명
12	591	01로9090	2016-03-08	1745	1800	1,000	김운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천문2길 56(사동)	주소불명
13	594	42라0489	2016-03-11	1652	1800	7,000	PIAO LONGXIE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녕로2가길 32-5, 지층 (봉천동)	폐문부재
14	595	63무8867	2016-03-11	1723	1800	800	이희숙(50%),『장석길(50%)』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29길 64-2(방배동)	주소불명
15	599	68머9367	2016-03-16	1624	1800	9,000	안승상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진산로 24, 111동 1102호(상현동, 성원아파트)(1506230|전등록기준)	폐문부재
16	600	54수2859	2016-03-17	1735	1800	2,000	박준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24안길 10(노고산동)	보관기간경과
17	603	62보7984	2016-03-18	1551	1800	2,600	한기욱(50%), 정금희(50%)	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비룡로185-25,103동603호(삼신푸른솔아파트) (170420변경등록기준)	보관기간경과
18	604	07버4605	2016-03-18	1655	1800	6,000	(주)그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26길 42-14, 101호(도곡동)	수취인불명
19	612	02어1405	2016-03-25	1716	1800	2,000	신엘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28번길 6, 102동 1006호(하대원동, 현대아파트) (151124변경등록기준)	폐문부재
20	627	70오5989	2016-04-12	1656	1800	6,000	김숙자	경기도 부천시 원종로119번길 66, 102동 606호(고강동, 청광플러스원)	폐문부재
21	628	92로7255	2016-04-12	1659	1800	6,000	김현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원로57길 43(용산동)	폐문부재
22	634	43다9097	2016-04-15	1738	1800	2,000	김기형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로18번길 20-1, 401호(은행동)	폐문부재
23	641	38서4020	2016-04-25	1642	1800	4,000	박성석	광주광역시서구풍암신흥로11번길12-1(풍암동)	폐문부재
24	644	74러3884	2016-04-25	1736	1800	2,000	박성용	경기도 부천시 성곡로 74-5, 502호(여월동, 유호유스빌)	폐문부재
25	700	53소6997	2016-06-02	1458	1800	18,000	우수상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49번길 15, 201호(관양동)	보관기간경과
26	724	42거1887	2016-06-16	1734	1800	2,000	김철호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161번길 24-3, 2층(교문동)	보관기간경과
27	726	63러3410	2016-06-17	1651	1800	7,000	이홍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36길 21, 612호(논현동, 우민아파트)	보관기간경과
28	728	14머6813	2016-06-22	1201	1800	18,000	이영일	경기도의왕시모란길37,6동402호(오전동,삼신9차아파트) (160307변경등록기준)	폐문부재
29	731	54너8067	2016-06-23	1620	1800	10,000	최경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411번길 38-17(비산동)(120210변경등록기준)	보관기간경과
30	736	93루4946	2016-06-28	1348	1800	25,000	조한민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9길 16, 602호(구산동, 동양아파트)	폐문부재

31	739	59주8523	2016-06-28	1749	1800	1,000	(주)오감파트너스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134(하산곡동)	수취인불명
32	740	93루4946	2016-06-30	1427	1800	21,000	조한민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9길 16, 602호(구산동, 동양아파트)	폐문부재
33	751	67소7600	2016-07-19	1743	1800	2,000	황경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16다길 14, 101호(정릉동)	보관반송
34	753	83루5561	2016-07-22	1601	1800	12,000	김종현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 141, 2동 605호(길음동, 신안파크아파트)	보관기일경과후반송함
35	762	65도6882	2016-08-16	1658	1800	6,000	이승훈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26길 40-3, 1층 202호(성산동)	보관기간경과
36	763	58너3449	2016-08-18	1742	1800	2,000	최광연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대로 55, A동 1호 (궁동, 대동빌리지)	주소불명
37	766	03다5721	2016-08-29	1727	1800	3,000	양영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10길 15, B동 1721호(양재동, 트윈타워)	폐문부재
38	769	45더1962	2016-09-02	1715	1800	2,000	성지라	경기도 파주시 책향기로 183, 1503동 1303호(동패동, 책향기마을 상록데시앙)	보관기일경과 반송불요
39	770	73보6176	2016-09-05	1421	1800	22,000	김상영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성로 18, 6동 1103호(구운동, 강남아파트)	폐문부재
40	771	04조7768	2016-09-06	1653	1800	7,000	이달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53길 8, 323동 304호(상도동, 래미안상도3차아파트) (120210변경등록기준)	폐문부재
41	778	12나8033	2016-09-26	1503	1800	9,000	김선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35, 308호 (자양동, 자양오피스텔)	보관기간경과
42	779	12나8033	2016-09-27	1730	1800	1,500	김선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35, 308호 (자양동, 자양오피스텔)	보관기간경과
43	780	12나8033	2016-09-28	1224	1800	16,500	김선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35, 308호 (자양동, 자양오피스텔)	보관기간경과
44	781	80머5121	2016-09-30	1145	1800	37,000	이건영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29길 38(사당동)	폐문부재
45	786	40부3270	2016-10-13	1620	1800	5,000	정광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106번길 5-5(복정동)	주소불명
46	795	54부4536	2016-10-17	1737	1800	2,000	김진옥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13나길 7, 4층동 401호(상도동, 일두빌라)	폐문부재
47	796	91조7118	2016-10-19	1427	1800	21,000	유일형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독배길 15-5	폐문부재
48	799	63루8006	2016-10-21	1701	1800	6,000	박봉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82, 101동 301호(창곡동, 위례 보미리즌빌)	폐문부재
49	803	45가5735	2016-10-28	1639	1800	8,000	권혁	경기도 시흥시 능곡중앙로 120, 101동 203호(능곡동, 우남퍼스트빌2차)	1개월보관
50	804	32루9256	2016-10-28	1649	1800	3,500	송광호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84번길 45-8, 2층 202호(수택동, 우삼빌라)	폐문부재
51	810	18무2699	2016-11-02	1630	1800	4,500	홍수빈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 232, 410동 102호(청라동, 청라LH)	폐문부재
52	831	54두1423	2016-12-15	1638	1800	8,000	최용훈(50%), 『송이슬(50%)』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235, 19동 508호(성산동, 시영아파트)	보관기간경과
53	836	41로9153	2016-12-19	1721	1800	4,000	주식회사 뉴스씨에스브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림천로 446, 101동 204호(구로동, 예성유토피아)	이사불명
54	845	46로9674	2016-12-22	846	1800	54,000	노우철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안면대로 2956-5	이사불명
55	851	30도7800	2016-12-30	1432	1800	10,000	하나로인슈㈜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42번길 5, 15층(장항동, 대한생명빌딩)-> 변경)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423	이사불명
56	865	59너7534	2016-06-14	1739	1800	2,000	산은캐피탈㈜→(주)에이스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이사불명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047호

서울시청사(본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독촉분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에 따른 서울시청사(본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건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서울시청사(본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독촉분(2017년도분)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주차장법 제19조의3,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별첨
4. 공고기간 : 2020. 7.16. ~ 2020. 7.30.(15일간)
5. 납부방법 : 인터넷(https://etax.seoul.go.kr) 통해 주차요금 및 납부기한 확인하여 납부
6. 유의사항
   가. 이의가 있는 경우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부과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메일(herald6131@seoul.go.kr)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독촉 납부기한(2020.7.30.)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압류 등 체납절차가 진행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총무과(담당 김민우, ☎02-2133-56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서울시청사(본청사)부설주차장주차요금독촉분(2017년도분)공시송달대상명단

연번	과세번호	차량등록번호	방문일자	입차시간	마감시간	부과금액(원)	대표소유자회원명	소유자주소	반송사유
계	39건					537,300			
1	189	05다0538	2017-01-13	1729	1800	3,000	주식회사 해밀테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덕로101번길 65, 1호(현천동)	수취인불명
2	206	13우1183	2017-02-28	1734	1800	1,000	정미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43, 406호(이동, 곳모닝오피스텔)	보관기간경과후반송(불요)
3	212	45두6168	2017-04-04	1730	1800	600	김재룡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407, 8동 5층 508호(오금동, 상아아파트)=	주소불명
4	216	51러9720	2017-04-07	1637	1800	8,000	임동준	경기도 부천시 소향로 227, A동 1121호(중동, 디아뜨3)	폐문부재
5	219	16루5680	2017-04-13	1719	1800	4,000	정종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서로26길 29(양평동1가)	주소불명
6	225	09더1367	2017-04-24	1717	1800	4,000	정대현(공채면제)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315, 104동 1406호(연수동, 연수주공1차아파트)	폐문부재
7	228	67보9368	2017-05-01	709	1800	54,000	양영수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270, 710동 1002호(선동, 미사강변센트리버)	폐문부재
8	239	48조5664	2017-05-19	1512	1800	8,000	정길영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로78번길 18, 403호(장기동)	폐문부재
9	252	11루3381	2017-06-05	900	1800	54,000	황돈영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397번길 5, 2동 604호(신현동, 은영아파트)	폐문부재
10	257	42고8245	2017-06-09	1539	1800	14,000	이승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호대로1길 14(홍제동)	수취인불명
11	268	46오6544	2017-06-27	1721	1800	4,000	박현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8길 63(시흥동)	보관기간경과후반송(불요)
12	270	42소0606	2017-06-30	1253	1800	31,000	최은창	서울특별시은평구연서로28길24-1,302호(대조동)	폐문부재
13	271	86모9183	2017-06-30	1733	1800	3,000	이진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록마을로34길 66, 202호(화곡동)	폐문부재
14	276	19나3750	2017-07-04	1637	1800	8,000	최규철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56번길 16(천현동)	폐문부재
15	482	26호5352	2017-07-06	1639	1800	8,000	최명재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매로41길 80	폐문부재
16	290	12다2832	2017-07-17	841	1800	54,000	박성규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 13, 202동 302호(원당동, 원당2차금호어울림)	폐문부재
17	298	60나6438	2017-07-21	1622	1800	5,000	조인숙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9길 39, 101동 207호(가락동, 가락풍림아파트)	보관기간 경과 후 반송불요
18	301	02저5208	2017-07-24	1703	1800	1,200	김영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037, 402호(계산동)	이사불명
19	303	60버1234	2017-07-24	1738	1800	2,000	송운창	서울특별시은평구통일로1080,103동510호(진관동,은평뉴타운솔하임)	폐문부재
20	304	27구2960	2017-07-25	1643	1800	8,000	김승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웃말1길 12, 404호(일동)	폐문부재
21	306	37버5499	2017-07-28	1706	1800	5,000	신은희	경기도 과천시 공원마을4길 10(문원동)	폐문부재
22	326	41조1527	2017-08-21	1726	1800	1,500	이명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상탑로21번길 35-15(탑동)	폐문부재
23	328	09루6286	2017-08-22	1503	1800	18,000	용소슴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1로75번길 15-22	보관일경과반송
24	332	14루6142	2017-08-25	1557	1800	6,000	박희광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로78번길 31-8(장기동)	주소불명
25	342	25나4961	2017-08-31	1740	1800	1,000	서경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240, 5동 405호(학익동, 영남들국화아파트)	보관기간경과후반송
26	487	40하4188	2017-09-01	821	1800	27,000	박수철	서울특별시구로구경인로15길34,상가101호(오류동)	이사불명
27	348	27오2874	2017-09-07	1337	1800	26,000	윤현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153번길 44, 나동 604호(망포동)	폐문부재
28	362	18노8512	2017-09-21	1518	1800	16,000	홍정환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구둔지길 34, 105동 201호(신풍군인아파트)	폐문부재
29	488	29호1690	2017-09-29	1419	1800	22,000	고정애	인천광역시부평구경원대로1377번길29-8,B동308호(부평동,코지)	폐문부재
30	378	55다0322	2017-10-11	1646	1800	7,000	MOON JAMES JAE WON(문재원)	경기도 하남시 아리수로 570, 101-1731호(망월동)	폐문부재
31	380	34나0626	2017-10-13	1648	1800	3,000	김동철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927번길 16, 403호(송죽동)	보관기간경과
32	382	60머6734	2017-10-17	1738	1800	1,000	한상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180길 25-19(화곡동)	폐문부재
33	385	64다5457	2017-10-20	1735	1800	2,000	김현묵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 173, 1220호(중동, 중동아크로텔)	폐문부재
34	392	01노2453	2017-11-01	849	1800	54,000	전종철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52가길 7(고척동)	보관기간경과후반송(불요)
35	405	29주0875	2017-11-17	1716	1800	4,000	김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47길 43, 1동 508호(시흥동, 럭키아파트)	보관기간경과후반송(불요)
36	409	46마8734	2017-11-23	1601	1800	12,000	홍위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30길 27-22, 502호(방배동, 로얄빌리지)	폐문부재
37	417	19조0123	2017-11-23	1726	1800	1,500	강대현,강성모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1263번길 6-14(태평동)=	이사불명
38	429	11부2993	2017-11-28	1725	1800	1,500	김하나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천진암로694번길 19-2, B동 401호(은혜빌)	보관기간경과
39	441	80라5678	2017-12-08	846	1800	54,000	주시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호수로856번길 65-1(대화동)	폐문부재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048호

서울시청사(본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부과분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에 따른 서울시청사(본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건에 대해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서울시청사(본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부과분(2016년도분)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주차장법 제19조의3,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별첨
4. 공고기간 : 2020. 7.16. ~ 2020. 7.30.(15일간)
5. 납부방법 : 인터넷(https://etax.seoul.go.kr) 통해 주차요금 및 납부기한 확인하여 납부
6. 유의사항
   가. 이의가 있는 경우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부과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메일(herald6131@seoul.go.kr)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향후 독촉장을 받고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압류 등 체납절차가 진행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총무과(담당 김민우, ☎02-2133-56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서울시청사(본청사)부설주차장주차요금부과분(2016년도분)공시송달대상명단

연번	과세번호	차량등록번호	방문일자	입차시간	마감시간	부과금액(원)	대표소유자회원명	소유자주소	반송사유
계	2건					23,000			
1	819	56저5655	2016-11-16	1659	1800	6,000	손종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 65, 109동 1203호(수색동, 대림한숲타운아파트)	폐문부재
2	868	04하1416	2016-09-19	1506	1800	17,000	유월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5(영화동)	수취인불명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049호

서울시청사(본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부과분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에 따른 서울시청사(본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건에 대해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서울시청사(본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부과분(2019년도분)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주차장법 제19조의3,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별첨
4. 공고기간 : 2020. 7.16. ~ 2020. 7.30.(15일간)
5. 납부방법 : 인터넷(https://etax.seoul.go.kr) 통해 주차요금 및 납부기한 확인하여 납부
6. 유의사항
   가. 이의가 있는 경우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부과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메일(herald6131@seoul.go.kr)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향후 독촉장을 받고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압류 등 체납절차가 진행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총무과(담당 김민우, ☎02-2133-56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서울시청사(본청사)부설주차장주차요금부과분(2019년도분)공시송달대상명단

연번	과세번호	차량등록번호	방문일자	입차시간	마감시간	부과금액(원)	대표소유자 회원명	소유자주소	반송사유
계	1건					39,000			
1	921	88머2907	2019-01-03	1124	1800	39,000	손성훈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372번길 25, 201동 306호(주공2단지아파트)	수취인불명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050호

서울시청사(본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부과분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에 따른 서울시청사(본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건에 대해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서울시청사(본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부과분(2018년도분)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주차장법 제19조의3,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별첨
4. 공고기간 : 2020. 7.16. ~ 2020. 7.30.(15일간)
5. 납부방법 : 인터넷(https://etax.seoul.go.kr) 통해 주차요금 및 납부기한 확인하여 납부
6. 유의사항
   가. 이의가 있는 경우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부과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메일(herald6131@seoul.go.kr)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향후 독촉장을 받고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압류 등 체납절차가 진행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총무과(담당 김민우, ☎02-2133-56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서울시청사(본청사)부설주차장주차요금부과분(2018년도분)공시송달대상명단

연번	과세번호	차량등록번호	방문일자	입차시간	마감시간	부과금액(원)	대표소유자 회원명	소유자주소	반송사유
계	13건					98,500			
1	887	55루9256	2018-03-12	1638	1800	4,000	(주)저스트지엔지컴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동459번지3호포마텍B동401-4=동일	이사불명
2	888	85다0680	2018-03-14	1633	1800	8,000	박지열	인천광역시 부평구 체육관로 27, 713동 802호(삼산동, 삼산타운)	폐문부재
3	891	42조5465	2018-04-11	1723	1800	4,000	김인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53, B동 2212호(도화동, 마포트라팰리스)	보관기간경과
4	472	63러9891	2018-04-17	1620	1800	5,000	임유공	경기도성남시중원구광명로142번길9-1(성남동)=동일	보관기간경과
5	892	37거0645	2018-05-01	1048	1800	43,000	이진형	경기도수원시장안구파장로68번길55,201호(파장동,명성빌라)=동일	보관기간경과
6	893	59모2091	2018-05-01	1732	1800	2,000	오유미	서울특별시중구충무로13,1417호(충무로3가)=동일	수취인부재
7	900	28더6432	2018-06-05	1702	1800	4,000	김유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383번길 43-5, 103동 2호(김량장동, 더불어숲타운하우스)	폐문부재
8	903	59두2820	2018-06-21	1735	1800	2,000	고대성(99%), 『(주)천은개발중기(1%)』	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비룡로55번길11-13, 302호(호수빌)=동일	보관기간경과
9	905	57너1341	2018-06-29	1700	1800	4,000	전광배	인천광역시미추홀구매소홀로340,110동2003호(학익동,학익동풍림아이원아파트)=동일	보관기간경과 반송
10	906	06다5555	2018-06-29	1647	1800	6,000	박성미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독고개길 14-24, 101동 505호(코아루햇빛마을아파트)	보관기간경과
11	913	69하7002	2018-10-04	1716	1800	4,000	시온(김정숙)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전파로 88, 8층(호계동, 신원비젼타워)→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로325번길 37-13, 101도오 102호(행신동, 행신동동문아파트)	수취인불명
12	918	61두7275	2018-12-20	1706	1800	2,500	김태수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81번길 37, 1동 202호(부평동, 쌍용아파트)	폐문부재
13	920	37오3419	2018-12-31	1617	1800	10,000	강대현(50%), 『장덕영(50%)』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2102-16, 101동 1504호(마석그랜드힐아파트)	보관기간경과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059호

2020년 제9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공모당선작 선정' 심의결과 공고

'강서구 강서경찰서(위치2)' 건축물의 미술작품 공모와 관련하여 '2020년 제9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공모당선작 선정)'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심의일시: 2020.7.9.(목) 14:00
○ 심의장소: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4층 회의실
○ 심의안건: 강서경찰서(위치2) 미술작품 공모대행 당선작 선정
○ 심의결과: 당선작 1작품(응모작품 총36작품)

접수번호	작품명	작품이미지	작가명	선정사유 및 의견
4	자유의 하모니		이정태	- 친근하고 따뜻한 감성의 작품으로 공간의 조형이 우수하고, 작가의 개성적 감각이 돋보이는 작품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02-2133-27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 제출 안내
- 제출기한: 2020.7.22.(수)까지
- 제출자격: 미술작품 응모작가 및 유사작품 원작자
- 제출대상: 작품표절 등 허위사실, 불공정행위 등
  (※ 심의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
-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sornet24@seoul.go.kr), 주무관 이은경)
  (※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신청 방법을 미준수한 자료는 검토 불가함)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069호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공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의거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확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 2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여 시민에게 열람하고자 합니다.

2020년 7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열람내용 :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가. 목표연도 : 2025년
   나. 위치(면적)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역(605.96㎢)
   나. 주요내용
      -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47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서울시 도시재생지역 (205개소)
2. 열람기간 : 2020.7.16 ~ 2020.8.16. (30일간)

3.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2133-8623)
- 서울도시재생포털(https://uri.seoul.go.kr)

□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주요변경사항

○ 20년 신규선정지역 확정 및 국토부 선도지역에 대한 반영 (10개소)

연번	지역	법정유형(서울형)	면적(㎡)	비고
1	공항동	일반근린형(주거지재생형)	149,976	희망지 사업을 통해 신규선정('19.11.5)
2	경복궁 서측 청운효자 · 사직동	일반근린형(주거지재생형)	155,484.5	
3	구의역 일대	중심시가지형(생활중심지특화형)	180,000	후보지 거버넌스 구축사업을 통해 신규선정 ('19.11.25)
4	면목패션특구일대	중심시가지형(생활중심지특화형)	292,000	
5	북촌가회구역일대	중심시가지형(생활중심지특화형)	273,867	
6	풍납토성 일대	중심시가지형(생활중심지특화형)	246,940	
7	효창공원 일대	중심시가지형(생활중심지특화형)	203,377	
8	홍제역 일대	중심시가지형(생활중심지특화형)	167,663	
9	홍릉일대	경제기반형(일자리거점육성형)	497,154	국토부 선도지역 지정 ('19.11.13)
10	목3동	일반근린형(주거지재생형)	148,000	

○ 기정 활성화지역의 변경사항 반영(11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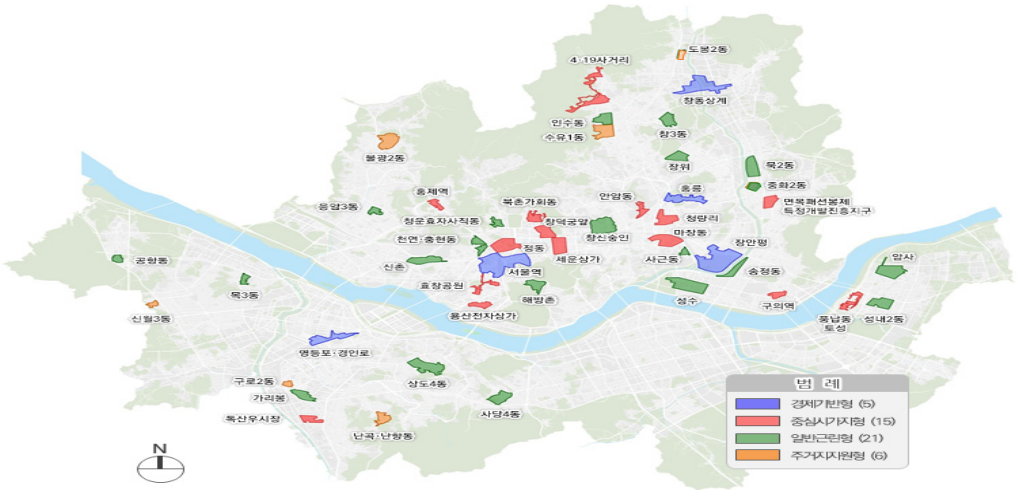
- 사근동 지역의 유형 및 구역계 변경

연 번	지역(지정연도)	유형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	사근동 ('19)	주거지지원형 (주거지재생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재생형)	100,000	154,000 (증 54,000)

- 기존지역 경계조정 : 제기동·청량리동 일대 등 10개 지역의 일부 면적조정

연 번	지역(지정연도)	법정유형(서울형)	면적(㎡)	
			기정	변경
1	제기동·청량리동 일대('17)	중심시가지형 (생활중심지특화형)	492,639	420,892 (감71,747)
2	창3동('17)	일반근린형 (주거지재생형)	340,000	346,000 (증6,000)
3	천연 · 충현동('17)	일반근린형 (주거지재생형)	291,780	294,590 (증2,810)
4	성내2동('18)	일반근린형 (주거지재생형)	420,000	388,500 (감31,500)
5	신월3동('19)	주거지지원형 (주거지재생형)	100,800	106,023 (증 5,223)
6	구로2동('19)	주거지지원형 (주거지재생형)	100,550	101,828 (증1,278)
7	응암3동('19)	일반근린형 (주거지재생형)	148,043	168,362 (증 20,319)
8	묵2동('17)	일반근린형 (주거지재생형)	530,000	493,219 (감36,781)
9	수유1동('17)	주거지지원형 (주거지재생형)	515,000	518,718.2 (증3,718)
10	중화2동 ('19)	일반근린형 (주거지재생형)	140,855	144,426 (증 3,571)

□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47개소
- 중심지형 도시재생지역(20개소) : 경제기반형(5개소), 중심시가지형(15개소)
- 주거지형 도시재생지역(27개소) : 일반근린형(21개소), 주거지지원형(6개소)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9.6.20 변경)

- 위치 : 서울역, 남대문시장, 중림동, 회현동 일대
- 면적 : 약 1,812,969㎡
- 유형 : 경제기반형 (서울형 : 일자리거점 육성형)
- 계획고시일 : `17.12.28

- 위치 : 용산구 서계동 일대
- 면적 : 약 142,364㎡
- 유형 : 근린재생일반형 (서울형 : 주거지재생형)



장안평 일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8.7.5 변경)

- 위치 : 장안동 일대 (자동차 유통상가)
- 면적 : 약 1,451,000㎡ (물재생센터, 차량기지 포함) ▪ 계획고시일 : `16.8.4.
- 유형 : 경제기반형 (서울형 : 일자리거점 육성형)



창동 · 상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5.12.10 신규)

- 위치 : 도봉구 창동(창동역) – 노원구 상계동(노원역) 일대
- 면적 : 982,839㎡ ▪ 계획고시일 : `17.3.2.
- 유형 : 경제기반형 (서울형 : 일자리거점 육성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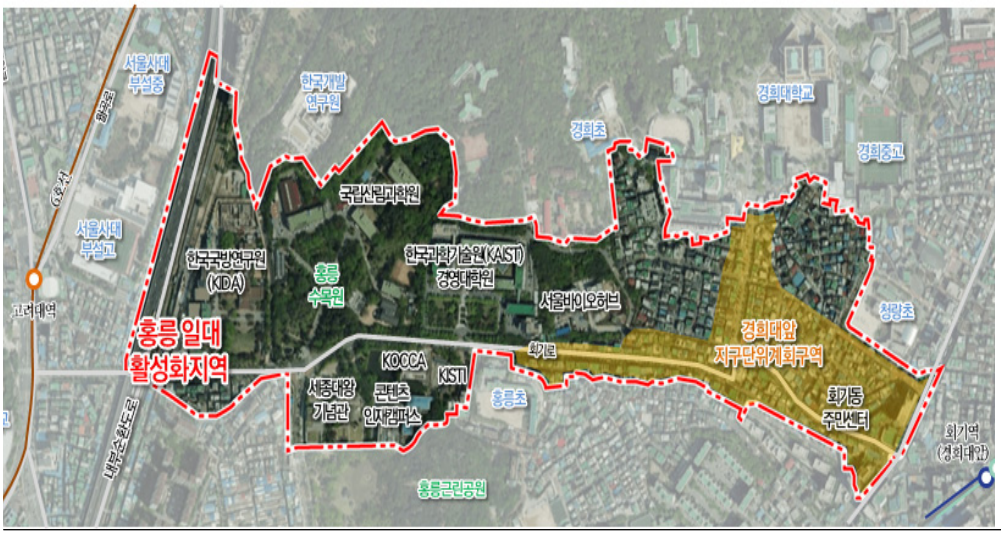
영등포 · 경인로 일대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8.7.5 신규)

- 위치 : 영등포구 영등포본동, 영등포동, 문래동 일대
- 면적 : 약 521,000㎡
- 유형 : 경제기반형 (서울형 : 일자리거점 육성형)



홍릉 일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0.7.14 신규)

- 위치 : 동대문구 청량리동 일대
- 면적 : 497,154㎡ ■ 계획고시일 : `20.3.26
- 유형 : 경제기반형 (서울형 : 일자리거점 육성형)



세운상가 일대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5.12.10 신규)

- 위치 : 중구 광희동, 을지로동, 종로구 종로1.2.3.4가동 일대 세운상가 군
- 면적 : 439,356.4㎡ ▪ 계획고시일 : `17.6.1.
- 유형 : 중심시가지형 (서울형 : 생활중심지 특화형)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8.7.5 변경)

- 위치 : 창덕궁 앞 익선, 낙원동 일대
- 면적 : 403,000㎡ ▪ 계획고시일 : `18.5.10
- 유형 : 중심시가지형 (서울형 : 생활중심지 특화형)



정동 일대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8.7.5 신규)

- 위치 : 중구 정동 일대
- 면적 : 603,000㎡ ▪ 계획고시일 : `20.5.28
- 유형 : 중심시가지형 (서울형 : 생활중심지 특화형)



마장동 일대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8.7.5 신규)

- 위치 : 성동구 마장동 480번지 마장 축산물시장 일대
- 면적 : 576,971㎡ ▪ 계획고시일 : `19.9.11
- 유형 : 중심시가지형 (서울형 : 생활중심지 특화형)



용산 전자상가 일대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8.7.5 신규)

- 위치 : 용산구 한강로동 용산전자상가 일대
- 면적 : 212,123㎡ ■ 계획고시일 : `19.9.5
- 유형 : 중심시가지형 (서울형 : 생활중심지 특화형)



안암동 캠퍼스타운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8.7.5 신규)

- 위치 : 성북구 안암동5가 일대
- 면적 : 171,000㎡
- 유형 : 중심시가지형 (서울형 : 생활중심지 특화형)



독산동 우시장 일대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8.7.5 신규)

- 위치 : 금천구 독산동 292번지 독산 우시장 일대
- 면적 : 232,000㎡ ▪ 계획고시일 : `19.8.1
- 유형 : 중심시가지형 (서울형 : 생활중심지 특화형)



청량리 · 제기동 일대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0.7.16 변경)

- 위치 : 제기동 청량리 일대
- 면적 : 420,892㎡ ▪ 계획고시일 : `20.1.9
- 유형 : 중심시가지형 (서울형 : 생활중심지 특화형)



4.19 사거리 일대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8.7.5 신규)

- 위치 : 강북구 우이동 4.19 사거리 일대
- 면적 : 628,000㎡(활성화지역), 570,000㎡(연계검토지역) ▪ 계획고시일 : `19.6.20
- 유형 : 중심시가지형 (서울형 : 생활중심지 특화형)



면목 패션특구 중심지시가지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0.7.16 신규)

- 위치 : 중랑구 면목2동, 상봉2동 일대 제작
- 면적 : 292,000㎡
- 유형 : 중심시가지형 (서울형 : 생활중심지 특화형)



홍제역 일대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0.7.16 신규)

- 위치 : 서대문구 홍제동 161-1 일대
- 면적 : 167,663㎡
- 유형 : 중심시가지형 (서울형 : 생활중심지 특화형)



풍납토성 일대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0.7.16 신규)

- 위치 : 송파구 풍납동 토성 일대(3권역)
- 면적 : 246,940㎡
- 유형 : 중심시가지형 (서울형 : 생활중심지 특화형)



북촌 가회구역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0.7.16 신규)

- 위치 : 종로구 가회동 일대
- 면적 : 273,867㎡
- 유형 : 중심시가지형 (서울형 : 생활중심지 특화형)



구의역 일대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0.7.16 신규)

- 위치 : 광진구 구의1동 252-44 일대
- 면적 : 180,000㎡
- 유형 : 중심시가지형 (서울형 : 생활중심지 특화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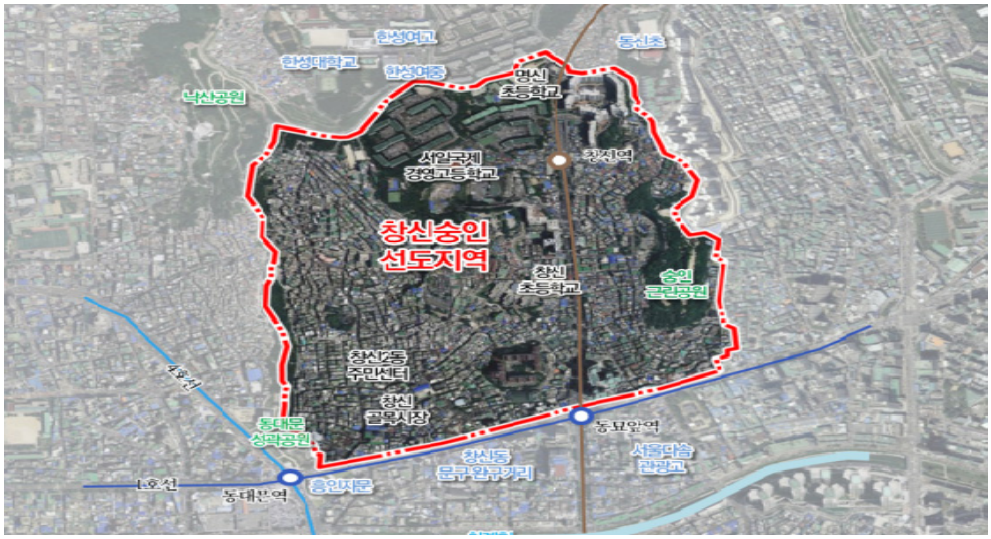
효창공원 일대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0.7.16 신규)

- 위치 : 용산구 효창동 일대
- 면적 : 203,377㎡
- 유형 : 중심시가지형 (서울형 : 생활중심지 특화형)



창신숭인 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5.12.10 신규)

- 위치 : 종로구 창신1동, 창신2동, 창신3동, 숭인1동 등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
- 면적 : 830,130㎡ ■ 계획고시일 : `15.2.26.
- 유형 : 일반근린형 (서울형 : 주거지재생형)



가리봉 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5.12.10 신규)

- 위치 : 구로구 가리봉동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
- 면적 : 332,929㎡ ■ 계획고시일 : `17.5.11.
- 유형 : 일반근린형 (서울형 : 주거지재생형)



해방촌 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5.12.10 신규)

- 위치 : 용산구 용산2가동 일대
- 면적 : 332,472㎡ ■ 계획고시일 : `17.5.11.
- 유형 : 일반근린형 (서울형 : 주거지재생형)



신촌동 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5.12.10 신규)

- 위치 : 서대문구 신촌동 일대
- 면적 : 432,628㎡ ▪ 계획고시일 : `16.12.29.
- 유형 : 일반근린형 (서울형 : 주거지재생형)



암사동 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5.12.10 신규)

- 위치 : 강동구 암사1,2동 일대
- 면적 : 약 634,885㎡ ▪ 계획고시일 : `17.6.8.
- 유형 : 일반근린형 (서울형 : 주거지재생형)



장위 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5.12.10 신규)

- 위치 : 성북구 장위동 232-17일대
- 면적 : 318,415㎡ ▪ 계획고시일 : `17.9.14
- 유형 : 일반근린형 (서울형 : 주거지재생형)



상도4동 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9.6.27 변경)

- 위치 : 동작구 상도4동 일원
- 면적 : 약 745,000㎡ ▪ 계획고시일 : `17.8.17
- 유형 : 일반근린형 (서울형 : 주거지재생형)



성수동 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5.12.10 신규)

- 위치 : 성동구 성수1가 1동, 성수1가 2동, 성수2가 1동, 성수2가 3동 일원
- 면적 : 886,560㎡ ▪ 계획고시일 : `17.6.1.
- 유형 : 일반근린형 (서울형 : 주거지재생형)



창3동 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0.7.16 변경)

- 위치 : 도봉구 창동 543번지 일대
- 면적 : 약 346,000㎡ ▪ 계획고시일 : `20.1.30
- 유형 : 일반근린형 (서울형 : 주거지재생형)



천연충현 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0.7.16 변경)

- 명칭 : 천연충현 일대
- 면적 : 294,590㎡ ▪ 계획고시일 : `19.11.20
- 유형 : 일반근린형 (서울형 : 주거지재생형)



송정동 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9.6.27 신규)

- 위치 : 성동구 송정동 일대
- 면적 : 203,698㎡
- 유형 : 일반근린형 (서울형 : 주거지재생형)



묵2동 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0.7.16 변경)

- 위치 : 중랑구 묵2동 일대
- 면적 : 493,219㎡ ▪ 계획고시일 : `19.11.28
- 유형 : 일반근린형 (서울형 : 주거지재생형)



성내2동 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0.7.16 변경)

- 위치 : 강동구 성내2동 일대
- 면적 : 388,500㎡
- 유형 : 일반근린형 (서울형 : 주거지재생형)



인수동 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9.6.27 신규)

- 위치 : 강북구 인수동 416번지 일대
- 면적 : 366,551㎡
- 유형 : 일반근린형 (서울형 : 주거지재생형)



사당4동 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9.6.27 신규)

- 위치 : 동작구 사당4동 전역
- 면적 : 380,000㎡
- 유형 : 일반근린형 (서울형 : 주거지재생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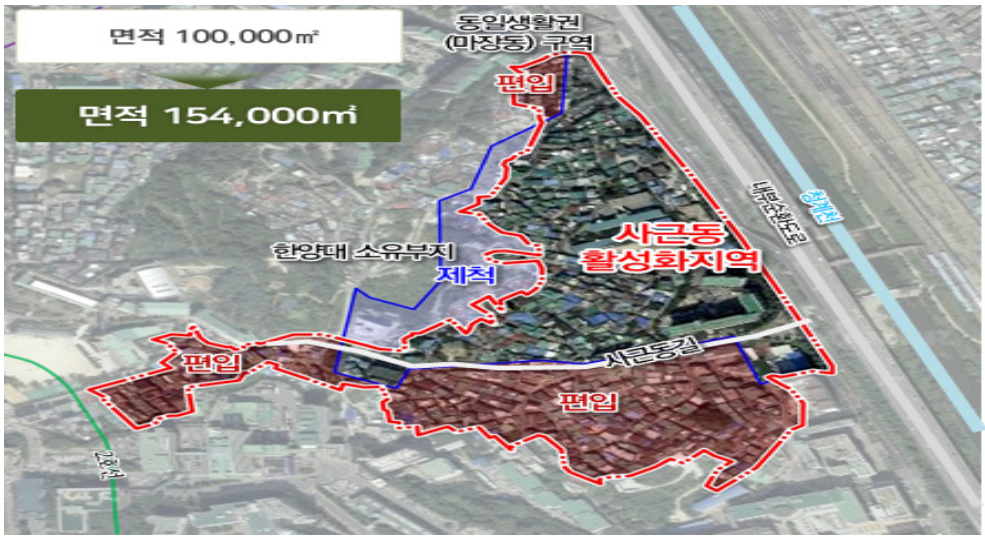
응암3동 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0.7.16 변경)

- 위치 : 은평구 응암3동 일대
- 면적 : 168,362㎡
- 유형 : 일반근린형 (서울형 : 주거지재생형)



사근동 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0.7.16 변경)

- 위치 : 성동구 사근동 일대
- 면적 : 154,000㎡
- 유형 : 일반근린형 (서울형 : 주거지재생형)



중화2동 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0.7.16 변경)

- 위치 : 중랑구 중화2동 일대
- 면적 : 144,426㎡
- 유형 : 일반근린형 (서울형 : 주거지재생형)



목3동 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0.7.16 신규)

- 위치 : 양천구 목3동 일대
- 면적 : 148,000㎡
- 유형 : 일반근린형 (서울형 : 주거지재생형)



경복궁 서측 청운효자 · 사직동 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0.7.16 신규)

- 위치 : 종로구 청운효자 · 사직동 일대
- 면적 : 155,484.5㎡
- 유형 : 일반근린형 (서울형 : 주거지재생형)



공항동 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0.7.16 신규)

- 위치 : 강서구 공항동 일대
- 면적 : 149,976㎡
- 유형 : 일반근린형 (서울형 : 주거지재생형)



불광2동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8.7.5 신규)

- 위치 : 은평구 불광동 480번지 일대
- 면적 : 약 587,000㎡ ■ 계획고시일 : `19.11.14
- 유형 : 주거지지원형 (서울형 : 주거지재생형)



난곡 · 난향동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8.7.5 신규)

- 위치 : 관악구 난곡동(1~6통, 29~39통) 일대
- 면적 : 약 271,000㎡ ■ 계획고시일 : `19.11.21
- 유형 : 주거지지원형 (서울형 : 주거지재생형)



수유1동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0.7.16 변경)

- 위치 : 강북구 수유1동 일대
- 면적 : 518,718.2㎡ ■ 계획고시일 : `20.1.30
- 유형 : 주거지지원형 (서울형 : 주거지재생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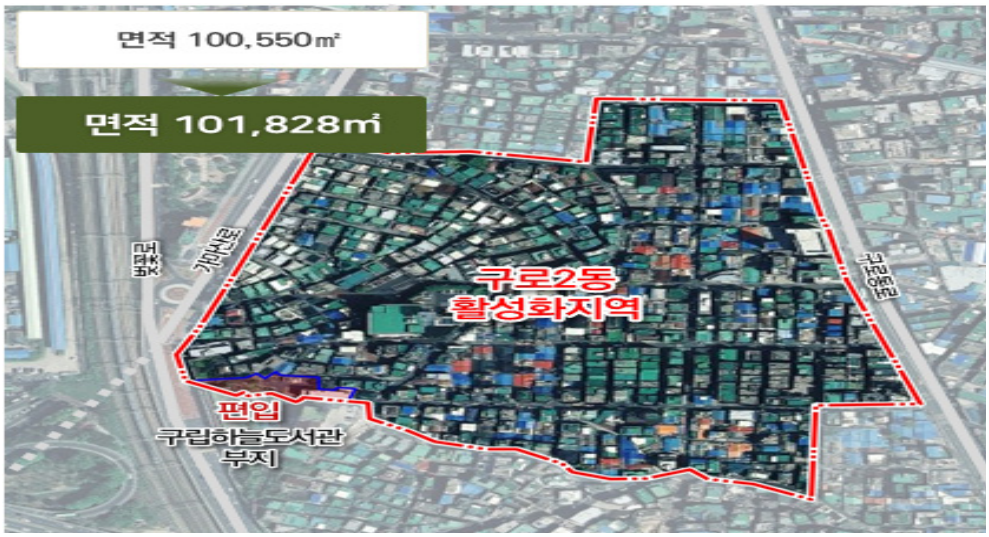
도봉2동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9.6.27 신규)

- 위치 : 도봉구 도봉동 625번지 일대
- 면적 : 96,615㎡
- 유형 : 주거지지원형 (서울형 : 근린 재생형)



구로2동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0.7.16 변경)

- 위치 : 구로구 구로2동 일대
- 면적 : 101,828㎡
- 유형 : 주거지지원형 (서울형 : 주거지재생형)



신월3동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0.7.16 변경)

- 위치 : 양천구 신월3동 일대
- 면적 : 106,023㎡
- 유형 : 주거지지원형 (서울형 : 주거지재생형)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현황 : 총 205개소

: 법정 도시재생활성화지역(47개소)

사업명		관련법	개소수	대상지
경제기반형 (일자리거점육성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5	• (`15) 서울역, 창동·상계, 장안평 • (`17) 영등포·경인로 • (`19) 홍릉 연구단지
근린재생형	중심시가지형 (생활중심지 특화형)		15	• (`15) 세운상가, 창덕궁앞 도성한복판 • (`17) 용산전자상가, 마장동, 청량리, 안암동, 4.19사거리, 독산우시장, 정동 • (`19) 홍제역, 효창공원, 북촌가회동, 구의역, 풍납동, 면목패션봉제진흥지구
	일반근린형 (주거지재생형)		21	• (`15) 창신 · 숭인, 가리봉, 해방촌, 성수, 신촌, 암사, 장위, 상도4동 • (`17) 창3동, 천연 · 충현동, 묵2동 • (`18) 송정동, 인수동, 사당4동, 성내2동 • (`19) 사근동, 응암3동, 목3동, 공항동, 중화2동, 청운효자사직동
	주거지지원형 (주거지재생형)		6	• (`17) 수유1동, 불광2동, 난곡 · 난향동 • (`18) 도봉2동 • (`19) 신월3동, 구로2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1	• 용산혁신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			1	• 영등포 영진시장 · 아파트
우리동네살리기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5	• (`18) 제기동, 독산1동 • (`19) 은천동, 제기동, 본동
도시활력 등 소규모 국비지원사업			11	• 도시활력증진사업 : 필동 서애길 활성화 계획 등 11개소
			2	• 새뜰마을사업 : 금천구 시흥5동 ,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6	• 소규모 재생사업 : 서대문구 홍제동, 구로구 개봉1동, 도봉구 창3동, 성동구 송정동, 성동구사근동, 용산구 이태원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6	• 연남동, 정릉동1, 미아1, 또바기마을, 개봉1동 등 86개소
거점확산형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개별법에 따라 추진	15	• 광운대역, 상암 · 수색,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서남권 G-Valley, 세종대로, 석유비축기지, 노들섬, 여의도일대 한강협력사업, 서촌, 돈의문 박물관 마을, 남산예장자락, 백사마을 • 현대차 미래연구소, 동부제강 부지, 선교사주택
	골목길재생사업	서울시 골목길 지원조례	31	• (시범사업, 2개소)후암동 두텁바위로40길 일대, 성북동 선잠로2가길 일대 • (`18) 운니·익선동 삼일대로32길 일대, 장충동2가 퇴계로 56가길 일대, 독산동 시흥대로101·103길 일대, 용답동 용답21길 일대, 수유동 삼양로73가길 일대, 월계동 광운로13 · 15 · 17길 일대, 천연동 독립문로12길 일대, 합정동 토정로4길 일대, 연남동 동교로51길 일대, 강남구 대치동 삼성로64길 일대, 영등포구 신길3동 신길로41라길일대 • (`19) 권농동 · 와룡동 일대, 이태원동 소월로40길 일대, 송정동 송정12라길 일대, 자양동 뚝섬로30길 일대, 묵동 동일로161길 일대, 수유동 삼양로87길 일대, 창동 덕릉로 54가길 일대, 망원1동 월드컵로 19길일대, 목동 중앙본로1길 일대, 화곡8동 초록마을로 26길17일대, 고척로3길~경인로15길 일대, 난곡동 난곡로15길 일대 • (`20) 어울마당로 일대, 돈화문로 11가길일대, 소월로20길 일대,장위14길일대, 구로동로2다길 일대, 망우로18다길 일대
11대 사업			205	

구 고 시

◈ 중구고시 제2020-91호

저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지구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41호(2006.04.20)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중구고시 제2006-28호(2006.05.18.), 제2007-53호(2007.06.28.), 제2009-10호(2009.03.12.)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23호(2012.05.10.)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정비계획) 변경 결정 된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2가 82-2번지 일대 저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정비계획)을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6일
중 구 청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저동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구분	정비사업의 명칭	위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저동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구 저동2가 82-2번지 일대	2,041.5	증)16.5	2,058.0	·택지개발예정촉량 성과에 따른 면적 변경

다. 정비계획 결정
1)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041.5	증)16.5	2,058.0	100.0
획 지		1,541.5	증)4.5	1,546.0	75.1
정비기반시설	소계	500.0	증)12.0	512.0	24.9
	도로	120.88	증)1.92	122.8	6.0
	공원	379.12	증)10.08	389.2	18.9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비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 계	2,041.5	증)16.5	2,058.0	100.0	
일반상업지역	2,041.5	증)16.5	2,058.0	100.0	

3) 정비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1	15	집산 도로	125 (33)	을지로2가 123	저동2가 76-14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199	을지로2가 148-54	을지로2가 127-1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2006-141호 (2006.4.20)	-

※ ( )는 사업지내 연장임

나) 공원(변경)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원	소공원	저동2가 83-6 일대	379.12	증)10.08	389.2	서울시고시 제2006-141호(2006.4.20.)	

4)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층수)	비고
	명 칭	면적(㎡)	명 칭	면적(㎡)						
기정	저동구역 제2지구	2,041.5	획지	1,541.5	저동2가 82-2 일대	숙박 시설	60 이하	1,176 이하	105m이하 (지상26층/지하6층)	-
변경		2,058.0		1,546.0					105m이하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수표다릿길과 이면도로변에 2m 건축한계선 지정							

5) 기타 정비계획사항 : 변경없음

2. 변경사유

○ 택지개발 예정측량 성과에 따른 토지면적 정정 사항 반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444호, 2009.02.06.) 개정에 따른 층수 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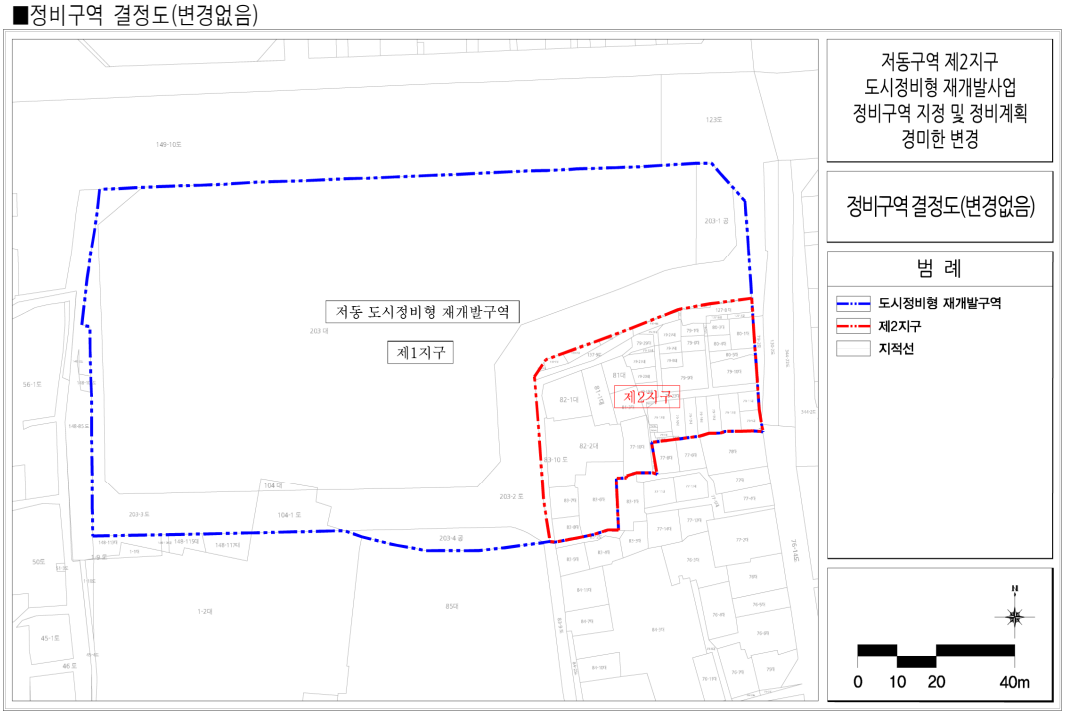
3. 관련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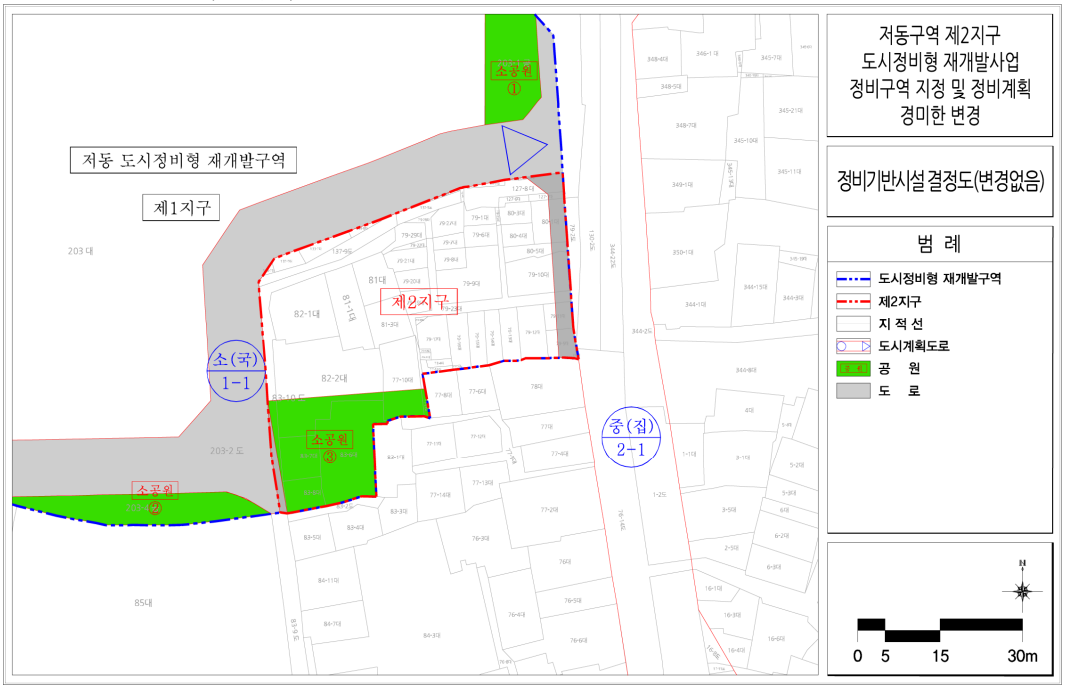
4.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도심재생과(☎3396-5772)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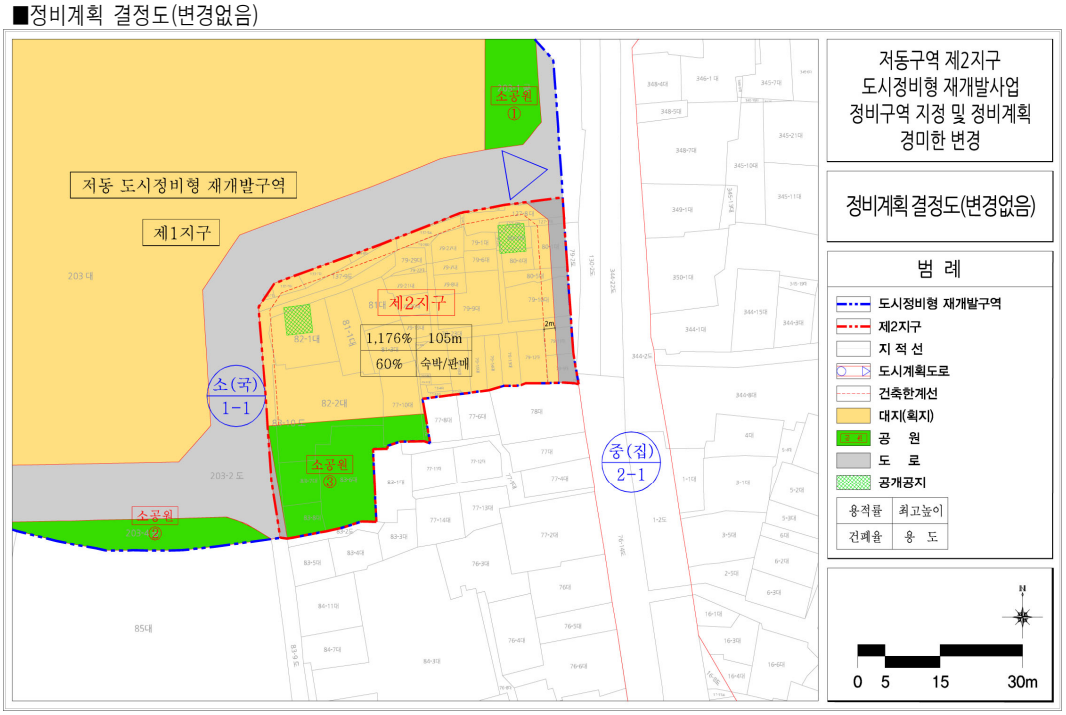
■정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정비기반시설 결정도(변경없음)



■정비계획 결정도(변경없음)



◈ 광진구고시 제2020-87호

도시계획시설사업(용마도시자연공원조성-광진) 실시계획 인가고시(변경)

1. 용마도시자연공원은 내무부 고시 제413호(1958.2.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318호(2003.10.30.)로 최종 결정 고시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제168호(2020.2.20.)로 열람 공고되어, 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20-46호(2020.5.1.)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563호(2020.6.18.)로 실시계획인가 변경인가를 위해 열람 공고한 용마도시자연공원(광진)조성에 대하여
2. 보상내역(물건조사) 추가사항을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본 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통지를 갈음하며,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7월 16일
광 진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5-141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사업의 명칭 : 용마도시자연공원(광진) 조성
다. 사업의 면적 : 7,071㎡(사업면적 변경 없으며, 물건조사 추가)
라. 사업의 시행자 : 광진구청장(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마.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장
바. 사업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021.12.31.일까지(변경없음)
사. 열람장소 : 광진구청 (공원녹지과 ☎450-7773)
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지번,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지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의종류
1	광진구 광장동 5-141	임야	1,336	1,336	이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58-1 잠실대우레이크월드 1203	5분의 1	한국전력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120)	구분지상권설정 (송전선 하부지 1336㎡의 지상 20m 이상 지상 53m 이하 공중공간)
					이원효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9 올림픽선수, 기자촌아파트 117-304	5분의 1			
					이원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5-1 대우트럼프월드 에이2103	5분의 1			
					노건환	미합중국, 33101번지 3알디 코트사우스웨스트 페데랄웨이, 워싱톤 98023	5분의 1			
					한인숙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24-1 파크타워 105-1601	5분의 1			
2	광장동 5-118	임야	350	350	전주이씨학성군파종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75-198	단독			
3	광장동 370-6	답	30	30	한인숙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24-1 파크타워 105-1601	단독			
4	중곡동 176-109	임야	194	194	이정석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716-10	단독			
5	중곡동 176-116	임야	161	161	윤복균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176-62	단독			
6	중곡동 176-122	임야	62,042	925	학교법인 일송학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94-195	단독			
7	광장동 5-115	임야	3,086	3,086	학교법인장로회신학대학교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353	단독			
8	광장동 5-116	임야	2,954	989	학교법인장로회신학대학교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353	단독			

물건조서(추가)

연번	소재지	물건의종류	구조	수량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의종류	
1	중곡동 176-116	건물(1층)	벽돌	4㎡	윤복균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176-62	단독				중곡동 176-62
		가건물(2층)	판넬	1㎡							
		건물(지층)	콘크리트	5㎡							
		슬라브	콘크리트	3㎡							
		화단		30㎡							
		수목	교목	6주							

◈ 동대문구고시 제2020-74호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94호(1997.06.12.)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6일
동 대 문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도시계획시설(철도) 경계 일부가 사유지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해당부지에 대해 향후 보상 및 사업계획이 없음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경미한 변경)을 통하여 철도시설에서 제외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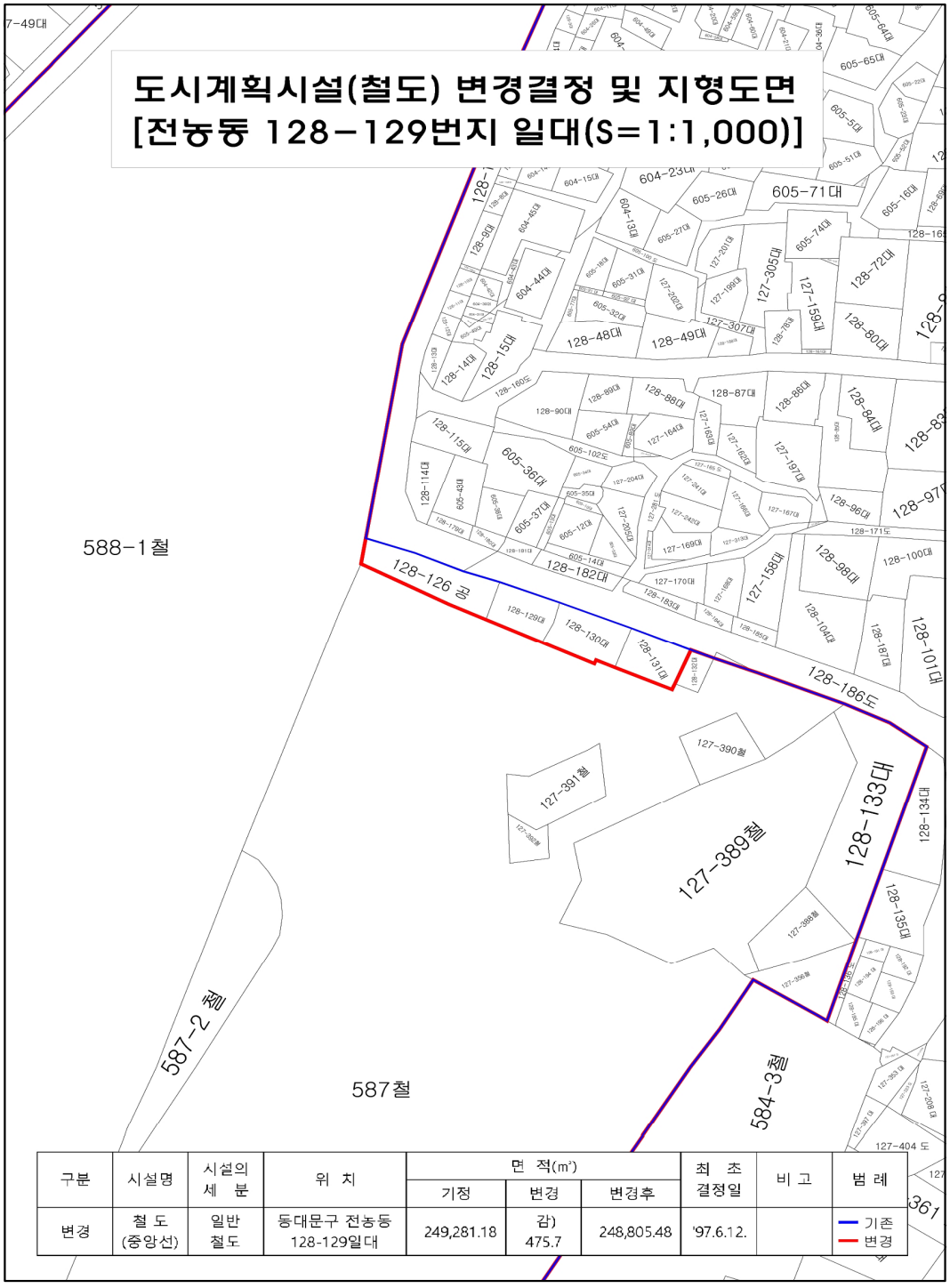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철도 (중앙선)	일반철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128-129일원	249,281.18	감)475.7	248,805.48	'97.6.12.	청량리역 일부변경

   나. 변경 사유서

구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철도 (중앙선)	• 면적변경 - 249,281.18㎡ → 248,805.48㎡ 감)475.7㎡	•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지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해당 필지(전농동 128-126,126,130,131)에 향후 보상계획 및 사업계획이 없음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하기 위한 경미한 변경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 도면은 참고용 도면 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2127-4583)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 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범 례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철 도 (중앙선)	일반 철도	등대문구 전농등 128-129일대	249,281.18	감) 475.7	248,805.48	'97.6.12.		기존 변경

◈ 동대문구고시 제2020-75호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등)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 결정을 실효하고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20년 7월 16일
동 대 문 구 청 장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실효)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조서

연번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1	폐지	소로	2	10	6	국지도로	58	전농동 534-6	전농동 530-64	일반도로	1964.01.24.(건고 768)	실효
2	폐지	소로	2	2	8	국지도로	209	전농동 60-22	전농동 55-9	일반도로	1978.09.12.(서고 467)	실효
3	폐지	소로	3	12	6	국지도로	90	제기동 167	제기동 174	일반도로	1964.01.24.(건고 768)	실효
4	변경	대로	3	122	25	국지도로	90	답십리동 486	답십리동	일반도로	1978.01.10.(서고 10)	미집행구간의 실효
5	변경	소로	3	9	4	국지도로	111	신설동 25	신설동 89	일반도로	1964.01.24.(건고 768)	미집행구간의 실효
6	변경	소로	2	4	10	국지도로	793	이문동 292-4	이문동 341-10	일반도로	1964.01.24.(건고 768)	미집행구간의 실효
7	변경	소로	3	14	6	국지도로	326	제기동 139	제기동 250	일반도로	1964.01.24.(건고 768)	미집행구간의 실효
8	변경	소로	3	15	6	국지도로	100	제기동 146	제기동 67	일반도로	1964.01.24.(건고 768)	미집행구간의 실효
9	변경	소로	3	11	6	국지도로	113	제기동 149-8	제기동 167-1	일반도로	1964.01.24.(건고 768)	미집행구간의 실효
10	변경	소로	4	2	4	국지도로	237	제기동 67-104	제기동 67-21	일반도로	1964.01.24.(건고 768)	미집행구간의 실효
11	변경	소로	3	1	6	국지도로	280	전농동 152-9	전농동 152-39	일반도로	1976.09.23.(서고 241)	미집행구간의 실효
12	변경	소로	1	1	10	국지도로	874	면목동1049-41	장안동 237-2	일반도로	1978.09.12.(서고 467)	미집행구간의 실효
13	변경	소로	2	3	8	국지도로	340	전농동 35-1	전농동 59	일반도로	1978.09.12.(서고 467)	미집행구간의 실효
14	변경	소로	2	-	8	국지도로	491	제기동 148-64	제기동 268-20	일반도로	1993.02.24.(서고 48)	미집행구간의 실효
15	변경	소로	1	8	8	국지도로	50	장안동 284-1	장안동 284-1	일반도로	1997.11.06.(동고 107)	미집행구간의 실효
16	변경	소로	1	5	10	국지도로	616	장안동 138-8	장안동 153-10	일반도로	1978.09.11.(서고 467)	미집행구간의 실효
17	변경	소로	2	6	6	국지도로	141	답십리동 1-24	답십리동 1-99	일반도로	1974.12.18.(서고 188)	미집행구간의 실효
18	변경	소로	2	4	8	국지도로	80	전농동 46-28	전농동 55-38	일반도로	1978.09.11.(서고 467)	미집행구간의 실효
19	변경	소로	2	1	8	국지도로	113	전농동 60-33	전농동 88-7	일반도로	1978.09.11.(서고 467)	미집행구간의 실효
20	변경	소로	1	1	10	국지도로	155	휘경동 276-1	휘경동 308-171	일반도로	1976.04.21.(서고 89)	미집행구간의 실효
21	변경	소로	3	9	6	국지도로	907	휘경동 192-19	휘경동 145-40	일반도로	1988.09.15.(서고 741)	미집행구간의 실효
22	변경	소로	3	19	4	국지도로	43	휘경동 320-2	휘경동 183-113	일반도로	2000.08.22.(서고 242)	미집행구간의 실효
23	변경	소로	2	8	9	국지도로	45	이문동 176-1	이문동 176-71	일반도로	1992.09.28.(서고 305)	미집행구간의 실효
24	변경	중로	1	178	20	국지도로	249	답십리동 대3-11	답십리동 19	일반도로	1983.11.11.(서고 613)	미집행구간의 실효
25	변경	중로	1	180	20	국지도로	187	답십리동 19-19	답십리동 12-203	일반도로	1978.06.10.(서고 273)	미집행구간의 실효
26	변경	중로	3	112	12	국지도로	279	답십리동 172	답십리동 1-180	일반도로	1978.06.10.(서고 273)	미집행구간의 실효
27	변경	소로	3	-	6	국지도로	124	이문동 346-118	이문동 346-97	일반도로	1964.01.24.(건고 768)	미집행구간의 실효
28	변경	소로	2	3	8	국지도로	223	회기동 65-148	회기동 61-11	일반도로	1978.05.01.(서고 187)	미집행구간의 실효
29	변경	소로	1	-	10	국지도로	145	회기동 65-102	회기동 71-4	일반도로	1978.05.01.(서고 187)	미집행구간의 실효
30	변경	소로	2	-	8	국지도로	260	회기동 65-77	회기동105-33	일반도로	1978.05.01.(서고 187)	미집행구간의 실효
31	변경	소로	1	-	8	국지도로	200	전농동 55-9	전농동 72	일반도로	1978.09.12.(서고 467)	미집행구간의 실효
32	변경	소로	2	-	8	국지도로	80	장안동 216-11	장안동 218-5	일반도로	1978.09.12.(서고 467)	미집행구간의 실효
33	변경	소로	3	-	10	국지도로	150	장안동 236-4	장안동 237-2	일반도로	1978.09.12.(서고 467)	미집행구간의 실효
34	변경	소로	1	-	10	국지도로	329	장안동 285-1	장안동 94-27	일반도로	1978.09.12.(서고 467)	미집행구간의 실효

35	변경	소로	2	264	8	국지도로	550	장안동95-9 (대로3-40)	중로1-52	일반도로	1974.12.18.(서고 188)	미집행구간의 실효
36	변경	소로	3	-	8	국지도로	140	장안동 92-1	장안동 92-12	일반도로	1974.12.18.(서고 188)	미집행구간의 실효
37	변경	중로	1	179	20	국지도로	300	답십리동	답십리동 467	일반도로	1978.06.12.(서고 274)	미집행구간의 실효
38	변경	소로	3	10	8	국지도로	415	장안동 418-5	장안동 245-2	일반도로	1975.01.18.(건고 13)	미집행구간의 실효
39	변경	소로	2	6	8	국지도로	56	회기동 45-56	회기동 54-151	일반도로	1963.01.24.(건고 68)	미집행구간의 실효
40	변경	소로	3	1	8	국지도로	320	전농동 130-1	전농동 581-1	일반도로	1963.01.24.(건고 68)	미집행구간의 실효
41	변경	소로	3	41	6	국지도로	144	전농동 199-1	전농동 129-1	일반도로	1965.06.02.(건고 1639)	미집행구간의 실효
42	변경	중로	3	322	12~21	국지도로	79	용두동39-394	답십리동 645-1	일반도로	1993.09.27.(서고 301)	미집행구간의 실효
43	변경	소로	2	-	8	국지도로	225	제기동 137-31	제기동 137-389	일반도로	1964.01.24.(건고 768)	미집행구간의 실효
44	변경	소로	2	-	6	국지도로	80	제기동 67-304	제기동 134-36	일반도로	1964.01.24.(건고 768)	미집행구간의 실효
45	변경	소로	2	-	6	국지도로	434	제기동 137-143	제기동 148-3	일반도로	1964.01.24.(건고 768)	미집행구간의 실효
46	변경	중로	3	5	12	집산도로	78	고산자로 421 (중3-8호선)	고산자로31길 6 (소1-2호선)	일반도로	서고 23(2000.2.9.)	미집행구간의 실효(용두1)
47	변경	중로	3	6	12	집산도로	129	왕산로 122 (왕산로)	왕산로26길 27 (소1-2호선)	일반도로	서고 23(2000.2.9.)	미집행구간의 실효(용두1)
48	변경	중로	3	7	12	집산도로	118	정릉천동로 60-4 (서측구역계)	왕산로26길 8 (중3-6호선)	일반도로	서고 23(2000.2.9.)	미집행구간의 실효(용두1)
49	변경	중로	3	8	12	집산도로	144	고산자로 421 (고산자로)	왕산로26길13 (중3-6호선)	일반도로	서고 23(2000.2.9.)	미집행구간의 실효(용두1)
50	변경	소로	1	2	10	국지도로	268	고산자로 415 (고산자로)	정릉천동로 58 (서측구역계)	일반도로	서고 23(2000.2.9.)	미집행구간의 실효(용두1)
51	변경	소로	2	4	8	국지도로	86	왕산로26가길13 (중3-6호선)	용두동 89-6 (서측구역계)	일반도로	서고 23(2000.2.9.)	미집행구간의 실효(용두1)

나. 공간시설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근린공원	동대문구 왕산로 26길 13	2,170	감)602.09	1,567.1	-	미집행구간의 실효(용두1)

2)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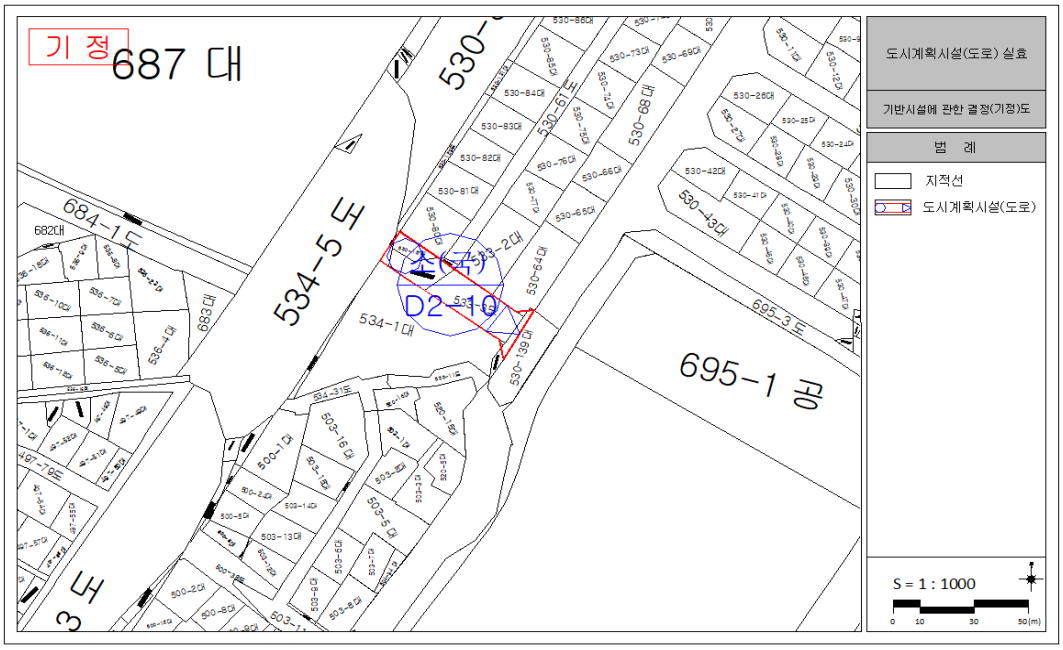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1	전농마을마당	동대문구 전농동 150-1일대	2,287	감)148.1	2,138.9	동고제1호 (1998.1.9.)	미집행 구간의 실효

2. 실효일자: 2020. 7. 1. (그 외)
2020. 8. 22. (도로 연번22번)
3. 실효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4. 지형도면: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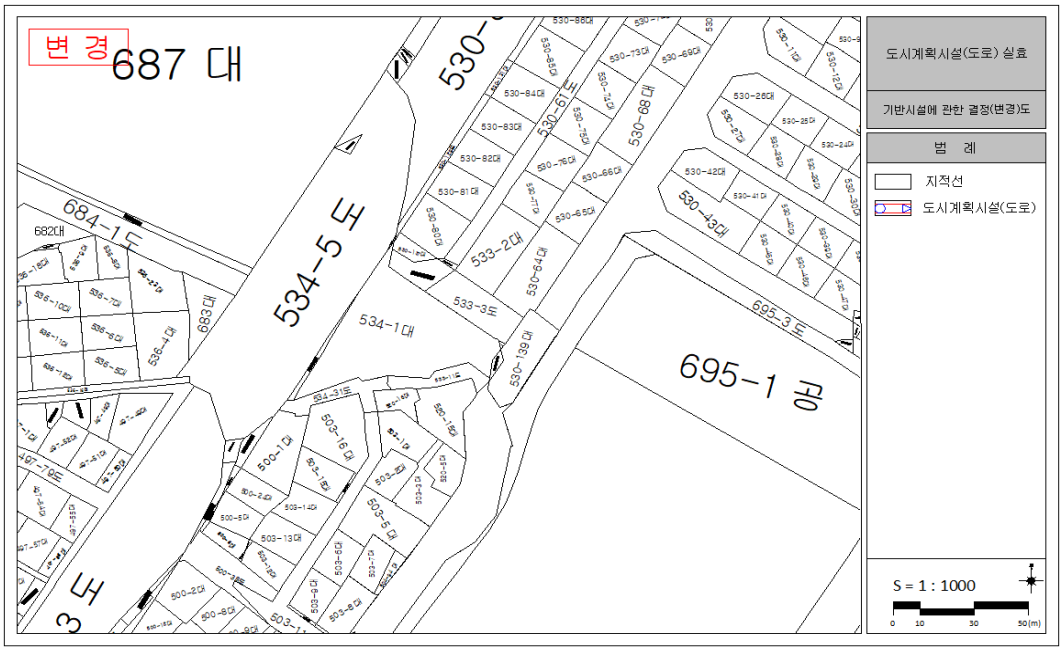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고시(실효)

-연번 1-

○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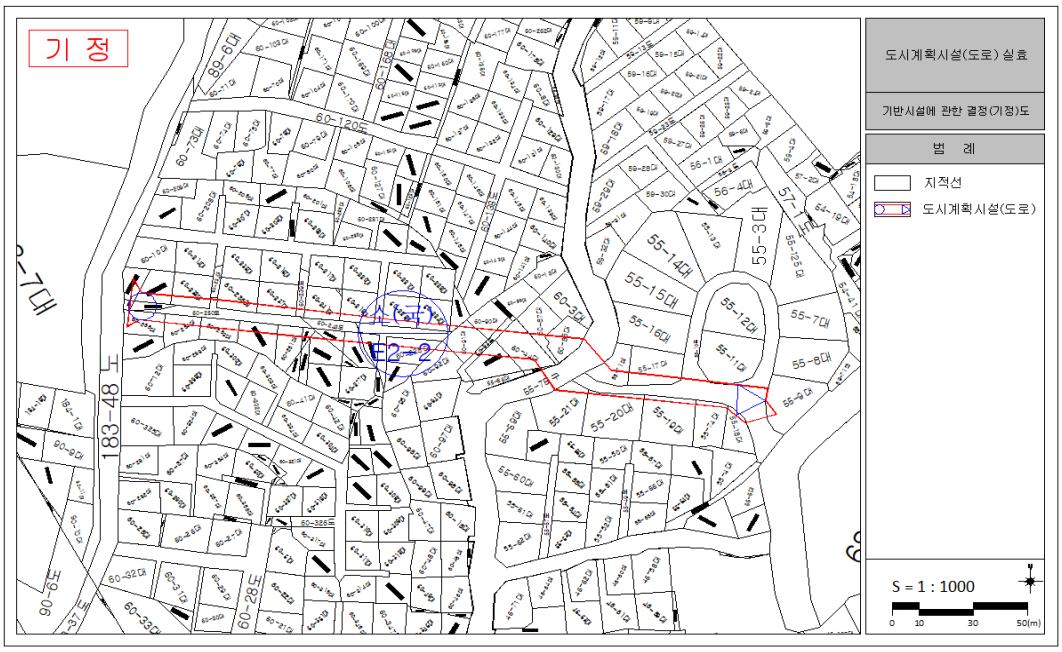
○ 변 경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고시(실효)

-연번 2-

○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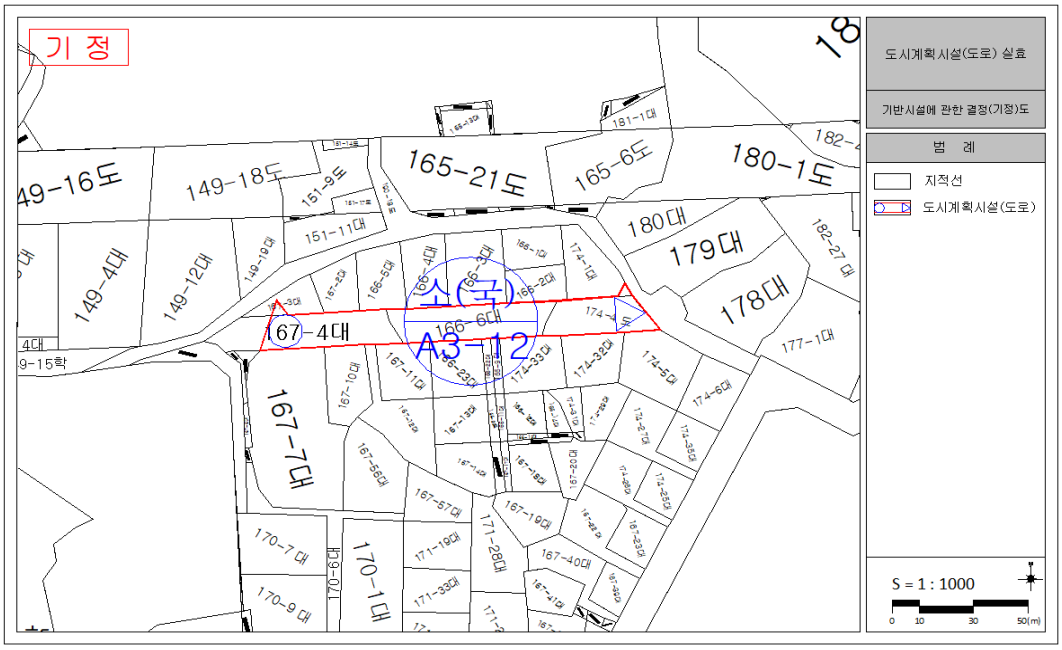
○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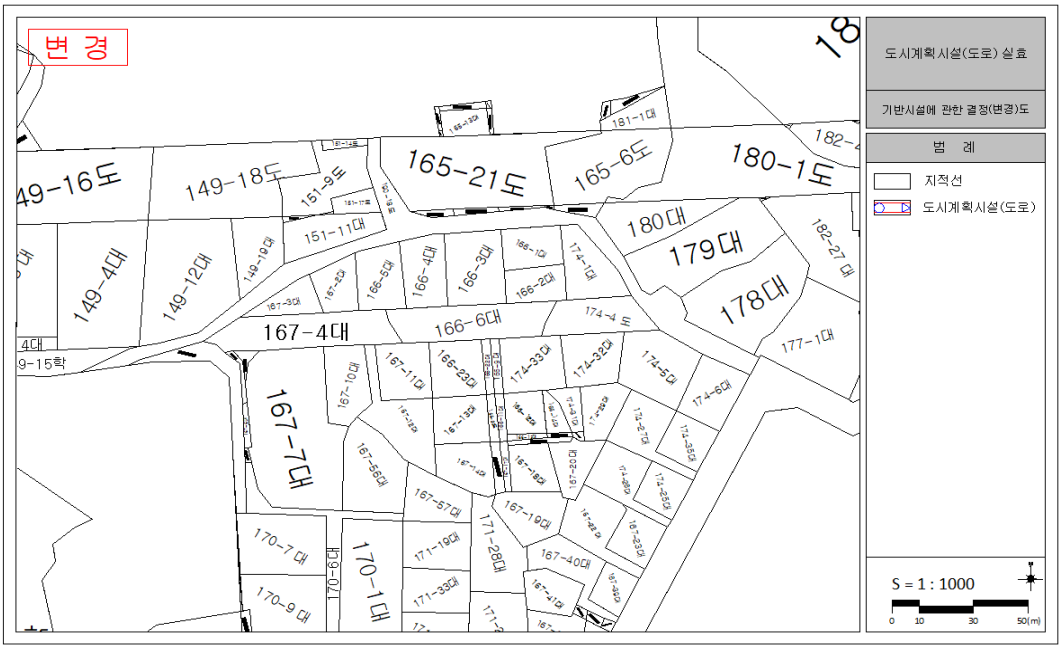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고시(실효)

-연번 3-

○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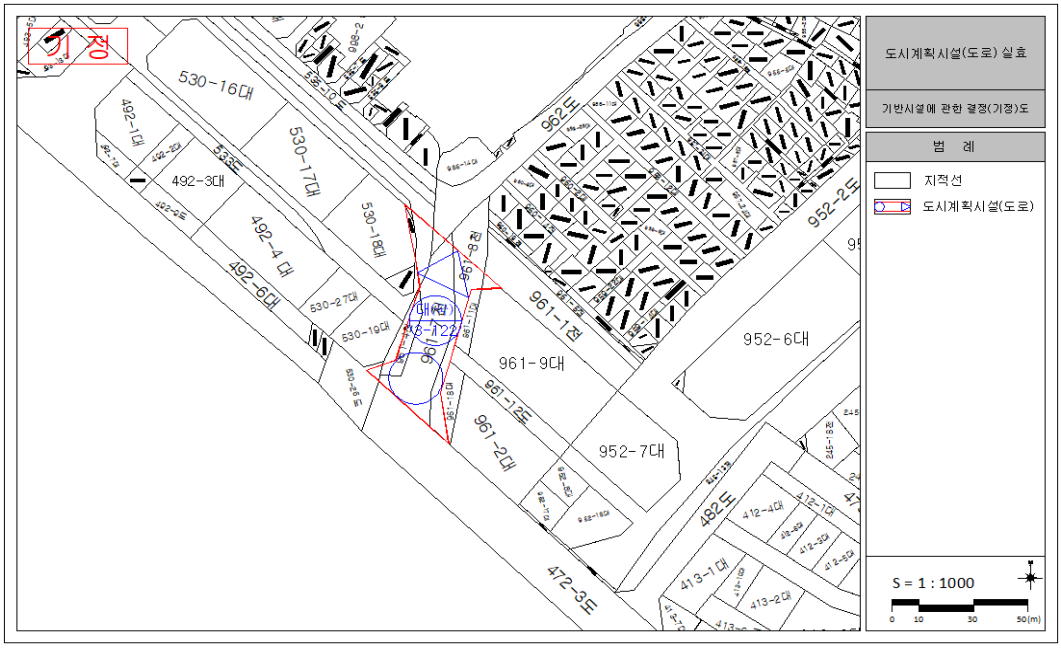
○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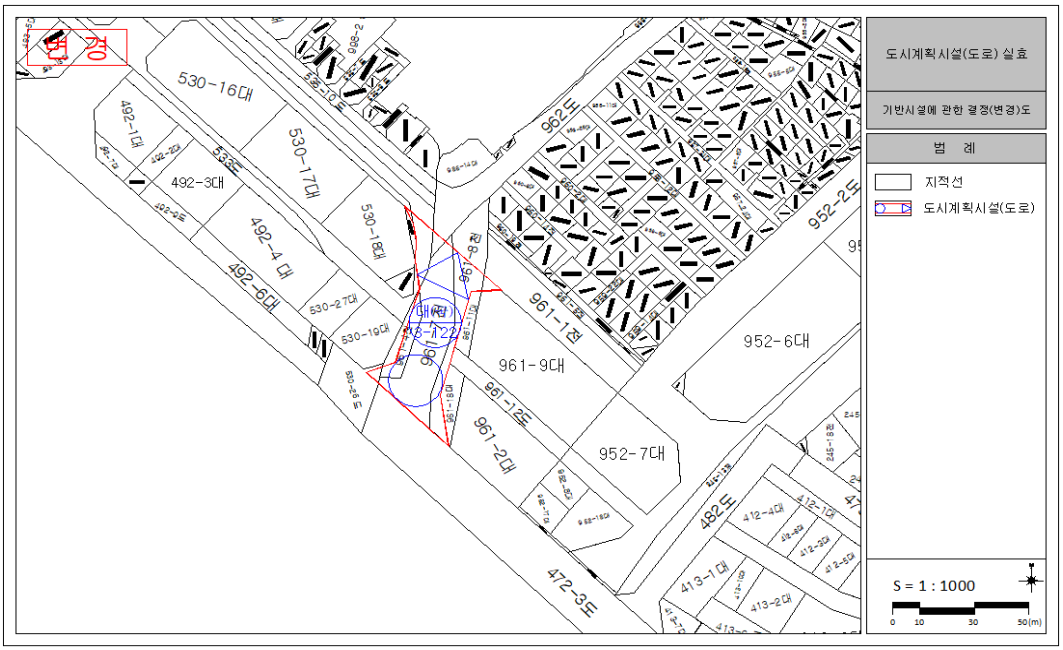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고시(부분실효)

-연번 4-

○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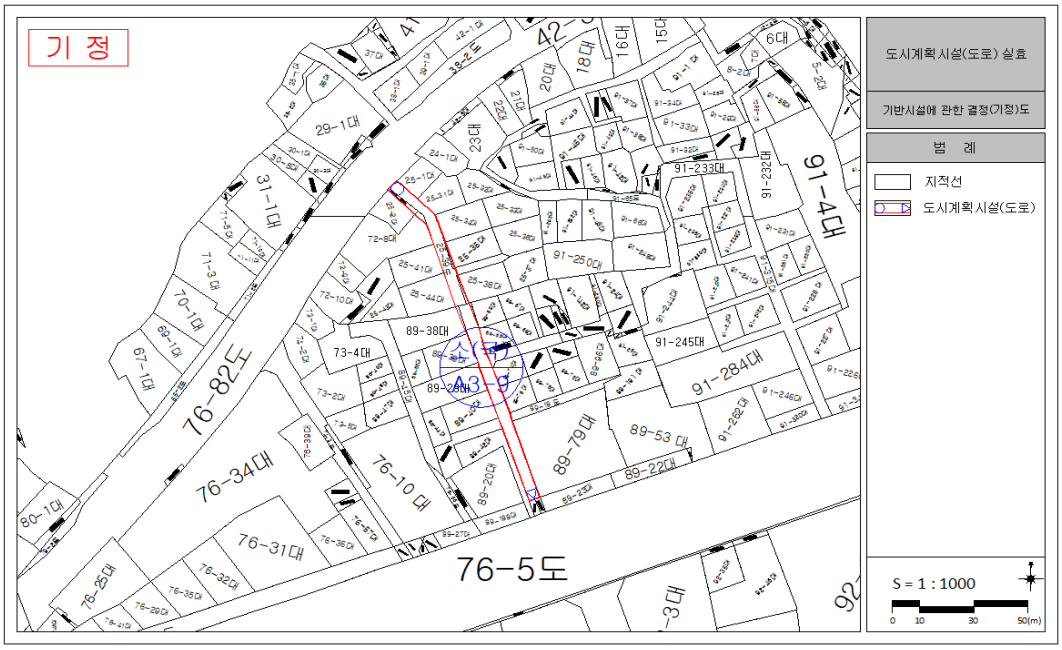
○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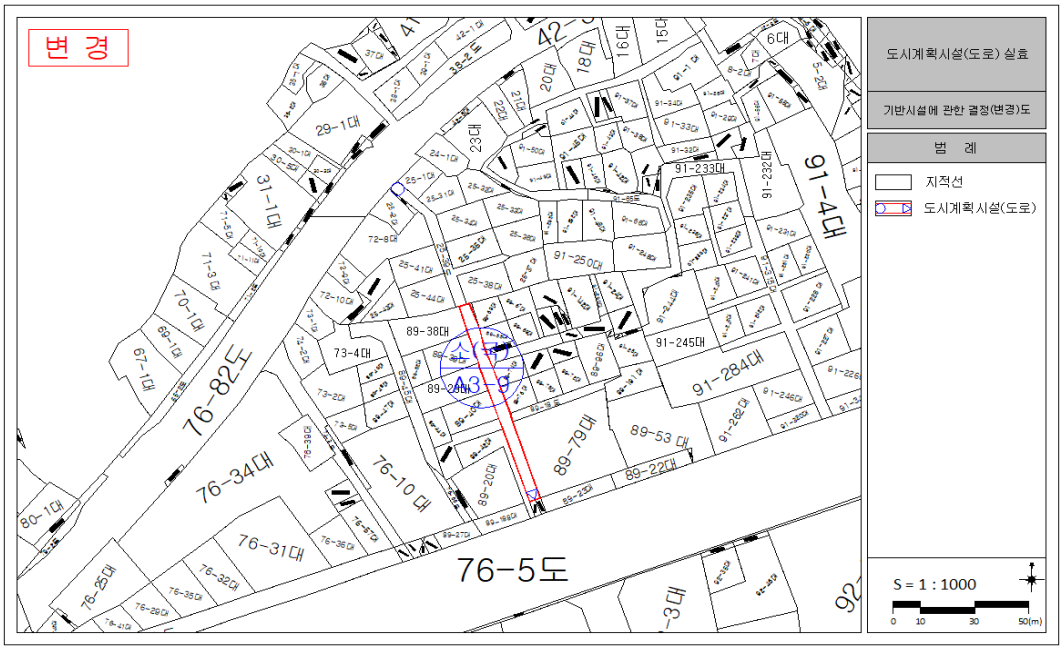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고시(부분실효)

-연번 5-

○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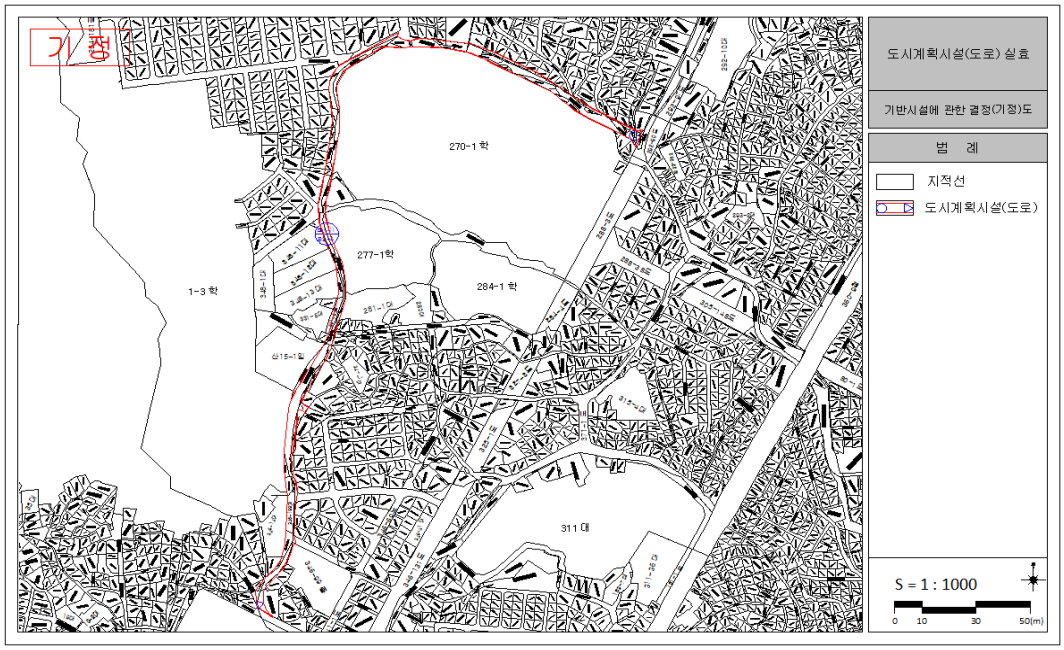
○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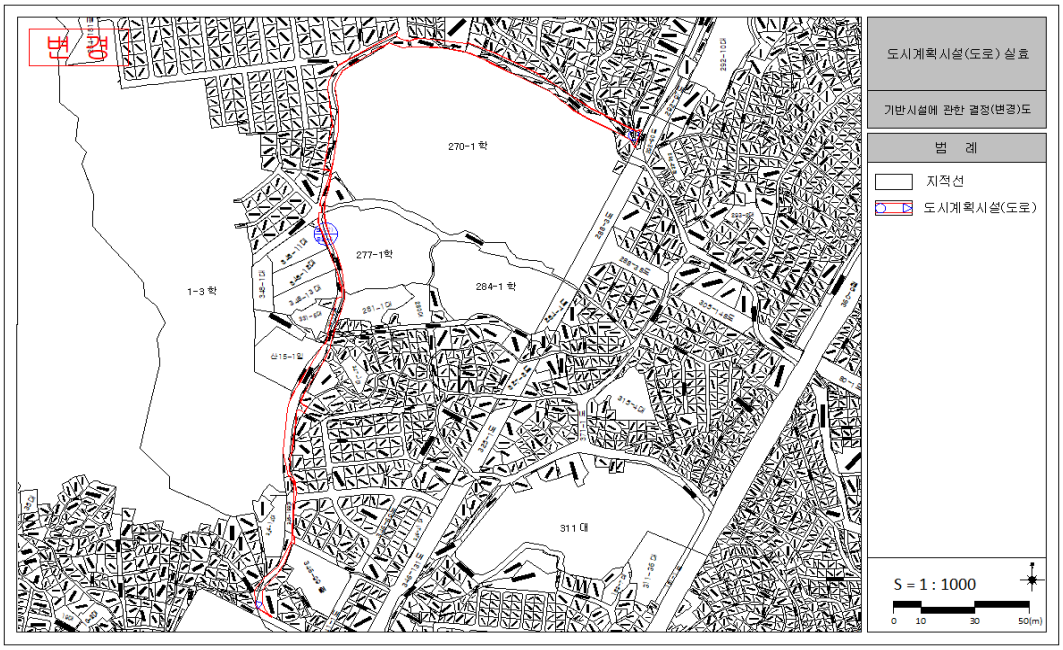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고시(부분실효)

-연번 6-

○ 기 정



○ 변 경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고시(부분실효)

-연번 7-

○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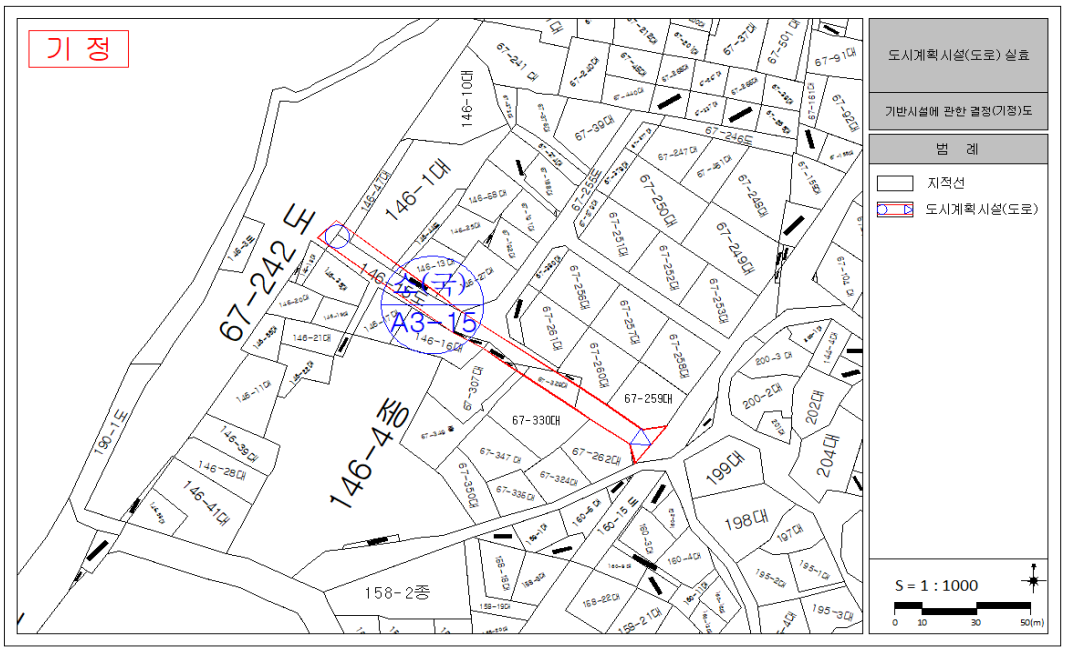
○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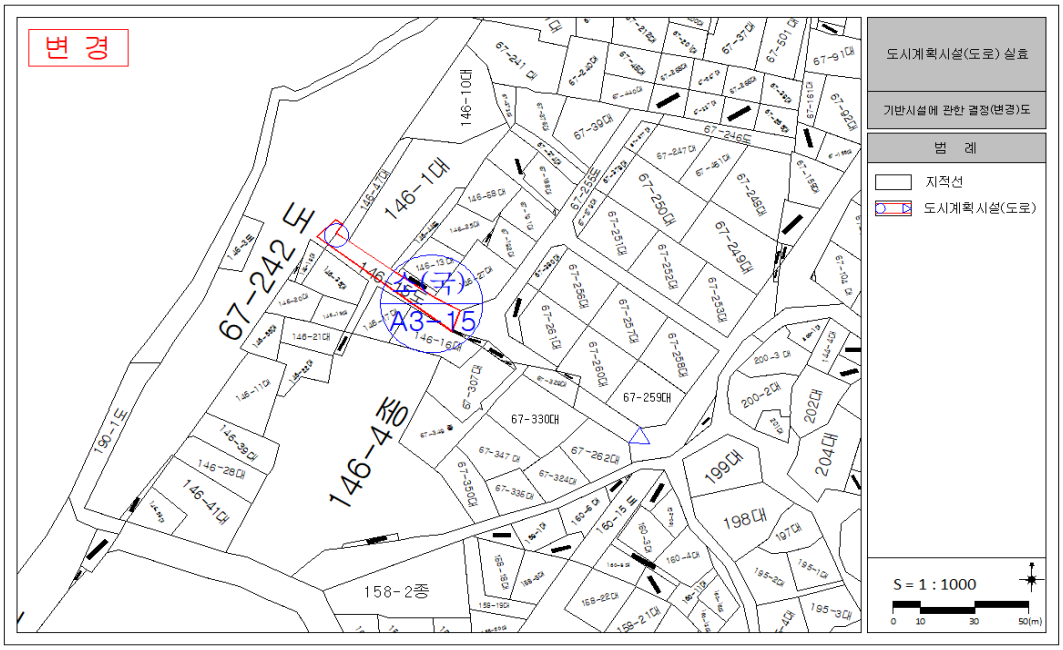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고시(부분실효)

-연번 8-

○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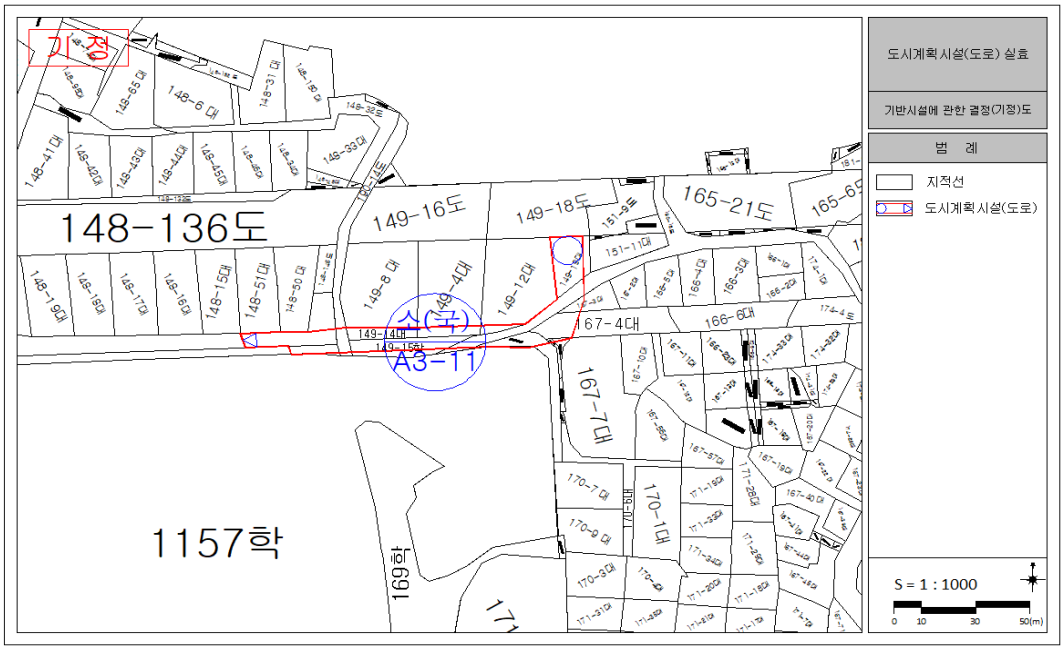
○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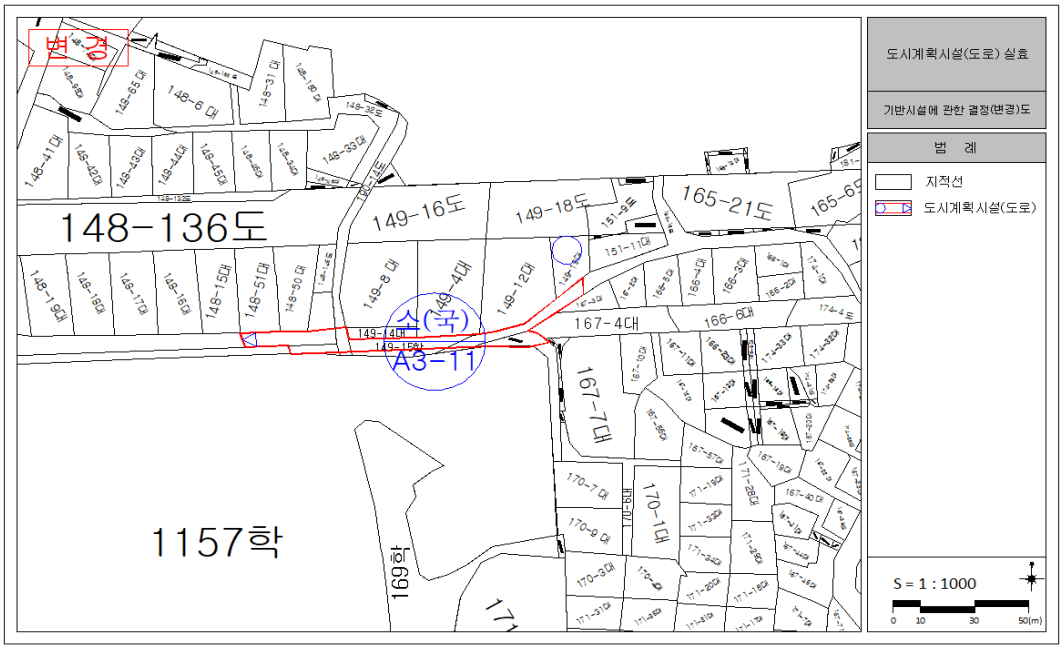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고시(부분실효)

-연번 9-

○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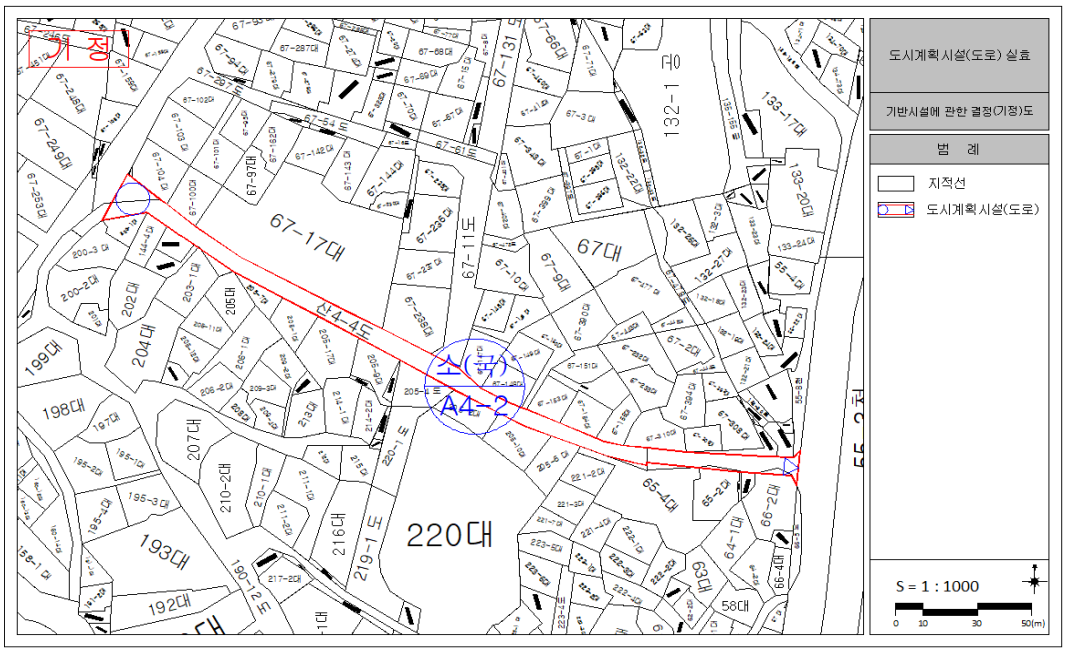
○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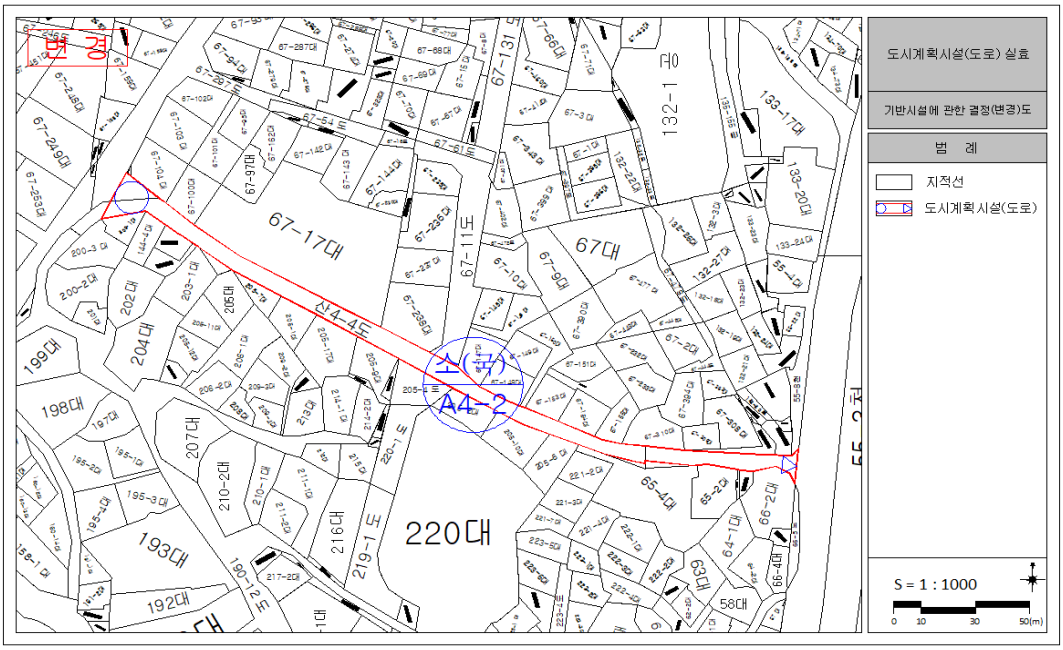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고시(부분실효)

-연번 10-

○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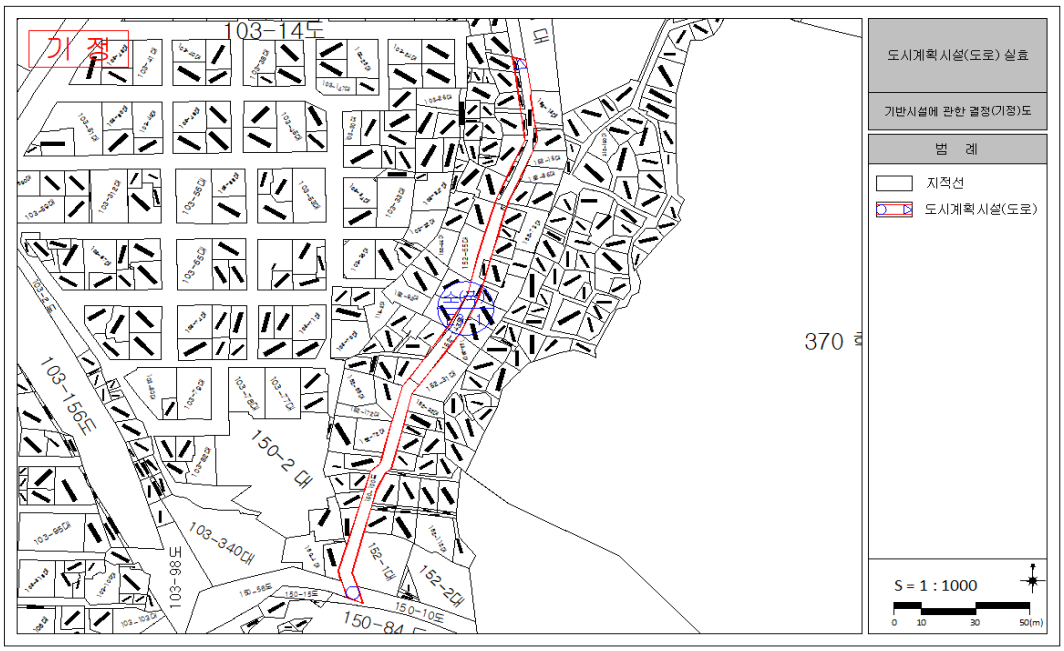
○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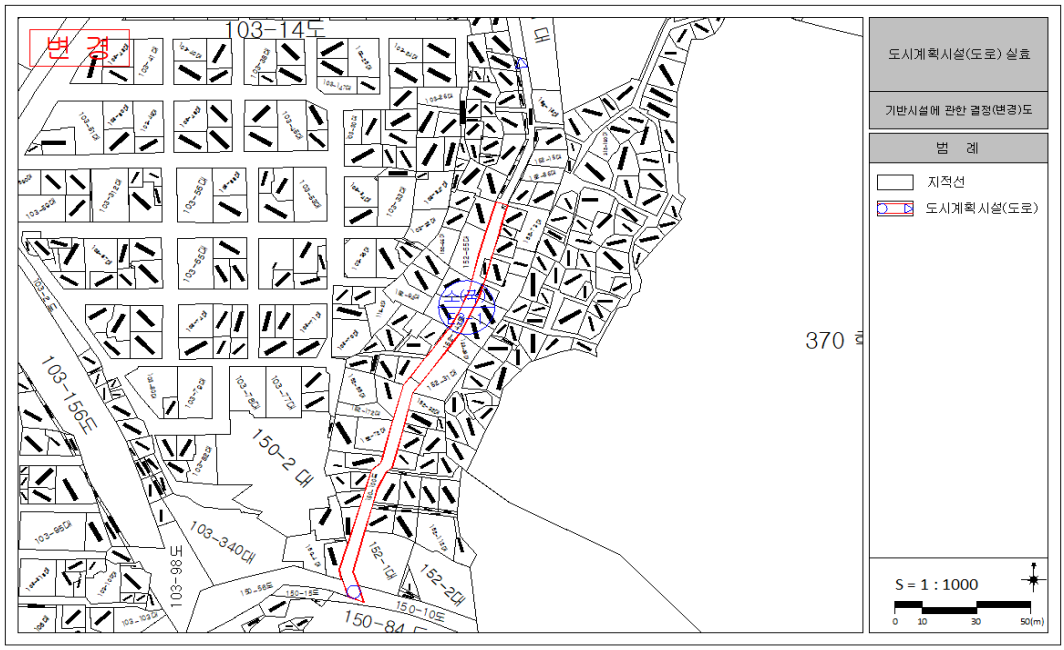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고시(부분실효)

-연번 11-

○ 기 정



○ 변 경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고시(부분실효)

-연번 12-

○ 기 정



○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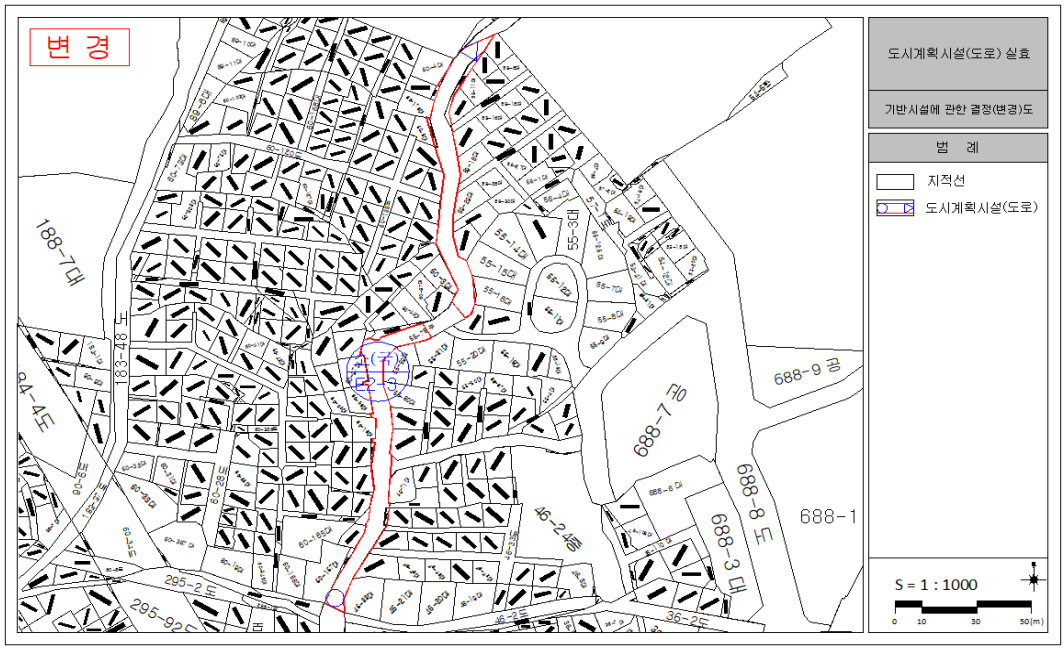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고시(부분실효)

-연번 13-

○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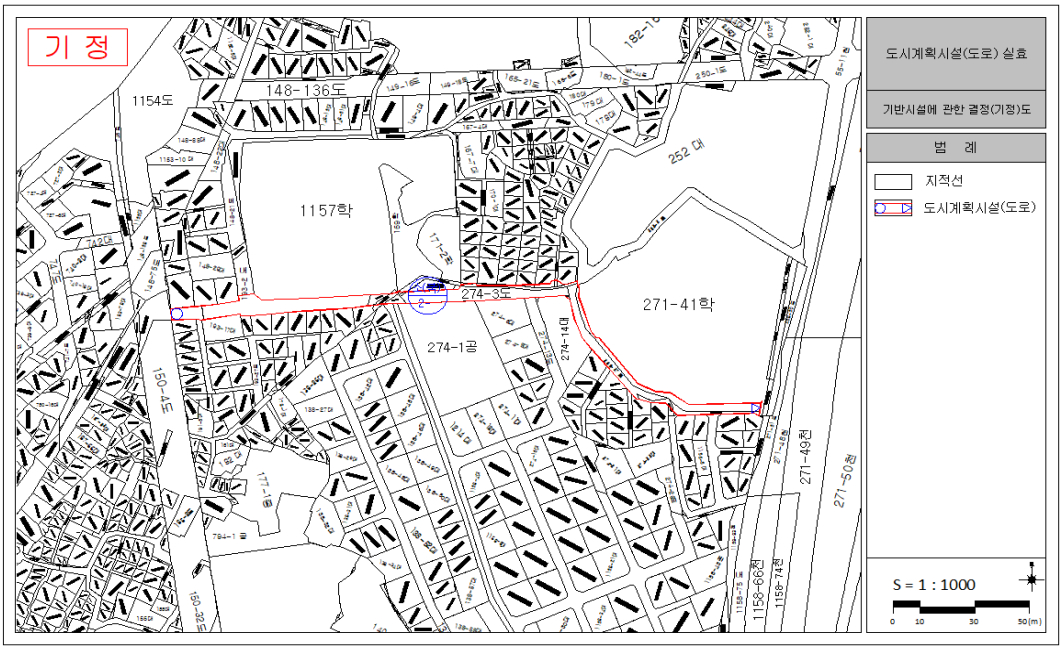
○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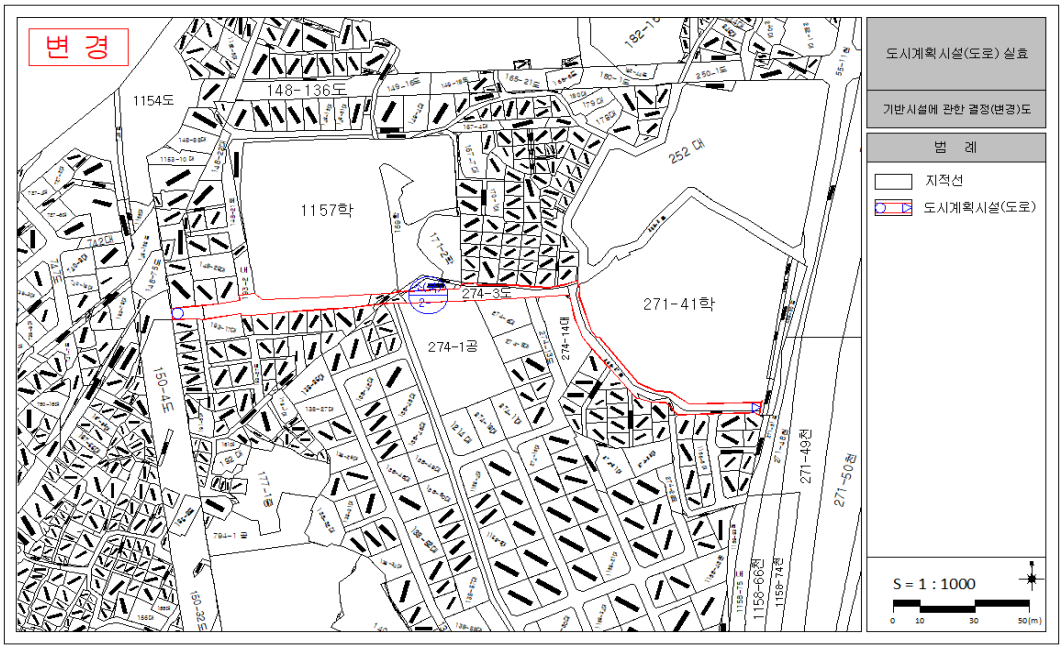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고시(부분실효)

-연번 14-

○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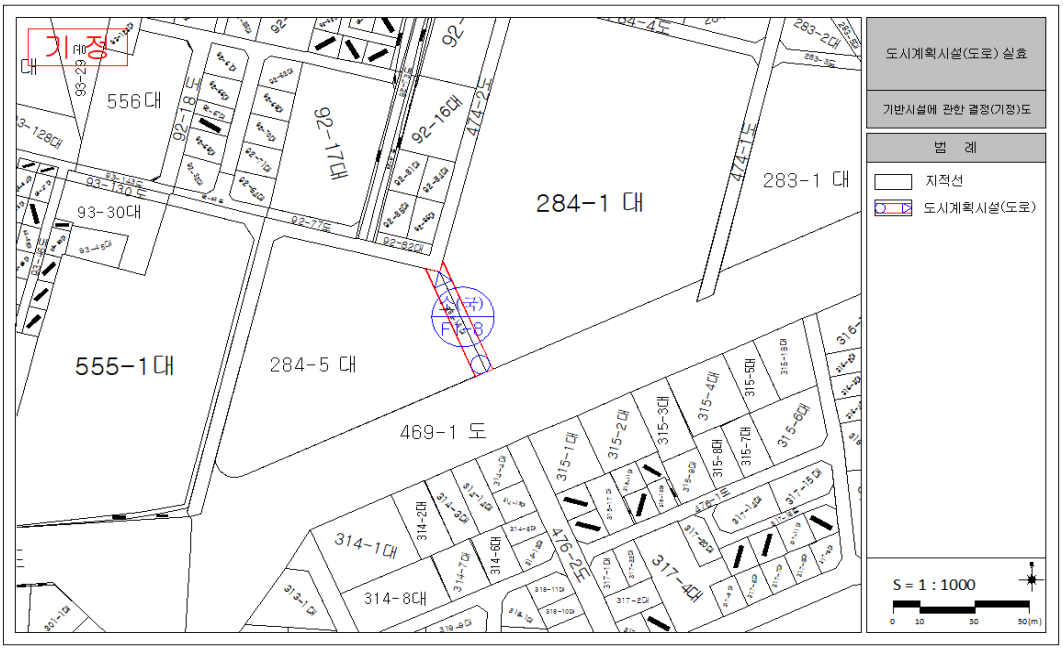
○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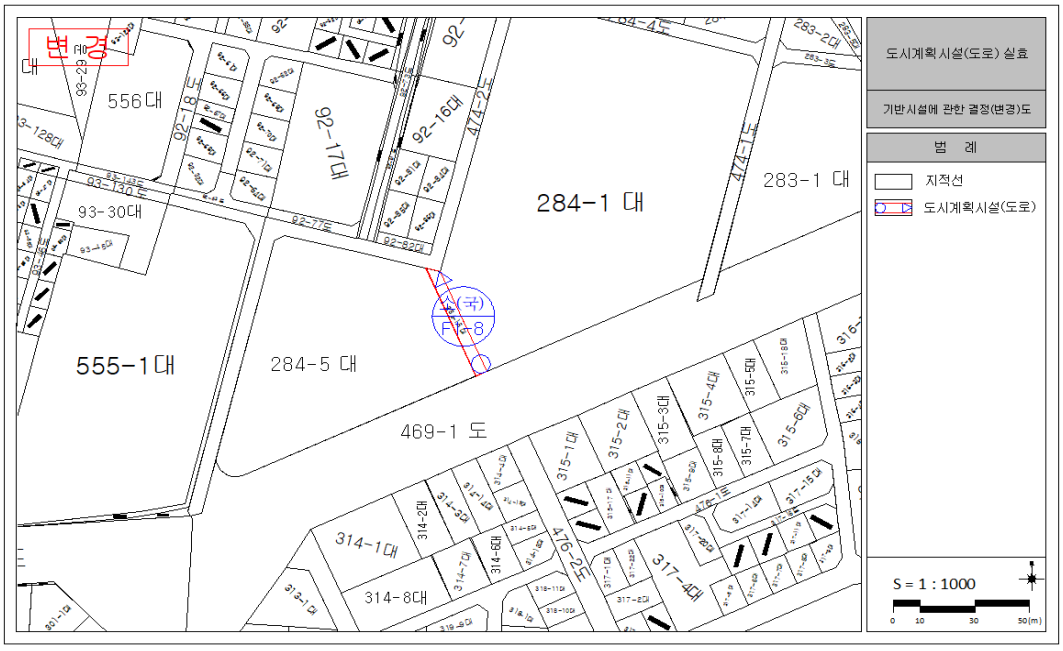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고시(부분실효)

-연번 15-

○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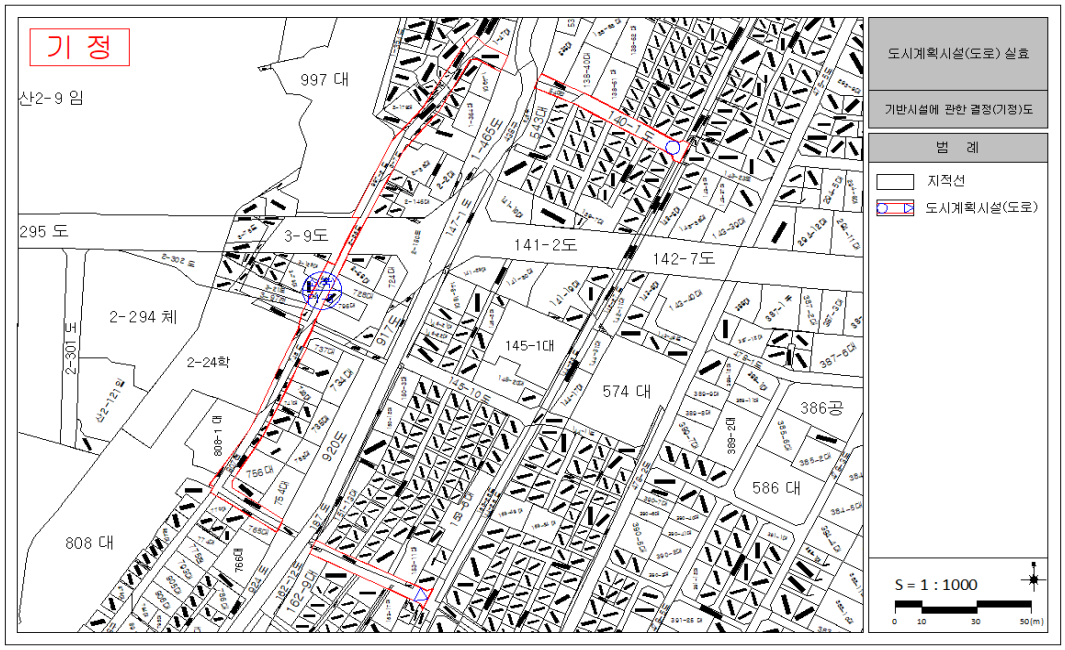
○ 변 경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고시(부분실효)

-연번 16-

○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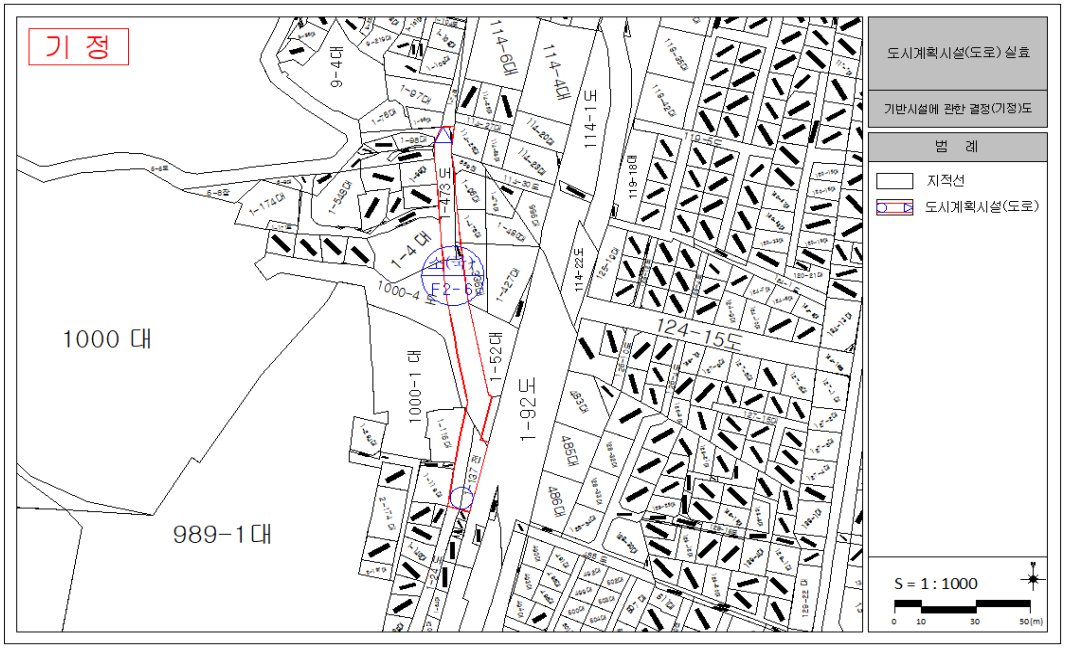
○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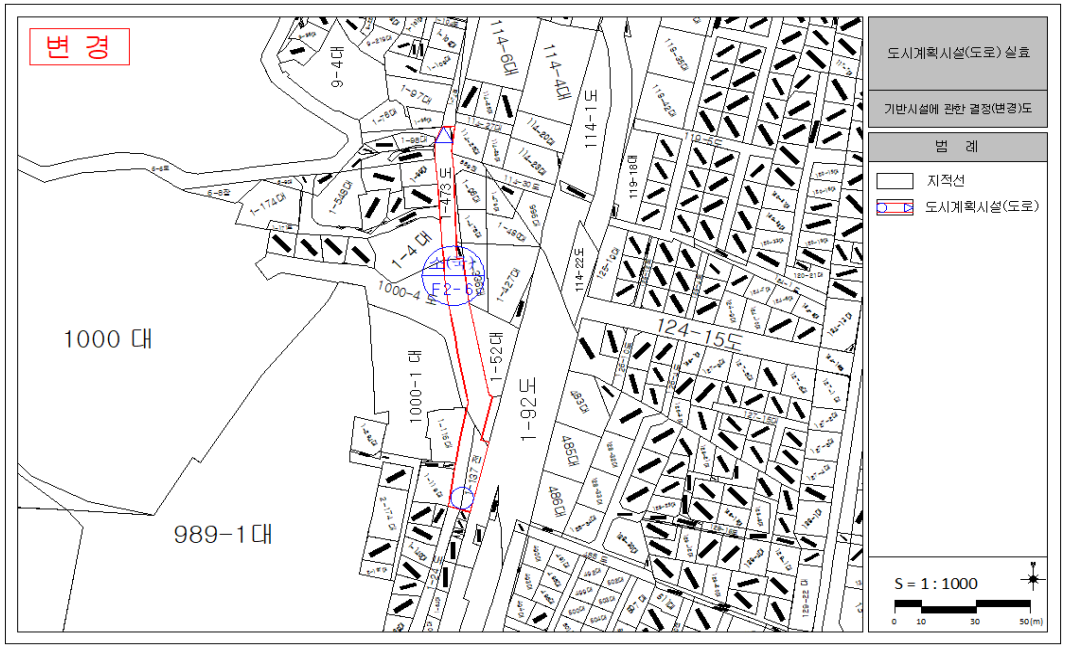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고시(부분실효)

-연번 17-

○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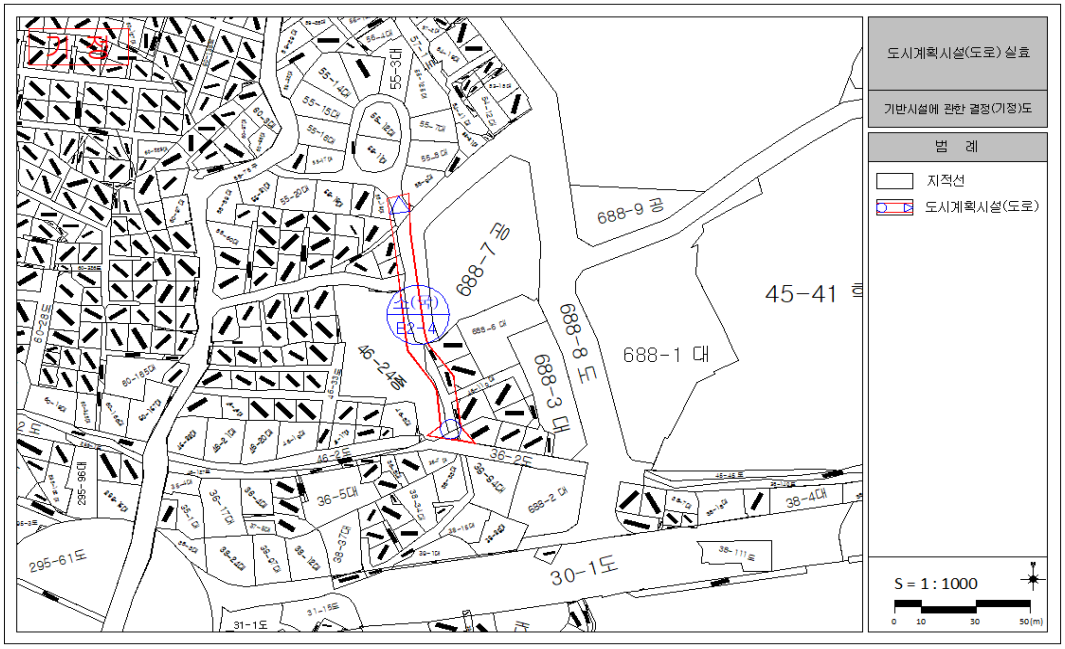
○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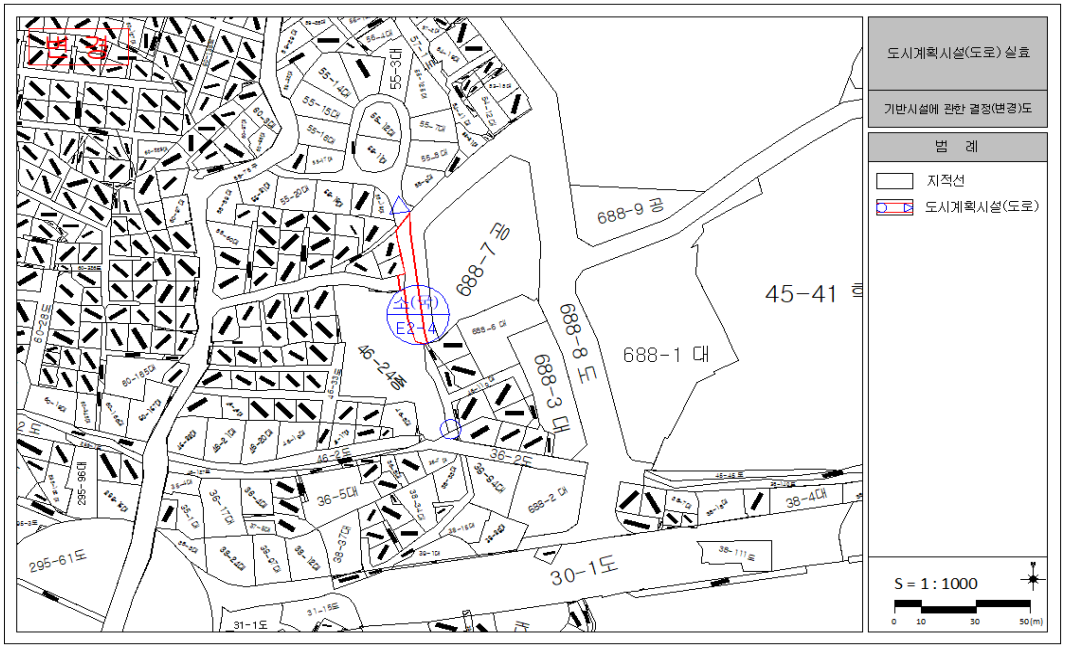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고시(부분실효)

-연번 18-

○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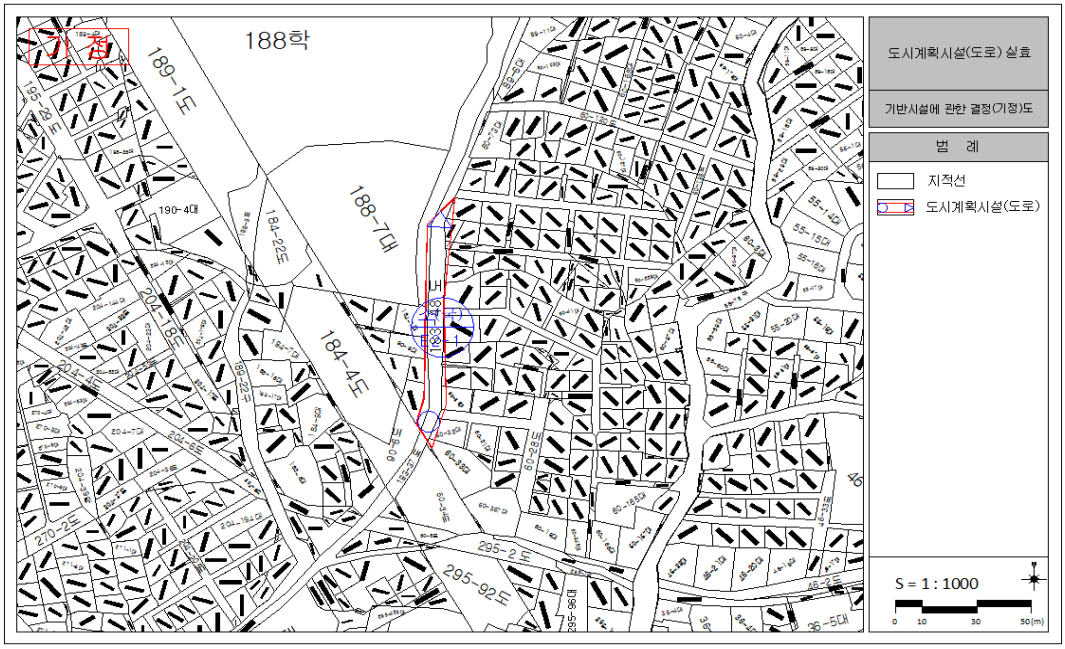
○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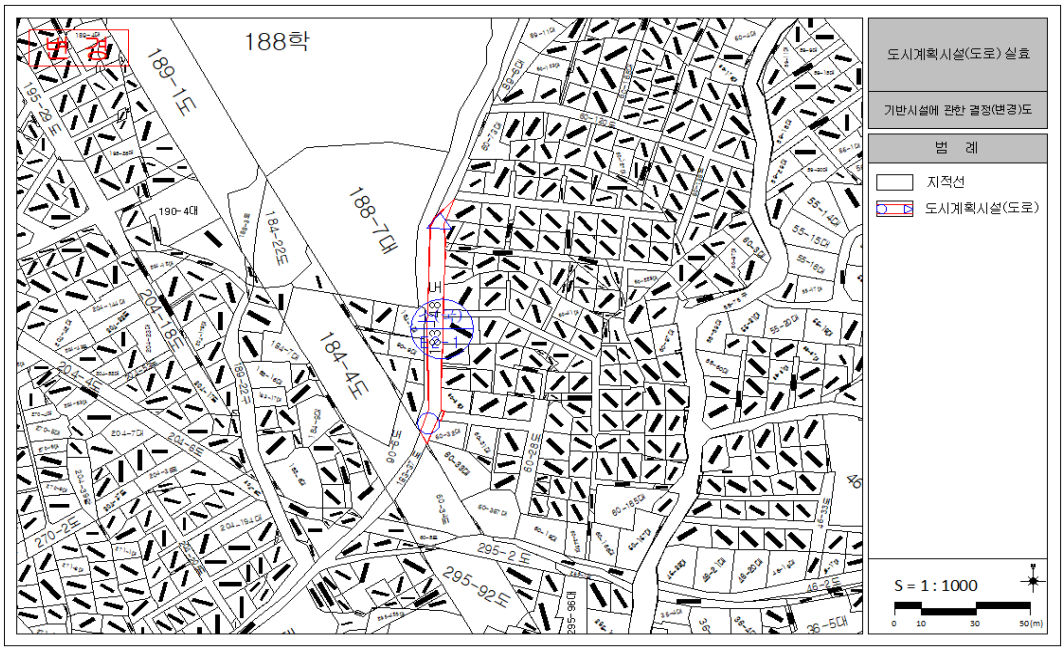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고시(부분실효)

-연번 19-

○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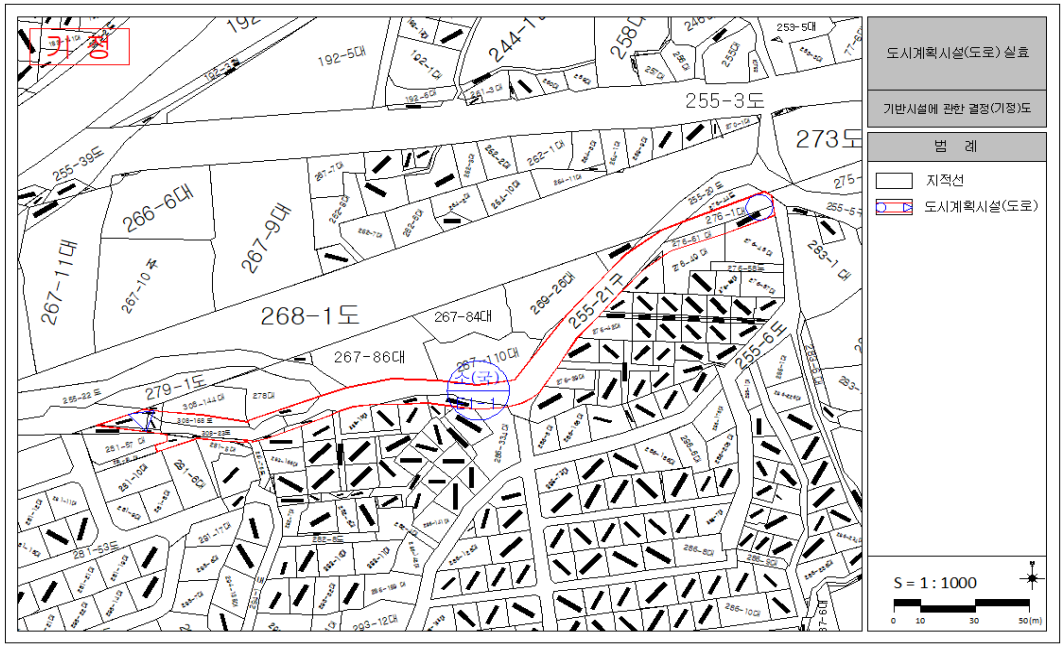
○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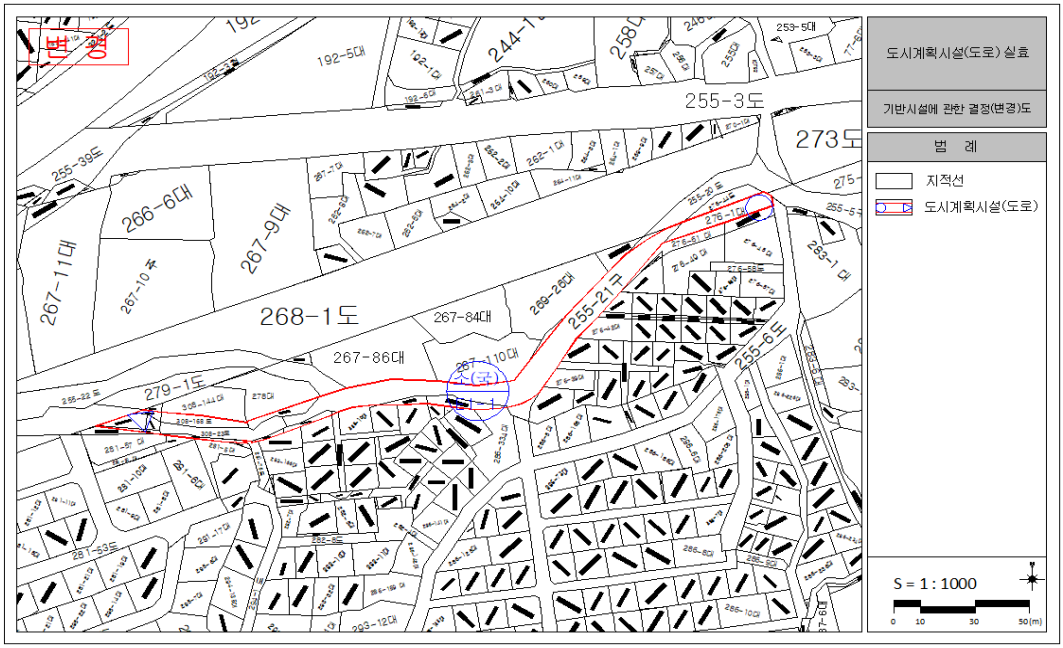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고시(부분실효)

-연번 20-

○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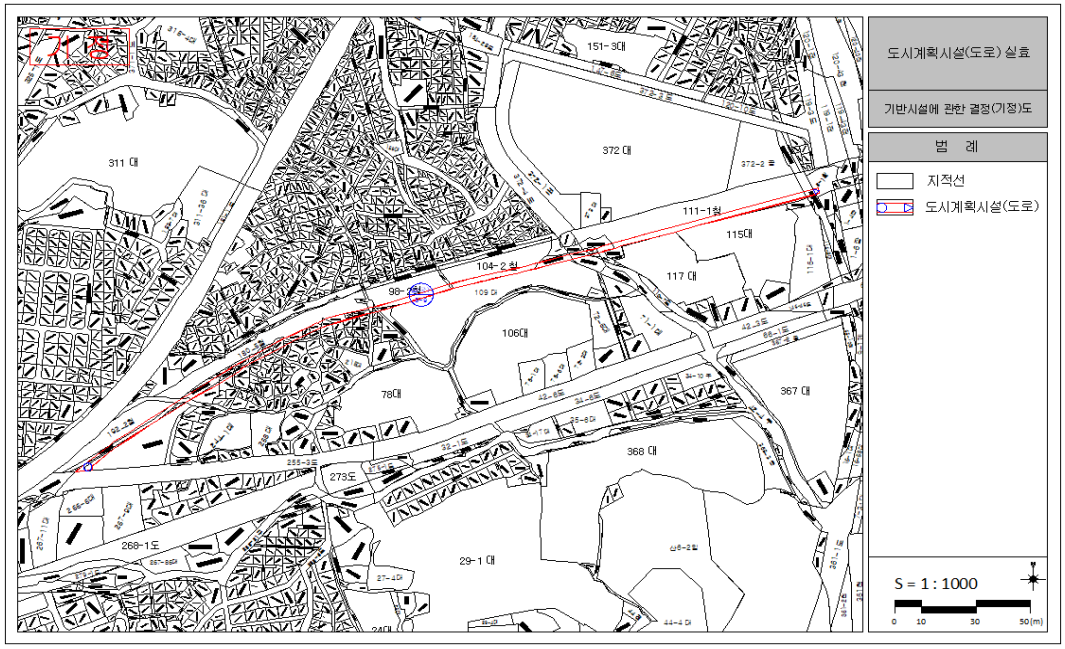
○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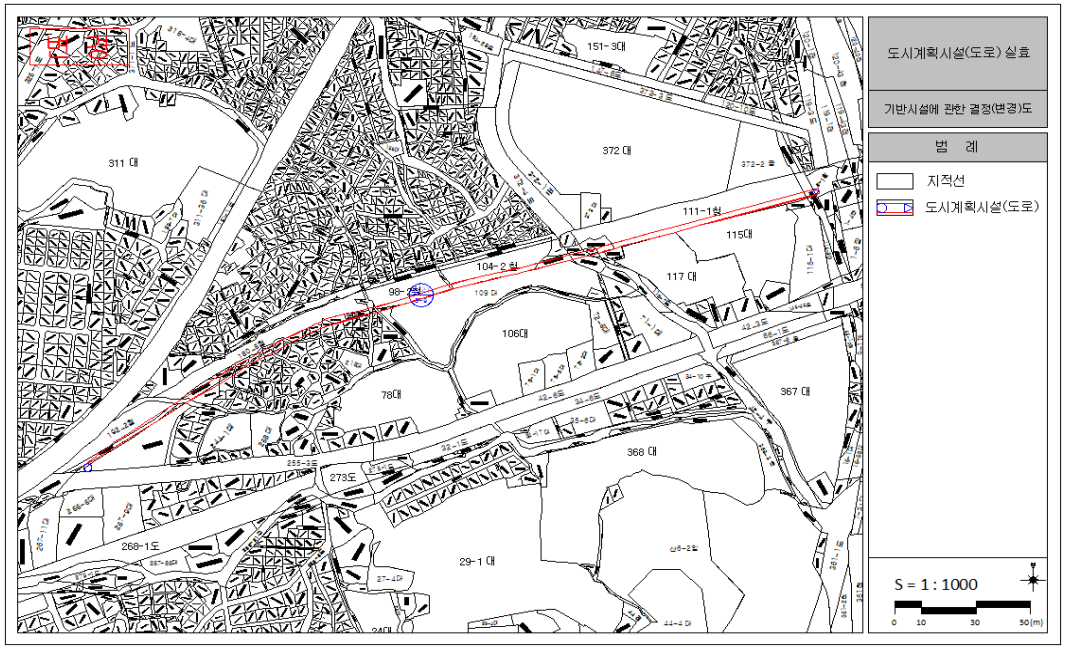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고시(부분실효)

-연번 21-

○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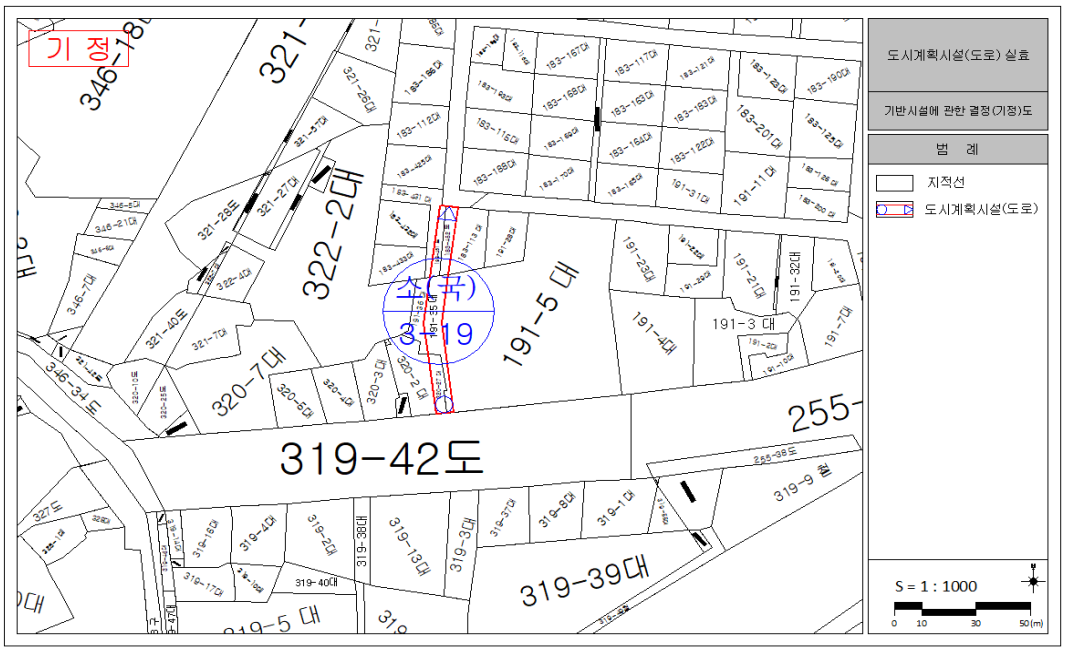
○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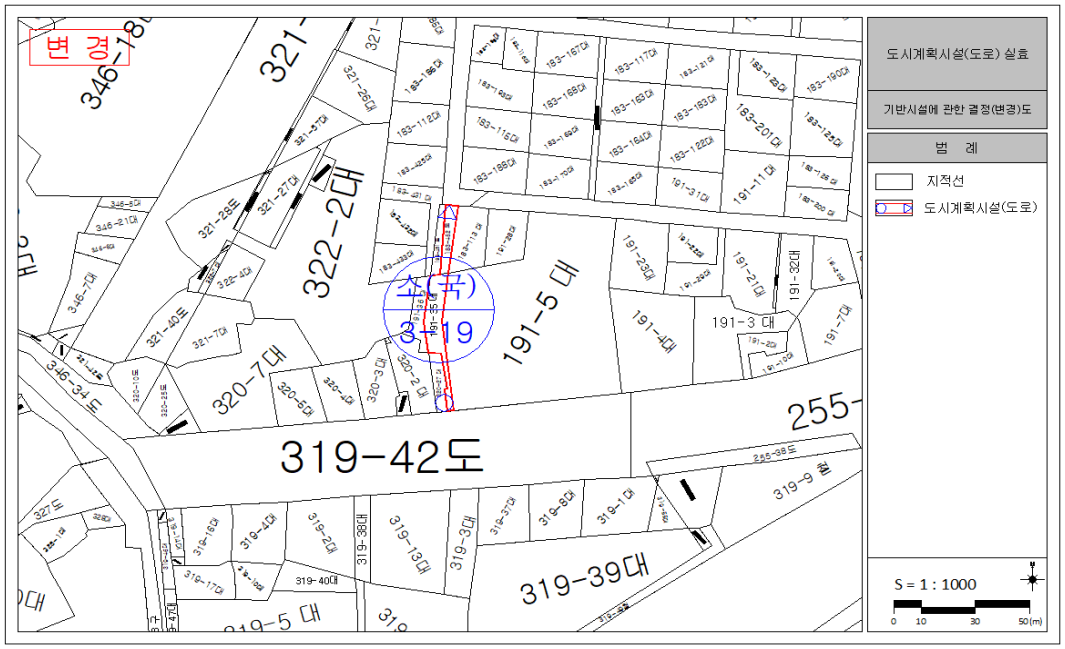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고시(부분실효)

-연번 22-

○ 기 정



○ 변 경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고시(부분실효)

-연번 23-

○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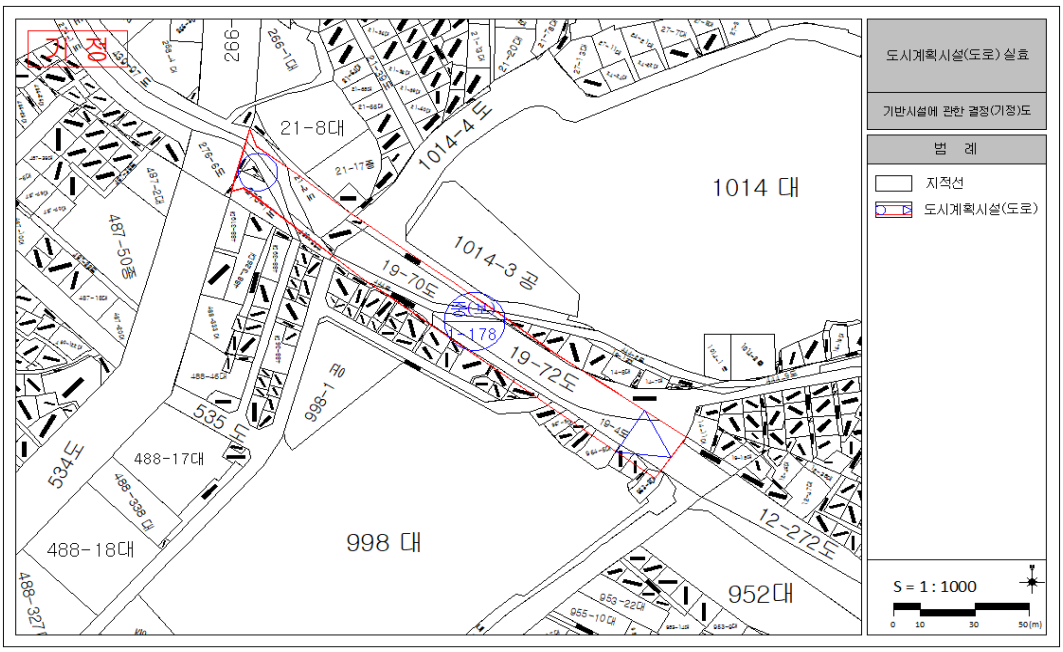
○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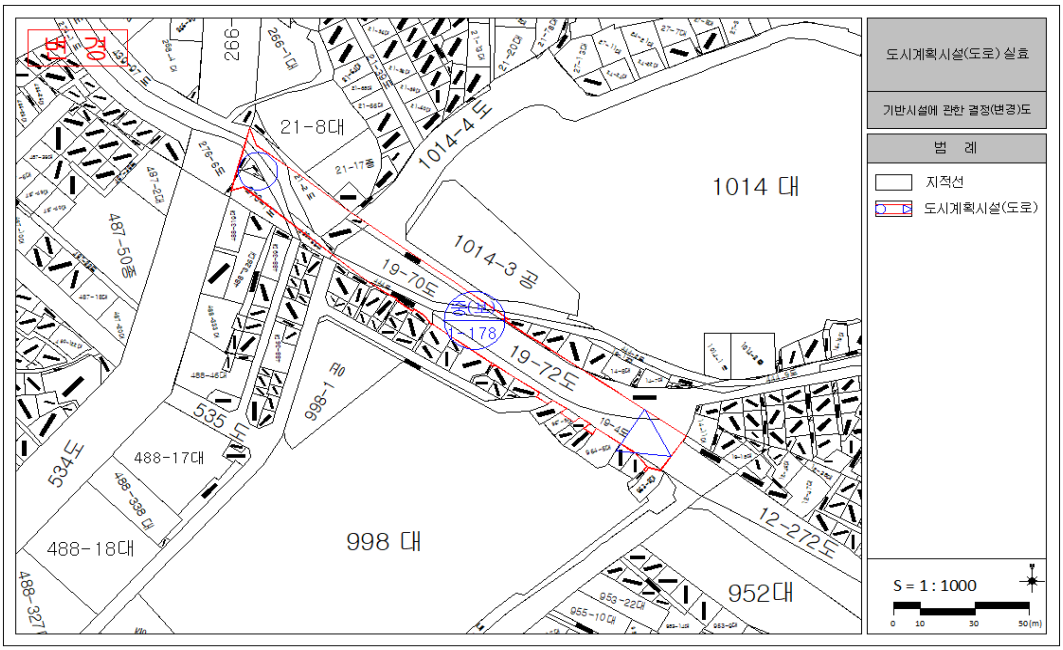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고시(부분실효)

-연번 24-

○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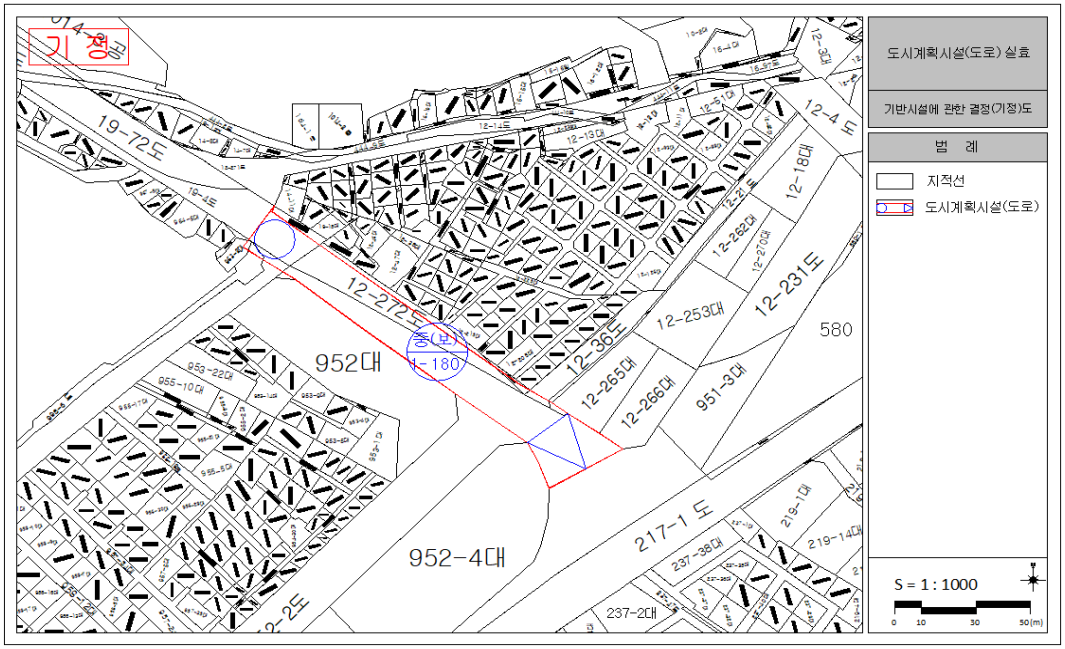
○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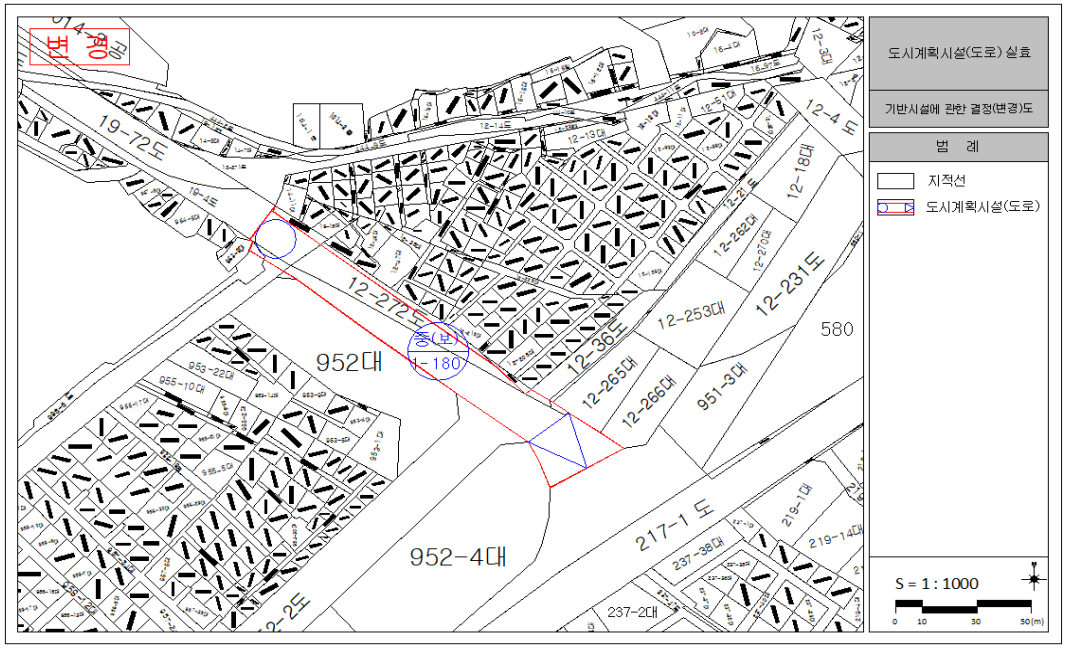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고시(부분실효)

-연번 25-

○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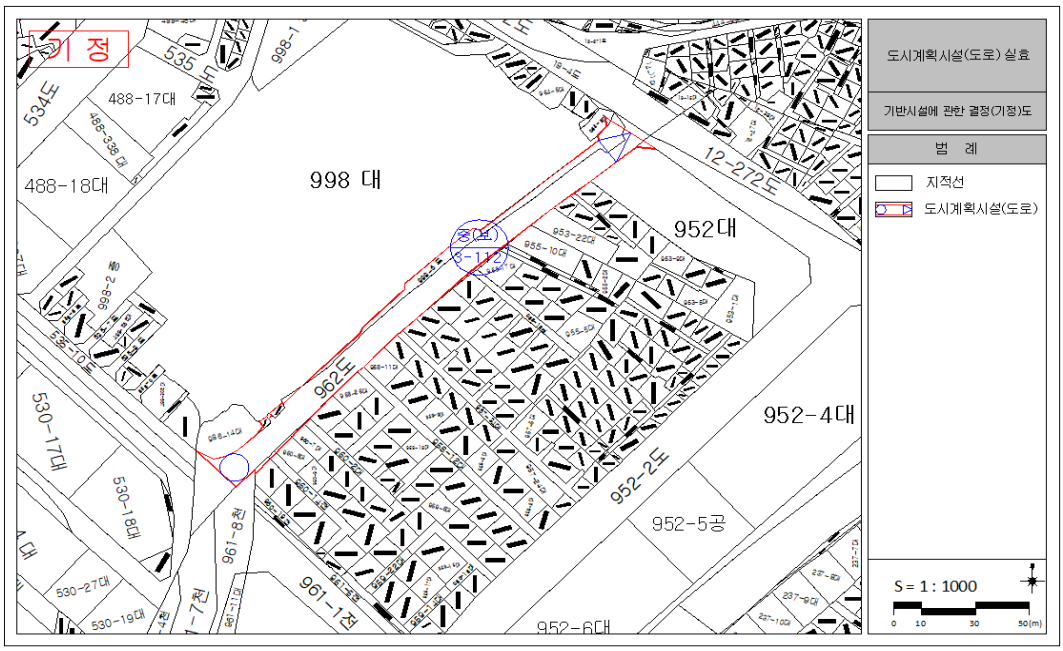
○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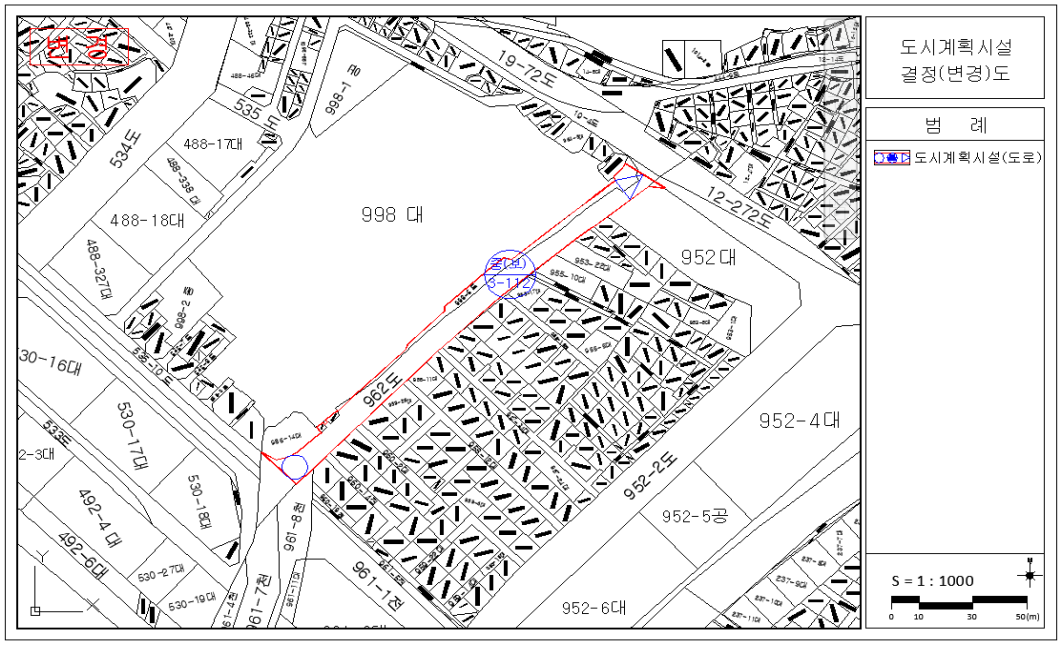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고시(부분실효)

-연번 26-

○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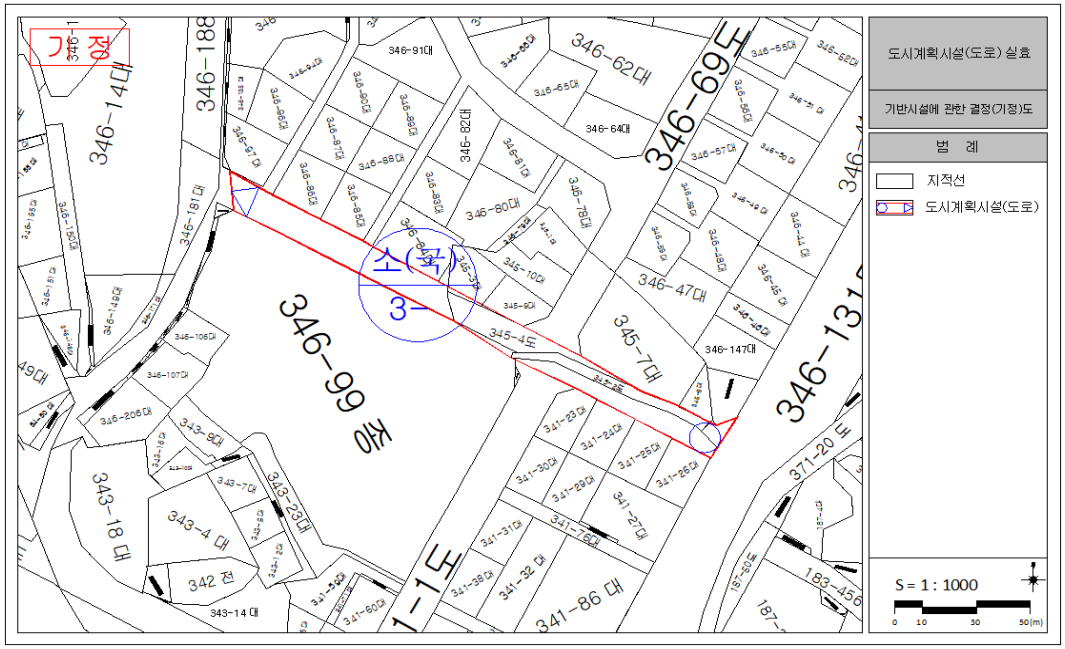
○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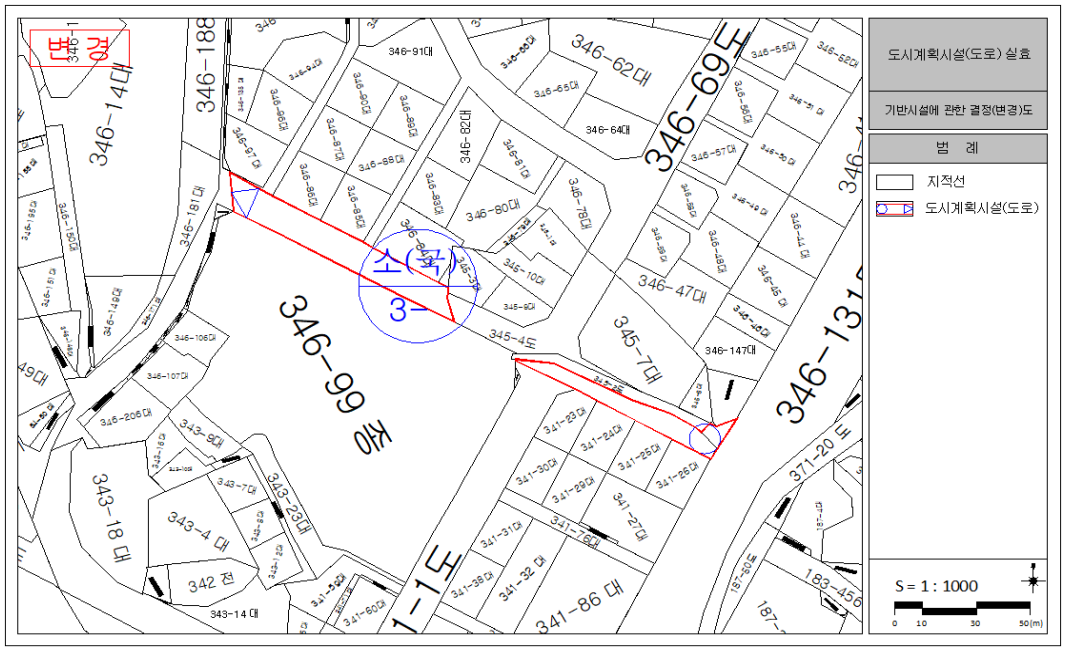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고시(부분실효)

-연번 27-

○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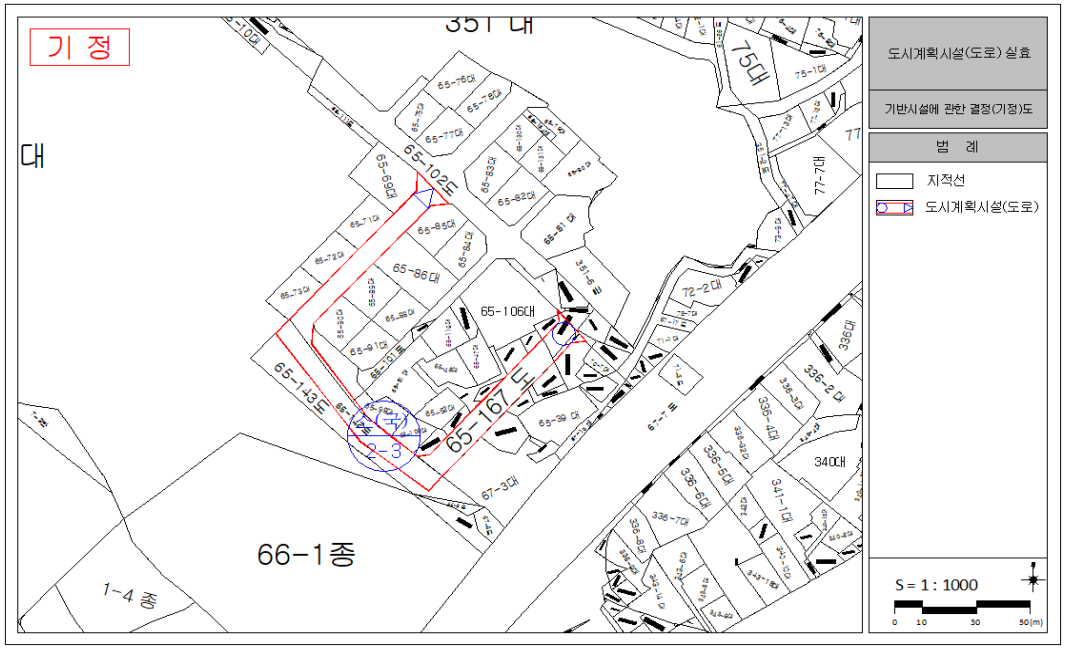
○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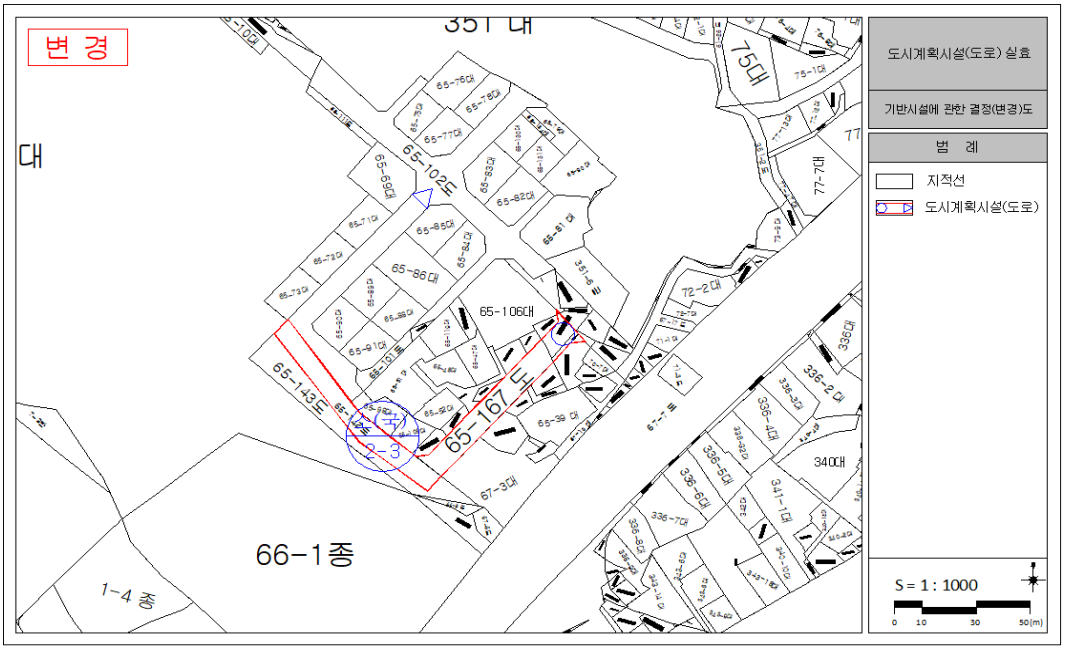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고시(부분실효)

-연번 28-

○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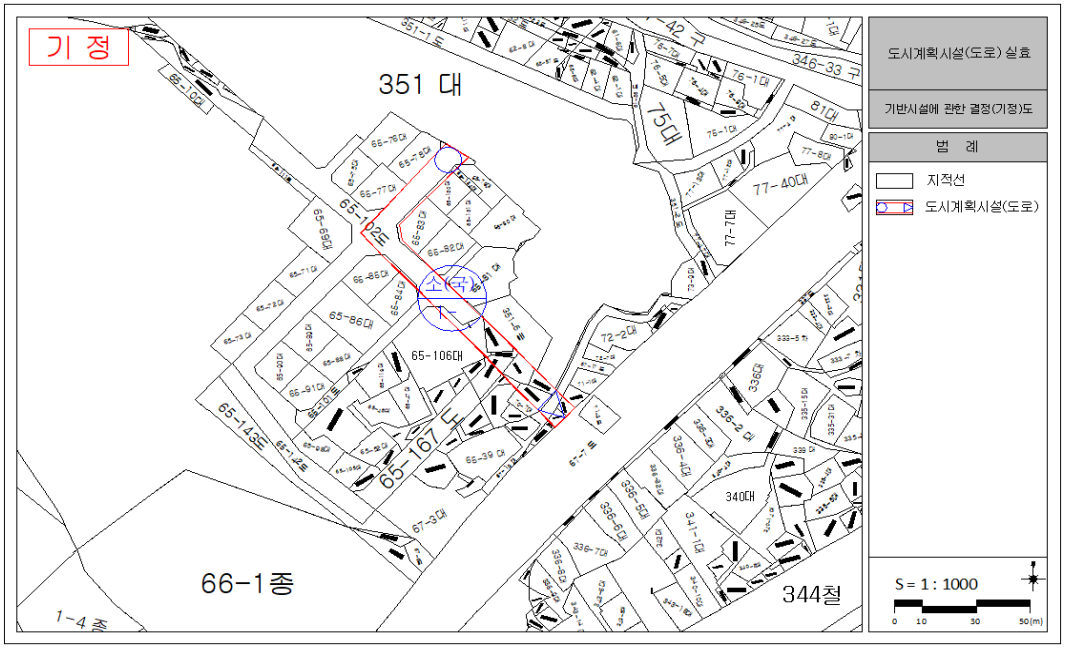
○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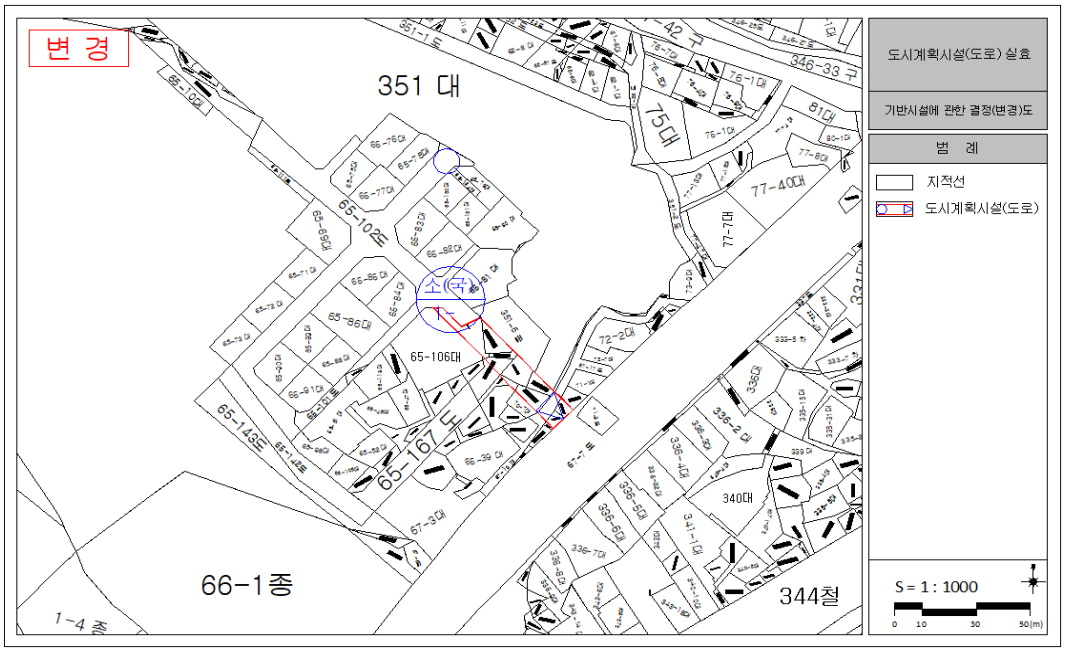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고시(부분실효)

-연번 29-

○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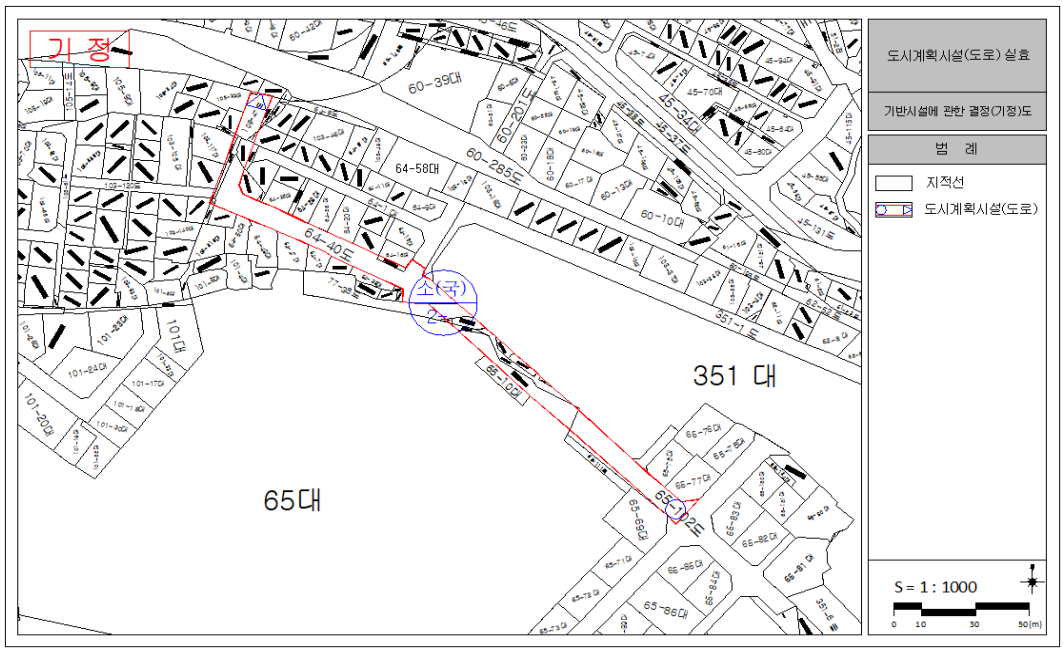
○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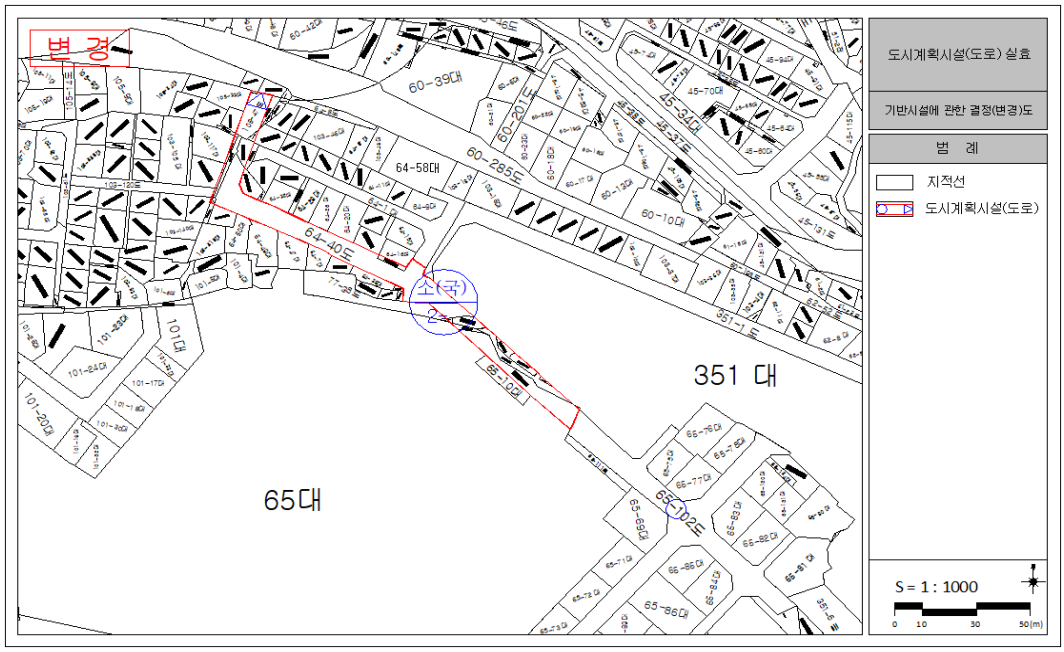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고시(부분실효)

-연번 30-

○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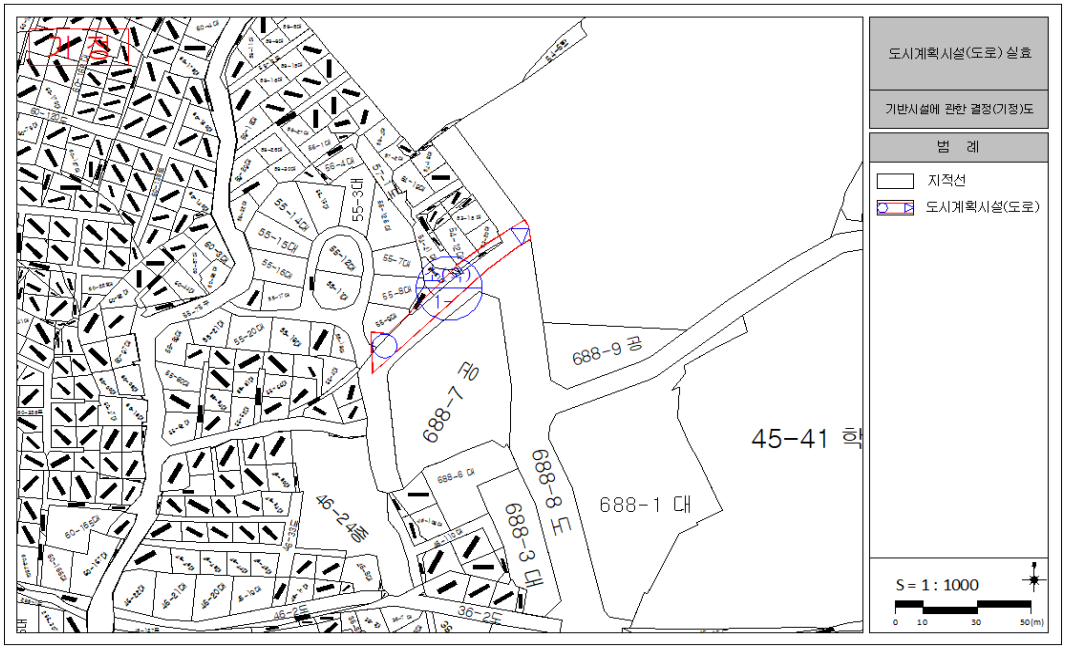
○ 변 경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고시(부분실효)

-연번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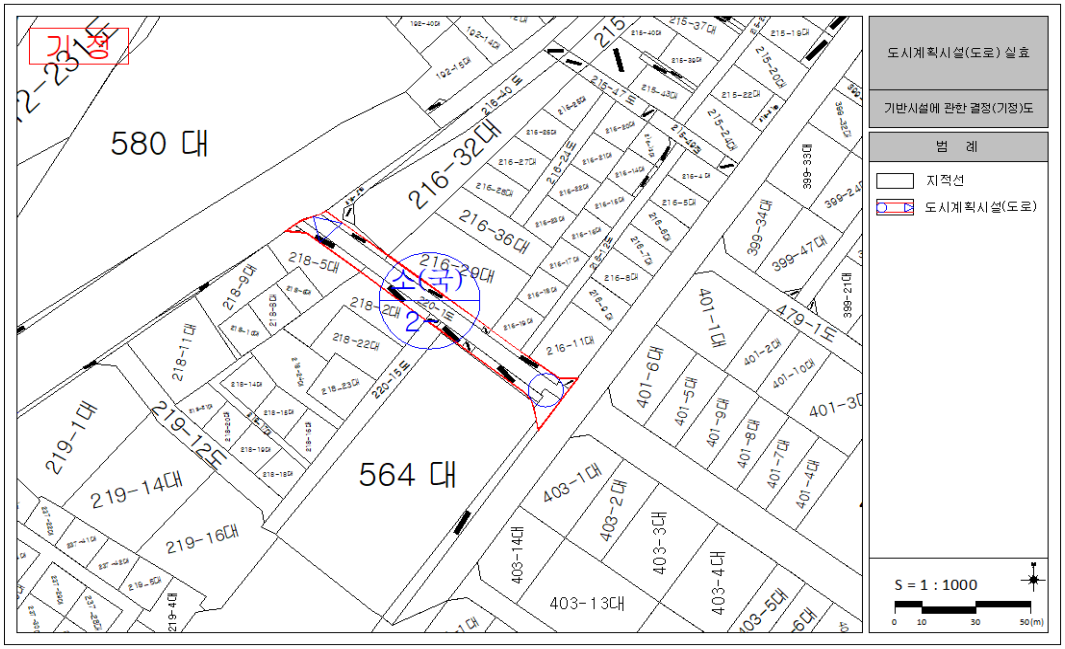
○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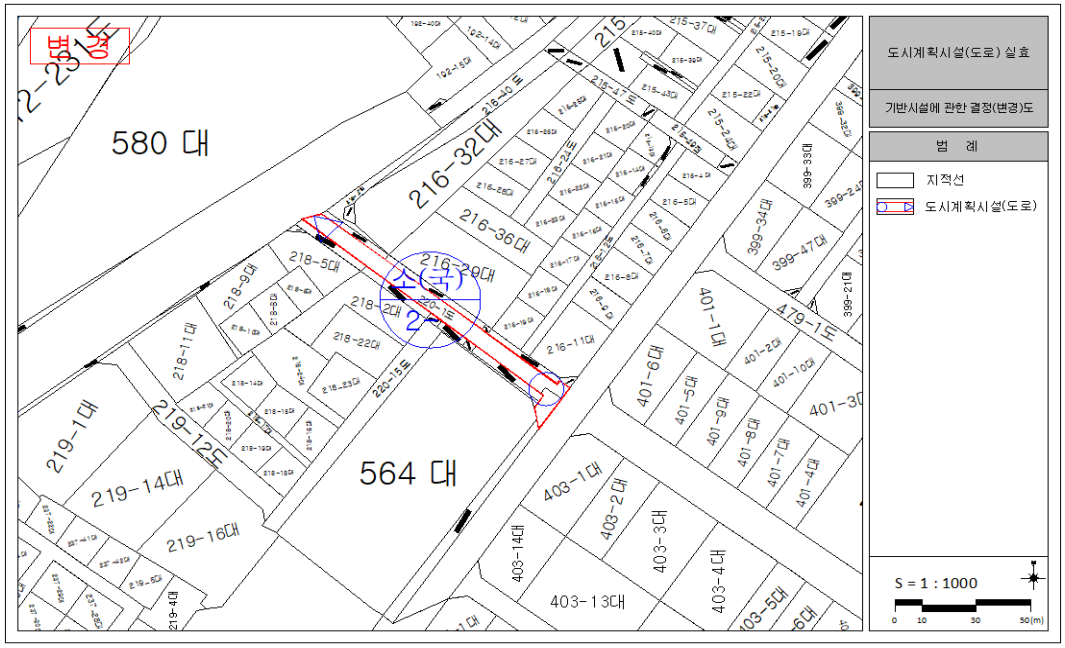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고시(부분실효)

-연번 32-

○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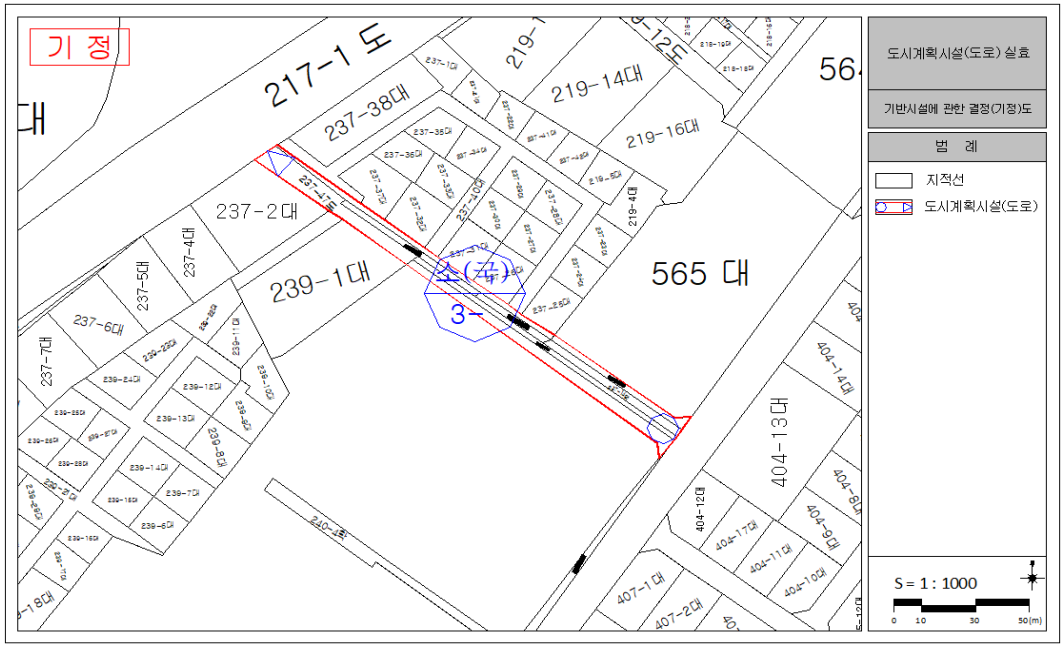
○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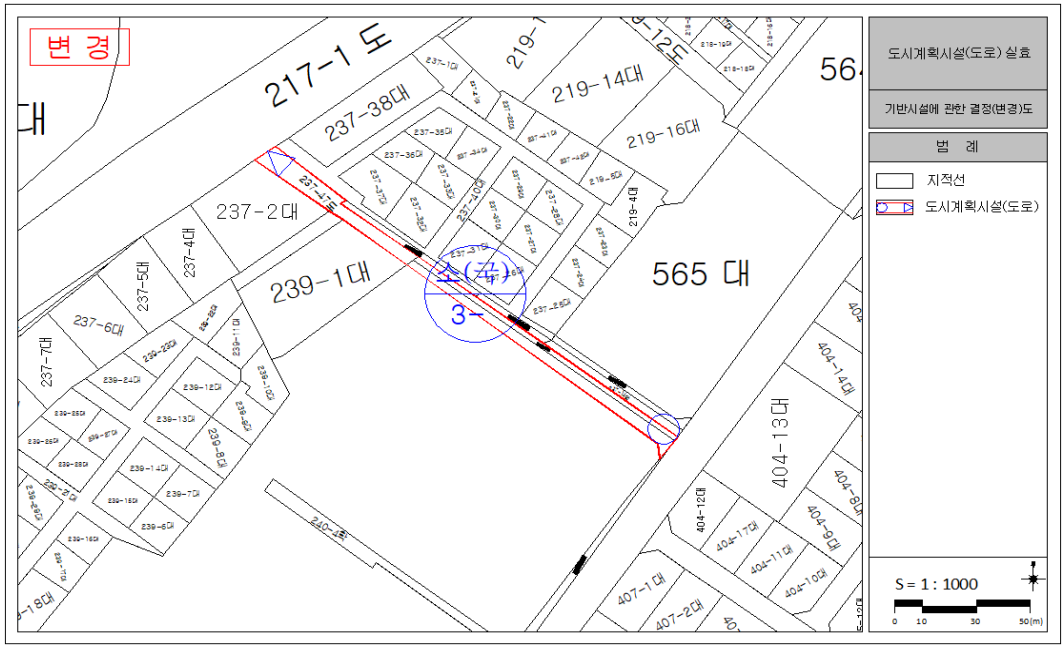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고시(부분실효)

-연번 33-

○ 기 정



○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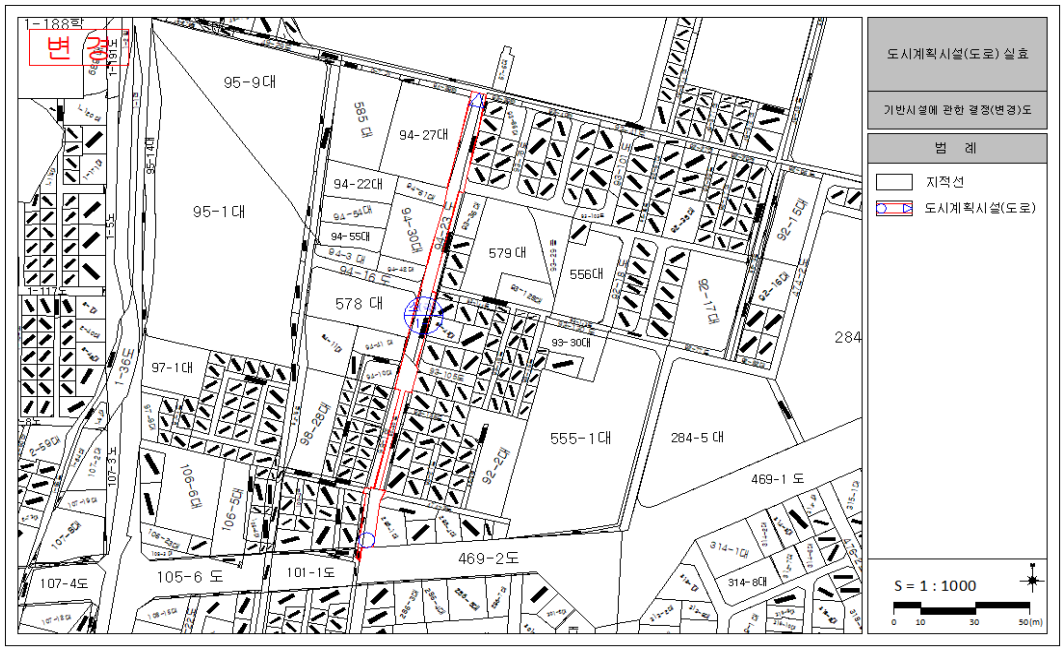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고시(부분실효)

-연번 34-

○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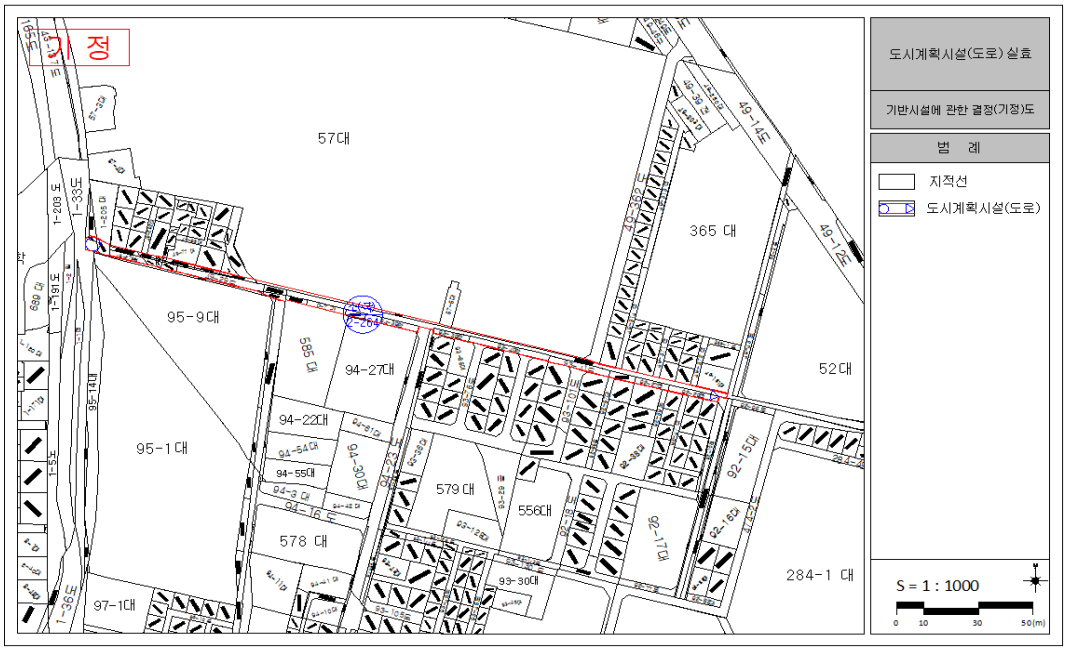
○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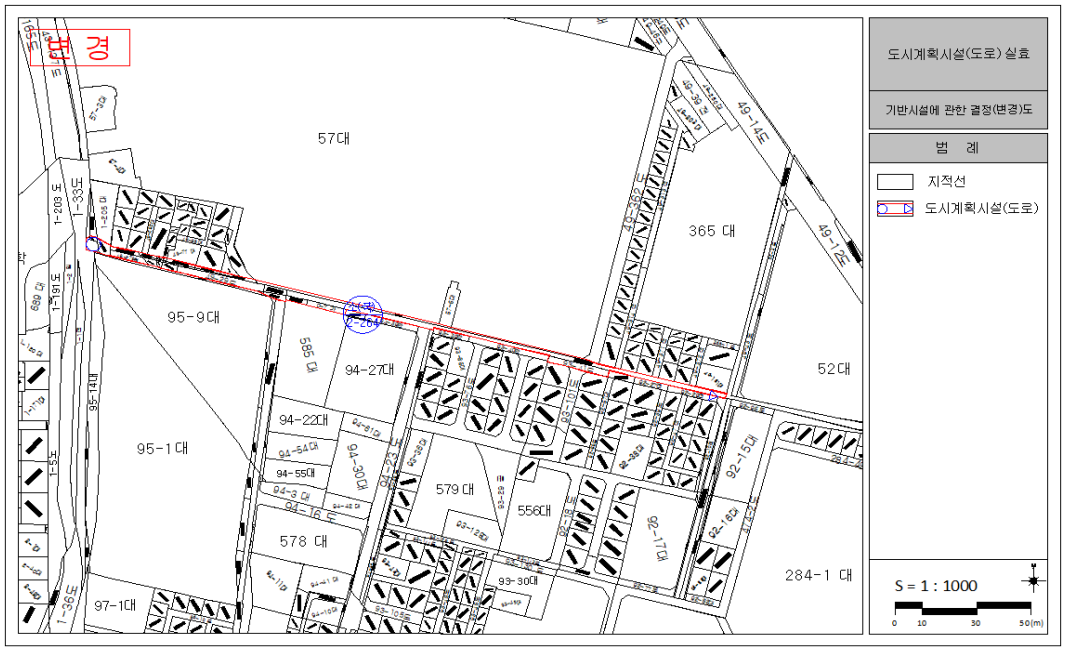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고시(부분실효)

-연번 35-

○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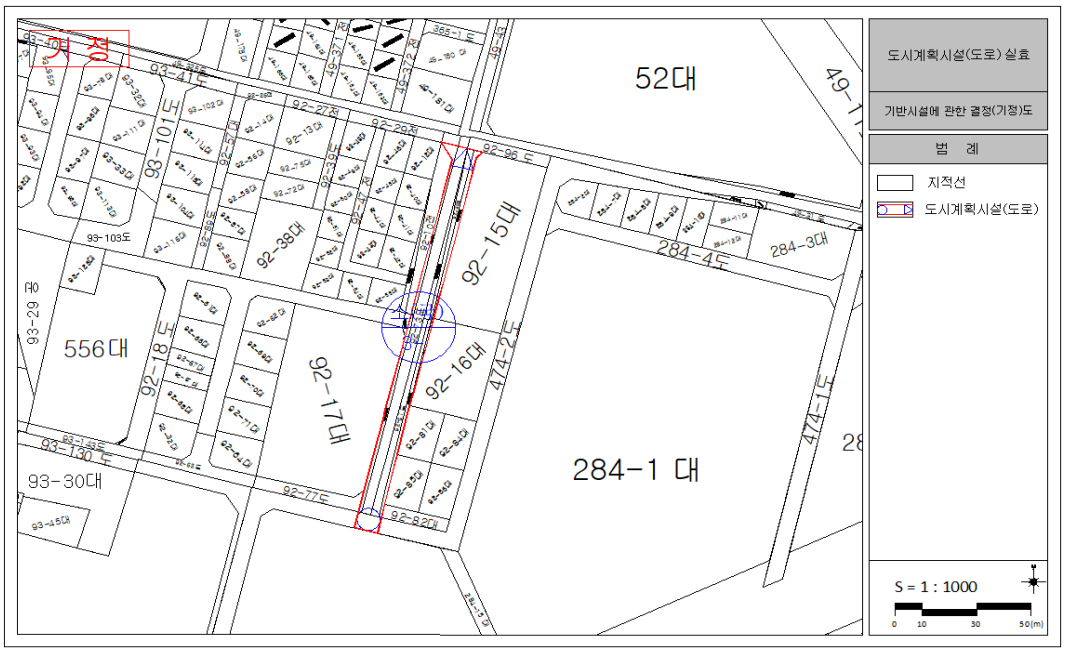
○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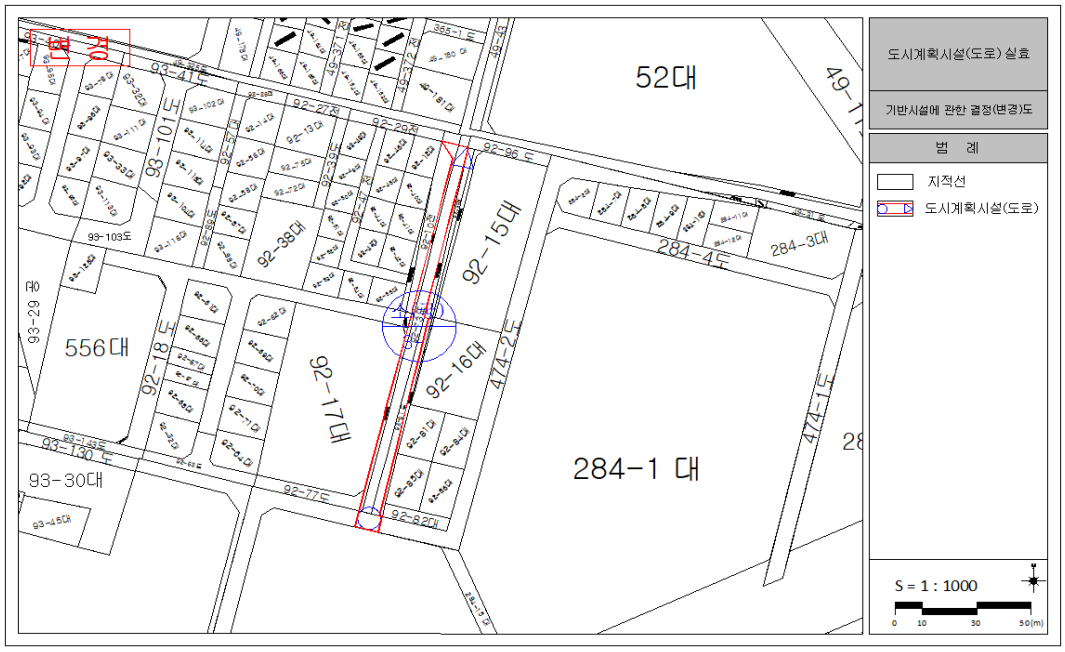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고시(부분실효)

-연번 36-

○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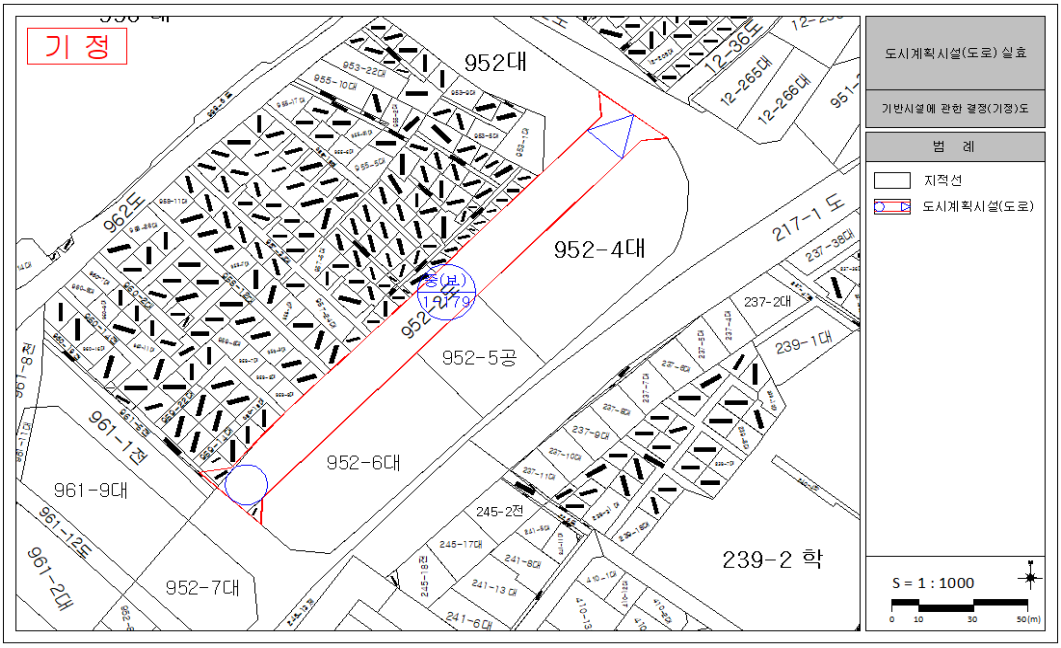
○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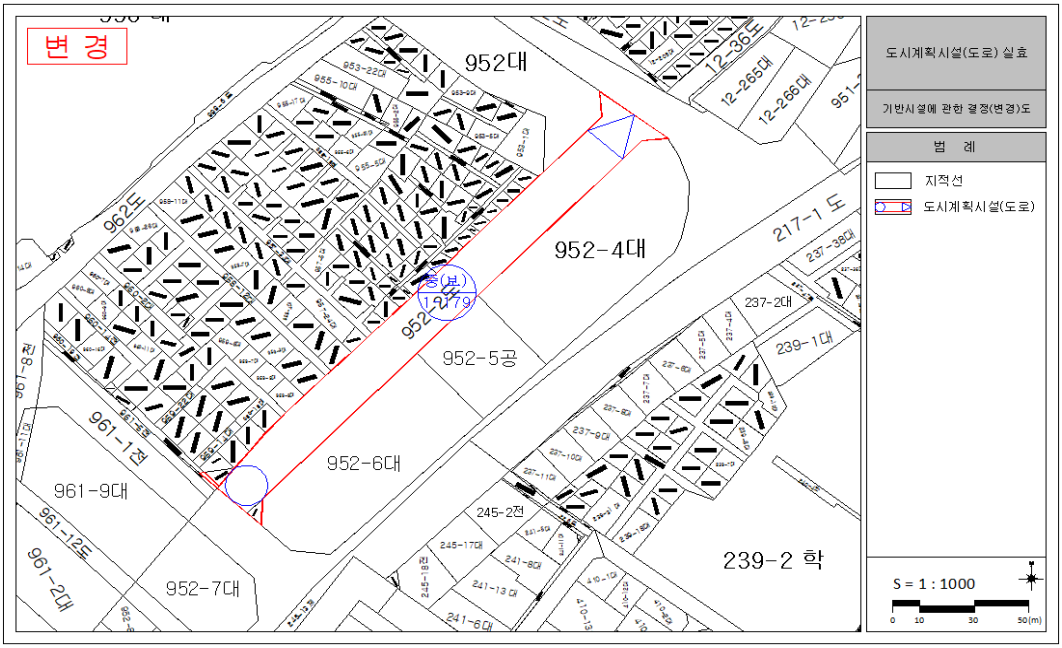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고시(부분실효)

-연번 37-

○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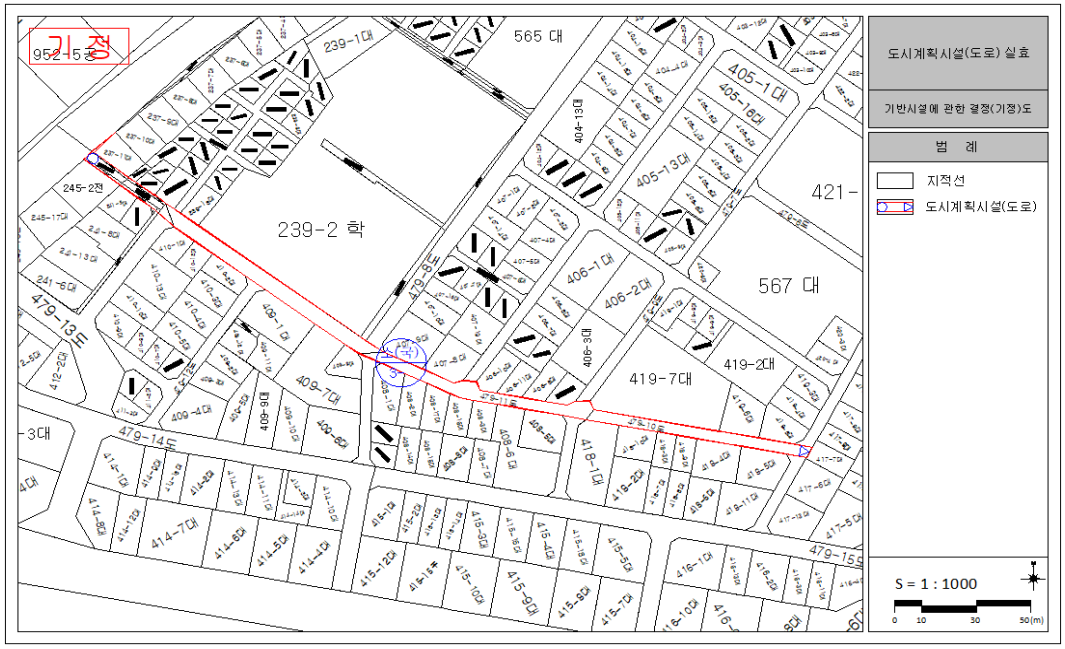
○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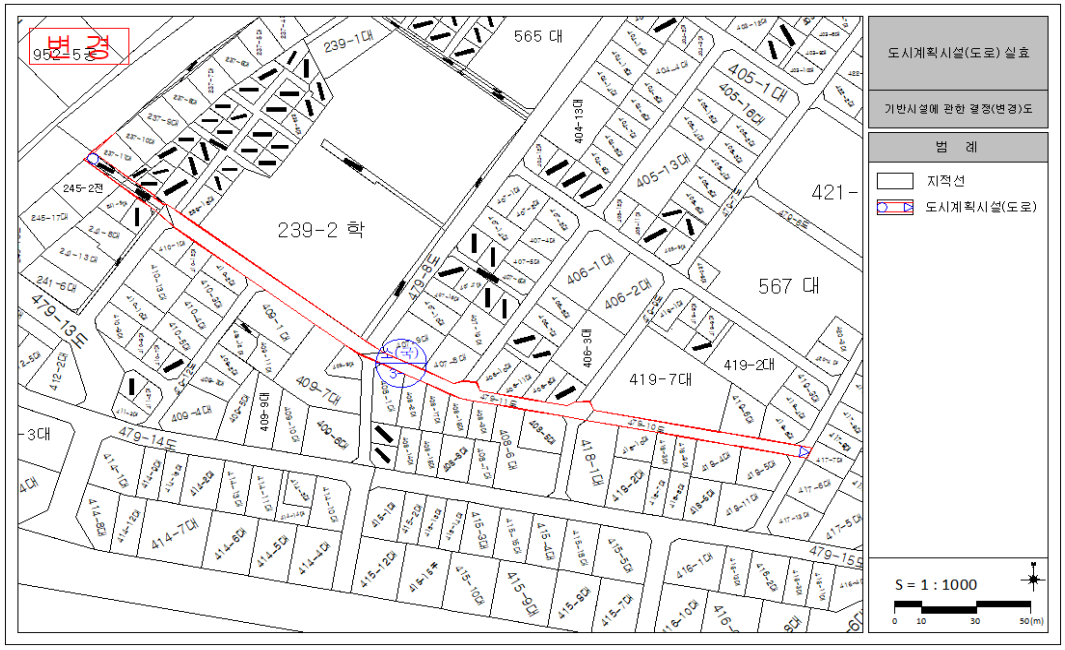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고시(부분실효)

-연번 38-

○ 기 정



○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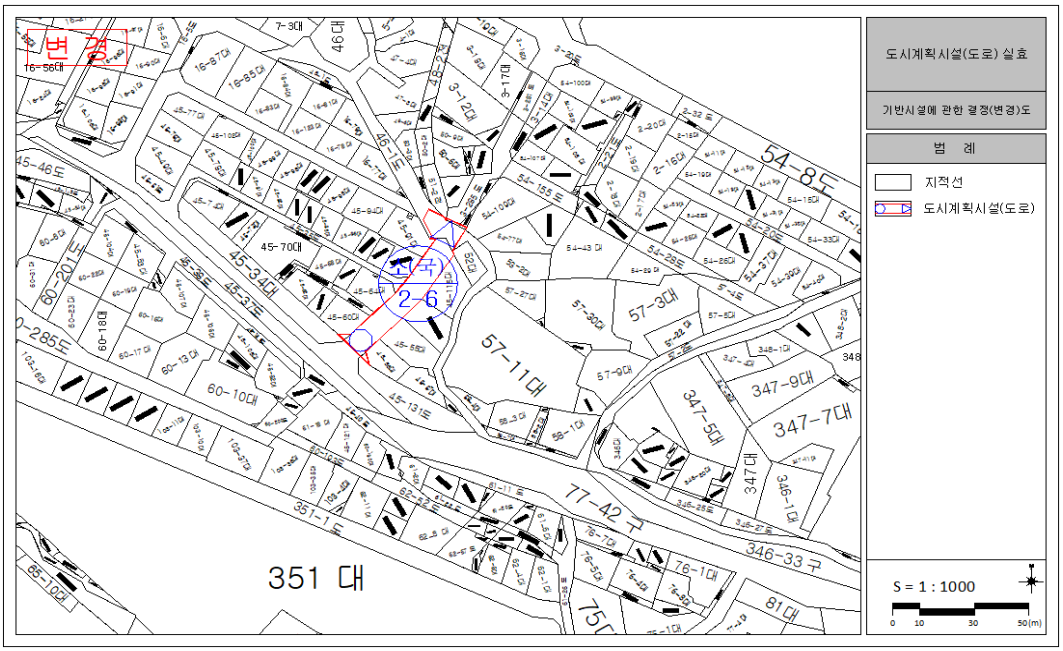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고시(부분실효)

-연번 39-

○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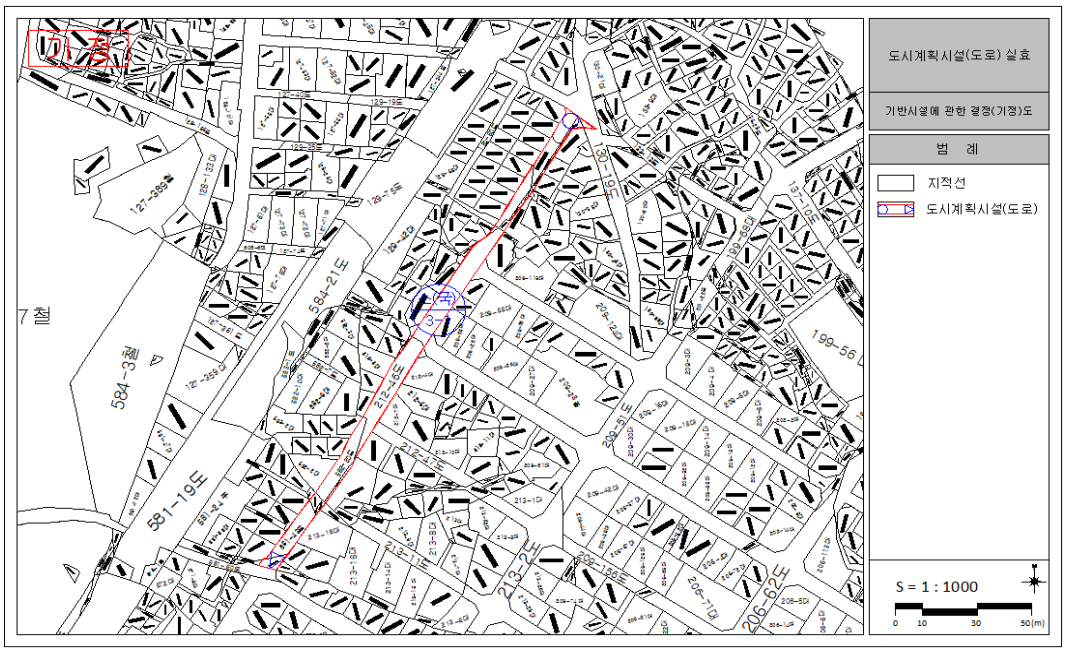
○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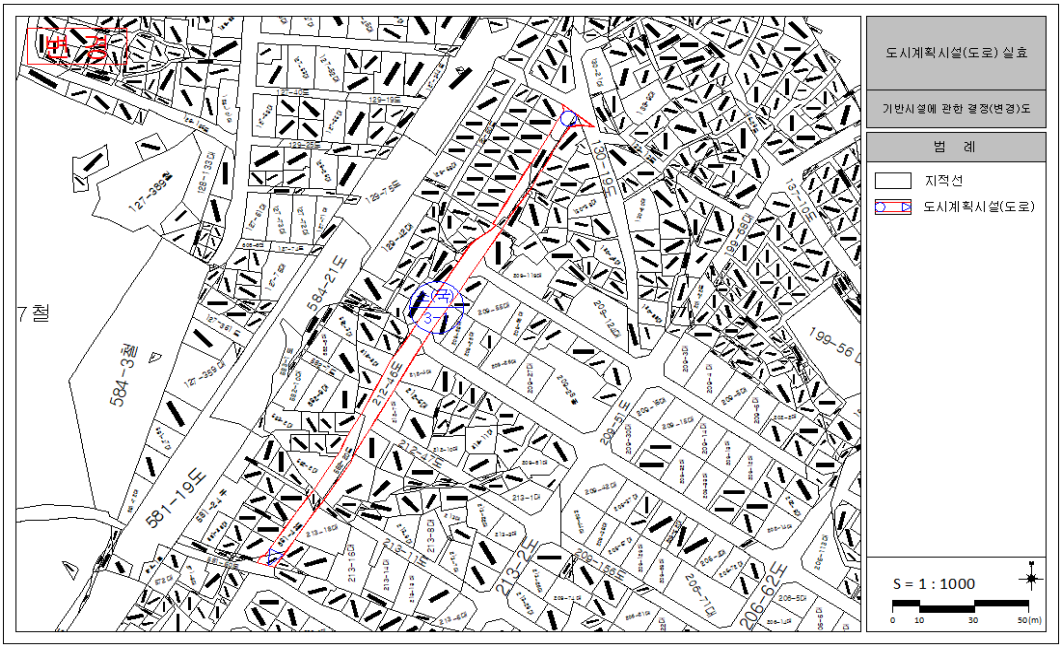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고시(부분실효)

-연번 40-

○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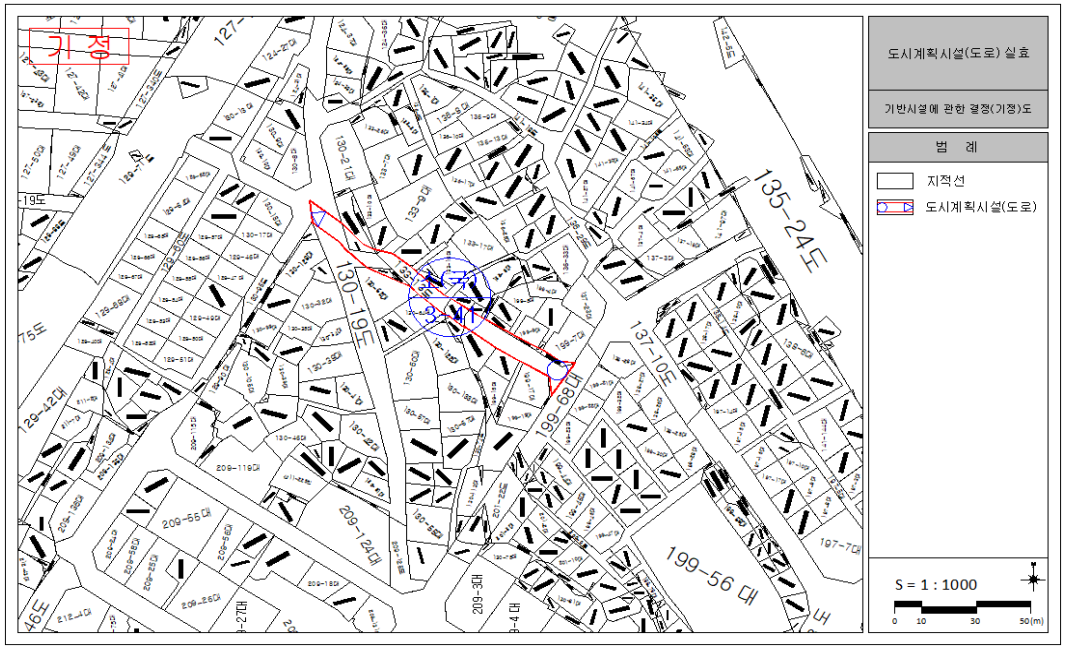
○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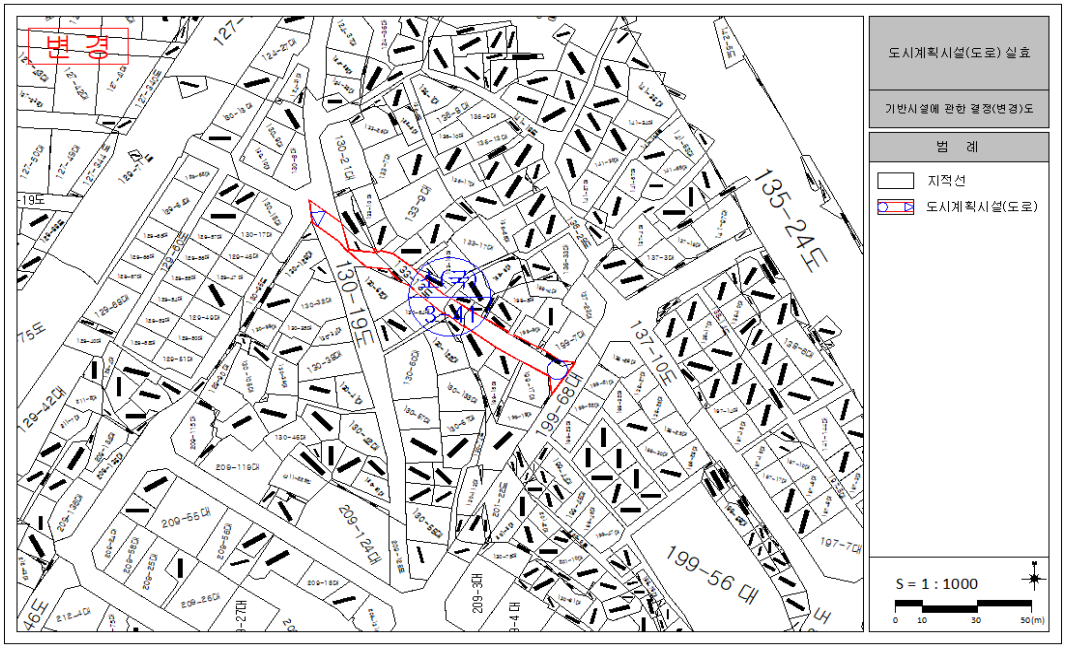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고시(부분실효)

-연번 41-

○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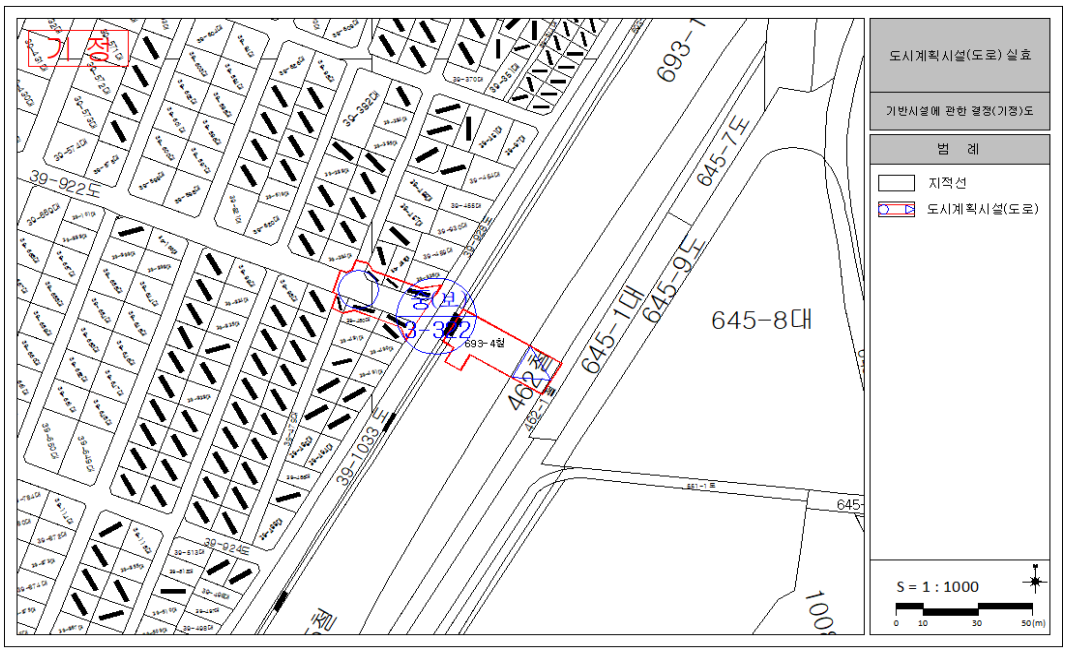
○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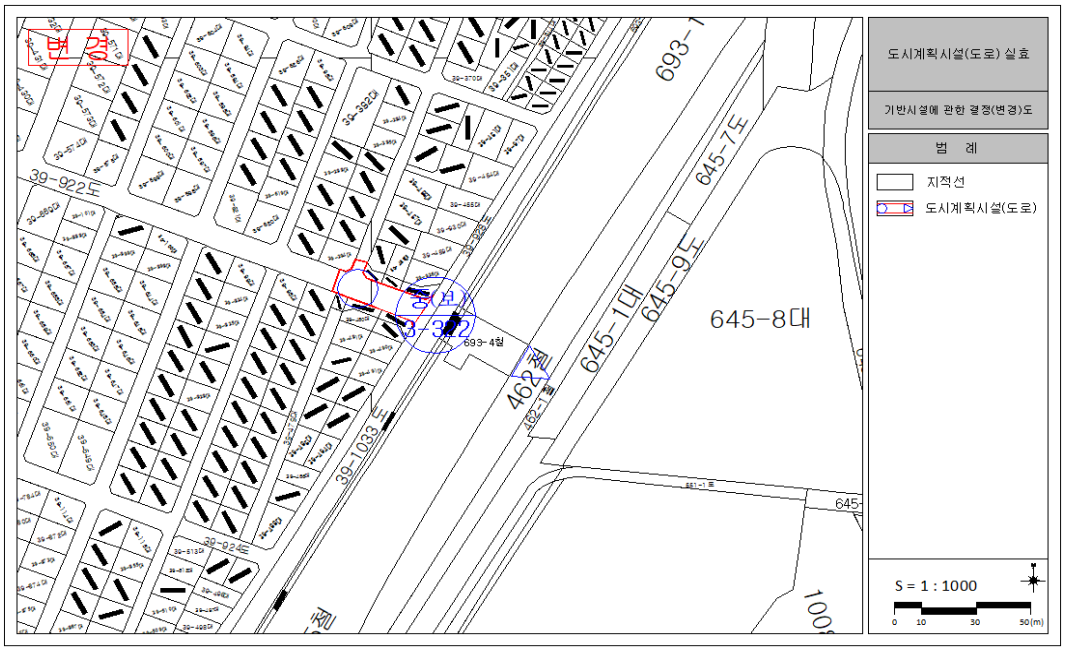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고시(부분실효)

-연번 42-

○ 기 정



○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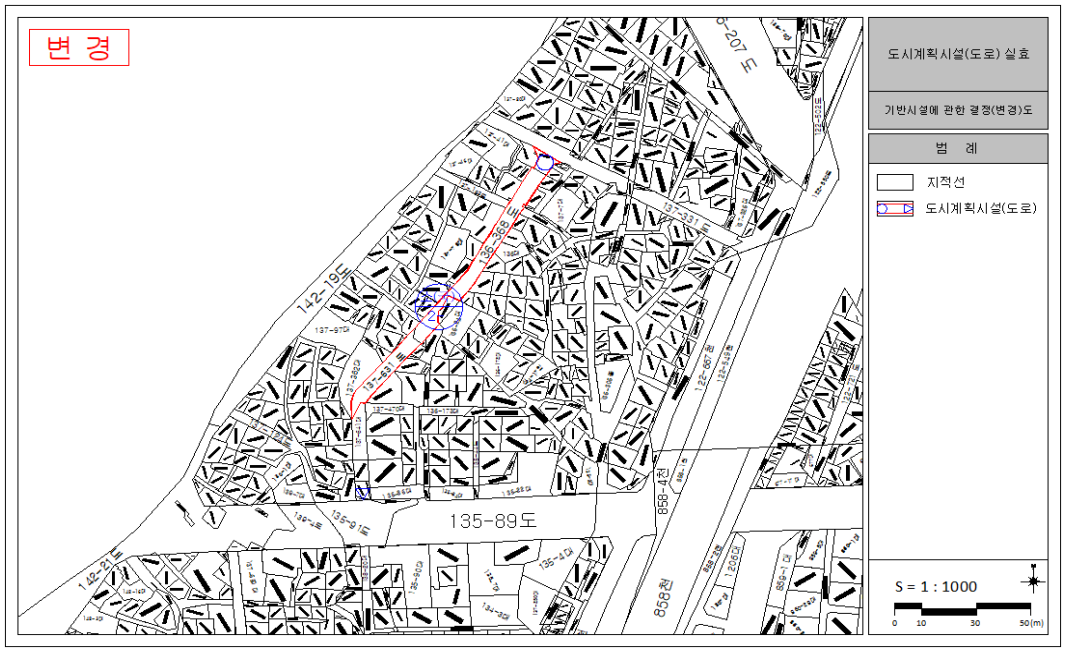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고시(부분실효)

-연번 43-

○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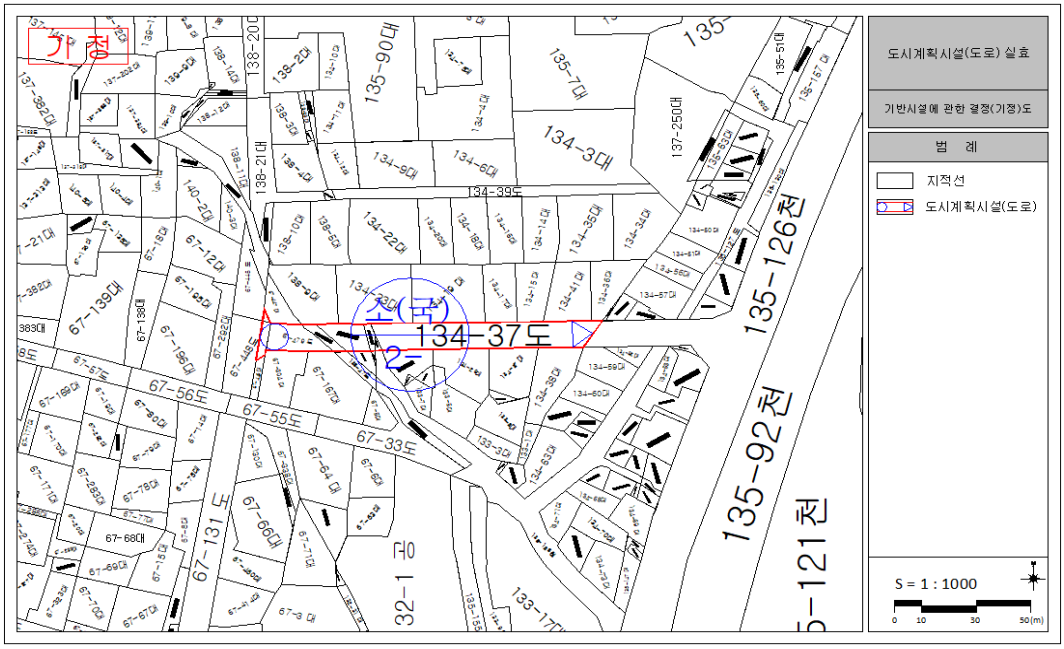
○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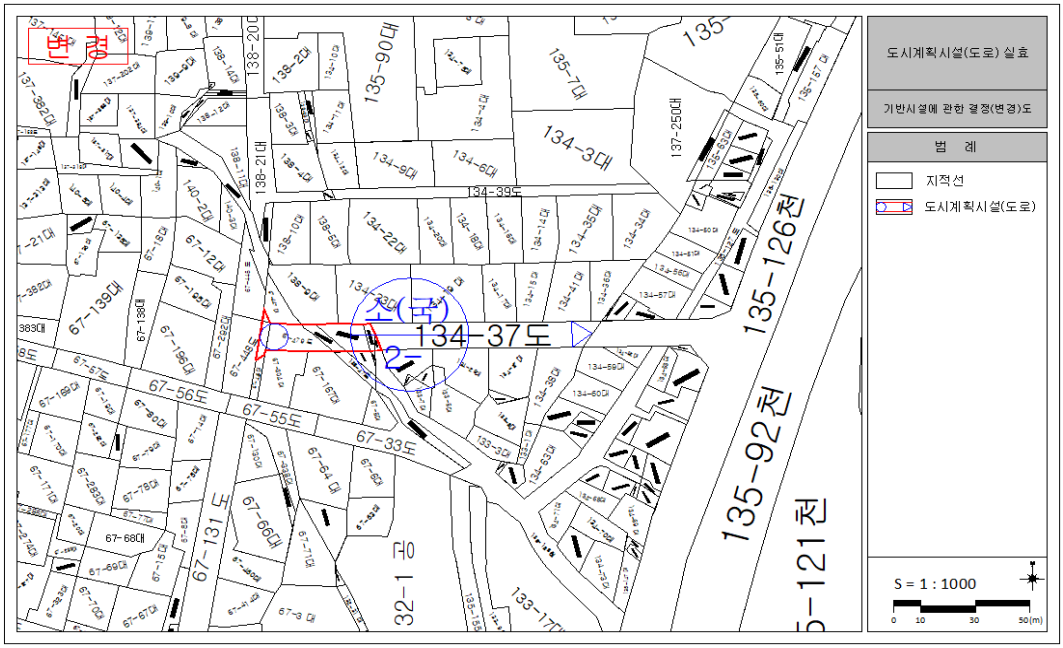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고시(부분실효)

-연번 44-

○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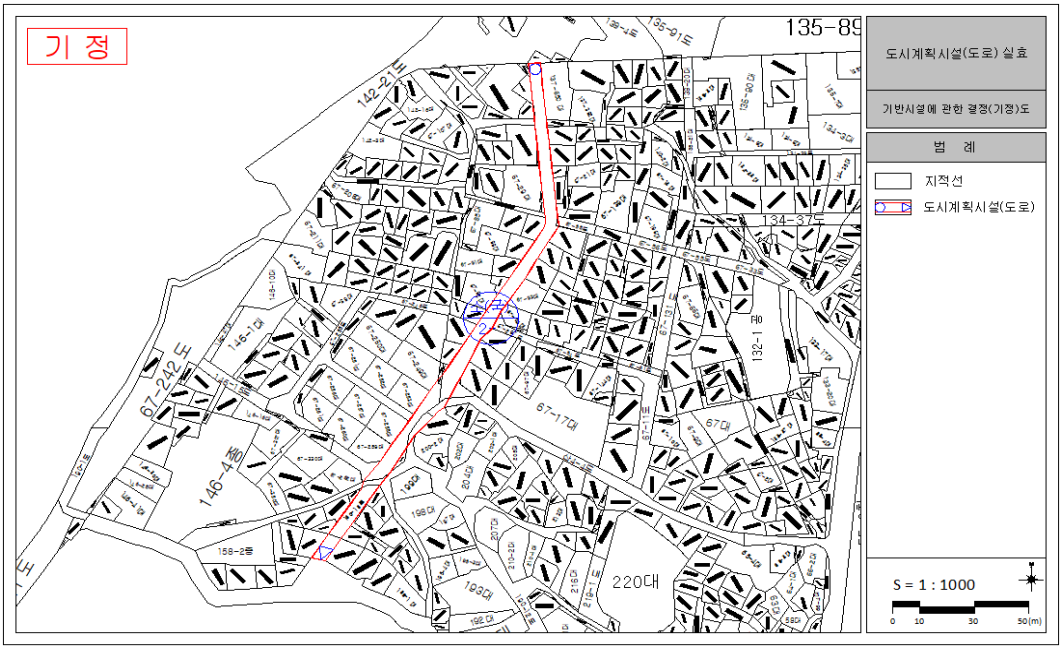
○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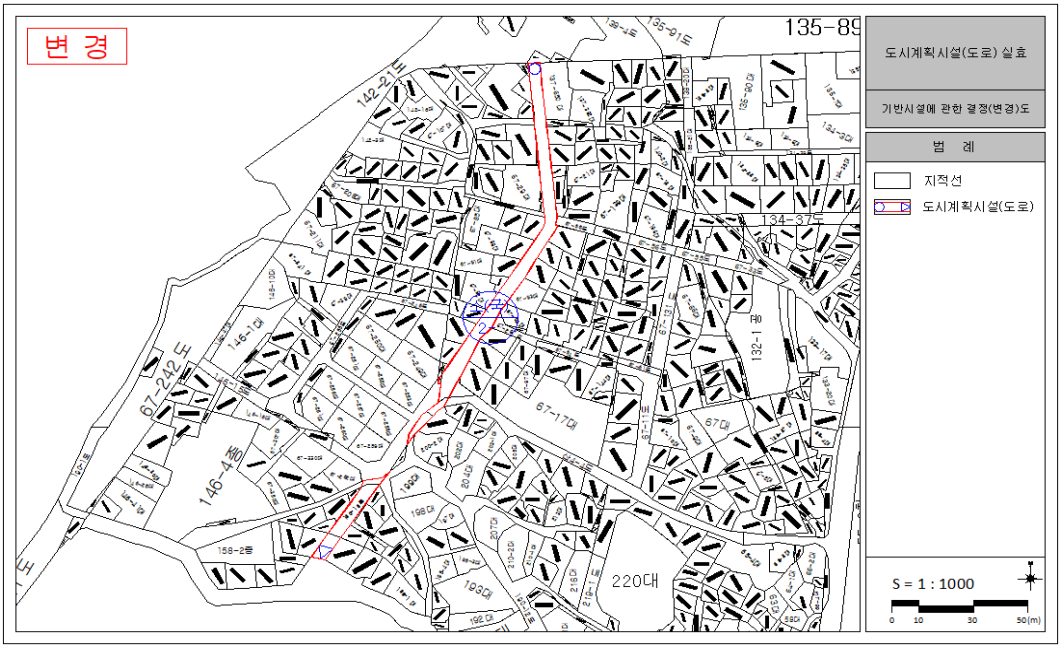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고시(부분실효)

-연번 45-

○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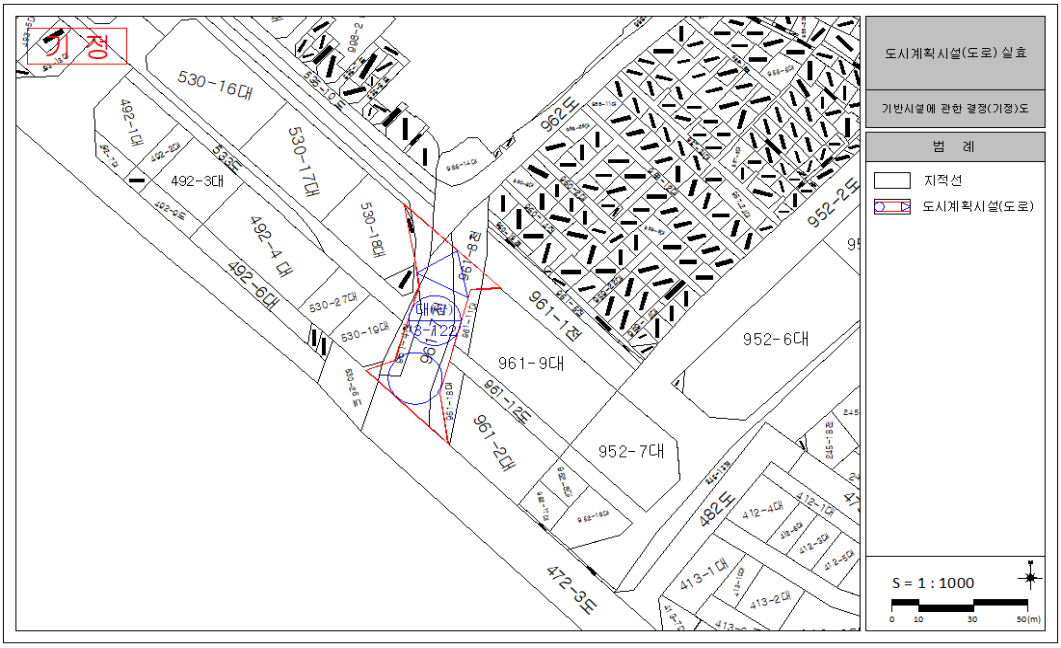
○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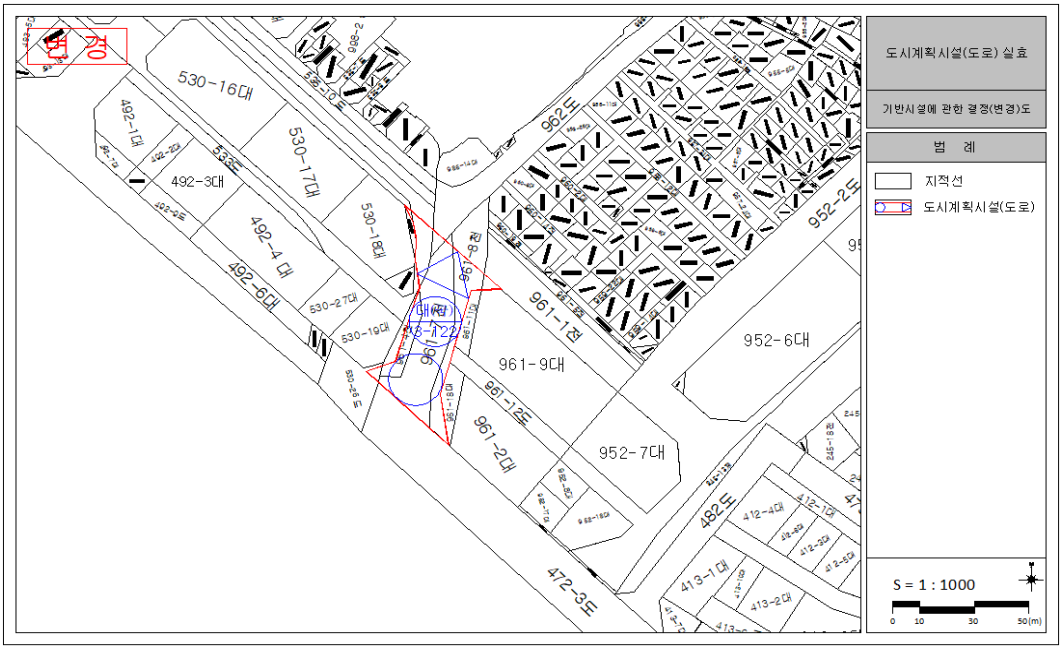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고시(부분실효)

-연번 46-

○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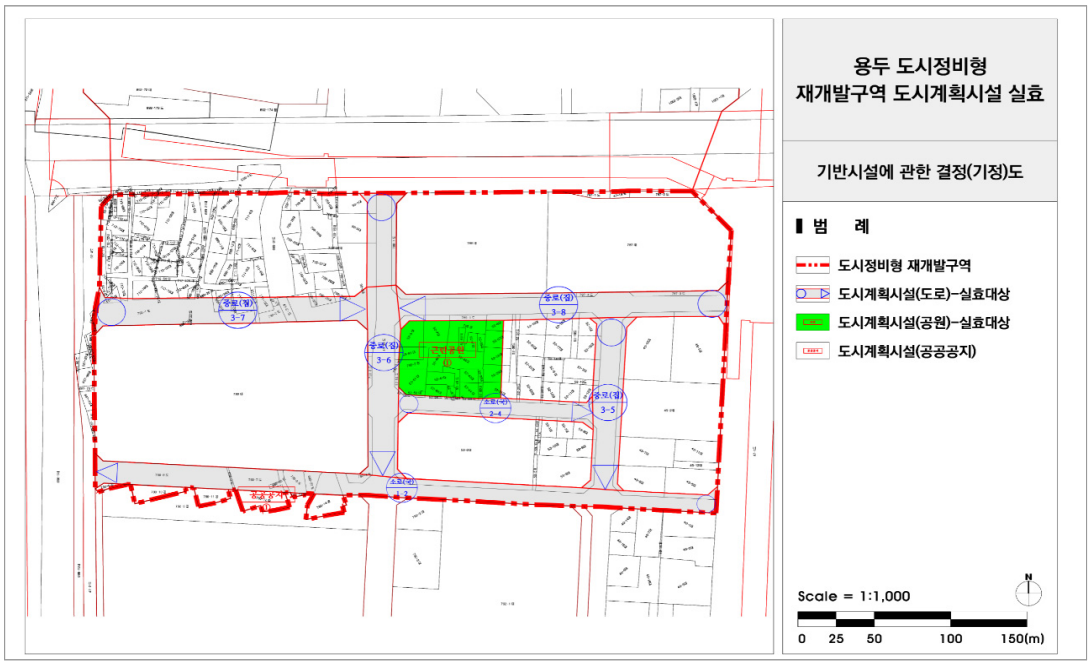


○ 변 경



□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결정 실효 지형도면 고시
-연번 46~51, 공원-

○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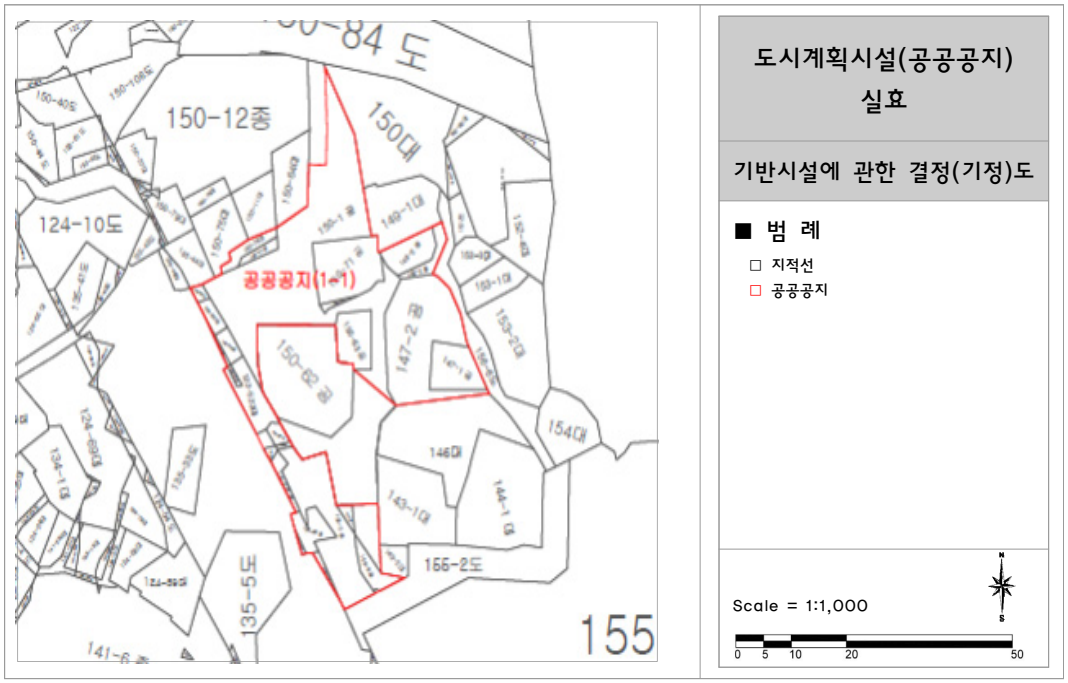


○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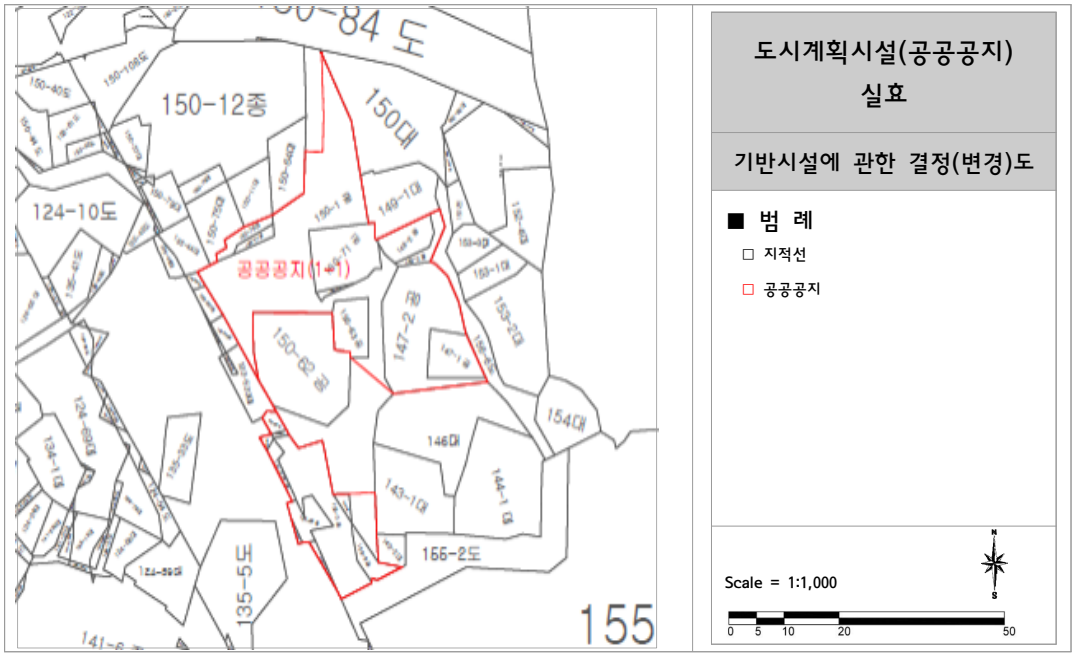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실효 지형도면 고시

○ 기 정



○ 변 경



◈ 중랑구고시 제2020-7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95호(2010.11.04.)로 결정 및 지적 승인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0-344호(2020.03.26.)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열람 공고한 「중화동 286-26~286-7간 도로사업」에 대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6일
중 랑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49 ~ 봉화산로 59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2) 명 칭 : 중화동 286-26 ~ 286-7간 도로사업
다. 사업의규모 : 면적 734㎡(11필지)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중랑구청장(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25년12월31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청 도로과(☎ 2094-26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 : 중랑구청장
사 업 명 : 봉화산(중화역주변) 도로확장

연번	소재지(위치)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동	번지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권리	
1	중화동	286-39	도	168.9	16.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	중화동	286-7	대	162	24.3	전상국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286-7 (hongun262@hanmail.net)				
3	중화동	286-8	도	201	12.5	정상이	성북구 석관동 108-14				
4	중화동	286-12	대	174.9	36	안정웅, 장용순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541-8				
5	중화동	286-13	대	180.5	35.2	박희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291-28	주식회사 조흥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1가 14 (중화동지점)		
6	중화동	286-18	도	122.6	11	정상이	성북구 석관동 108-14				
7	중화동	286-21	대	151.4	37.5	이병천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55	주식회사 조흥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1가 14 (중화동지점)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 20 (중화역지점)		
8	중화동	286-43	대	177.8	38.1	김옥자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6길 39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휘경동지점)	근저당권	
9	중화동	286-42	대	170.7	38.7	재단법인 대한약사회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1161-2 중화동286-42(2층)중랑구약사회				
10	중화동	286-24	대	251.2	251.2	김수주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177 서울숲 행당푸르지오㉮ 107-302				
11	중화동	286-26	대	233.4	233.4	김수주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177 서울숲 행당푸르지오㉮ 107-302				

물 건 조 서

사업시행자 : 중랑구청장
사 업 명 : 봉화산(중화역주변) 도로확장

연번	소재지(위치)		물건의 종류	규격 및 구조	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동	번지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권리	
1	중화동	286-7	건물(지층)	연와조	80.36	전상국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286-7 (hongun262@hanmail.net)				
			건물(1층)	연와조	60.44						
			건물(1층)	연와조	19.92						
			건물(2층)	연와조	80.36						
2	중화동	286-12	건물(지층)	철근콘크리트조	125.34	안정웅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541-8				
			건물(1층)	철근콘크리트조	66.47						
			건물(1층)	철근콘크리트조	11.5						

연번	소재지(위치)		물건의 종류	규격 및 구조	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동	번지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권리	
			건물(1층)	철근콘크리트조	8.66						
			건물(2층)	철근콘크리트조	86.63	장용순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541-8				
			건물(3층)	연와조	86.63						
			건물(4층)	연와조	86.63						
			건물(옥탑 1층)	연와조	10.66						
3	중화동	286-13	건물(지층)	철근콘크리트조	126.7	박희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286-13	주식회사 조흥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1가 14(중화동지점)	근저당권	
			건물(1층)	철근콘크리트조	67.6						
			건물(1층)	철근콘크리트조	22.56						
			건물(2층)	철근콘크리트조	90.16						
			건물(3층)	연와조	90.16						
			건물(4층)	연와조	90.16						
			건물(옥탑 1층)	연와조	11.18						
4	중화동	286-21	건물(지층)	철근콘크리트조	86.88	이병천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286-21	주식회사 조흥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1가 14(중화동지점)	근저당권	
			건물(1층)	철근콘크리트조	54.72						
			건물(1층)	철근콘크리트조	15.96						
			건물(2층)	철근콘크리트조	74.88						
			건물(3층)	철근콘크리트조	74.88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 20 (태평로2가) (중화역지점)	근저당권	
			건물(4층)	연와조	63						
			건물(5층)	연와조	50.4						
5	중화동	286-43	건물(지층)	철근콘크리트조	68.94	김옥자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312-3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66 (을지로2가)	근저당권	
			건물(1층)	철근콘크리트조	50.56						
			건물(1층)	철근콘크리트조	25.22						
			건물(2층)	철근콘크리트조	84.78						
			건물(3층)	세멘벽돌조	84.78						
6	중화동	286-42	건물(지층)	철근콘크리트조	68.94	사단법인대한약사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94 중화동286-42(2층)중랑구약사회				
			건물(1층)	철근콘크리트조	75.78						
			건물(2층)	철근콘크리트조	84.78						
			건물(3층)	세멘벽돌조	84.78						
7	중화동	286-24외 1필지	건물(지층)	철근콘크리트	182.79	김수주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177 서울숲 행당푸르지오㉔ 107-302				
			건물(1층)	철근콘크리트	233.19						
			건물(2층)	철근콘크리트	233.19						
			건물(3층)	철근콘크리트	233.19						

영업권 조서

사업시행자 : 중랑구청장
사 업 명 : 봉화산(중화역주변) 도로확장

연번	소재지	상호명	업종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중화동 286-7지하 1층	덕산어패럴	봉제업	김행순	중랑구 중화동	
2	중화동 286-7 1층	T World	판매업	임순우	중랑구 묵동	
3	중화동 286-7 1층	코리안 바베큐	주점업	홍영애	강북구 우이동	
4	중화동 286-12 지하1층	이야기가 있는 힐링공간 열린음악동호회	단체	김금순	노원구 공릉동	
5	중화동 286-12 1층	종가떡집	판매업	김수경	중랑구 중화동	
6	중화동 286-12 1층	on shop	판매업	김민정	중랑구 상봉동	
7	중화동 286-12 1층	박지민 헤어	미용업	박주연	강북구 수유동	
8	중화동 286-12 2층	힐링나인틴 척추교정원	의료업	최경미	중랑구 망우동	
9	중화동 286-12 2층	새생명교회	단체	배영식	중랑구 중화동	
10	중화동 286-13지하 1층	스카이노래연습장	운영업	홍선희	중랑구 중화동	
11	중화동 286-13 1층	하늘부동산	부동산업	김문숙	노원구 월계동	
12	중화동 286-13 1층	프로포즈	판매업	김만수	중랑구 중화동	
13	중화동 286-13 2층 201호	대한예수교장로회 친한교회	단체	이문오	강북구 번동	
14	중화동 286-13 2층 202호	여성의류쇼핑몰 one day pick	전자상거래업	이정남	중랑구 중화동	
15	중화동 286-13 3층 301호	초등돌봄교사연합회	단체	이근대	강동구 천호대로 1239	
16	중화동 286-21 1층	김지영 헤어리더	미용업	김지영(한철구 배우자)	중랑구 상봉동	
17	중화동 286-21 1층	봉구스 밥버거(중화점)	요식업	최유리	강북구 미아동	
18	중화동 286-212층	법무사 이우식 사무소	법무사업	이우식	용인시	
19	중화동 286-43 지하 1층	대지	봉제업	박귀자	중랑구 중화동	
20	중화동 286-43 1층	초밥전문점	요식업	김남길	중랑구 중화동	
21	중화동 286-43 1층	7호선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업	강명석	중랑구 중화동	
22	중화동 286-43 2층	생명나무교회	단체	오재복	중랑구 중화동	
23	중화동 286-42 1층	알뜰폰 T World	판매업	박지희	도봉구 창동	
24	중화동 286-42 2층	캐시플로 아카데미	교육 서비스업	유인찬	중랑구 중화동	
25	중화동 286-42 3층	중랑구 약사회	단체	김위학	노원구 중계동	
26	중화동 286-24외 필지1 지하 1층	모란	봉제업	박미연	동대문구 장안동	
27	중화동 286-24외 필지1 1층	써니부동산	부동산업	박은경	중랑구 상봉동	
28	중화동 286-24외 필지1 1층	ARITAUM LIVE(중화역점)	판매업	조경자	중랑구 묵동	
29	중화동 286-24외 필지1 1층	백남옥 달인손만두(중화역점)	요식업	이종재	노원구 상계동	
30	중화동 286-24외 필지1 1층	baskin robbins	판매업	유일한	감남구 개포동	
31	중화동 286-24외 필지1 1층	KT	판매업	김창만	남양주시	
32	중화동 286-24외 필지1 2층	안경디자인	판매업	손대만	도봉구 쌍문동	
33	중화동 286-24외 필지1 2층	사회교육원 풀잎문화센터	교육 서비스업	유조영	중랑구 중화동	
34	중화동 286-24외 필지1 3층	소나무 한의원	보건업	손종곤	중랑구 묵동	
35	중화동 286-24외 필지1 3층	연당서예원	교육 서비스업	백호자	중랑구 중화동	

□ 봉화산(중화역주변) 도로확장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치도면



○현황사진



◈ 성북구고시 제2020-12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정정) 고시

서울시특별시고시 제1986-850호(1986.11.29.)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09-93호(2009.10.15.)로 변경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20-14호(2020.1.30.)로 실시계획작성 고시한 【늘푸른길 확장사업(4차구간)】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정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6일
성 북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사업개요(변경)

사업의 명칭	사업의 위치	사업의 규모	최초 결정고시	비고
늘푸른길 확장사업 (4차구간)	안암동5가 126-30	· B = 6→10m · L = 110m	서울특별시고시 제1986-850호 (1986.11.29.)	

1) 변경사유 : 최초 결정고시일자 오기 정정
2) 변경내용 :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850호(1996.11.26.)→서울특별시고시 제1986-850호(1986.11.29.)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1) 성 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실시계획작성 고시일로부터 2년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 명세(변경없음) : 따로붙임
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도로과(☎2241-35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 : 성북구청장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사업의 명칭 : 늘푸른길 확장사업(4차구간)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소 유 권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성북구 안암동5가 126-88	임야	583	583	학교법인****학원	서울 성북구 ****가 *-*				126-30에서 분할
2	성북구 안암동5가 126-53	임야	40	40	학교법인****학원	서울 성북구 ****가 *-*				

◈ 성북구고시 제2020-12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332-500번지 등 29필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6일
성 북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주차장	성북구 석관동 332-500번지 등 29필지	2374.45㎡	-	

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주차장	• 위치 : 석관동 332-500번지 등 29필지 • 면적 : 2374.45㎡	• 낙후된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밀집된 동 지역에 주차 시설 부족으로 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편의 제공 및 불법 주정차 차량 흡수를 통한 이면도로 확보

다. 지형도면의 작성

◯ 성북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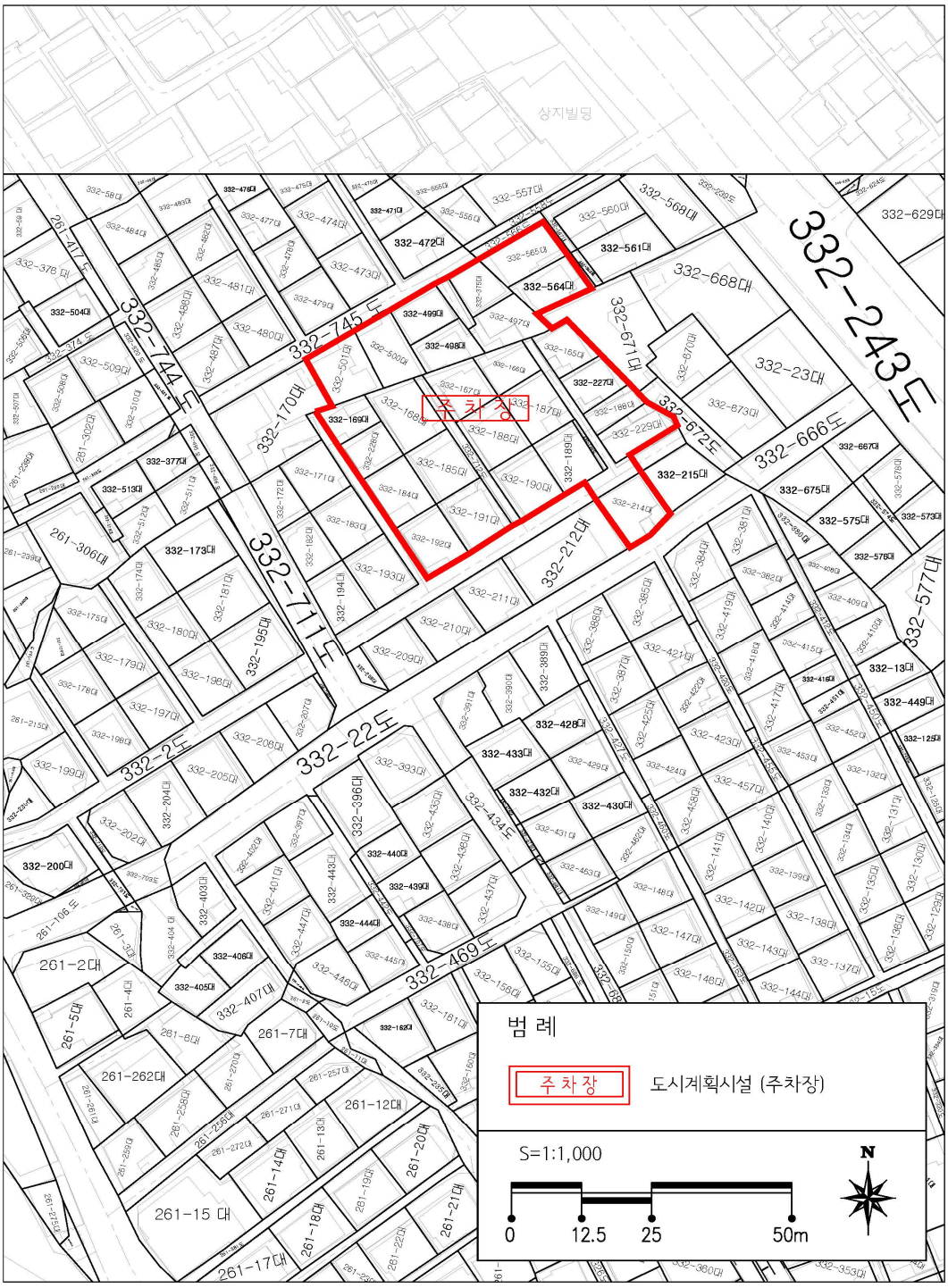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라.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성북구 교통행정과(☎2241-3415) 및 도시계획과(☎2241-2764)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도



◈ 성북구고시 제2020-127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6일
성 북 구 청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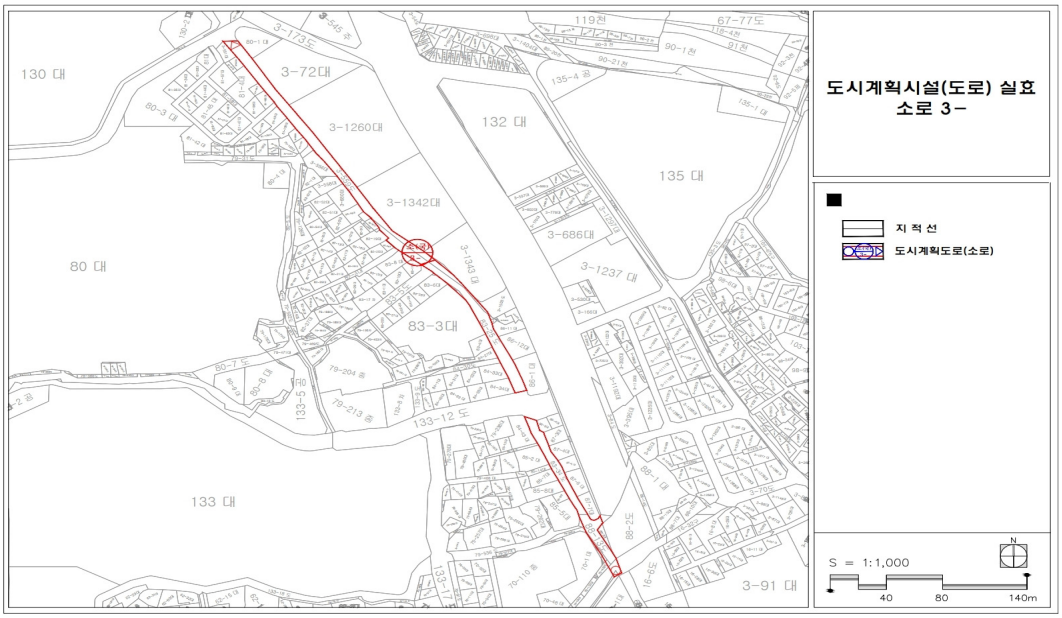
1. 도시계획시설(도로)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변경	소로	3	-	6	국지도로	486	종암동 3-145	종암동 79-266	일반도로	서고 656 (1978.12.15.)	미집행구간의 실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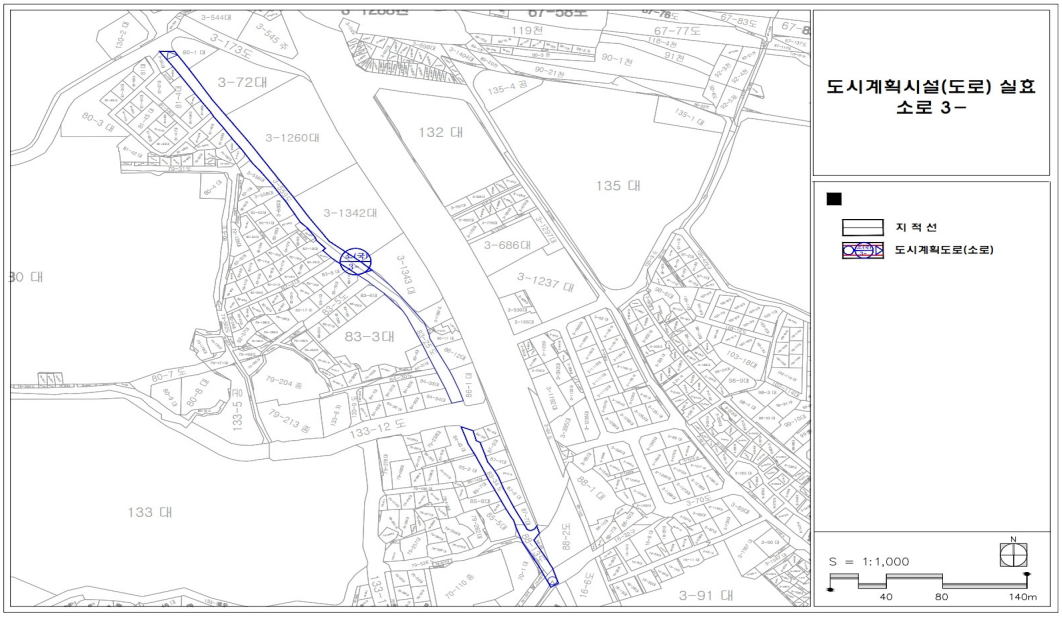
2. 실효일자 : 2020. 7. 1.
3. 실효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4. 지형도면 : 붙임참조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 도로과(☎02-2241-3545) 또는 도시계획과(☎02-2241-27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 고시

○기정



○변경



◈ 노원구고시 제2020-79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179-28 일대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6일
노 원 구 청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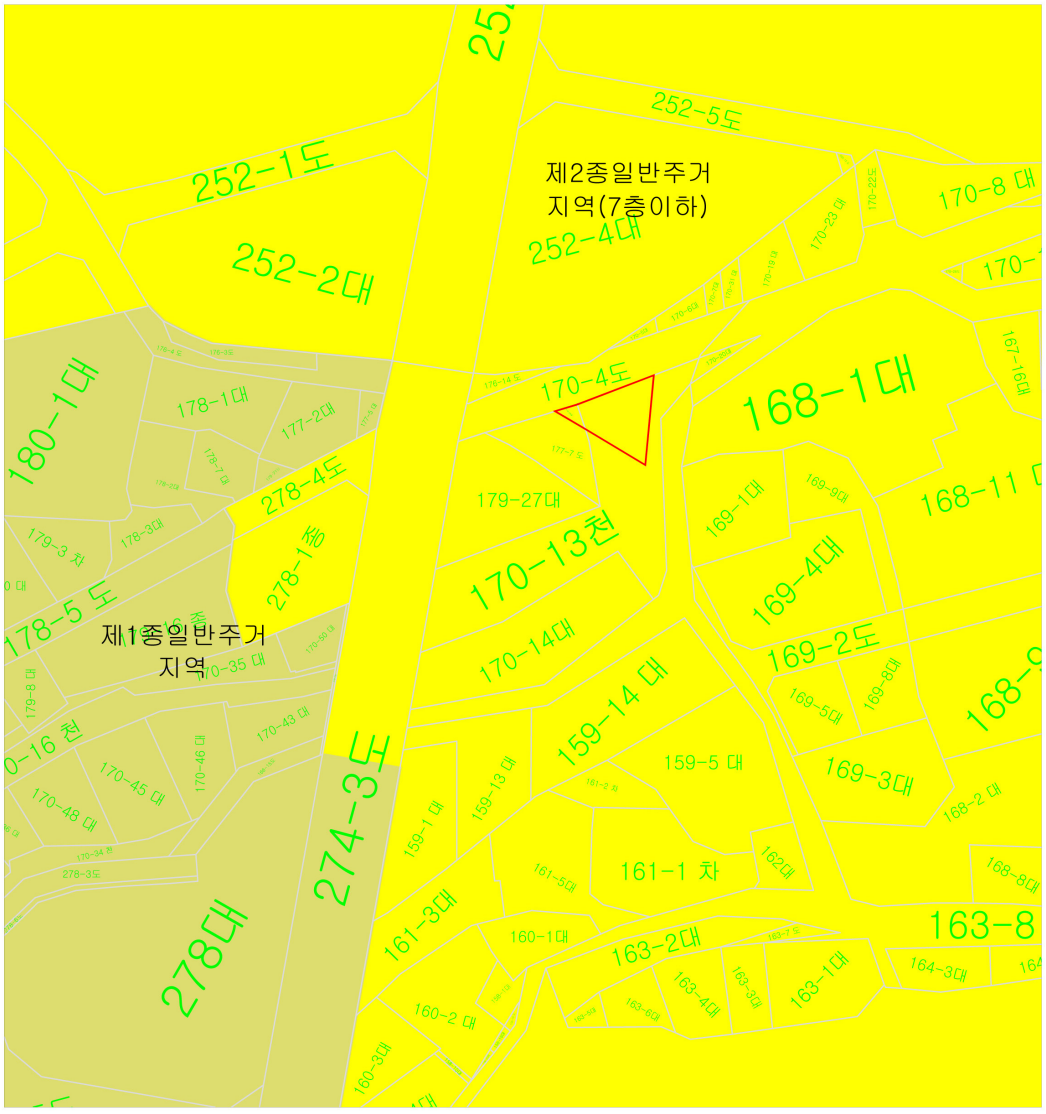
1. 변경결정 취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179-28 일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하계어울림센터 건립사업과 연계하여 주민 휴식이 가능한 쉼터로 조성하고자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구분	시설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공공공지	하계동 179-28 일대	0	증)118	118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노원구청 도시관리과(☎2116-386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S=1:1,000(A4 Size)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공공공지	노원구 하계동 179-28 일대		118	118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서대문구고시 제2020-13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50호(1981.7.4)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이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64호(2007.12.26)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55-1 일대 서울외국인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6일
서 대 문 구 청 장

1. 결정 취지

○ 서울외국인학교의 기 소유 토지를 학교시설로 편입하여, 어린이 수영장 및 실내체육관 신축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시설을 변경 결정함.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학교	각종학교 (서울외국인학교)	서대문구 연희로22길39 일대(연희동 55-1)	75,777.1	(증)3,454	79,231.1	서고시 제250호 (1981.7.4.)	증가 면적 비율 (4.6%)

※ 금회 편입부지는 비오톱 1등급지로 건축행위 등 개발계획 없음.

○ 건축범위 결정 조서(변경없음)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m)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30 이하	-	100 이하	-	5층 25.5m	-	· 높이완화 결정되지 않은 건축물은 3층 12m 이하임. (서고시 제2014-464호 : 높이완화 결정)

○ 변경 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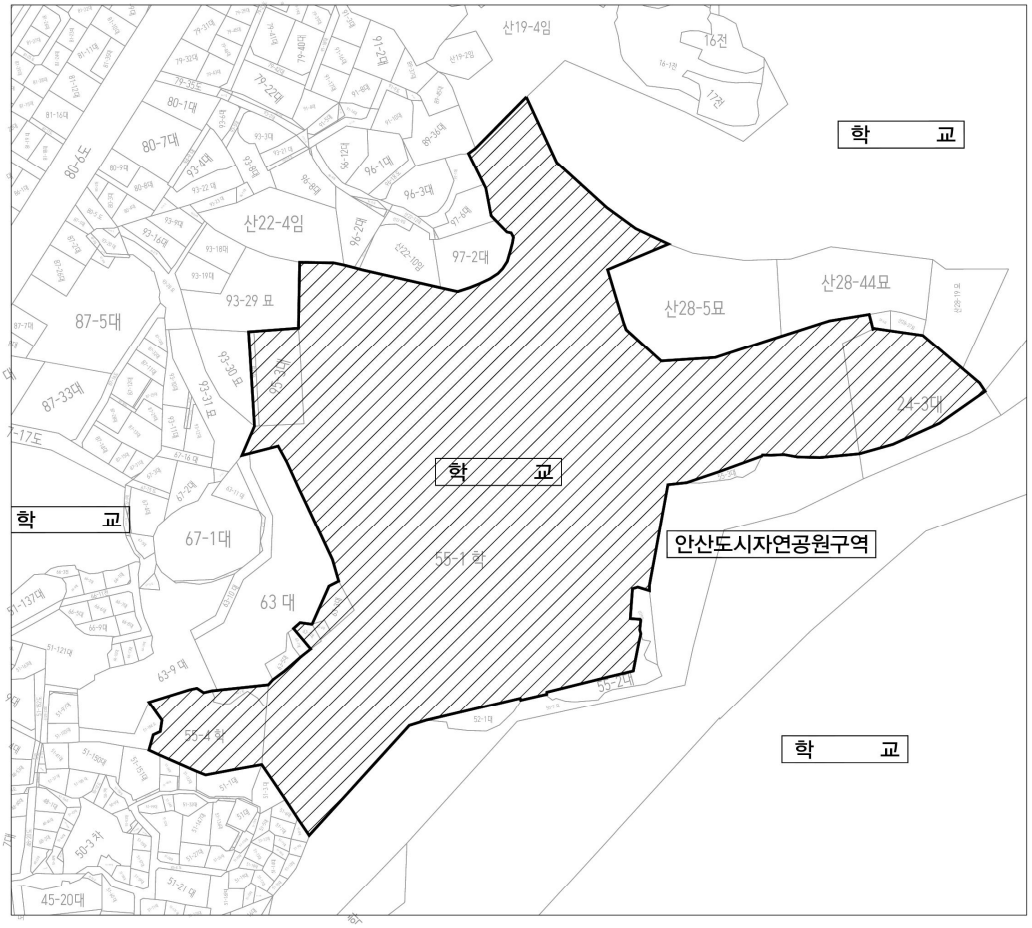
시설명	시설세부	변경내용	변경사유
학교	각종학교 (서울외국인학교)	·면적변경 75,777.1㎡ → 79,231.1㎡ [(증) 3,454.0㎡]	· 유아 수영장 및 실내체육관 신축을 위해 서울외국인학교 소유의 토지를 학교시설로 편입 하고자 함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서대문구 도시관리과(☎ 330-1644)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붙임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경미한 변경) 기정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기정)도

SCALE = NONE
0 25 50 100
N

범례
지적선
학교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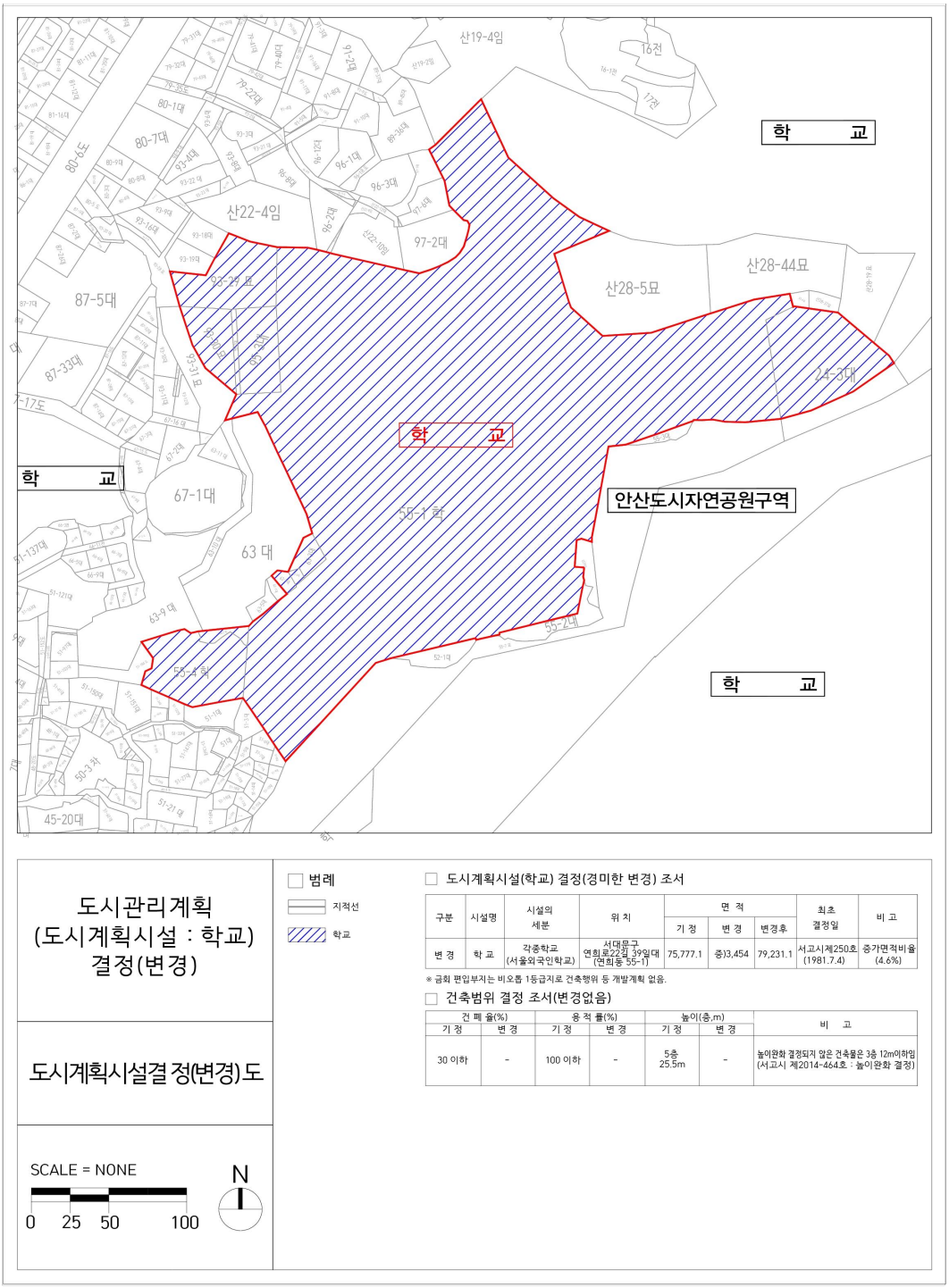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학 교	각종학교 (서울외국인학교)	서대문구 연희로22길 37일대 (연희동 55-1)	75,777.1	증)3,454	79,231.1	서고시제250호 (1981.7.4)	증가면적비율 (4.6%)

※ 금회 편입부지는 비오톱 1등급지로 건축행위 등 개발계획 없음.

□ 건축범위 결정 조서(변경없음)

건 폐 율(%)		용 적 률(%)		높이(층,m)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30 이하	-	100 이하	-	5층 25.5m	-	높이완화 결정되지 않은 건축물은 3층 12m이하임 (서고시 제2014-464호 : 높이완화 결정)

[붙임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경미한 변경) 변경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학 교	각종학교 (서울외국인학교)	서대문구 연희로22길 39일대 (연희동 55-1)	75,777.1	중)3,454	79,231.1	서고시제250호 (1981.7.4)	증가면적비율 (4.6%)

※ 금회 편입부지는 비오톱 1등급지로 건축행위 등 개발계획 없음.

□ 건축범위 결정 조서(변경없음)

건 폐 율(%)		용 적 률(%)		높이(층,m)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30 이하	-	100 이하	-	5층 25.5m	-	높이완화 결정되지 않은 건축물은 3층 12m이하임 (서고시 제2014-464호 : 높이완화 결정)

[붙임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결정(경미한 변경) 기정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변경)

건축범위결정(기정)도

SCALE = NONE

0 25 50 100

N

범례

- 지적선
- 도시계획시설(학교)
- 기존 건축물
- 철거 예정 건축물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학 교	각종학교 (서울외국인학교)	연희로22길 19일대 (연희동 55-1)	75,777.1	중)3,454	79,231.1	서고시제250호 (1981.7.4)	증가면적비율 (4.6%)

※ 금회 편입부지는 비오톱 1등급지로 건축행위 등 개발계획 없음.

□ 건축범위 결정 조서(변경없음)

건 폐 율(%)		용 적 률(%)		높이(층,m)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30 이하	-	100 이하	-	5층 25.5m	-	높이완화 결정되지 않은 건축물은 3층 12m이하임 (서고시 제2014-464호 : 높이완화 결정)

[붙임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결정(경미한 변경) 변경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변경)

건축범위결정(변경)도

SCALE = NONE

0 25 50 100

N

범례

- 지적선
- 도시계획시설(학교)
- 기존 건축물
- 신축/증축 건축물
- 철거 예정 건축물
- 비오톱 1등급(보전)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학 교	각종학교 (서울외국인학교)	서대문구 연희로22길 39일대 (연희동 55-1)	75,777.1	증)3,454	79,231.1	서고시제250호 (1981.7.4)	증가면적비율 (4.6%)

※ 금회 편입부지는 비오톱 1등급지로 건축행위 등 개발계획 없음.

건축범위 결정 조서(변경없음)

건 폐 율(%)		용 적 률(%)		높이(층,m)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30 이하	-	100 이하	-	5층 25.5m	-	높이완화 결정되지 않은 건축물은 3층 12m이하임 (서고시 제2014-464호 : 높이완화 결정)

◈ 동작구고시 제2020-106호

주택건설사업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59-250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6일
동 작 구 청 장

1. 사업의 명칭 : 상도동 159-250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성명 및 주소 : 상도역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조사인 외 1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녕로 36길4)
3. 사업시행자의 위치 · 면적 및 규모
   가.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59-250번지 일원
   나. 면적 및 규모

구분	규 모			대지면적(㎡)	건축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사업기간 (사용검사예정일)
	층수 (지상/지하)	동	세대수					
아파트	20/5	13	950	39,627	139,977.82	21.23	227.73	2021.01

4. 사업시행기간
   가. 2018. 5. ~ 2021. 01. 31.
5. 주택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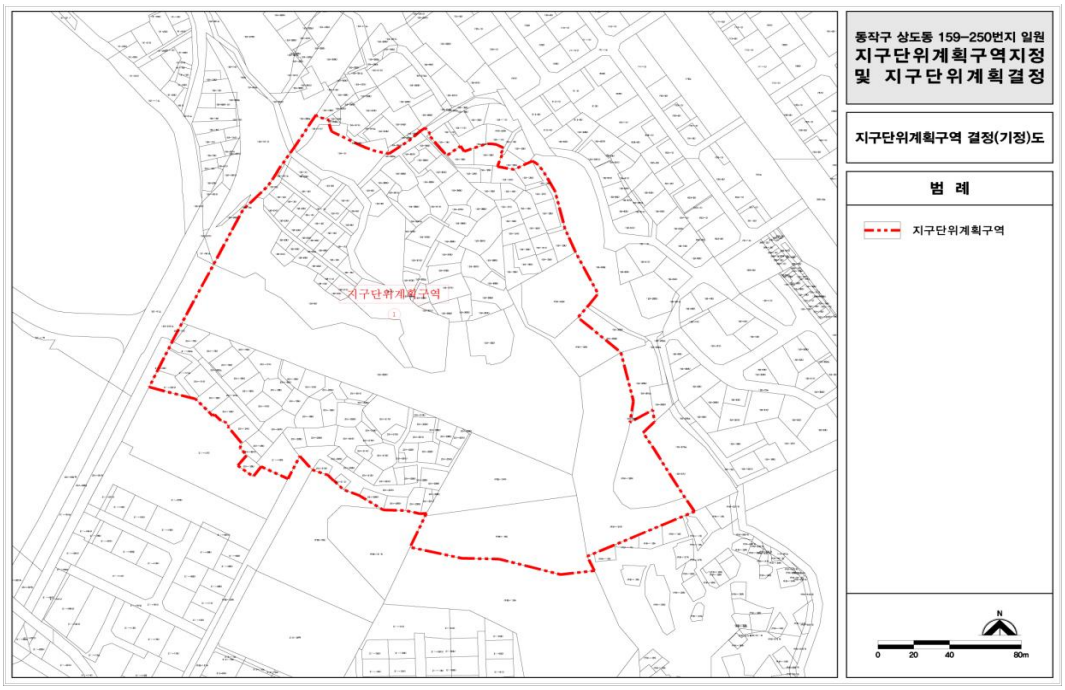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상도동 159-250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 상도동 159-250번지 일원	48,302	-	48,302	동작구고시 제2019-24호 (2019.03.21.) 구역외 부지 대토로 인한 구역계 변경

※ 측량성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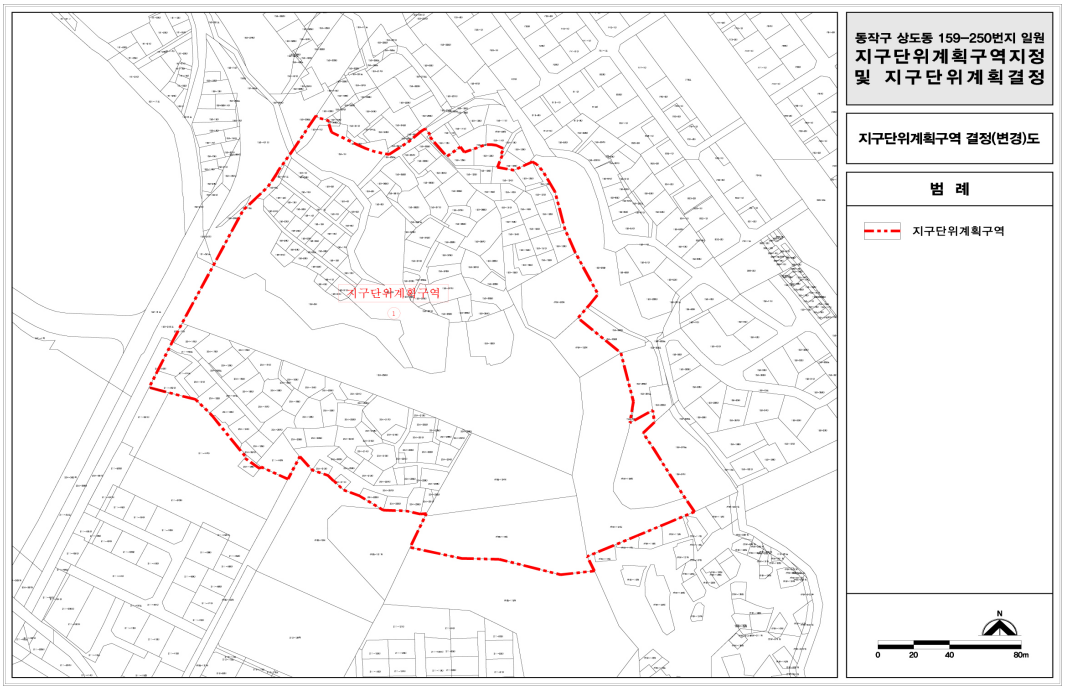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상도동 159-250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구역계 변경(면적변동 없음)	지형사정으로 공원 정형화를 위해 구역계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기정)도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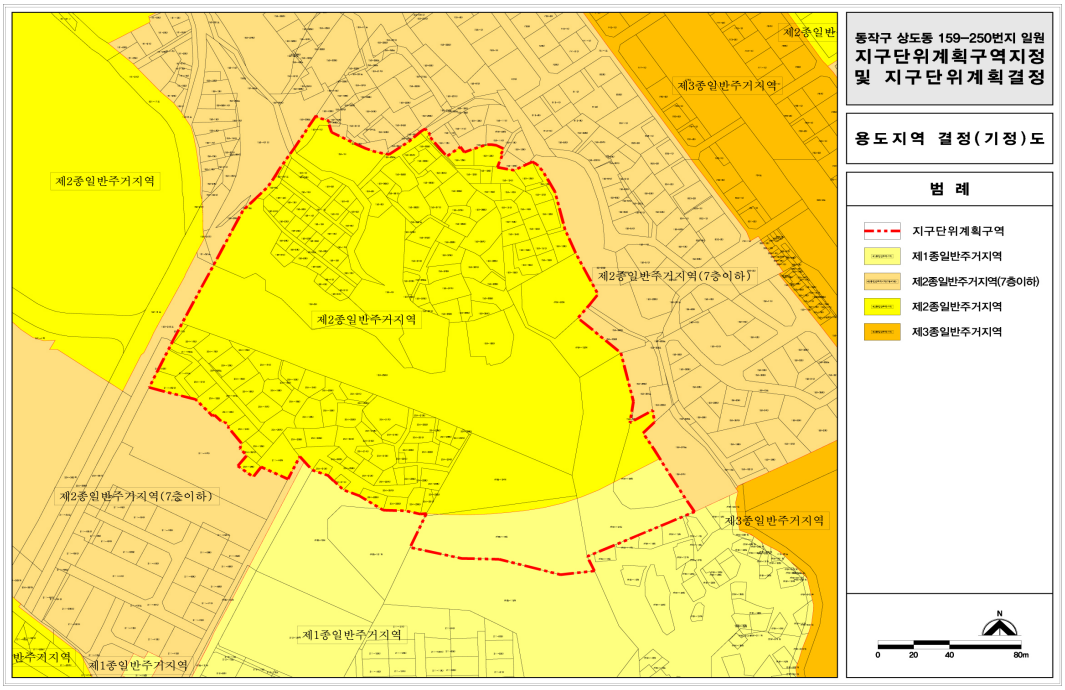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8,302	-	48,302	100.0	구역외 부지 대토로 인한 구역계 변경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4,746	-	4,746	9.8	
	제2종일반주거지역	43,556	-	43,556	90.2	

※ 측량성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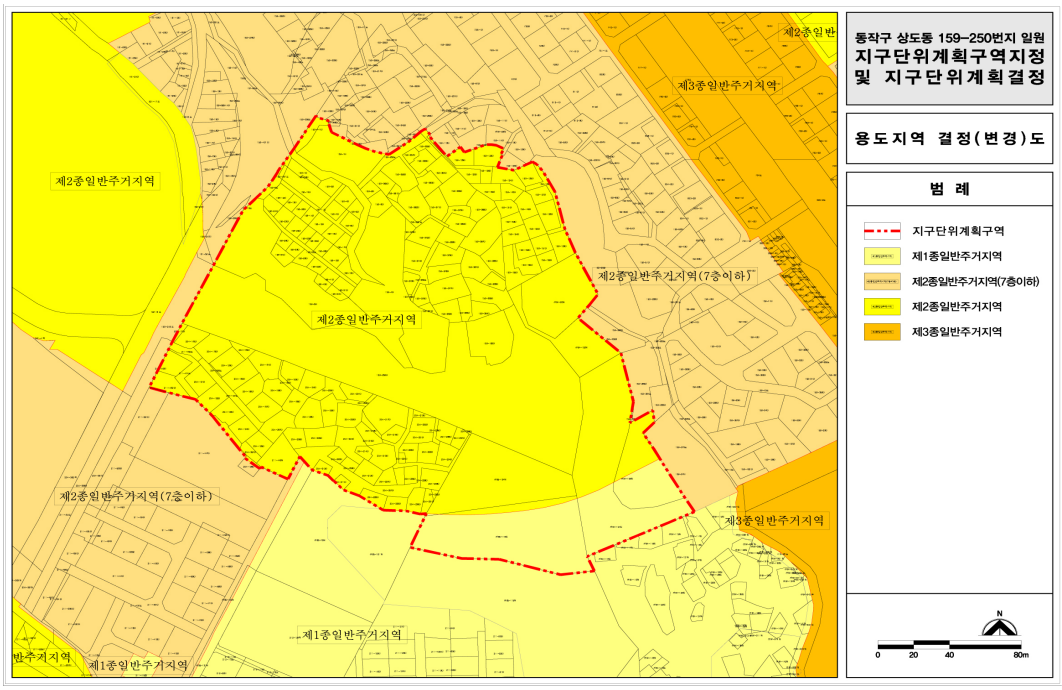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비 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면적변동 없음 • 대토구간 용도지역 변경 -제척되는 구간 : 제2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편입되는 구간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제2종일반주거지역	지형사정으로 공원 정형화를 위해 구역계 변경

〈 용도지역 결정(기정)도 〉



〈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 도로 결정 총괄표(변경없음)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2	781	15,902	-	-	-	1	71	589	1	710	15,313
중로	1	710	15,313	-	-	-	-	-	-	1	710	15,313
소로	1	71	589	-	-	-	1	71	589	-	-	-

※ 측량성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정	중로	3	35	12~35	보조 간선	710	상도동 210-455	상도동 32-11	일반 도로	-	-	-
기 정	소로	2	79	8	국지	71	상도동 159-392	상도동 159-441	일반 도로	-	동작구 고시 제2017-77호 (2017.09.28)	-

나)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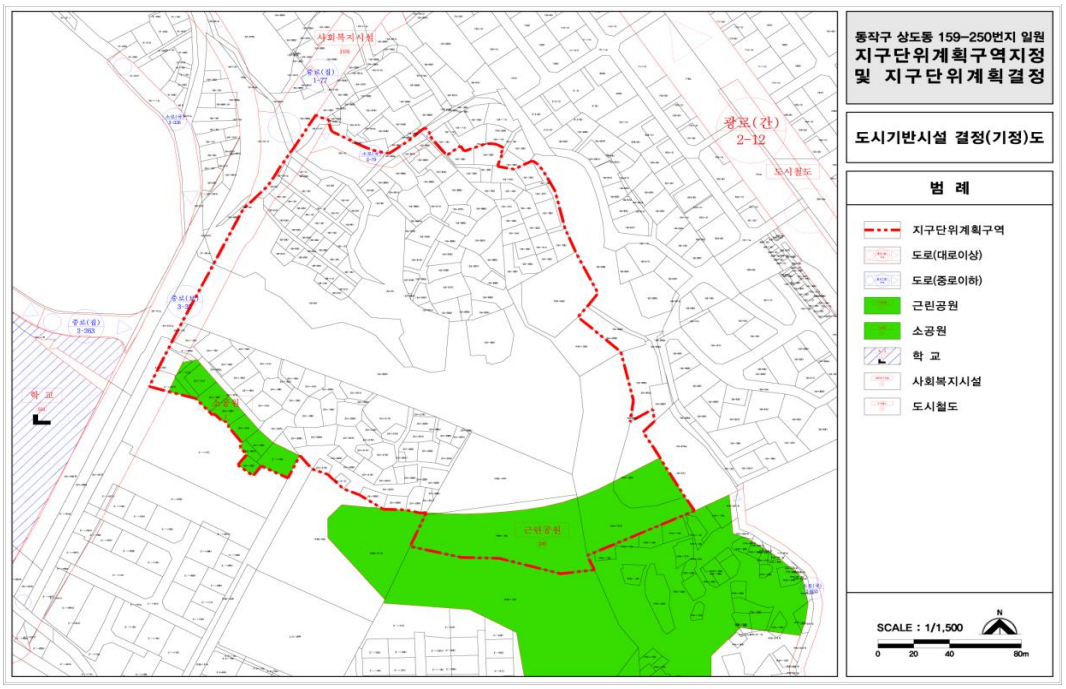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	상도 근린공원	근린공원	상도동 산65-116번지 일원	360,403.8 (4,746)	-	-
기 정	①	-	소공원	상도동 204-192번지 일원	1,390	동작구 고시 제2017-77호 (2017.09.28)	공원 선형 변경

※ 측량성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는 구역 내 면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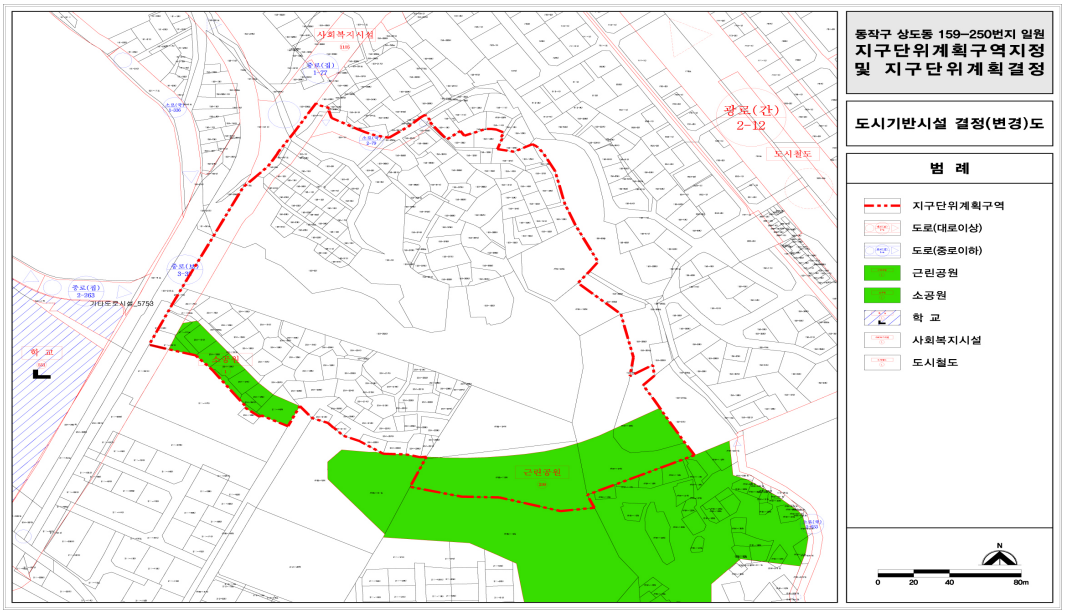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	소공원	공원 선형변경	지형사정으로 공원 정형화를 위해 구역계 변경

〈 도시기반시설(공원) 결정(기정)도 〉



〈 도시기반시설(공원) 결정(변경)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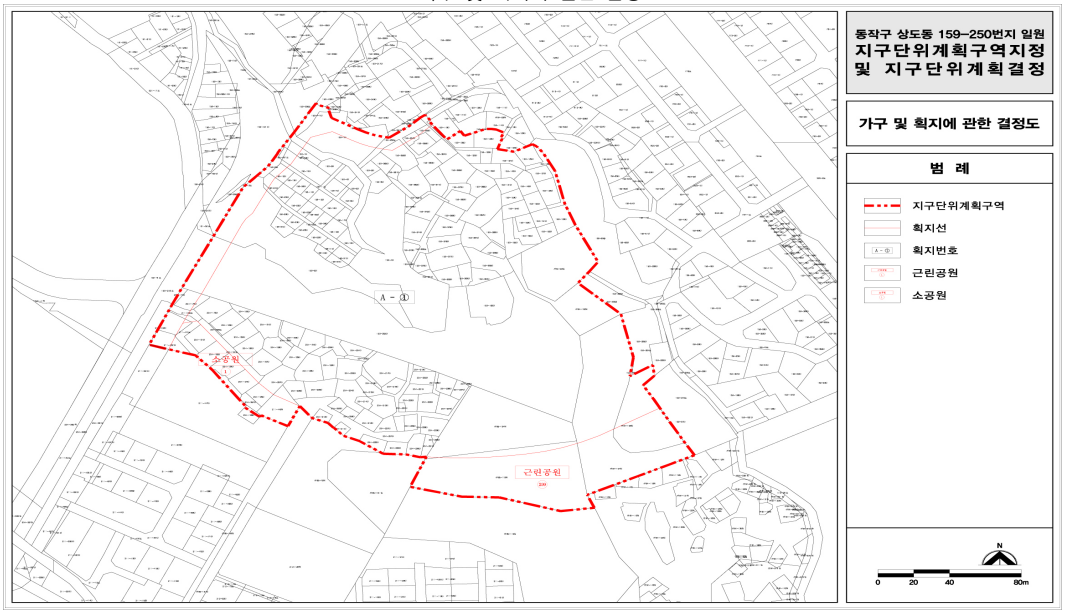


3)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	A	39,627	①	39,627	

※ 측량성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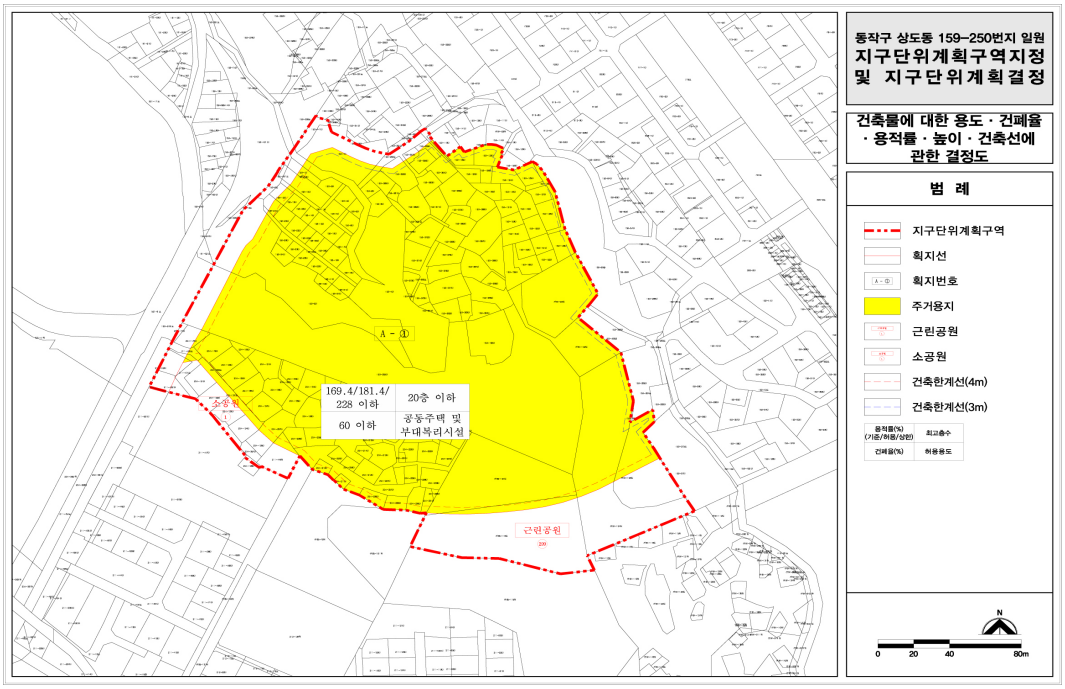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A-①	상도동 159-250번지 일원	용도	허용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기준	• 169.4% 이하	[산출식] • 기준 = {(150%×1,141㎡)+(170×38,486)}/39,627㎡ = 169.42% • 허용 = 169.42% + 12%(무량판구조 7%, 에너지효율 인증2등급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4%, 신재생에너지 3등급 1%) = 181.42% • 상한 = 181.42% + (169.42%×1.3×0.2442×0.9443) = 232.20% ※ a = 9,483㎡/38,819㎡=0.2442, C = 160.00/169.42 = 0.9443 ※ 공공시설제공부지 용적률 = {(150%×4,741㎡)+(170%×4,742㎡)}/9,483㎡ = 160.00%
			허용	• 181.4% 이하	
			상한	• 228% 이하	
		높이		• 최고층수 20층 이하	
		건축선		• 중로3-35호선 및 근린공원변 : 4m • 소로2-79호선 및 인접대지변 : 3m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에 관한 결정도 〉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분	위치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불허구간	중로3-35호선변(양녕로변)	•중로 3-35호선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나)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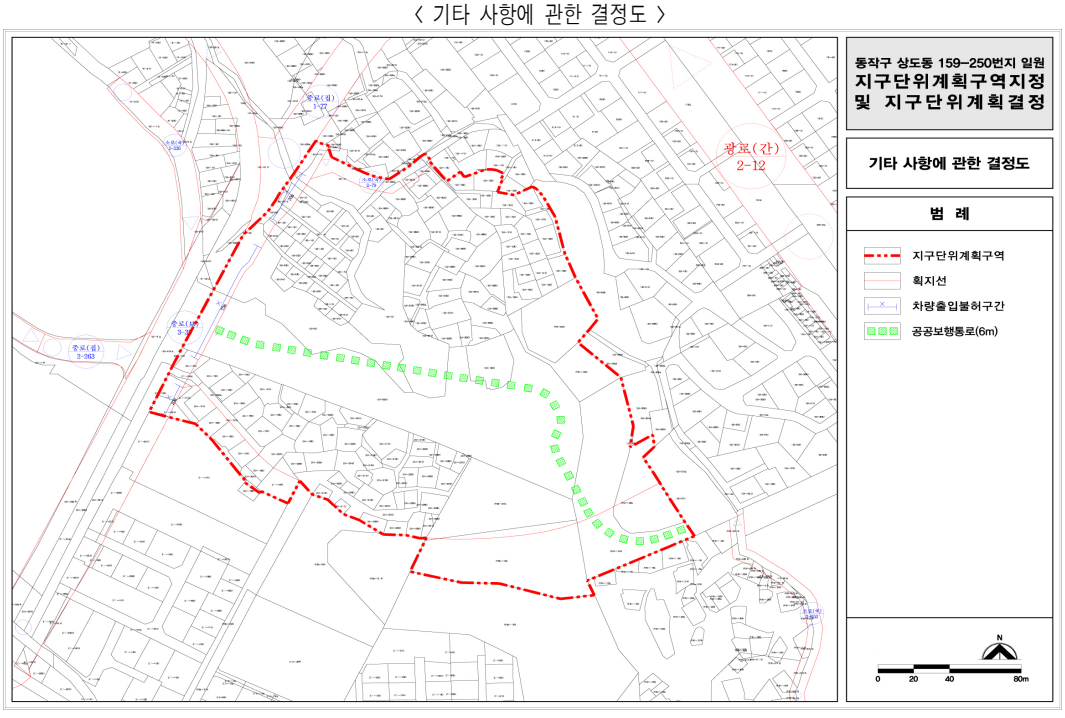
구분	위치	계획내용	비고
공공보행통로	상도근린공원 ~ 중로3-35호선변(양녕로변)	•공공보행통로 지정 : 폭원 4~ 6m	

다) 공공시설 부담계획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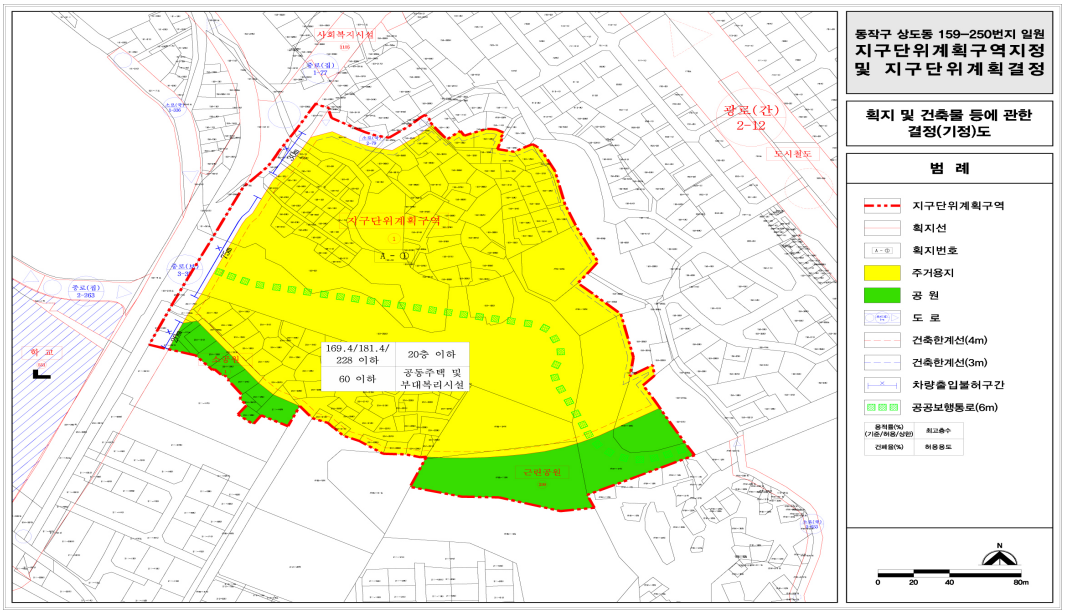
구분	면적(㎡)		순부담률(%)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공 원	6,136	6,136	13.0	13.0	
도 로	2,539	2,539	5.4	5.4	
공공시설	879	808	1.9	1.7	• 건축물기부채납(건축물연면적: 1,082.57㎡/대지지분:306㎡)
소 계	9,554	9,483	20.3	20.1	

※ 측량성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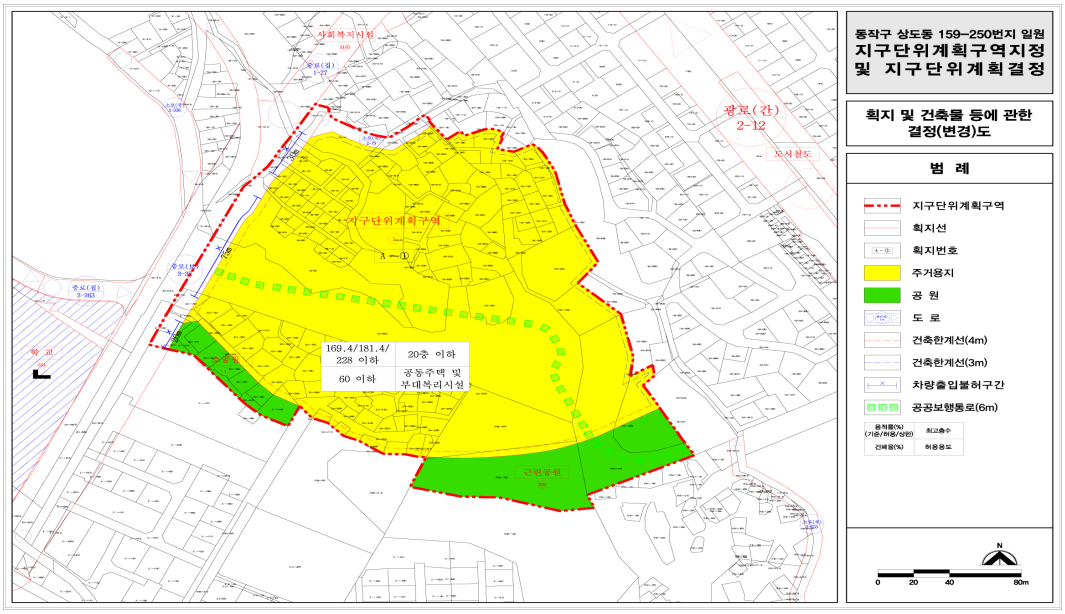
〈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도 〉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6. 기타 관계도서는 동작구청 주택과(☎ 820-9776)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끝.

◈ 서초구고시 제2020-157호

비석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1. 건설부고시 제132호(1984.4.25.)호로 공원결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356호(1991.12.19.)호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된 비석어린이공원에 대하여
2.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초구고시 제2019-79호(2019.5.2.)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주차장) 중복결정하고, 서초구고시 제2020-72호(2020.5.1.)로 실시계획 작성 고시된 사항과 관련하여 주차장 조성 후 정비되는 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6일
서 초 구 청 장

가. 공 원 명: 비석어린이공원
나. 위　　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90-1번지
다. 면　　적: 1,500.6㎡
라.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비석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을 통해 노후된 공원을 재정비하여 지역주민과 어린이들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마. 고시방법: 서울시보 게재
바. 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조서 및 지형도면: 별첨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음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한 지형도면 작성, 승인고시는 본 고시로 갈음함
아. 열람장소: 서초구청 공원녹지과(☎2155-6861)
자.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서초구청 공원녹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석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경미한변경) 조서

가. 총괄표 (위치: 양재동 90-1번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1,500.6	842				33	1,500.6	844.2				33	시설면적 증 2.2㎡
기반시설	소계	534	534					396.4	396.4					
	광장	500	500					241.4	241.4					
	도로	34	34					155	155					
조경시설							1						8	
휴양시설		8	8				9	73.8	73.8				8	
유희시설		300	300				4	260.8	260.8				5	
운동시설							3	84.4	84.4				5	
교양시설														
편익시설								1.4	1.4				1	
관리시설							16	27.4	27.4				6	
녹지 및 기타		658.6						656.4						녹지면적 감 2.2㎡
시 설 율		(842 /1,500.6) * 100= 56.1%						(844.2 /1,500.6) * 100= 56.25%						시설율 증 0.15%
건 폐 율		-						-						

나.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 면적(㎡)	시설 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 면적(㎡)	시설 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1,500.6	1,500.6					33			1,500.6	1,500.6					33	
기반시설	소 계			534	534								396.4	396.4						
	광 장			500	500								241.4	241.4						
	도 로			34	34								155	155						
조경시설	소 계									1									8	
	플랜터	①								1										
	쿨링포그										①								8	
휴양시설	소 계			8	8					9			73.8	73.8					8	
	파고라	②								1	②								1	
	등의자	③								8										
	야외테이블										③								6	
	앉음벽										④								1	
유희시설	소 계			300	300					4			260.8	260.8					5	
	조합놀이대	④								1	⑤								1	
	그네	⑤								1	⑥								1	
	흔들놀이대	⑥								2	⑧								2	
	시소										⑦								1	
운동시설	소 계									3			84.4	84.4					5	
	체력단련시설	⑦~⑨								3	⑨~⑬								5	
편익시설	소 계												1.4	1.4					1	
	음수전																		1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 면적(㎡)	시설 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 면적(㎡)	시설 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관리 시설	소계									16			27.4	27.4					6	
	볼라드	⑩								11										
	공원등	⑪								3	⑭								3	
	안내판	⑪								2	⑮								1	
	환기구										⑯		27.4	27.4					2	
녹지/ 기타	소계			658.6									656.4							
	녹지 · 기타			658.6									65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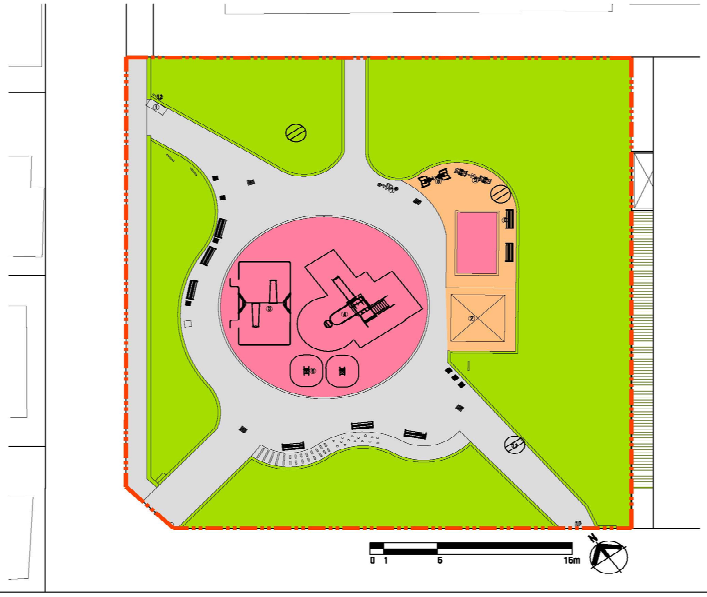
다. 도로 총괄조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폭 원(m)	연 장(m)	면 적(㎡)	폭 원(m)	연 장(m)	면 적(㎡)	
합 계		17	34		79.2	155.0	
소 로	2.0	17	34	1.3~3.0	79.2	155.0	

라. 도로 세부조서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m)	면적(㎡)	기능	기 점	종 점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m)	면적(㎡)	기능	기 점	종 점	
합 계				17	34				합 계				79.2	155.0				
소로	소 계			17	34				소로	소계			79.2	155.0				
	3	1	2.0	17	34	진입로	남측 부지경계	유희시설		3	1	1.5~3.0	18.3	46.2	연결로	소로 3-2	체력마당	
											2	1.3~3.0	60.9	108.8	진입로	북측 부지경계	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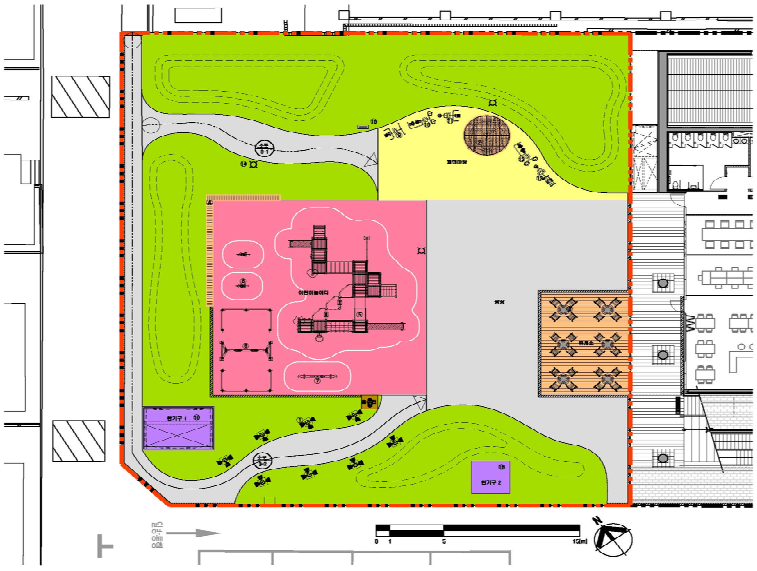
조 성 계 획 도 [기정]



□ 범 례

구분	시설명	시설면적(㎡)	공작물(기)	구성비(%)
합 계		1,500.0	35	100.0
기반시설	소 계	534.0		35.6
	녹 지	96.0		7.2
	광 장	500.0		33.3
보행시설	소 계	0.0	1	0.0
	① 플랜터	-	1	
휴양시설	소 계	0.0	5	0.0
	휴게소	0.0		0.0
	② 퍼고라	-	1	
	③ 놀이시설	-	4	
편의시설	소 계	990.0	4	29.0
	어린이놀이터	990.0		29.0
	① 모험놀이터	-	1	
	② 그 네	-	1	
	⑥ 콘텔놀이터	-	2	
유통시설	소 계	0.0	3	0.0
	⑦ 정책전시설물	-	1	
	⑧ 정책전시설물	-	1	
	⑨ 정책전시설물	-	1	
관리시설	소 계	0.0	16	0.0
	⑩ 볼라드	-	11	
	⑪ 가 두 봉	-	3	
	⑫ 맨홀뚜껑	-	2	
녹 지	소 계	956.6		43.0
	녹 지	956.6		43.0

조 성 계 획 도 [변경]



□ 범 례

구분	시설명	시설면적(㎡)	공작물	구성비(%)
합 계		1,500.0		100.0
기반시설	소 계	389.4		25.4
	도 로	155.0		10.3
	광 장	741.4		49.1
보행시설	소 계	0.0		0.0
	① 포 그	-	8개소	
휴양시설	소 계	73.6		5.0
	휴게소	73.6		5.0
	② 퍼고라	-	1개소	
	③ 야생화단	-	4.8소	
	④ 정 원 석	14.6m	1개소	
편의시설	소 계	260.0		17.4
	어린이놀이터	260.0		17.4
	⑤ 모험놀이대	-	1개소	
	⑥ 그 네	-	1개소	
	⑦ 미 끄 럼	-	1개소	
	⑧ 콘텔놀이대	-	2개소	
분류시설	소 계	84.4		5.6
	정책전당	84.4		5.6
	⑨ 정책전시설물1	-	1개소	
	⑩ 정책전시설물2	-	1개소	
	⑪ 정책전시설물3	-	1개소	
	⑫ 정책전시설물4	-	1개소	
	⑬ 정책전시설물5	-	1개소	
변적시설	소 계	1.4		0.1
	출수전	1.4	1개소	0.1
관리시설	소 계	77.5		1.8
	⑭ 경 계 도	-	97m	
	⑮ 안 내 판	-	1개소	
	⑯ 쓰레기통	-	1개소	
	⑰ 분리수거함	-	1개소	
	⑱ 분리수거함	-	1개소	
	⑲ 분리수거함	-	1개소	
	⑳ 분리수거함	-	1개소	
	㉑ 분리수거함	-	1개소	
	㉒ 분리수거함	-	1개소	
	㉓ 분리수거함	-	1개소	
	㉔ 분리수거함	-	1개소	
	㉕ 분리수거함	-	1개소	
	㉖ 분리수거함	-	1개소	
	㉗ 분리수거함	-	1개소	
	㉘ 분리수거함	-	1개소	
	㉙ 분리수거함	-	1개소	
	㉚ 분리수거함	-	1개소	
	㉛ 분리수거함	-	1개소	
	㉜ 분리수거함	-	1개소	
	㉝ 분리수거함	-	1개소	
	㉞ 분리수거함	-	1개소	
	㉟ 분리수거함	-	1개소	
	㊱ 분리수거함	-	1개소	
	㊲ 분리수거함	-	1개소	
	㊳ 분리수거함	-	1개소	
	㊴ 분리수거함	-	1개소	
	㊵ 분리수거함	-	1개소	
	㊶ 분리수거함	-	1개소	
	㊷ 분리수거함	-	1개소	
	㊸ 분리수거함	-	1개소	
	㊹ 분리수거함	-	1개소	
	㊺ 분리수거함	-	1개소	
	㊻ 분리수거함	-	1개소	
	㊼ 분리수거함	-	1개소	
	㊽ 분리수거함	-	1개소	
	㊾ 분리수거함	-	1개소	
	㊿ 분리수거함	-	1개소	
	(51) 분리수거함	-	1개소	
	(52) 분리수거함	-	1개소	
	(53) 분리수거함	-	1개소	
	(54) 분리수거함	-	1개소	

구 공 고

◈ 성동구공고 제2020-83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유수지, 체육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0-371호(2020.3.26.)로 열람공고한 성동구 성수동1가 685-63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유수지, 체육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제68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16일
성 동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성동구청 도시계획과(☎02-2286-5554), 문화체육과(☎02-2286-5210) 교통지도과(☎02-2286-5713)

다. 열람내용

○ 도시계획시설(유수지, 체육시설, 주차장) 중복결정(변경)(안)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유수지	유수시설	성동구 성수동1가 685-76일대	60,862	-	60,862	'67.10.25 (건고시 제709호)	주소정정 및 중복결정
변경			성동구 성수동1가 685-63일대					
신설	체육시설	체육시설	성동구 성수동1가 685-63일대	-	증)11,200	11,200	-	중복결정 -체육시설(지상)
신설	주차장	주차장	성동구 성수동1가 685-63일대	-	증)14,112	14,112	-	중복결정 -주차장(지상)

○ 건축물의 범위 결정조서(체육시설)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 고
내용	20%이하	50%이하	28m 이하	체육시설

○ 도시계획시설(유수지) 변경사유서 (주소정정)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유수지	기정 : 성동구 성수동1가 685-76일대 변경 : 성동구 성수동1가 685-63일대	• 기존 지번 말소로 고시문상 위치 표기를 성수동1가 685-63으로 정정

○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사유서 (신설·중복결정)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체육시설	신설·중복결정면적 : 11,200㎡ (체육시설-지상)	• 대상지 일대 대규모 주택공급에 따른 생활SOC시설인 체육·문화·복지(돌봄)시설의 확충
주차장	신설·중복결정면적 : 14,112㎡ (주차장-지상)	• 서울숲 방문객, 저층주거지 주차난 완화 등을 위한 공영주차장 신설

라. 관련도서: 생략(성동구청 도시계획과, 문화체육과, 교통지도과 비치 도서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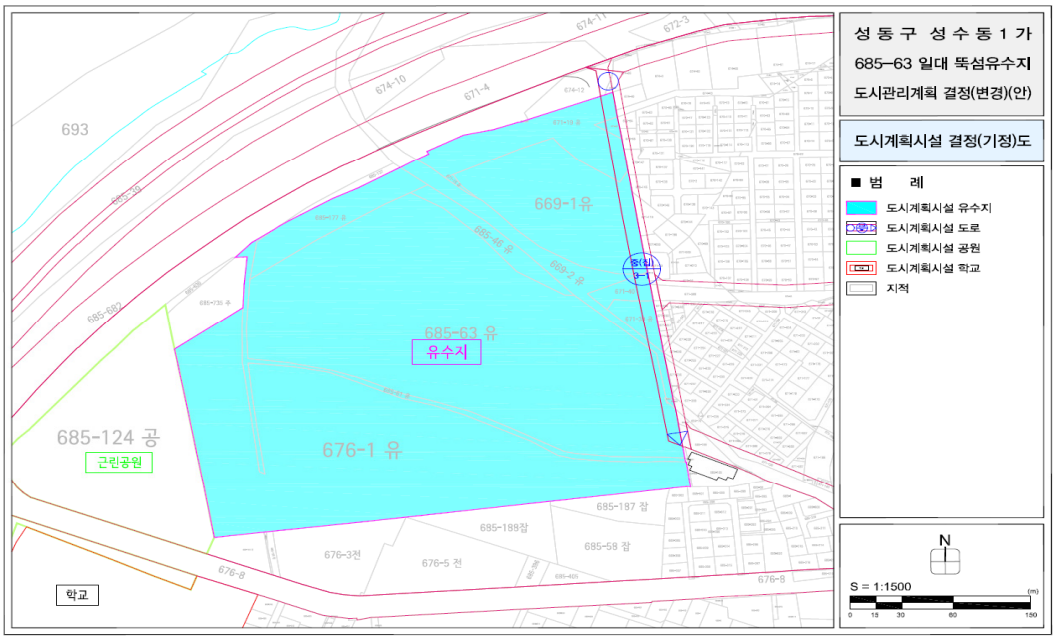
마. 재열람 사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체육시설의 건축범위(건폐율, 용적률, 높이) 및 도시계획시설의 경계 정형화를 반영

바. 기타사항

○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성동구청 도시계획과(☎02-2286-55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유수지, 체육시설, 주차장) 결정도(안)

○ 기정



○ 변경



◈ 강북구공고 제2020-801호

도시관리계획(번동 410-5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번동 410-5번지 일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07-29호, 2007.04.25) 시 지구단위계획 의제 처리한 번동 410-5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제6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3.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16일
강 북 구 청 장

가. 공 고 일: 2020. 7. 16.
나.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다. 열람장소: 강북구청 도시계획과(☎901-6872) 및 일자리경제과(☎901-7252)
라. 도시관리계획(번동 410-5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3)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공공지	강북구 번동 410-5 번지	0	증)689.9	689.9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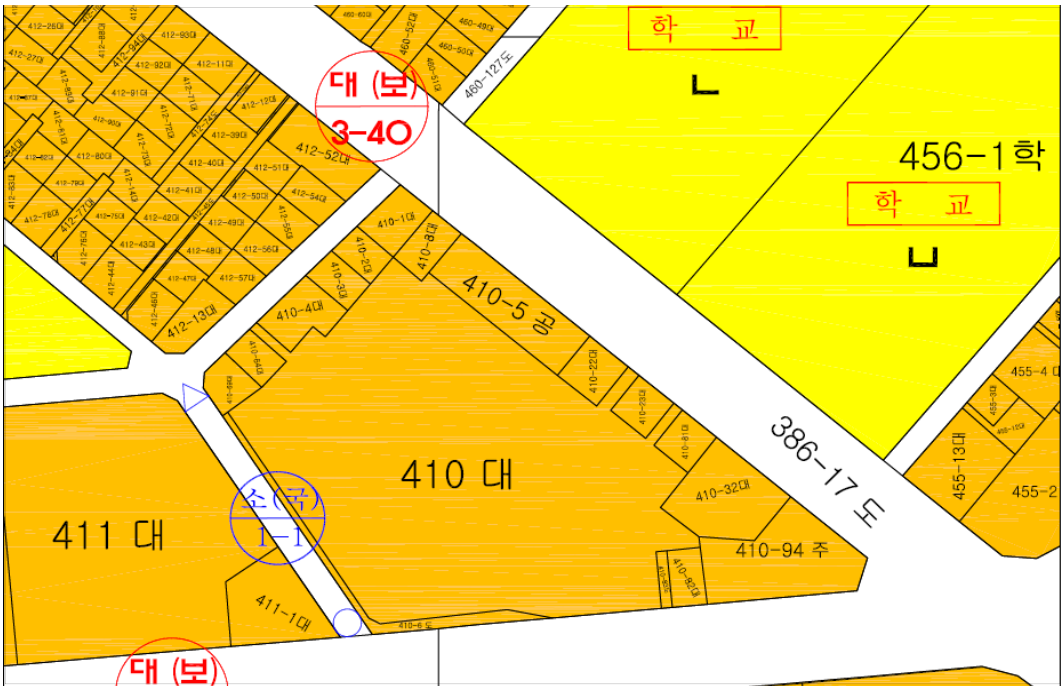
(2) 공공공지 변경 사유서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변 경 사 유
공공공지	- 위치: 번동410-5 번지 면적: 689.9㎡(신설)	- 공공공지 조성 완료 후 청년활력공간 설치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을 폐지(2018.12.20.)하였으나, 사업추진 중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로 재지정하여 토지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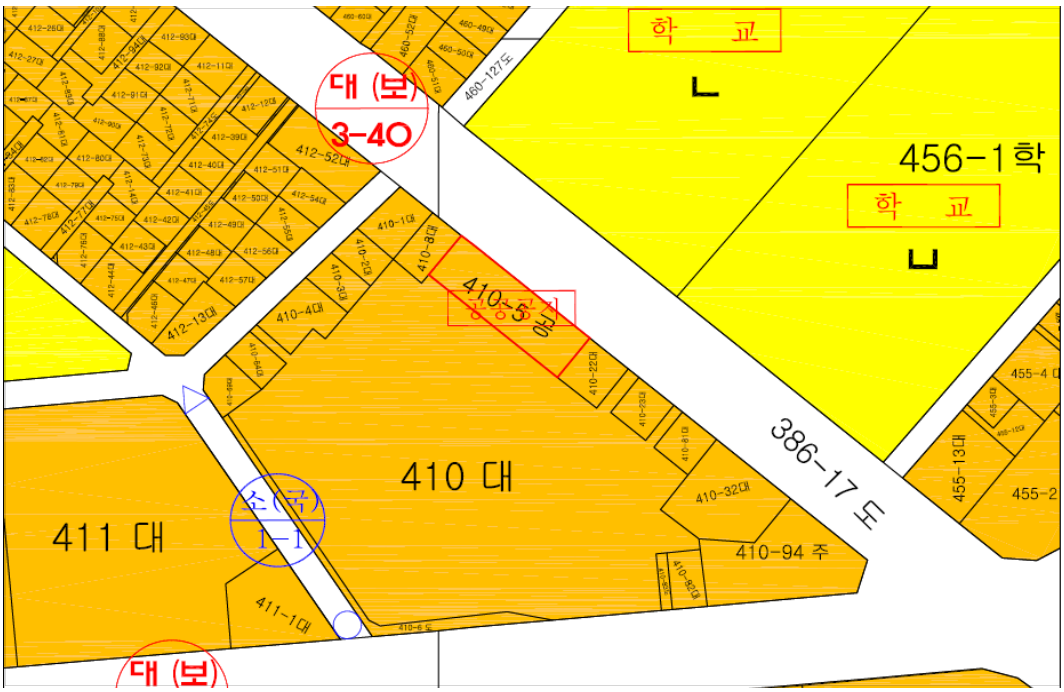
※ 상기 내용 외 기타 변경사항 없음.

마. 관계도서: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 도시기반시설 결정(기정)도



□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도봉구공고 제2020-91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작성을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1호(2000.02.07.)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공고 제2020-544호(2020.04.16.)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작성을 위해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도봉구고시 제2020-65호(2020.05.28.)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작성 고시된 「방학동 622~713-10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사업구간 및 수용토지물건의 변경 사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작성을 위해 열람공고 합니다.
2.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를 열람 공고 합니다.
3. 토지 및 건물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4.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도로과(☏2091-4053~5)에 비치하여 공고일 다음날 부터 14일간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리며 본 열람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실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도봉구청 도로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16일
도 봉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나. 사업개요(변경)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지의 위치	사업규모	결정고시	비고
방학동 622 ~ 713-10간 도로개설사업	방학동 718-15~ 방학동 718-16간	· B = 12m · L = 128m	서울시고시 제21호 (2000.02.07.)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도봉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
라.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실시계획(변경)작성 고시일로부터 2년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 따로 붙임
바. 열람기간 : 시보게재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도로과(☎02-2091-405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변경)

사업시행자: 도봉구청장
사업시행자 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
사업의 명칭: 방학동 622~713-10간 도로개설사업

변경 전											변경 후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지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지 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지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지 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방학동 718-16	도로	53.9	53.9	도봉구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					" 변경 없음"										
2	방학동 718	도로	167.3	167.3	도봉구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					" 변경 없음"										
3	방학동 718-17	대	186.3	186.3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호 11					" 변경 없음"										
4	방학동 718-18	대	68.7	68.7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호 11					" 변경 없음"										
5	방학동 718-2	대	110.4	47.7	주**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6**-*					방학동718-47	대	47.7	47.7	주**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6**-*					방학동 718-2에서 분할
6	방학동 718-19	대	265.8	265.8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호 11					" 변경 없음"										
7	방학동 718-41	도로	443.3	443.3	도봉구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					" 변경 없음"										
8	방학동 718-20	도로	28.6	28.6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호 11					" 변경 없음"										
9	방학동 718-22	대	237.3	237.3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호 11					" 변경 없음"										
10	방학동 718-21	도로	32	32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호 11					" 변경 없음"										

물 건 조 서(변경)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수량	단위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방학동 718-47	건물	벽돌조/슬라브	65.1	㎡	주**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6**-*					추가
		대문		1	개소							

영 업 권 조 서(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영업의 종류	상호명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내용	
1	방학동 718-47	부동산	롯********사*소	1	방학동 718-2	최**				추가
2	방학동 718-47	의류	***스킨	1	방학동 718-2	소**				추가

◈ 도봉구공고 제2020-93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작성을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도봉구고시 제1994-37호(1994.08.22.)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공고 제2020-538호(2020.04.16.)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작성을 위해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도봉구고시 제2020-67호(2020.05.28.)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작성 고시된 「방학동 415~608-17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사업구간 및 수용 토지물건의 변경 사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작성을 위해 열람공고 합니다.
2.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를 열람 공고 합니다.
3. 토지 및 건물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4.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도로과(☏2091-4053~5)에 비치하여 공고일 다음날 부터 14일간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리며 본 열람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실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도봉구청 도로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16일
도 봉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나. 사업개요(변경)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지의 위치	사업규모	결정고시	비고
방학동 415~608-17간 도로개설공사	방학동 414-3~ 방학동 608-17간	· B = 8m · L = 246m	도봉구고시 제1994-37호 (1994.08.22.)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도봉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
라.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실시계획(변경)작성 고시일로부터 2년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 따로 붙임
바. 열람기간 : 시보게재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도로과(☎02-2091-405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변경)

사업시행자: 도봉구청장
사업시행자 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
사업의 명칭: 방학동 415~608-17 도로개설공사

변경전											변경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방학동 414-1	구	1,346	251	도봉구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					" 변경 없음"										
2	방학동 414	전	50	50	오**	서울시 도봉구 방학로 1*3, **동 3**호 (방학동, ***아파트)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을지로*가)(***지점)	근저당권	" 변경 없음"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을지로*가)(***지점)	지상권											
3	방학동 414-5	전	50	50	오**	서울시 도봉구 방학로 1*3, **동 3**호 (방학동, ***아파트)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을지로*가)(***지점)	근저당권	" 변경 없음"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을지로*가)(***지점)	지상권											
4	방학동 414-7	도	3	3	도봉구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					" 변경 없음"										
5	방학동 413-17	도	340	213	권**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					방학동 413-33	도	213	213	권**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					방학동 413-17에서 분할
6	방학동 404-4	구	1,823	1,823	도봉구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					" 변경 없음"										
7	방학동 726-5	도	410.4	16	도봉구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					" 변경 없음"										
8	방학동 608-1	도	165.7	165.7	도봉구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					" 변경 없음"										
9	방학동 398-40	도	72	72	도봉구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					" 변경 없음"										
10	방학동 398-42	도	26	26	도봉구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		주식회사****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점)	근저당권	" 변경 없음"										
								****협동조합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	근저당권											
11	방학동 394-4	도	2,514	90	도봉구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					" 변경 없음"										

◈ 서대문구공고 제2020-76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152호(1990.05.2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9-58호(2019.04.18.)로 실시계획 인가 된「홍은1동 9-304~9-305 간 도로개설」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102조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를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6일
서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9-291~9-704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 홍은1동 9-304~9-305 간 도로개설
다. 사업의 규모 : 도로개설(폭 6m, 연장 48m)
라. 사업 시행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마. 사 업 기 간 : 2019.04.19. ~ 2020.06.15.
바. 관계 서류는 서대문구청 안전건설교통국 토목과(☎330-176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서대문구공고 제2020-77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106호(1974.8.1.)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공고 제2018-1140호(2018.12.6.)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및 서대문구고시 제2018-196호(2018.12.27.)로 실시계획 인가 된「홍제3동 264-3~247-23간 도로개설」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102조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를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6일
서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3동 264-3~247-23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 홍제3동 264-3~247-23간 도로개설

다. 사업의 규모 : 도로개설(폭 6m, 연장 187m)
라. 사업 시행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마. 사 업 기 간 : 2018.12.27. ~ 2020.07.07.
바. 관계 서류는 서대문구청 안전건설교통국 토목과(☎330-1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구로구공고 제2020-117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안) 열람공고

1. 구로구 고척동 241-50번지 외 2필지 주차장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제6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16일
구 로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익일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구로구청 도시계획과(☎860-2944), 주차관리과(☎860-2130)
구로구청홈페이지(http://guro.go.kr→고시.공고), 서울도시계획포(http://urban.seoul.go.kr)
다.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안) 사항
1) 결정(안)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	주 차 장	고척동 241-50 외 2필지	-	증)506	506	-	소규모 공영주차장

2)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주 차 장	· 공영주차장(신설) : 506㎡	주거 밀집지역에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충하여 주민편의 제공

라. 관련도서 : 생략(구로구청 도시계획과, 주차관리과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마. 기타사항
○ 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 도시계획과(☎860-2944), 주차관리과(☎860-2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관악구공고 제2020-122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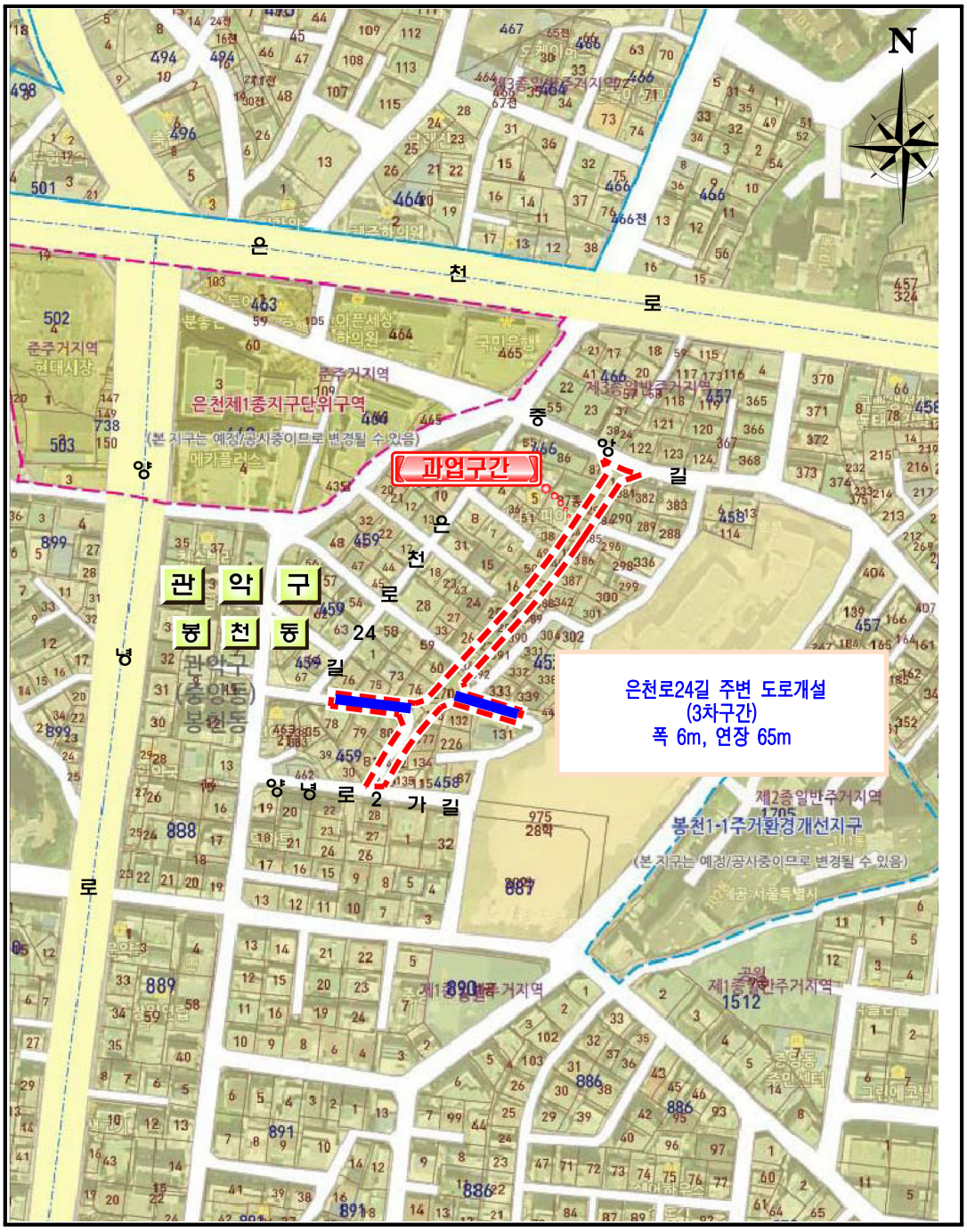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주민의견 청취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18-114호(2018.12.27)로 관악구 봉천동 457 주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고,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3.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하며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도로관리과(☎879-6753)에 비치하며, 본 사업에 따른 의견서는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16일
관 악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459-77~봉천동 457-444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은천로24길 주변 도로개설(3차 구간)
다. 총사업규모 : 폭원 6m, 연장 65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관악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청룡동 1570-1)
마.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24개월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아.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5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 별첨
자.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함.

위 치 도


N
은천로
은천제1종지구단위구역
(본 지구는 예정/공사중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과업구간
중앙길
관악구 봉천동
양녕로 2가길
은천로24길 주변 도로개설
(3차구간)
폭 6m, 연장 65m
제2종일반주거지역
봉천1-1주거환경개선지구
(본 지구는 예정/공사중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제1종일반주거지역
양녕로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지의 위치 : 봉천동 459-77～봉천동 457-444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은천로24길 주변도로 개설사업(3구간)
○ 총사업규모 : 폭원 6m, 연장 65m
○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관악구 145(청룡동 1570-1) 관악구청장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실제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분율	비고
	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기타 권리		
1	봉천	459-77	대지	203	203	도로	권*옥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상도동)	-	-	-	15/56	
							권*옥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 ***동 ****호 (성복동, 성동마을엘지빌리지3차)	-	-	-	11/56	
							권*옥	서울특별시 관악구 승방길**, ***호(남현동)	-	-	-	11/56	
							김*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 ***동 ****호(개포동, 주공아파트)	-	-	-	8/56	
							정*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로4길 **-****호(삼전동)	-	-	-	11/56	
2	봉천	459-94	대지	2	2	도로	이*화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녕로2가길**-*(봉천동)	-	-	-	-	
3	봉천	459-92	대지	1	1	도로	유*종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녕로2가길 **-* *층(봉천동)	남서울 농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195(양재동)(교대역지점)	근저당권	-	
4	봉천	459-93	대지	10	10	도로	전*열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녕로2가길 **-*(봉천동)	-	-	-	-	
5	봉천	457-444	대지	178	178	도로	장*원	**** Stanford ave, LA, California, USA	-	-	-	3/15	
							장*기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 ***동 ***호(부림동, 주공아파트)	-	-	-	6/15	
							장*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 **동 ***호(가락동,삼환가락아파트)	-	-	-	2/15	
							장*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사은로126번길 **, ***동 ***호(보라동, 민속마을현대모닝사이드)	-	-	-	4/15	
6	봉천	457-450	대지	9	9	도로	장*원	**** Stanford ave, LA, California, USA	-	-	-	3/15	
							장*기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 ***동 ***호(부림동, 주공아파트)	-	-	-	6/15	
							장*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 **동 ***호(가락동,삼환가락아파트)	-	-	-	2/15	
							장*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사은로126번길 **, ***동 ***호(보라동, 민속마을현대모닝사이드)	-	-	-	4/15	
7	봉천	457-451	대지	13	13	도로	임*순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녕로6가길 **(봉천동)	-	-	-	-	
8	봉천	457-452	대지	5	5	도로	유*현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녕로6가길 **(봉천동)	-	-	-	-	

물 건 조 서

○ 사업시행지의 위치 : 봉천동 459-78～봉천동 457-443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은천로24길 주변도로 개설사업(3구간)
○ 총사업규모 : 폭원 5m, 연장 71m
○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관악구 145(청룡동 1570-1) 관악구청장

연번	소재지 지번 (봉천동)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내용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봉천동 459-93	출입문	철제	1개	주택	전*열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녕로2가길 **-*(봉천동)				
		수도		1개							

◈ 관악구공고 제2020-1245호

도시관리계획(미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30호(2009.9.3.)로 결정(변경)된 미림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89호(2008.8.28.)로 결정(변경)된 서울대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미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재정비하는 미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16일
관 악 구 청 장

○ 열람기간: 2020. 7. 16. ~ 7. 30.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관악구청 도시계획과(☎ 02-879-6363)
○ 열람내용: 도시관리계획(미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미림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관악구 신림동 1514번지 일대	38,350	감)38,350	-	서고시 제1996-46호 ('96.3.6)
	②	서울대주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관악구 신림동 1541번지 일대	181,167	감)181,167	-	서고시제2008-289호 ('08.8.28)
변경	①	미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관악구 신림동 1522번지 일대	-	증)219,517	219,517	-

2)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구분	구 역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미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통합 - 2개구역→ 1개구역 - 미림생활권 : 38,350㎡ - 서울대주변 :181,167㎡ ⇒ 219,517㎡	• 생활권중심에서 지구중심으로 위상이 격상된 미림지구의 중심성을 강화하고 • 인접한 두개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하여 계획의 연속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단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통합 · 관리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3.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4. 기타사항에 관한 사항: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 관련도서: 게재 생략(열람장소 비치)
○ 열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절차이행 중에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강남구공고 제2020-1364호

강남세브란스병원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안) 재열람공고

1. 강남구 도곡동 146-92번지 일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16일
강 남 구 청 장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안)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강남세브란스병원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남구 도곡동 146-92번지 일대	-	증) 58,735.7	58,735.7	-	-

나.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안)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58,735.7	-	58,735.7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34,795.0	감)996	33,799.0	57.5	
	제3종일반주거지역	23,940.7	증)996	24,936.7	42.5	

다.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안)

□ 공원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도곡 근린공원	근린 공원	도곡동 29 일대	255,648.0 (33,799.0㎡)	-	255,648.0 (33,799.0㎡)	1971.8.6. (건고 제465호)

※ ( )는 구역 내 포함 면적

□ 종합의료시설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종합 의료시설	도곡동 146-92 일대	22,121.0	증)2,815.7	24,936.7	1976.06.21. (서울특별시고시 제1976-136호)	강남 세브란스 병원

라.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안) : 열람장소 비치 도서 참조
마.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바. 열람장소 : 강남구청 도시계획과(T.3423-6103), 도곡1동주민센터(T.3423-7456)
사. 관련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자료와 같음). 끝.

◈ 송파구공고 제2020-1100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공사완료 공고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91호(2012.07.06)로 결정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14호(2020.02.27.)로 변경 결정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19-2호(2019.01.03.)로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오금공공주택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
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6일
송 파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공공주택지구 주차장용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
◯ 사업의 명칭 : 서울오금공공주택지구 주차장용지 주차전용건축물 신축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토지면적 : 798.6㎡
◯ 건물 연면적 : 6,594.98㎡
◯ 건물 용도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근린생활시설
◯ 주차대수 : 59대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성명 : ㈜대장 대표 김태헌
◯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157길 13, 3층(목동)
마. 사업의 준공일 : 2020년 7월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권리내용	성명	주소	
합 계											
1	오금동	99-5 일원		798.6		㈜대장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157길13	-	-	-	

사. 준공도서 : 생략

◈ 강동구공고 제2020-1411호

도시계획시설(암사역사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85호(2006.5.18)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29호(2006.9.28)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었으며, 강동구 고시 제2019-97호(2019.7.18.)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된 암사역사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변경인가를 위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본 공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0년 7월 16일
강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136-3번지 외 3필지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1) 성명: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2)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성내동)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도시계획시설(암사역사공원) 사업

라. 사업의내용(변경없음): 공원조성(토지보상)

마. 규 모
- 당초: 토지보상 1,518㎡
- 변경: 토지보상 1,509㎡

바. 사업기간(변경없음):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2021. 12. 31.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소재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따로붙임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푸른도시과(☎02-3425-64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 소	지분	성명	주 소	소유권이외권리명세	
계	4필지	4필지		1,551	1,551	1,518	1,509							
1	136-3	136-3	전	741	741	741	741	안*용	서울특별시 송파구 **로 ***, ***동 ****호(**동,********)	480/1920				
								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320/1920	송*호	충청북도 청주시 **구 **동 ***-*, ***호	근저당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박*식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 산**-*	80/1920				
								이*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가 ***-**	80/1920				
								김*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 **동 ***호	80/1920				
								홍*기	인천광역시 계양구 **로 ***, *동 ****호(**동, **아파트)	80/1920				
								이*주	서울특별시 동작구 **로 ***, ***동 ****호(**동, *****아파트)	240/1920				
								김*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로**길 **, ***동 ***호(**동, ****** 아파트)	80/1920				
								김*영	서울특별시 강동구 ***로***길 **-*, ***호(*동)	80/1920				
								이*형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 ****동 ****호(**동, *******)	160/1920				
								김*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로***번길 **, ***동 ***호(**동, *******아파트)	160/1920				
								강*호	경기도 부천시 ***로 ***, ***동 ***호(*동, *****)	80/1920				
2	137-6	137-6	전	331	331	331	331	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로*길 **-*(**동)	3/9				
								김*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로 ***, ***동 ****호(**동, ****아파트)	2/9				
								김*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로*길 **, ***호(**동, ****)	2/9				
								김*화	서울특별시 광진구 ***로**길 **, ***동 ***호(**동, **아파트)	2/9				
3	137-7	137-7	전	331	331	331	331	박*택	서울특별시 도봉구 ***로**길 **-**, ***호(**동, *******)					
4	192-3	192-3	전	148	148	115	106	사회복지법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길 **(**동)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조서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및 수량		이용현황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 소	지분	성명	주 소	소유권이외권리명세	
계														
1	136-3	136-3	비닐하우스	비닐, 보온덮개	466.5㎡, 2동	890㎡, 4동	농업용	안*용	서울특별시 송파구 **로 ***, ***동 ****호(**동,********)	480/1920				
								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320/1920	송*호	충청북도 청주시 **구 **동 ***-*, ***호	근저당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박*식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 산**-*	80/1920				
								이*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가 ***-**	80/1920				
								김*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 **동 ***호	80/1920				
								홍*기	인천광역시 계양구 **로 ***, *동 ****호(**동, **아파트)	80/1920				
								이*주	서울특별시 동작구 **로 ***, ***동 ****호(**동, *****아파트)	240/1920				
								김*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로**길 **, ***동 ***호(**동, ****** 아파트)	80/1920				
								김*영	서울특별시 강동구 ***로***길 **-*, ***호(*동)	80/1920				
								이*형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 ****동 ****호(**동, *******)	160/1920				
								김*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로***번길 **, ***동 ***호(**동, *******아파트)	160/1920				
								강*호	경기도 부천시 ***로 ***, ***동 ***호(*동, *****)	80/1920				

사업소공고

◈ 한강사업본부공고 제2020-207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사전통지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을 위반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사전통지분)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1. 건 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행위자 (사전통지분)과태료 부과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 “세부내역 별첨 참조”
4. 공고기간 : 2020.7.16. ~ 7.29.(14일)
5. 자진납부기간 : 2020.7.30. ~ 2020.8.12.(14일)
6. 수령방법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에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7. 공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02-3780-0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내역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통지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자진납부금액(원)	부과금액(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6	001863	김*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40,000	50,000	폐문부재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번길 **-*	***호 (삼정동, 부일다세대)
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6	001868	김*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40,000	50,000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길 *	(가리봉동)
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6	001870	윤*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40,000	50,000	기타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길 **	지하*층 (자양동)
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6	001875	김*민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40,000	50,000	기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길 **	A동***호 (논현동, 그린빌)
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6	001884	민*현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40,000	50,000	기타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	***동 ***호 (정릉동, 정릉*차 e-편한세상아파트)
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6	001889	박*범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40,000	50,000	기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다길 **	***호 (마포동, 강변한신코아)
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6	001892	김*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40,000	50,000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잠원동)
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6	001893	JIN*JI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40,000	50,000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다길 *-*	(숭인동)
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6	001895	조*재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40,000	50,000	폐문부재	경기도 의정부시 회룡로 ***	***동****호 (신곡동, 주공아파트*단지)
1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6	001896	김*순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40,000	50,000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희우정로*길 **	(합정동)
1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6	001905	정*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40,000	50,000	폐문부재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번길 **	***동****호 (원종동, 원종동금호어울림)
1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6	001957	박*호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40,000	50,000	기타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길 **-*	***호 (석촌동)
1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6	001962	한*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40,000	5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 ***	(전농동)
1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6	001968	김*규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40,000	50,000	기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길 **	(목동)
1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6	001969	고*순, 황*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40,000	5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길 ***	***동***호 (방화동, 치현마을서광아파트)
1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6	001975	공*배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40,000	50,000	기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로*길 **-**	***호 (망원동, 두원캐스빌)
1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6	001976	이*복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40,000	50,000	기타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길 **	(용문동)
1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6	001977	이*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40,000	50,000	기타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	(후암동)
1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6	001980	김*한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40,000	50,000	기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길 **	***호 (논현동)
2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6	001985	최*균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40,000	50,000	폐문부재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길 **	(주현동)
2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6	001989	이*명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40,000	50,000	기타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길 **	***호 (면목동)
2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6	002027	김*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40,000	50,000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잠원동)
2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6	002032	윤*재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40,000	5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 ***-**	*층***호 (신사동)
2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6	002040	손*권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40,000	5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길 ***	(신림동)
2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6	002041	SUN *QIANG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40,000	50,000	기타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림로*길 **	***호 (구로동)
2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6	002051	장*석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40,000	50,000	기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길 **	***호 (창전동)

2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6	002052	CUI*HUA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40,000	50,000	기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	***동 ****호 (양평동*가, 에듀시티에비앙)
2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6	002054	최*태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40,000	5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	***동 ***호 ((가양동, 일신건영휴먼빌아파트))
2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6	002055	박*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40,000	50,000	폐문부재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번길 ***	****호 (역곡동, 보람쉬움아파트)
3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6	002059	김*연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40,000	50,000	기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서로 ***	A동 ***호 (양평동*가, 양평역대우미래사랑)
3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6	002060	윤*석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40,000	5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길 **	지하층***호 (방배동)
3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6	002064	용*중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40,000	5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길 **-*	***호 (창동, 은자이빌)
3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6	002066	양*숙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40,000	5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길 **-*	***호 (암사동)
3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6	002068	김*용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40,000	5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가길 *-*	가동지층*호 (신사동, 경남빌라)
3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6	002069	오*분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40,000	50,000	기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마길 **	타동***호 (홍은동, 홍은)
3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7	002070	WEIL *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40,000	50,000	기타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길 **	(용산동*가)
3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7	002072	김*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40,000	50,000	기타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가길 **-*	(이태원동)
3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7	002073	김*애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40,000	5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길 **	***동****호 (신당동, 약수하이츠)
3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7	002075	문*철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40,000	5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나길 **	(노량진동)
4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7	002077	YOON* HEE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40,000	50,000	이사불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 **	***호 (용산동*가)
4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7	002078	박*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40,000	50,000	기타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가길 **	***호 (이태원동)
4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7	002080	곽*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40,000	50,000	폐문부재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여옥길 **	***동****호 (정동면)

◈ 한강사업본부공고 제2020-208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수시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을 위반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수시분)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1. 건 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행위자 (수시분) 과태료 부과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 “세부내역 별첨 참조”
4. 공고기간 : 2020.7.16. ~ 2020.7.29.(14일)
5. 자진납부기간 : 2020.7.30. ~ 2020.8.12.(14일)
6. 수령방법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에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7. 공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02-3780-0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대상내역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과세대상	부과금액(원)	성명/법인명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1	10-288706	[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7	000546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유*오	수취인불명	전라남도 순천시 강남로 ***	(동외동)
2	10-288706	[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7	00049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주식회사 하*이노	이사불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	*층 (중곡동)
3	10-288706	[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7	000494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황*식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길 **-*	(신당동)
4	10-288706	[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7	000563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양*석	수취인불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번길 **-**	***호 (토당동)
5	10-288706	[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7	000568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양*석	수취인불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번길 **-**	***호 (토당동)
6	10-288706	[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7	000573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유*오	수취인불명	전라남도 순천시 강남로 ***	(동외동)
7	10-288706	[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7	000579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양*석	수취인불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번길 **-**	***호 (토당동)
8	10-288706	[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7	000544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송*우	폐문부재	경기도 과천시 물사랑로 ***-*	(주암동)
9	10-288706	[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7	000509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김*진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달로*길 **	***동****호 (흑석동, 흑석동양아파트)
10	10-288706	[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7	000576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송*우	폐문부재	경기도 과천시 물사랑로 ***-*	(주암동)
11	10-288706	[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7	00053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서*영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길 ***	***동 ***호 (사당동, 사당우성아파트)
12	10-288706	[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7	000538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이*훈, 염*라	폐문부재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동로 **	****동***호 (향남읍, 향남시범삼구꽃마을풍림아이원)
13	10-288706	[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7	000496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이*택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길 **	***호 (서초동, 공해방지빌라)
14	10-288706	[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7	000502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류*우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길 **	***호 (방배동)
15	10-288706	[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7	000569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출입	50,000	장*기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길 **	***호 (화곡동, 지온아트빌)
16	10-288706	[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7	000507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문*란	폐문부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개목*길 *	***호 (봉명동, 동원홈피스텔)
17	10-288706	[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7	000574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출입	50,000	이*경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길 **	***호 (방배동, 유니시스빌)
18	10-288706	[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7	000527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정*일선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길 *	***동 ****호 (이문동, 삼익아파트)
19	10-288706	[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7	000540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이*곤	기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길 **-*	(신길동)
20	10-288706	[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7	000543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이*인	폐문부재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오량*길 **-**	(사등면)
21	10-288706	[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7	000483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김*완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	***호 (봉천동)
22	10-288706	[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7	000484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김*희	기타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길 **-*	(화양동)
23	10-288706	[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7	00048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김*희	폐문부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도매시장로 ***	***호 (일동)
24	10-288706	[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7	000486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유*종	기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길 *-*	(시흥동)
25	10-288706	[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7	000548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출입	50,000	이*철	기타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길 ***	***호 (능동)
26	10-288706	[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7	000488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박*석	기타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길 *-**	(면목동)

2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7	000490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엄*슬	폐문부재	경기도 의정부시 백석로 **-*	***호 (호원동, 은하수아트빌)
2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7	000553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이*인	폐문부재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오량*길 **-**	(사등면)
2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7	000554	애완견 줄 미착용	50,000	김*현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 ***	***호 (부평동, 신영타워)
3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7	000491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정*수	기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느티로**번길 *	(정자동)
3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7	000492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이*섭	기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길 **-**	(연남동)
3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7	000555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이*인	폐문부재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오량*길 **-**	(사등면)
3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7	000556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장*수	기타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천로 **	*동 ***호 (면목동, 한신아파트)
3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7	000557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출입	50,000	이*봉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림*라길 *	*층 (봉천동)
3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7	000558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출입	50,000	김*규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번*길 **-**	*동 ***호 (당하동, 새빛타운)
3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7	00049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박*민, 지*희	폐문부재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번길 **	(가능동)
3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7	000559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출입	50,000	이*섭	기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길 **-**	(연남동)
3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7	000564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김*완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	***호 (봉천동)
3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7	000566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이*호	기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길 **	***동 ***호 (길음동, 래미안 길음*차)
4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7	000567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이*인	폐문부재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오량*길 **-**	(사등면)
4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7	00051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김*덕	폐문부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로 ***-**	***동 ****호 (중산동, 산들마을)
4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7	000575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이*곤	기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길 **-*	(신길동)
4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7	000578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이*인	폐문부재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오량*길 **-**	(사등면)
4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7	000518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이*욱	기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길 **	***호 (목동, 평화빌라)
4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7	000581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출입	50,000	권*현	폐문부재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담터로 **	***동 ***호 (통진읍)
4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7	000582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이*인	폐문부재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오량*길 **-**	(사등면)
4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7	000520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조*규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로**길 **	***호 (길동, 태성아파트)
4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7	000584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최*남	기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번길 **-**	(토당동)
4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7	000585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이*인	폐문부재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오량*길 **-**	(사등면)
5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7	000589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이*호	기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길 **	***동 ***호 (길음동, 래미안 길음*차)
5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7	000590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김*	기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길 **-*	(신길동)
5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7	000591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김*호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 ***-**	*동 ***호 (응암동, 기룡하이츠)
5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07	000592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김*완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	***호 (봉천동)

기 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0-201호

하천점용(일시)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일시)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안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전력공사 강서양천지사장
   - 주 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313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양천구 목동 914-3번지 일원
   - 면 적 : 일시 52㎡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전력공급선로 보수를 위한 굴착공사
   - 내 역 : 전력공급선로 보수공사(D=175㎜, L=200m)
5. 점용기간(공사기간) : 2020.07.07.~2020.08.05.(2020.07.07.~2020.08.05. 점용기간과 동일)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0-20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중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동대문구청장
   -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353-4번지
- 면　적 : 영구 1.21㎡, 일시 9㎡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중랑천 체육공원 내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 내　역 :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1식(H=2.98m)

5. 점용기간(공사기간) : 2020.07.10.~2025.12.31.(2020.07.10.~2020.07.19.)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0-20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중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케이티 대표이사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74 KT서초지사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 671-4번지
- 면　적 : 영구 1㎡, 일시 1㎡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이동통신용 전주 설치
- 내　역 : 이동통신용 전주 1개소(H=16.0m)

5. 점용기간(공사기간) : 2020.07.10.~2025.12.31.(2020.07.10.~2020.10.07.)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0-207호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중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전파기지국㈜
   -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길 28(문정동)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222-2번지 외 3필지
   - 면적 : 30.95㎡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이동통신 공용기지국 설치
   - 내　역 : (당초) 도로형 강관주 1본 H=30m 전기관 2ELP(Φ40mm) L=107mm)
     (변경) 도로형 강관주 1본 H=25m 전기관 2ELP(Φ40mm) L=107mm
5. 점용기간(공사기간) : 당초 2019.12.06.~2024.12.31.(2019.12.06.~2020.01.31.)
   변경 2019.12.06.~2024.12.31.(2019.12.06.~2020.08.31.)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0-20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SK텔레콤(주) 대표이사
   - 주　소 : 서울시 관악구 보라매로5길 1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 316-2번 번지 외 2필지
   - 면　적 : 7㎡(일시 2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이동통신용 전주 및 관로 설치
   - 내　역 : 이동통신 전주 1식(H=6.0m), 후강전선관 L=27m, 통신케이블 L=75m
5. 점용기간(공사기간) : 2020.07.10.~2025.12.31.(2020.07.10.~2021.01.05.)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0-21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SK텔레콤(주) 대표이사
   - 주　소 : 서울시 관악구 보라매로5길 1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영등포구 양화동 1-7번지 외 1필지
   - 면　적 : 38.8㎡(일시 249㎡)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이동통신용 전주 및 관로 설치
   - 내　역 : 이동통신 전주 1식(H=20.0m), 전선관 D100 L=155m, 통신관 D100 L=64m
5. 점용기간(공사기간) : 2020.07.10.~2025.12.31.(2020.07.10.~2021.01.05.)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0-21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SK텔레콤(주) 대표이사
   - 주　소 : 서울시 관악구 보라매로5길 1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용산구 청암동 171번지 외 11필지
   - 면　적 : 38.8㎡(일시 249㎡)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이동통신용 전주 및 관로 설치

- 내 역 : 이동통신 전주 1식(H=6.0m), 후강전선관 D36 L=206m, 통신관 D36 L=77m, D22 L=77

5. 점용기간(공사기간) : 2020.07.10.~2025.12.31.(2020.07.10.~2021.01.05.)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0-21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SK텔레콤(주) 대표이사
   - 주 소 : 서울시 관악구 보라매로5길 1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70-2번지 외 1필지
   - 면 적 : 신규 9.0㎡, 기존 6.4㎡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이동통신용 전주 및 관로 설치
   - 내 역 : (신규) 이동통신 분산폴 2개소(H=2.0m), 후강전선과 D36 L=120m
     (기존) 이동통신 분산폴 2개소(H=2.0m), 전선관 D28 L=20m, D22 L=22m, D18 L=26m
5. 점용기간(공사기간) : 2020.07.10.~2025.12.31.(2020.07.10.~2021.01.05.)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0-21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SK텔레콤(주) 대표이사
   - 주　소 : 서울시 관악구 보라매로5길 1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60-5번지
   - 면　적 : 13㎡ (일시 31㎡)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이동통신용 전주 및 관로 설치
   - 내　역 : (신규) 이동통신 분산폴 2개소(H=2.0m), 후강전선과 D36 L=120m
     (기존) 이동통신 분산폴 2개소(H=2.0m), 전선관 D28 L=20m, D22 L=22m, D18 L=26m
5. 점용기간(공사기간) : 2020.07.10.~2025.12.31.(2020.07.10.~2021.01.05.)

정 정

◈ 중구고시 제2020-80호 정정

서울시보 제3594호(2020. 7. 2.)에 게재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의 내용에 오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7월 16일
중 구 청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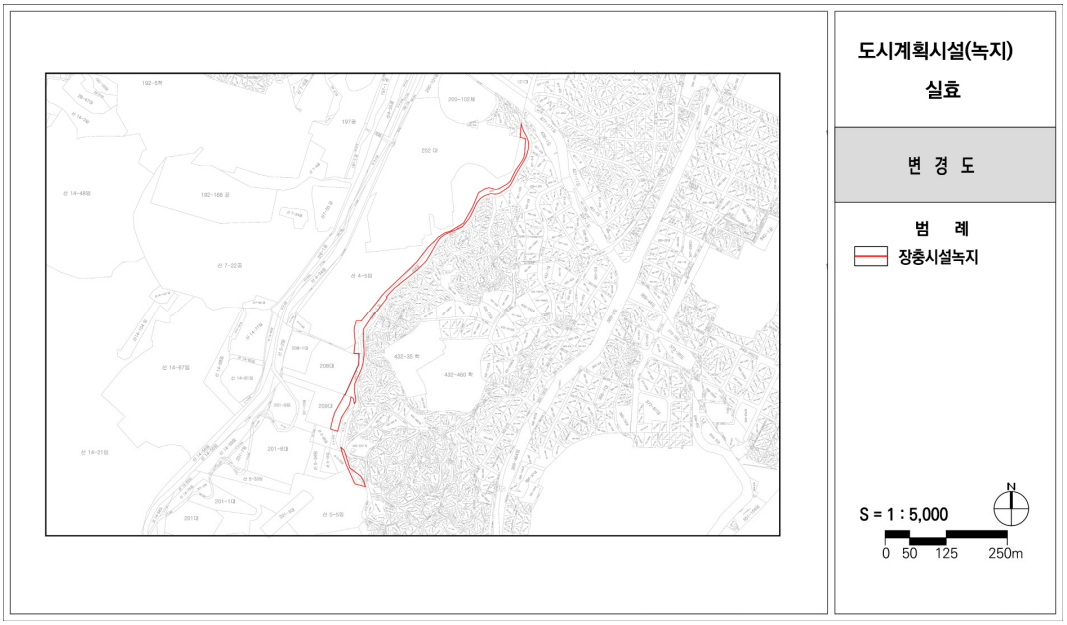
[정정 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나.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장충녹지	완충녹지	장충동2가 산5-5 일대	15,500	감)8,838	6,662	건설부 46 (1976. 4. 7.)	미집행 구간의 실효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 실효 지형도면 고시
○ 변경(장충시설녹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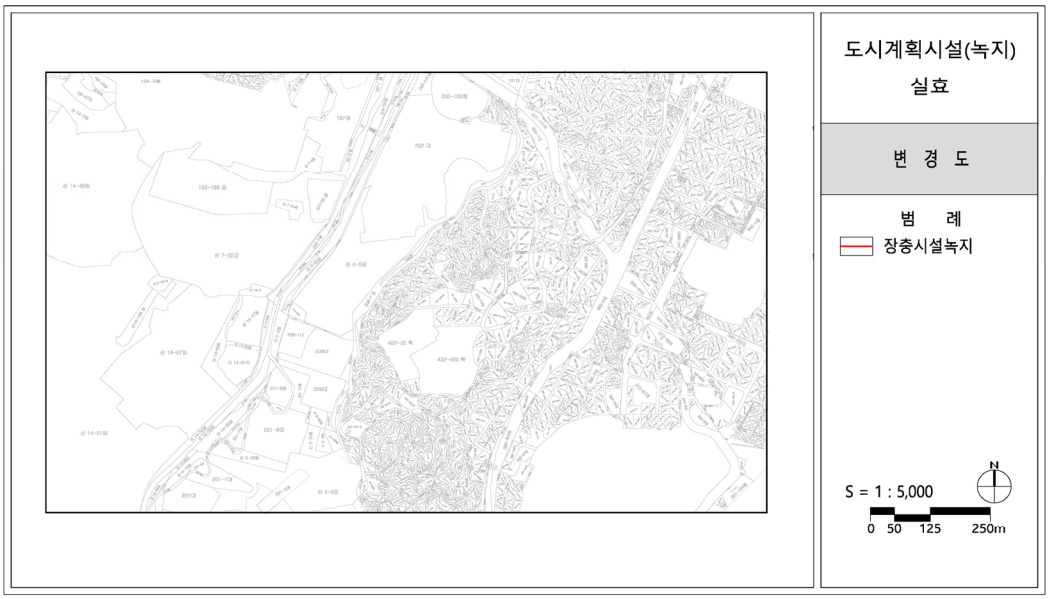
[정정 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나.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장충녹지	완충녹지	장충동2가 산5-5 일대	15,500	감)15,500	0	건설부 46 (1976. 4. 7.)	미집행 구간의 실효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 실효 지형도면 고시
○ 변경(장충시설녹지)



◈ 서대문구고시 제2020-13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정정 고시

1. 서대문구고시 제2017-155호(2017.10.25.)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후, 서대문구공고 제2020-329호(2020.03.19.)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하고 서대문구고시 제2020-89호(2020.06.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된「홍은1동 13-42~16-49 간 도로개설」에 대하여 정정사항이 있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3.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고시로 갈음합니다.
4. 관계서류는 서대문구청 안전건설교통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20년 7월 16일
서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1동 13-42~16-49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 홍은1동 13-42~16-49 간 도로개설
다. 사업의 규모 : 도로개설(폭 8m, 연장 186m)
라. 사업 시행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5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토지조서 정정)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의함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안전건설교통국 토목과(전화: 330-17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명 : 홍은1동 13-42~16-49 간 도로개설

연번	소재지(위치)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동	번지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사항	
1	홍은동	15	대지	28	28	이동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1-7				
2	홍은동	16-13	잡종지	20	20	하상호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6-9	김근성	서울 서대문구 홍은중앙로1길 33, 3동 1103호	가등기권자	
3	홍은동	16-25	잡종지	6	6	송인직	서대문구 홍은중앙로 146-3, 1층				정정(추가)
4	홍은동	16-36	대지	9	9	홍순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6-1				
						김홍희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1-355				
						정구복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6-1				
5	홍은동	16-38	잡종지	20	20	홍순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6-1				
						김홍희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1-355				
						정구복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6-1				
6	홍은동	13-33	도로	10	10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7	홍은동	13-41	대지	238	111	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8	홍은동	13-51	대지	23	23	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9	홍은동	13-66	대지	202	200	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10	홍은동	14-37	구거	1,155	579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11	홍은동	14-39	도로	82	82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12	홍은동	16	대지	14	14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13	홍은동	16-1	대지	116	116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14	홍은동	16-14	도로	26	16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15	홍은동	16-2	잡종지	69	69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16	홍은동	16-4	도로	492	63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17	홍은동	16-68	잡종지	7	7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18	홍은동	16-69	잡종지	64	23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 구로구고시 제2020-136호

도시계획시설사업[온수도시자연공원(온수근린 7)] 실시계획 인가 정정고시

1. 온수도시자연공원은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8.6)로 최초 결정 고시되고, 건설부 고시 제528호(1986.11.3.)로 최종 변경 결정사항은 고시되었으며, 공원의 조성계획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66호(2015.9.10)로 고시되었습니다.
2. 온수도시자연공원 일부인 오류동 산5-8번지 일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공고 제2020-39호(2020. 3. 12.) 및 제2020-1006호(2020. 6. 11.)로 열람공고를 마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을 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6일
구 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산5-8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명칭 및 사업내용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사업의 명칭 : 온수도시자연공원(온수근린 7) 조성사업
◯ 사업내용 : 토지보상
다. 사업의 면적(변경) : 13,612㎡(감정평가 등 여건에 따른 사업면적 조정 가능)
라. 사업시행자 등의 성명 및 주소
◯ 사업 시행자 ┌ 성 명 : 구로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동 435)
마. 사업 착수·준공 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년간
바.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따로 붙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 열람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 업 명 : 온수도시자연공원(온수근린 7) 조성

□ 사업시행자 : 구로구청장

연번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계			18,865	13,612						
1	구로구 오류동 산5-8	임야	5,575	5,486	○○건설주식회사	충청남도 연기군 동면 응암리 ○○-○○				
2	구로구 오류동 산5-63	임야	2,733	2,733	김원○	경북 의성군 안평면 월안길 ○○-○○				
					조기○	경기도 동두천시 어수로 29-16, 상패주공아파트○동 ○호	구로세무서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8	압류	
							구로구 세무1과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압류	
					서천○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73가길 52, 트윈텔 ○동 ○호				
					김경○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637 우성아파트 ○동 ○호				
					임대○	서울시 구로구 고척로 49, 동부골든아파트 ○동 ○호				
					임병○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12 래미안 슈르 ○동 ○호	이우○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12 래미안 슈르 ○동 ○호	배우자	
					김래○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29 현대프라임아파트 ○동 ○호	강서세무서	서울시 강서구 마곡서1로 60	압류	
							신용보증기금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22	채권자	
							국민행복기금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채권자	
					박동○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풍로 38 수지2차삼성아파트 ○동 ○호				
					장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웃말6길 21, 104호(일동)				
					박준○	서울시 도봉구 해등로25길 36, 한양아파트 ○동 ○호	정래○	서울시 양천구 오목로30길 ○○-○○(신정동)	근저당권자	
							최윤○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1486(15/5) 가양주공아파트 ○동 ○호	근저당권자	
					김인○	서울시 서초구 잠원로 37-48, 신반포4차아파트 ○동 ○호				
					권병○	서울시 강북구 솔샘로 159, 벽산라이브파크아파트○동 ○호				
					홍○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39(9/2) 샛별마을 ○동 ○호				
					박석○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이현로29번길 86-26 대림아파트 ○동 ○호				
					박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이현로29번길 86-26, 206동 202호(보정동, 대림아파트)				
					장명○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동로3길 10, 여의도 자이 ○동 ○호				
					전성○	서울시 용산구 새창로 70, 삼성래미안아파트 ○동 ○호				
3	구로구 오류동 산5-59	임야	2,296	2,296	김효○	경기도 의정부시 금신로382번길 36-17, 202호(금오동, 금오다세대)				
					서동○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373길 21, 401호(도곡동, 이니그마빌-III)				
					한주○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09-23	삼성세무서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	압류	
							강남구청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압류	
					김복○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월안길 281-3	안동세무서	경북 안동시 서동문로 208	압류	
							구로구징수과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압류	

					정광○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양로 16, 안산고잔9차푸르지오○동 ○호				
					이은○	충청남도 서산시 호수공원11로 11, 서산예천푸르지오 ○동 ○호				
					조희○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동2로 56, 유원제일2차아파트 ○동 ○호				
					박홍○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143, 래미안 에코팰리스 ○동 ○호				
					신문○	충청도 아산시 배방읍 광장로 210 요진와이시티 ○동 ○호				
					박지○	서울시 구로구 고척로 49, 동부골든아파트 ○동 ○호				
					김요○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40길 11, 영화아파트 ○동 ○호				
					김매○	인천시 남동구 인주대로 604번길 89-8 서보빌라 ○동 ○호				
4	구로구 오류동 산5-46	임야	1,587	1,587	이치○	경기도 부천시 범안로 98 6층(범박동)				
					이규○	서울시 은평구 불광로2길 33 북한산힐스테이트 1차아파트 ○동 ○호				
					김연○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196 중흥마을 ○동 ○호	부천시 징수과	경기 부천시 길주로 210	압류	
					송춘○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사리로 522				
					김수○	경기도 광명시 목감로 58, 광명해모로이연아파트 ○동 ○호				
					안정○	경기도 부천시 평천로 616, 다정한마을 ○동 ○호				
					조창○	경기도 부천시 성주로 158, 이편한세상부천심곡 ○동 ○호				
					조경○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도항2길 55, 동신아파트○동 ○호				
					김승○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42번길 52, ○동○호 (비단마을베스트타운)				
					허재○	서울 강서구 화곡로13길 107, 화곡푸르지오 ○동 ○호				
					강일○	강원도 홍천국 북방면 팔봉산로 2420-58	윤형○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32길 5, 가락심익맨숀 ○동 ○호	근저당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3	압류	
							국민은행(여신관리센터)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84		
							괴산군 재무과	충북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동청주세무서	충북 청주시 청원구 1 순환로 44		
							신한카드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포천시 세정과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		
							홍천군 재무과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5	구로구 오류동 산5-19	임야	6,027	930	박석○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이현로29번길 86-26, 대림아파트 ○동 ○호	최윤○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	근저당권자	
					박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이현로29번길 86-26, 대림아파트 ○동 ○호				
6	구로구 오류동 산5-44	임야	260	260	한효○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고봉로 1016, 동문아파트 ○동 ○호				
					안순○	대전시 유성구 학하남로 10, 오투그란데 미학 ○동 ○호				
					안덕○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35, 파크리오 ○동 ○호				

					주식회사○○베스트먼트	서울 서초구 서운로 160, 팔레스빌딩 ○호				
					이현○	서울시 서초구 동광로39길 93, 효성빌라 ○동 ○호				
					오범○	서울 관악구 인헌3길 20				
					김태○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7, ○동 ○호(여의도동, 삼부아파트)				
					김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82 진달래마을 ○동 ○호	김영○	인천시 부평구 동수천로 118 주공아파트 ○동 ○호	자녀	
							김영○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252 면목현대아파트 ○동 ○호	자녀	
							김영○	경기도 부천시 도약로 82 진달래마을 ○동 ○호	자녀	
							김영○	경기도 부천시 호현로 ○○	자녀	
							김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192 이매촌삼성아파트 ○동 ○호	자녀	
							김영○	경기도 부천시 마니로24번길 25 왕궁빌라 ○동 ○호	자녀	
7	구로구 오류동 산5-35	임야	213	213	박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로 54, 이매촌 ○동 ○호				
					김응○	서울시 구로구 고척로 49, 동부골든아파트 ○동 ○호				
8	구로구 오류동 산5-70	임야	88	88	서동○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373길 21, 401호(도곡동, 이니그마빌-III)	삼성세무서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		
9	구로구 오류동 4-104	대	86	19	남병○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6-7(11/6) 우원빌라 202호				
					채상○	인천시 서구 서달로 158, 명성아트빌라 ○동 ○호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 사 업 명 : 온수도시자연공원(온수근린 7) 조성
□ 사업시행자 : 구로구청장

연번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계				59.50						
1	구로구 오류동 산5-46	건물	세멘조	59.50	최선○	서울시 구로구 고척로3길 6○-○(오류동)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공람									
선람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시민소통기획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02-2133-6441 문의 : ☎120